季刊 1979年 3月 13日 登録
登録番號 바-565

봄호
1986

韓國開發研究

◀技術革新과 産業發展을 위한 課題▶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方向 池龍熙 李元雨

벤처캐피탈에 대한 期待와 課題 姜文秀

産業發展과 政策金融 金重雄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制度의 役割 郭泰元

産業構造變化와 人力政策 金仲秀 朴烜求

經濟開放化와 産業內專門化 金栽元

物質特許制度 導入의 波及效果와 對應方案 鄭鎭勝

KDI

韓國開發研究院

季刊 韓國開發研究

第8卷 第1號 1986. 3

—〈技術革新과 産業發展을 위한 課題〉—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方向 …池 龍 熙·李 元 暎… 2

벤처캐피탈에 대한 期待와 課題 ……姜 文 秀… 21

産業發展과 政策金融 ……金 重 雄… 43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制度의
役割 ……郭 泰 元… 77

産業構造變化와 人力政策……金 仲 秀·朴 烜 求… 98

經濟開放化와 産業內專門化 ……金 栽 元…126

物質特許制度導入의
波及效果와 對應方案……鄭 鎭 勝…152

編輯委員

金 重 雄(委員長)
金 鍾 基(幹 事)
朴 烜 求　金 仲 秀
李 啓 植　李 元 暎

編輯問議：編輯委員會(967-4947)
購讀問議：發刊資料相談室(967-3287)

「韓國開發研究」는 우리나라 經濟·社會開發과 관련되는 諸般課題를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다룬 論文과 關聯 研究資料를 수록하여 年 4回(3月, 6月, 9月, 12月) 發行한다.

이 研究誌는 本研究院의 研究結果에 立脚한 論文과 研究資料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紹介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特別招請 形式으로 外部人士의 原稿도 수록할 수 있다.

本誌에 실린 論文의 結論과 政策建議를 포함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意見이며 결코 本研究院이나 編輯委員會의 公式意見을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本誌의 內容은 出處明示 慣例를 지키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다.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方向

——開放化施策의 效果分析을 中心으로——

池　龍　熙
李　元　暎

▷ 目　次 ◁

Ⅰ. 序
Ⅱ. 技術導入의 實態
Ⅲ.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的 意味
Ⅳ. 技術導入 自由化에 따른 主要爭點과 對策
Ⅴ. 要約 및 向後 政策方向

Ⅰ. 序

최근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技術導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産業構造가 高度化됨에 따라 外國技術에 대한 需要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製品의 壽命週期上 과거에는 주로 成熟期의 제품을 생산했는 데 반하여 技術水準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新製品 出現期나 成長期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비공식적 수단보다는 「라이센싱」이나 外國人直接投資 등의 공식적 수단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 것이다. 技術導入이 급증하게 된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이에 대한 政府의 規制가 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60년대에는 技術導入에 대하여 각종의 制限措置가 실시되었다. 로얄티 및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며 계약상 輸出禁止條項의 삽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5단계의 自由化措置를 거쳐 技術導入은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되었으며 契約內容에 대한 제한조치는 대부분 철폐되었다.

本稿의 目的은 技術導入 自由化措置 이후의 技術導入의 推移와 實態를 분석하여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밝히고 向後의 政策課題를 도

筆者：池龍熙：本院 招聘研究委員
李元暎：本院 研究委員
* 草案作成中에 열렸던 院內세미나에서 유익한 批評을 하여 준 참석자와 最終案을 읽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준 朴浚卿 博士에게 감사한다.

출하는 데 있다. 정책입안자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간에 自由化措置에 따른 重複技術導入, 落後技術導入, 商標權導入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技術導入에 따른 국내 技術開發의 沮害現象에 대하여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自由化措置 이후 技術導入의 推移와 實態를 분석하여 그 經濟的 波及效果를 밝히고 그간의 政策을 재조명하여 向後의 政策方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技術導入에 관한 政策의 變遷過程과 技術導入의 推移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技術導入의 産業別分布와 國別分布 및 外國과의 比較 등이 포함되어 있다. 第Ⅲ章에서는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代價支給 決定過程을 설명함으로써 技術導入에 관한 政策分析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技術導入이란 商品이나 資本財의 輸入과는 달리 不完全市場에서 契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의 이해가 정책수단에 대한 效果分析에 필수적이다. 第Ⅳ章에서는 그간에 技術導入의 自由化措置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爭點, 즉 重複技術導入, 落後技術導入, 商標權導入, 技術導入과 自體開發의 關係 등을 분석하였으며 第Ⅴ章에서는 本文의 內容을 要約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모색한다.

Ⅱ. 技術導入의 實態

1. 關聯施策의 展開過程

우리나라에서 産業技術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라는 데 대한 反論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先進國型의 技術發展과는 달리 開途國의 技術發展은 그 핵심이 외국에서 開發된 技術을 어떻게 土着化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 國內의 研究開發도 그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재현하여, 이를 우리의 與件에 맞도록 消化·改良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의 鐵鋼, 나일론, 石油化學, 自動車産業 등의 발전과정에 대한 研究에서도 外國技術의 消化·吸收가 이들 산업의 技術發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2].

技術은 여러 經路에 의하여 移轉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는 商業的 去來에 의한 技術移轉, 즉 外國人 直接投資나 「라이센싱」을 통한 技術導入이라 하겠다. 이는 海外研修, 模倣, 外國購買者의 技術指導 등의 非公式的 技術移轉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는 政府의 役割이 불분명하나, 公式經路에 대해서는 政府가 直·間接的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學者들간에는 技術導入도 일종의 새로운

1) Larry Westphal, Linsu Kim, and Carl Dahlman, "Reflections on Korea's Acquisi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World Bank Discussion Paper*, Rep. No. DRD 77, April 1984.

2) 邊衡尹, 「韓國鐵鋼工業의 技術蓄積」,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6.; 裵茂基, 「技術의 導入, 受容 및 擴散」,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3.; 朴宇熙, 「韓國에 있어서의 輸入技術의 吸收와 擴散에 관한 實證分析」,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6.; 李彰周, 「産業類型別 技術移轉 및 土着化過程과 方向」, 『技術移轉』, 韓國機械研究所, 1985.1.

형태의 外國人直接投資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도 하나 技術導入은 資本導入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서 外國人直接投資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3].

그러나 이들간에 類似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多國籍企業등 기업의 直接投資 動機中 가장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기업이 獨占하고 있는 技術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直接投資는 그 실질적 내용이 技術導入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外國人直接投資에서는 技術의 代價가 株式에 대한 配當金인 반면 技術導入에서는 로얄티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技術導入과 外國人投資間에는 相互代替性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政府의 政策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禁止하거나 規制하게 되면, 多國籍企業은 「라이센싱」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競爭開途國 또는 先進國과 비교하면 技術導入은 활발하나 상대적으로 外國人投資는 부진하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이 기술과 자본의 「패키지」 형태인 外國人直接投資보다는 이를 분리한 형태, 즉 技術導入과 借款을 선호한 때문이라 하겠다.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投資의 質을 規制하기 위하여 투자의 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投資制限 또는 禁止業種을 設定하는 등 각종의 제한을 해온 반면 技術導入에 대해서는 自由化措置가 빨리 이루어졌다.

60년대에는 技術導入에 대하여 각종의 制限措置가 실시되어 로얄티는 賣出額의 3% 이하로, 契約期間은 3년 미만으로 규제하였으며 계약상 輸出禁止條項의 삽입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1978년 이래 5단계에 걸쳐 技術導入에 관한 規制가 완화되었다. 제 1 단계 조치는 機械, 造船, 電氣, 電子, 金屬化學, 纖維 등의 업종에 대하여는 先拂金 3萬달러 이하와 經常技術料 3% 이하, 契約期間 3년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定額이 10萬달러 이하의 계약인 경우는 自動認可對象으로 하였다. 1978년의 제 2 단계 조치는 原子力, 防衛產業을 제외한 全產業에 대하여 先拂金 80萬달러 이하, 經常技術料는 賣出額의 10% 이하, 契約期間은 10년 이하인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契約에 대하여는 自動認可對象으로 하였다. 1980년의 제 3 단계 조치는 全產業에 대하여 經常技術料가 賣出額의 10% 이하이며 계약기간이 10년 이하인 계약은 自動認可對象으로 함으로써 自動認可의 폭을 확대하였다. 1982년의 제 4 단계 조치는 모든 技術導入契約은 外資事業投資審査委員會 및 外資導入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主務部處의 自動認可事項으로 하였다. 1984년 제 5 단계 조치에서는 技術導入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技術導入은 商品輸入이나 外國人直接投資보다 自由化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技術導入은 외국기업의 國內進出手段 중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 技術導入의 推移

技術導入은 매우 급격하게 增加하고 있다. 年度別 技術導入의 推移를 〈表 1〉에서 보면

3) Charles Oman, *New Forms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Phase II, Discussion Guide for Experts 'Meeting*, CD/R (83)7, OECD, 1983.

技術導入에 관한 自由化가 추진된 197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의 일시적인 不況期를 제외하고는 매년 技術導入의 件數 및 代價支給은 급증하여 1984년에는 總 432件의 技術이 導入되었으며 代價支給도 213百萬달러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技術代價支給을 他國과 비교한 결과는 〈表 2〉에 나타나 있는바, 國民總生産對比 技術代價支給은 比較對象인 8個國 중 가장 높다. 그러나 輸出入額 對比 代價支給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경제가 타국보다는 對外依存的이어서 國民總生産 對比 輸出入額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 하겠다. 〈表 2〉에서 보면 美國, 英國은 技術의 輸出이 輸入보다 커서 技術의 純輸出國인 반면 다른 6個國은 技術의 純輸入國이다. 특기할 사실은 韓國을 비롯한 필리핀, 태국 등의 開途國은 技術의 輸出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技術貿易은 일방적인 흐름임을 시사한다.

〈表 1〉 年度別 技術導入 認可 및 代價支給 現況

(단위 : 件, 100萬달러)

	件 數	代價支給額
1962~66	33	0.78
1967~71	285	16.26
1972~76	434	26.51
1977	168	58.06
1978	296	85.07
1979	288	93.93
1980	222	107.25
1981	247	107.10
1982	308	115.69
1983	360	149.50
1984	432	213.23
合 計	3,073	1,043.35

資料 : 財務部.

3. 技術導入의 産業別·國別 分布

우리나라는 1962~84년 기간중에 總 3,073件의 기술을 도입하여 약 10億달러를 로얄티로 지급하였는데 이중 製造業이 점하는 比重은 약 8.5億달러로 전체의 85%를 점하였다.

〈表 2〉 各國의 技術貿易

	技術輸入額 (100萬달러) (A)	技術輸出額 (100萬달러) (B)	國民總生産額 (10億달러) (C)	輸出入總額 (10億달러) (D)	A/C (%)	A/D (%)
미 국	552.8[2]	7,660.7[2]	3,661.3[1]	559.1[2]	0.02	0.10
일 본	1,981.9[2]	569.0[2]	1,156.3[2]	305.9[2]	0.17	0.65
영 국	783.2[5]	992.5[5]	459.2[2]	198.6[2]	0.17	0.39
서 독	948.2[4]	484.5[4]	654.6[2]	324.7[2]	0.15	0.29
프 랑 스	836.6[3]	436.3[3]	568.7[2]	201.3[2]	0.15	0.42
필 리 핀	72.0[5]	n.a	39.4[2]	11.7[2]	0.18	0.62
태 국	45.0[5]	n.a	40.4[2]	17.8[3]	0.11	0.25
한국(1984)	213.2[1]	n.a	79.0[1]	59.9[2]	0.27	0.36
한국(1983)	149.5[2]	n.a	73.4[2]	506.0[2]	0.20	0.30

註 : 1) 1)은 1984년, 2)는 1983년, 3)은 1982년, 4)는 1981년, 5)는 1980년의 數値임.
2) 필리핀의 技術輸入額은 외국기술자에 대한 봉급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한 것이며, 태국의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않음.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白書』, 1984.
PECC,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 Report by the Task Force*, Bali, Indonesia, 1983.

〈表 3〉 産業別 年度別 代價支給現況

(단위 : 千달러)

	1962~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 :
농업·축산	2,038.5	408.2	790.7	1,167.8	831.9	1,363.3	966.5	624.1	262.6	8,453.7
식품	2,039.5	651.1	434.7	506.4	612.9	1,106.0	1,341.6	2,397.2	3,309.1	12,398.5
펄프·제지	111.7	699.2	639.7	117.5	21.7	118.1	2.8	64.0	249.9	7,781.6
방직·직물	664.1	301.4	1,709.2	1,725.3	604.7	870.1	656.4	179.8	1,863.4	8,274.4
화학·섬유	8,700.6	4,123.9	3,727.3	4,100.2	993.2	422.6	1,127.7	4,066.5	3,468.8	30,730.8
요업·시멘트	1,040.6	618.6	1,758.1	2,261.2	3,460.0	2,467.2	2,807.6	4,257.6	4,384.6	23,055.5
정유·화학	32,631.4	21,806.5	29,384.4	29,970.3	42,952.9	23,161.2	24,344.3	19,635.8	30,152.7	245,039.5
제약	284.4	261.0	152.4	65.3	83.0	87.4	382.9	1,536.8	2,838.8	6,586.5
금속	23,905.6	6,436.8	10,643.5	2,459.5	7,799.0	4,634.9	4,383.9	7,271.3	7,112.3	74,650.0
전자·전기	12,801.8	7,028.0	6,204.8	8,605.1	8,921.0	16,702.7	20,202.4	30,639.1	50,179.9	161,284.8
계선	14,566.5	8,142.8	8,515.9	24,959.3	21,233.6	26,477.5	20,624.2	25,103.8	49,417.6	199,041.2
조선	5,091.0	1,002.1	1,519.7	2,309.4	2,916.4	3,525.3	15,734.9	17,667.7	12,581.4	62,347.8
통신	5,033.0	518.4	461.4	3,865.6	4,270.6	9,584.3	7,130.1	5,708.3	7,636.0	44,208.1
전력	2,759.0	3,414.4	8,679.6	4,263.7	1,076.5	7,931.8	9,991.5	21,887.0	31,147.7	91,201.2
설건	2,759.0	1,741.9	1,151.4	1,453.8	8,601.5	4,758.1	3,054.1	807.3	2,707.1	24,523.8
기타	725.6	899.9	3,535.6	6,403.2	2,851.7	3,843.6	2,938.4	7,660.8	5,916.6	34,777.4
합계	113,542.5	58,056.0	85,065.0	93,934.1	107,231.9	107,104.1	115,689.3	149,501.0	213,230.5	1,043,354.8

資料 : 財務部.

〈表 4〉 國別 認可 및 代價支給現況

(단위 : 건수, 千달러)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62~76	164	29,634.8	494	63,695.1	23	8,203.4	7	1,574.3	64	10,434.9
1977	45	17,221.6	82	25,436.9	16	2,556.6	3	483.8	22	12,357.6
1978	67	24,201.3	157	27,978.6	12	2,342.7	9	1,064.7	51	28,978.1
1979	61	34,216.4	157	22,766.9	17	3,272.3	8	4,254.8	45	29,423.7
1980	54	35,539.5	124	23,230.0	10	2,808.3	9	5,731.2	25	34,926.9
1981	74	47,981.3	109	35,395.7	15	2,532.4	11	2,740.2	38	18,454.5
1982	68	59,463.1	164	29,348.8	14	2,357.1	16	3,663.1	46	20,537.7
1983	76	80,774.9	199	37,116.6	20	3,755.3	11	2,693.1	55	25,185.9
1984	99	116,144.6	215	53,137.2	35	11,037.4	22	3,663.5	61	28,648.6
계	709	445,193.7	1,701	323,105.5	162	40,465.5	96	25,867.7	407	208,722.4
구성비(%)	23.07	42.67	55.35	30.97	5.27	3.86	3.12	2.40	23.24	20.0

資料 : 財務部.

製造業中에서도 「로얄티」 比重이 큰 主要業種은 精油·化學(2.5億달러), 電子·電氣(1.6億달러), 機械類(2.0億달러)로서 이들 업종의 로얄티는 製造業 全體의 71.3%를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機械類 및 電子·電氣分野에서 技術導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非製造業에서는 電力 및 通信分野의 技術導入이 증가하고 있다.

技術導入의 國別分布를 보면 美國과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 대종을 이루어 1962~82년 기간중 代價支給은 27億달러에 달하여 總技術導入 費用中 73.6%를 점하였다. 이를 國別로 보면 미국은 709件에 4.5億달러, 일본은 1,700件에 3.2億달러로서 件別 로얄티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과 일본으로부터의 技術導入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産業技術白書』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 件數에 비해 代價支拂이 현저히 낮은 것은 미국에 비해 源泉技術이나 核心技術의 導入이 저조한 반면에 비교적 代價가 낮은 改良技術의 導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4].

반면에 西獨, 英國,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등 EC會員國들로부터의 技導術入은 모두 432件으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며,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EC會員國이 아닌 유럽국가들에서 기술을 도입한 件數를 합해도 모두 491件으로 유럽국가들에서의 技術導入은 전체의 16.0%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4)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産業技術白書』, 1985.

Ⅲ.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的 意味

1.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條件의 決定過程

技術導入契約은 特許權, 「노우-하우」, 技術用役, 商標權 등 이전될 技術「패키지」의 內容과 그 代價에 관한 條項뿐만 아니라 技術의 使用條件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制限條項의 종류도 많으므로 그 具體的 條件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技術提供企業은 技術提供의 代價로 定額技術料(Lump-sum Fees), 經常技術料(Running Royalties), 技術支援料(Technical Assistance Fees)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資本金의 一部, 도입된 技術의 改良時 이를 義務的으로 技術提供企業에게 無償으로 供與해야 하는 Grant-back 條項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經常技術料도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支拂形態를 約定할 수 있다. 즉 經常技術料의 最少限度와 最高限度를 설정하는 방법, 販賣額의 增加에 따라 經常技術料의 比率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 輸出販賣額에 대한 經常技術料의 差等化 方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은 技術提供을 미끼로 原料, 中間材, 機械, 裝備, 部品 등을 끼워팔기 위하여, 技術導入企業이 이를 구매할 때는 技術販賣企業의 事前同意를 얻도록 하는 結付條項을 技術移轉契約書에 포

함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結付條項이 技術移轉契約에 포함되면 技術導入企業은 필요로 하는 原料, 中間材, 機械 등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追加的인 技術導入費用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技術提供企業은 技術移轉契約時 이전될 技術의 活用에 대한 각종 制限條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제한조항에서 대표적인 것은 輸出制限條項이며, 이는 크게 나누어 輸出을 全面禁止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수출을 하려면 技術提供企業의 事前承認을 받도록 한다든지 또는 輸出量, 輸出價格을 制限하고 技術提供企業의 商標使用을 禁止시키는 등 매우 다양하다.

輸出과 관련된 각종 制限條項 이외에도 技術導入契約의 滿了後까지 도입된 기술에 대한 秘密保障, 계약만료후 같은 製品이나 유사한 製品의 生産禁止, 競爭的 製品이나 技術의 취급금지 등 制限條項의 종류는 많다. 엄격한 品質管理條項도 때로는 制限條項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技術導入企業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品質管理基準을 적용함으로써 技術提供企業은 技術導入企業의 生産量과 販賣量을 間接的으로 統制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技術移轉의 條件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 조건은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結合될 수 있다. 왜냐하면 技術導入企業과 技術提供企業間에는 각각의 技術移轉條件에 대한 主觀的 評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條件의 相互交換을 위한 協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技術導入의 直接的인 代價라 할 수 있는 定額技術料와 經常技術料에 대한 評價는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定額技術料는 일반적으로 技術導入契約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一定額이므로 確實한 金額일 뿐만 아니라 現價槪念이다. 이에 반하여 經常技術料는 販賣額의 一定比率을 技術料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不確實한 미래의 販賣額에 따라 技術料의 規模가 결정되는 不確實한 미래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제공하려는 기업과 이를 도입하려는 기업간에는 主觀的 確率分布의 차이 때문에 이전될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販賣額의 評價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現金 흐름에 대한 時間的 選好度, 危險選好度 등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技術輸出企業이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國內市場과 輸出市場의 크기, 物價上昇 및 換率引上의 可能性, 생산 및 마케팅능력 등을 過小評價하면 할수록 技術輸出企業은 經常技術料보다 定額技術料를 상대적으로 選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技術輸出企業이 技術導入企業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販賣額을 예측하는데 있어 主觀的 確率分布의 偏差가 크고, 現金에 대한 選好度가 높으며 危險回避的인 경우에는 經常技術料에 대한 技術提供企業의 選好度는 技術導入企業의 그것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經常技術料 대신 定額技術料 형태로 技術料를 약정하는 것이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을 동시에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協商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간에는 이전될 기술의 패키지, 技術提供의 代價, 기술의 使用條件에 대한 제한 등 기술이전의 모든 條件에 대한 主觀的 價値評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조건을 相互交換함으로써 「파레토」最適性(Pareto Optimality)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技術導入契約條件의 특성과 결정과정을 分配的 側面은 도외시하고 주로 協商의 效率性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협상이란 협상당사자들간에 分配可能한 利益이 존재할 경우, 그 分配條件을 자발적으로 決定하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技術移轉協商의 경우 분배가능한 이익은 技術導入企業이 도입할 기술을 新製品開發, 原價節減 또는 品質改善 등 技術革新에 활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利益의 期待値라고 할 수 있으며, 技術의 代價인 技術料는 이를 技術導入企業과 技術提供企業간에 分割하는 하나의 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技術提供企業이 技術移轉의 代價로 認識하고 있는 技術料의 上限線은 技術導入企業이 도입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利益에 대한 技術提供企業의 評價額이다. 그러나 技術導入企業은 기술을 自體開發하거나 또는 다른 代替的인 技術提供先에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代案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技術提供企業이 技術導入企業의 最適代替案에 따른 費用以上으로 技術料를 요구할 경우 技術導入企業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技術提供企業의 입장에서는 技術導入企業의 利益에 대한 評價額과 技術導入企業의 最適代替案에 따른 費用에 대한 評價額 중에서 적은 금액을 技術移轉의 代價로 요구할 수 있는 最大値로 認識하게 된다.

技術提供企業은 技術移轉活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資源費用은 물론, 技術移轉에 따른 販賣減少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機會費用도 최소한 보상받으려고 하므로, 技術提供企業이 인식하는 技術料의 下限線은 이러한 資源費用과 機會費用의 合計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技術導入企業은 도입될 기술을 활용하여 실현할 수 있는 利益의 期待値나 또는 最適代替案에 따른 費用評價額 이상으로 기술료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두가지 評價額中 적은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技術代價의 上限線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技術導入企業도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려면 技術移轉活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技術提供企業의 資源費用은 최소한 지불하여야 할 비용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技術提供企業의 資源費用에 대한 技術導入企業의 評價額을 技術代價支拂의 下限線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技術代價가 합의될 수 있는 協商의 범위는 技術提供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下限線과 技術導入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上限線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의 본질은 知識이기 때문에 一般財貨와는 달리, 판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獨·寡占的 技術인 경우 技術提供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下限線과 技術導入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上限線간에는 큰 隔差가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은 매매쌍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價格協商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國際技術市場은 불완전하므로, 技術代價의 결정을 위한 協商은 매우 중요하다. 실

제의 技術代價는 技術移轉活動에 소요되는 資源費用, 技術移轉에 따른 供與者側의 機會費用을 보상하기 위한 代價 및 獨占的 利潤(Monopolistic Rent)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비용 중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率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Contractor는 技術供與契約의 경험이 있는 102個의 美國企業을 대상으로 技術代價의 費用構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直接費用이 전체 代價中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筆者에 의하여 114個 技術導入業體를 대상으로 設問調査하였는 바, 直接費用이 全體代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6%, 5~20% 사이인 기업은 19.1%, 20~50%는 17.2%, 51% 이상은 11%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技術代價의 대부분은 獨占利潤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政策的 意味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條件의 決定過程에 비추어 볼 때 技術導入條件을 개선하기 위한 政府의 役割에는 한계가 있다. 政府가 기업의 技術導入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各種規制政策을 쓴다면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은 이전될 技術「패키지」의 內容, 技術提供의 代價, 技術의 使用制限에 대한 各種條件의 새로운 組合을 통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政府規制를 뒷받침할 수 있는 行政的인 能率性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技術導入條件의 規制政策은 實效性이 적게 된다. 또한 規制政策의 實效性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기술의 도입이 저해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政府의 介入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技術의 本質은 知識 또는 情報라 할 수 있으므로 政府가 技術導入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政策手段은 情報의 提供이다. 關聯技術의 國內外 開發動向, 代替的인 技術 및 技術提供先, 유사한 경우의 技術導入條件 등에 관한 良質의 情報가 많을수록 기업은 技術的 必要性과 도입하여야 할 技術의 要素, 技術의 適正性 및 活用價値 등을 事前的으로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技術導入協商時 協商力도 체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企業이 유리한 條件으로 외국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하려면 기업의 協商力을 제고시켜야 하므로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代案的 方法이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국내에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國內企業間의 技術移轉 및 國內技術開發에 대한 각종 誘引政策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技術供給源이 多邊化되도록 政府次元의 技術協力도 확대·심화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技術需要에 대한 情報도 外國의 技術保有企業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協商技術에 따라 협상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技術移轉에 관한 國際協商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敎育 및 諮問活動도 강화하여야 한다.

技術을 유리한 條件으로 導入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技術保有企業이 技術移轉에 따라 부담하게 될 機會費用을 減少시켜 주는 정책도 요망된다. 외국의 技術提供企業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技術移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輸出 및 外國人直接投資의 機會를 상실하게 된다는 機會費用이 발생한다. 政府는 國內

市場의 開放과 外國人 直接投資를 제한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技術移轉을 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통하여 技術提供企業의 機會費用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기술을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의 協商力을 强化시킬 수 있다.

Ⅳ. 技術導入 自由化에 따른 主要爭點과 對策

技術導入이 자유화됨에 따라 導入件數 및 代價支給이 급증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導入技術에 대한 代價支給은 1984년에는 213百萬달러에 이르러 國際收支上 중요한 赤字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의 技術導入은 우리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기보다는 輸入이 禁止된 상품에 대한 貿易障壁의 迂廻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國民經濟上 이롭다고 생각되지 않는 技術導入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어 同一技術의 重複導入, 落後技術의 導入, 단순한 商標의 導入 등에 대하여 政府가 적절히 규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一部 學者나 關係專門家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技術導入의 自由化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업이 技術導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國內의 自體開發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危險性이 높은 국내 기술개발보다는 손쉬운 技術導入을 선호하나, 국내의 기술개발이 技術導入보다는 다른 기업에로의 技術擴散效果가 높고 국내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國家的인 側面에서 볼 때는 自體開發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技術導入과 自體開發간에 존재하는 外部效果의 差異를 內部化(internalize)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언하면 自體開發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金融稅制上의 支援과 技術導入費에 대한 支援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本章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爭點, 즉 重複技術導入, 落後技術導入, 商標導入 및 技術導入의 國內 技術開發 沮害要因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具體的인 對策을 제시하고자 한다.

1. 重複技術導入

가. 爭 點

同一技術이 여러 기업에 의하여 導入되면 국가적 측면에서는 그 代價를 重複하여 지불하므로 이를 規制하는 것이 國民經濟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同一技術을 여러 기업이 갖게 됨에 따라 技術이 廣範圍하게 波及되며 企業間의 競爭을 促進하게 되므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見解가 對立되고 있다.

나. 實 態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관한 調査硏究에 의하면[5] 1981年과 1983年 사이에 도입된 총 915건의 技術中 603件의 技術導入契約書를 대상으로 分析한 결과 商標實施權을 除外한 總 551件中 126件의 技術이 중복되었음이 밝혀졌는바 이를 産業別로

5) 韓國科學技術院,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關한 調査硏究』, 科學技術處, 1985.

〈表 5〉 技術導入 重複件數

	2件重複	3件重複	4件重複	5件重複	8件重複
機械	3	3			
電氣·電子	5	7	6	4	1
化工	8	2	1		
其他	1				

分類하면 〈表 5〉와 같다.

重複技術導入의 現況은 實施權類型別로 보면, 特許實施權이 電氣·電子分野에 9件(導入件數는 31件)이며, 「노우-하우」實施權에는 電氣, 電子의 重復技術導入이 14件, 化工分野 11件, 機械分野 6件으로 集中되어 있어 대부분의 重複技術導入이 「노우-하우」實施權契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評 價

이와 같은 論爭의 解決을 위하여는 技術導入代價의 決定過程을 이해해야 할 것인바 技術市場이 競爭的인 경우와 獨寡占的인 경우로 分類하여 검토하여 보자. 먼저 導入技術이 競爭的 市場與件下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입에 따른 代價중 獨占的 利潤의 構成比는 매우 낮아 그 크기가 기술자의 派遣 등 技術指導에 소요되는 直接費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기술의 重複導入을 禁止하여 처음으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優先權을 갖고 이를 국내의 타기업에게 再移轉하게 되는 상황을 假定하더라도 이와 같은 費用의 대부분은 소요될 것이다. 다만 그 差異點은 外貨가 중복되어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國內의 資源이 技術의 再移轉에 소요되므로 資源分配上의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 오히려 기술의 重複導入禁止는 기술의 광범위한 파급을 저해하고 競爭을 制限하여 資源分配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導入技術이 獨占的 市場에서 공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技術導入의 代價는 直接費用뿐만 아니라 獨占利潤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獨占的 利潤의 크기는 技術導入者가 技術導入을 하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利潤의 크기에 比例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重複技術導入이 許容되지 않는다면 최초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獨占的 位置에 있게 되므로 이에 따르는 利潤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技術導入 協商에서 市場支配力이 큰 技術供與企業은 契約을 통해 이와 같은 利潤은 대부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과다한 로얄티 支給의 원인이 될 것이다. 반면에 重複되어 기술이 도입된다면 同一技術導入業體間의 競爭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利潤도 작아지며 技術代價 또한 작아질 것이다. 寡占市場에서 모든 寡占企業의 利潤의 合은 그 시장이 一個企業에 의하여 독점됐을 때 一個企業의 이윤보다도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結論的으로 重複技術導入을 금지하면 技術導入의 代價가 오히려 增大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重複技術導入을 禁止하는 데 따른 得과 失을 검토한 결과 이를 금지하면 技術의 代價支給이 오히려 늘어날 염려가 있는 동시에 技術의 광범위한 擴散을 沮害하고, 競爭制限에 따른 國內市場의 獨占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重複技術의 導入에 관한 規制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落後技術 導入

가. 爭 點

落後技術의 導入에 대하여는 外資導入法上

에서 이를 禁止하고 있다. 즉 同法 24條의 4項에 의하면 "導入하고자 하는 技術의 內容이 낮은 水準이거나 뒤떨어진 기술인 경우" 申告를 수리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다. 또한 技術振興審議會 등에서는 技術開發支援政策을 수립·검토하는 과정에서 技術導入自由化에 따른 落後技術의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技術的 效率性이란 측면에서 落後技術보다는 先進技術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때문에 이러한 問題가 제기된 것 같다. 그러나 經濟的 效率性 側面에서는 선진국에서의 落後技術이 우리의 與件에 더욱 適合하여 보다 저렴한 費用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落後技術導入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여 적절한 對策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나. 實 態

産業技術振興會의 硏究에 의하면[6] 導入技術의 水準이 製品週期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조사한 結果 다음과 같은 分布를 얻었다.

〈表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成熟期 이후의 기술이 56.8% 이상이 되어 소위 '落後技術'이 많이 導入되고 있다. 또한 同硏究에 의하면 導入技術이 최초로 개발된 時期는 〈表 7〉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導入技術이 開發된 時期에 있어서 5년 이상 경과된 기술이 66.1%에 해당되어 導入技術이 最尖端技術이라기보다는 旣存技術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對 策

導入技術을 評價함에 있어서는 技術의 適正性과 代價支給의 兩面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先進國의 技術은 自國의 市場需要와 要素賦存比率에 알맞게 개발된 기술이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先進國에서는 自動化되고 부수적인 機能이 많이 추가된 高價品에 대한 市場需要가 크므로 이에 알맞는 製品技術이 사용된다. 반면에 開發途上國에서는 附隨的인 機能은 되도록 제거하고 必須的인 機能만을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製品에 대한 需要가 더 클 수 있

〈表 6〉 導入技術의 水準

(단위 : 件, %)

	計	商業化以前	商業化時期	成長前期	成長後期	成熟前期	成熟後期	衰退期
應答數	462	8	15	78	98	150	95	18
比 率	100	1.7	3.2	16.8	21.2	32.4	20.5	3.9

〈表 7〉 導入技術이 최초로 개발된 時期

(단위 : 件, %)

	計	1年 以內	1~3年	3~5年	5~10年	10~20年	20年 以上
應答數	445	5	48	101	135	88	78
比 率	100	1.1	10.5	22.2	29.7	19.3	17.1

6)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技術導入實態에 관한 深層硏究』, 調査資料 24, 1985. 3.

으므로 先進國의 製品技術은 開發途上國의 시장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要素賦存率의 차이가 있어 適正한 技術도 다르다.

즉 技術이란 勞動, 資本 등의 生産要素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바 生産要素를 相對價格에 따라 비용을 최소로 하는 生産要素의 結合方法은 달라진다. 資本이 勞動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先進國에서 費用을 最小化하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방법은 노동이 풍부한 開途國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開途國에서는 先進國에 비하여 勞動集約的인 方法에 의하여 생산하는 것이 效率性이 높다. 예를 들어 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에서는 半自動技術이 完全自動式 技術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製品의 壽命週期理論에 입각하여 보더라도 開發途上國, 또는 中進國에서 落後技術이 도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開途國의 技術革新過程을 보면 先進國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 즉 技術革新이 製品週期를 따라 新技術이 출현하고 다음으로 成長期를 거쳐 成熟期에 이르는 過程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成熟期에 이른 低位技術이나, 成長期의 기술을 消化, 吸收, 改良하는 段階를 거친다. 따라서 우리 經濟의 發展段階에 비추어 볼 때 성장기나 성숙기 이후의 기술, 즉 落後技術이 도입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技術의 代價支給面을 보더라도 落後技術은 競爭的市場 여건하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技術導入業體를 대상으로 한 說問調査에서도 技術의 代價 중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은 개발시기가 오래된 것일수록 낮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企業의 必要에 의하여 도입되는 기술은 모두 有用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그 內容이 뒤떨어졌다고 도입을 억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具體的인 政策의 改善方案으로서 外資導入法의 第24條 4項은 削除되어야 하며 技術導入이나 外國人投資의 審査에 있어서도 落後技術의 導入에 대한 規制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商標導入

가. 爭 點

商標權의 導入은 대부분 輸入이 제한된 商品의 輸入障壁迂廻手段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수입이 제한된 품목은 그 稀貴性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한정된 업체가 생산·공급하게 되면 이에 따른 獨占的 利潤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獨占的 利潤은 대부분 技術導入代價로서 商標權者에게 흡수되며 과다한 技術料 지급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商標權導入은 상품의 디자인이나 패턴, 패숀 등 最新의 技術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우리나라 제품의 전반적 技術水準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킨다는 長點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商標權導入의 得失을 따져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 實 態

技術導入중 商標權이 포함된 契約의 年度別, 産業別 國別分布는 〈表 8〉과 같다. 技術導入契約書에 의하면 商標權의 導入이라 하여도 商標權만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技術情報와

〈表 8〉 商標權 導入現況

(단위 : 件)

	1981			1982			1983			1984		
	전체	상표권	상표권+특허권	전체	상표권	상표권+특허권	전체	상표권	상표권+특허권	전체	상표권	상표권+특허권
전 산 업	247	17	51	308	38	34	360	15	43	432	44	49
음 식 료	15	—	6	23	1	2	26	1	—	30	7	4
섬 유	13	1	2	30	16	2	37	3	3	36	13	3
화 학	43	6	10	46	9	6	45	3	10	76	4	17
금 속	17	—	2	25	—	1	28	1	3	32	3	3
기 계	91	8	23	79	8	14	106	6	18	130	11	14
전 자	44	1	4	76	1	8	88	1	8	81	2	2
건 설	5	—	1	8	—	—	9	—	—	11	—	—
기 타	19	1	3	21	2	1	21	—	1	36	3	86
일 본	109	8	17	164	15	11	199	8	17	214	15	17
미 국	74	3	17	68	6	16	76	4	11	99	15	15
서 독	15	2	4	14	4	—	20	—	3	35	3	3
프 랑 스	11	1	3	16	2	2	10	—	—	23	6	4
영 국	12	1	4	14	9	2	13	1	4	14	1	3
기 타	26	2	6	32	2	3	42	2	8	47	4	7

資料 : 韓國科學技術院,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관한 調査硏究』, 科學技術處, 1985.

資料, 技術指導, 技術用役, 敎育訓練, 特許權 使用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商標權의 導入인지 商標權과 技術이 함께 수반되어 도입되는 것인지의 판단은 어렵다. 〈表 8〉에서는 商標權과 特許 이외의 다른 技術이 포함된 契約을 商標權으로 분류하고 商標權과 特許權이 동시에 포함된 계약을 商標權+特許權으로 分類하였다.

特許權이 포함되지 않은 1981~82年 기간중 總52件의 商標權導入의 內容을 분석한 결과, 商標權實施料는 定額技術料의 형태로 일시 지불한 경우가 19.2%, 經常技術料로 지불한 경우가 71%, 定額技術料와 經常技術料를 함께 지불한 경우가 9.6%이며, 定額技術料의 支給規模는 평균 20萬달러이며 經常技術料는 매출액의 3%가 10件, 3~5%가 17件, 그리고 5% 이상이 20件으로 분포되고 있다. 契約條項을 보면 輸出禁止條項이 39件으로 전체의 70.9%이며, 經營에 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9件, 實施權許與者가 原料購入을 制限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경우가 3件이다.

둘째, 商標權의 導入은 대부분 內需市場 確保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向上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商標權의 導入時 70%에 해당되는 계약에 輸出禁止條項이 삽입되어 있어 대부분 內需爲主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商標權 導入에 부수된 輸出義務條項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 對 策

現行 技術導入 審査基準에 의하면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商標權의 導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단

순한 商標의 導入인지 技術이 수반되어 들어오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단순히 商標權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일지라도 이와 같은 審査基準을 우회하기 위하여 技術導入이 수반된 것처럼 위장하기는 용이하나 이를 政策當局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심사기준의 實效性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商標權導入은 이에 따른 로얄티의 증가뿐 아니라 다른 問題點을 야기한다. 첫째, 商標權과 수반되어 도입되는 기술은 대부분 消費財産業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의한 製品의 差別化(product differentiation)는 國民經濟的 관점에서 볼 때 꼭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다. Lancaster에 의하면[7] 製品의 과도한 差別化는 價格競爭을 저해하여 資源의 效率的 이용을 저해한다는 假說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國民所得과 비교하여 適正하지 않는 商品의 消費를 조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技術이 수반되지 않은 商標權導入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現行審査方法에 의하여는 이를 효율적으로 對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政策代案이 가능하다.

1) 商標導入의 全面禁止
2) 選別的 商標導入의 承認
3) 外國商標 부착상품에 대한 特別消費稅, 또는 外國商標稅 賦課

代案 1)은 自由化施策에 역행하여 對外的으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輸出을 목적으로 하는 商標權導入 등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치는 旣導入된 商標에 대하여 賣出을 증가시켜 代價支給節減에 별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競爭을 저해하는 副作用이 있을 것이다.

代案 2)는 철저하게 시행된다면 좋은 對策이 되겠으나 그 選別基準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 좋은 방편이 되지 못한다.

代案 3)은 외국에서 도입된 商標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特別消費稅, 또는 外國商標稅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 판단된다.

도입된 상표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에 稅金을 부과하는 것은 輸入物品에 대한 國稅賦課와 서로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貿易의 전면적인 自由化 以後에도 필요한 조치이며 導入된 商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輸出에 대하여는 稅金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商標가 導入된 제품의 價格은 獨占的 市場與件에서 형성되며 그 價格과 제품의 生産費用과의 차이의 대부분이 로얄티로써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特消稅 또는 商標稅 賦課에 따른 租稅負擔의 대부분은 外國의 導入先에 전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技術의 導入과 自體開發

가. 問題의 提起

技術을 필요로 하는 企業은 기술을 자체에서 開發할 수도 있고 외국으로부터 導入할 수도 있다. 즉 利潤을 極大化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각 수단이 내포하고 있는 得과 失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단을 選定

7) Lancaster, K. "Socially Optimal Product Differen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75, pp. 567~585.

하게 된다. 이와 같이 技術導入과 自體技術開發의 선택이 기업의 이익에서 고려한 社會的 福祉(social welfare)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技術導入이나 自體開發에 따르는 外部效果가 없다면 위의 命題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도입이나 자체개발은 해당된 企業 그 自體만 이에 따른 혜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여타의 기업에게도 技術을 傳播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더우기 그 外部效果는 각기 다르다. 自體開發은 국내기업이 技術開發에 직접 간여함으로 關聯研究者의 잠재능력을 키워 주며 그 開發過程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競爭企業이나 關聯企業에로의 技術擴散이 技術導入보다는 용이하다. 따라서 自體開發이 技術導入보다는 더 큰 外部效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技術導入과 自體開發間에는 이와 같은 기술의 파급에 있어서 존재하는 외부효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差異點도 있다. 첫째, 技術導入에 의존하면 資源이 외국으로 移轉되며 後者는 國內의 研究開發에 투입된다. 따라서 國際收支面에서 볼 때 自體開發이 유리하다. 둘째, 自體開發이 技術導入보다 危險性이 높아 기업은 技術導入을 선호한다. 技術導入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어떤 代價에 의하여 얻게 되느냐가 확실한 반면 自體開發은 投資에 대한 成果가 분명치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危險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單位 投資에 대한 期待收益率이 같다면 위험이 적은 技術導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社會的 期待收益이 낮은 技術導入을 기업이 선호하게 됨에 따라 資源分配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結論的으로 기업의 技術導入과 自體開發이라는 두 가지 수단의 選定過程에서 기업은 국민경제상 보다 유리한 自體開發보다는 技術導入 쪽으로 偏向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外部效果를 補正하여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나 현행 技術開發 支援政策에는 이에 대한 조치가 國產 新技術製品의 保護 이외에는 全無한 실정이다. 즉 技術開發費에 대한 租稅減免規制法上의 혜택에서도 技術導入費와 국내의 研究開發費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稅制·金融上의 惠澤에서 兩者間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對 策

위에서 설명한 技術導入과 自體開發 양수단간에 존재하는 外部效果를 補正하여 줄 수 있는 대책은 그 외부효과의 차이만큼을 政府에서 補助하여 주는 것이다. 技術導入과 自體開發은 代替的인 성격뿐만 아니라 相互補完的인 성격을 지닌 兩面性이 있기 때문에 技術導入 그 자체를 규제하면 自體開發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은 稅制·金融上의 혜택에서 技術導入費와 自體의 研究開發費에 差等을 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現行 技術 및 人力開發費의 稅額控除에서 國內의 研究開發費와 技術導入費를 구분하여 稅額控除率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技術支援金融에 있어서도 差等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國產新技術製品의 保護措置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현행 技術開發 支援政策上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施行上 많은 問題點이 있어서 위에서 언급된 稅制·金融上의 支援에서

差等을 주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現行 國產 新技術製品에 대한 보호는 技術開發促進法에 의거한 것으로 國產 新技術製品에 대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審査를 거쳐 類似品의 輸入規制, 同一製品의 重複製造 規制 및 同一技術導入禁止, 需要創出을 위한 資金支援 및 政府의 優先購買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同制度는 극히 제한되게 운영되어 1978년에 施行되기 시작한 후 1984년 말까지 모두 8件의 技術開發에 대하여서만 조치가 취해졌다. 同制度가 이와 같이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原因은 이 조치가 갖는 競爭制限的 性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自體開發의 促進과 競爭制限이라는 두 가지 政策目標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이 매우 保守的으로 된 것이다. 同制度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하여 여기에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 同制度만으로는 技術導入과 自體開發에 존재하는 外部效果를 內部化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된 技術導入費와 研究開發費에 대하여 稅制·金融上의 支援에서 差等化하는 정책은 國產 新技術製品의 保護措置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要約 및 向後 政策方向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條件의 決定過程에 비추어 볼 때 政府가 企業次元에서 이루어지는 技術導入을 規制함으로써 도입될 技術의 質과 條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制限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不適正한 規制政策으로 인하여 經濟發展에 필수적인 技術의 導入이 저해될 우려는 크므로, 技術導入은 企業의 自律的 判斷에 맡겨 이를 自由化하여야 한다. 政府는 기업이 스스로 적정한 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유리한 條件으로 도입하는 데 有用하게 활용할 수 있는 情報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技術導入에 관한 企業의 協商力을 제고시키는 선에서 그 役割을 限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技術導入自由化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네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바, 技術의 重複導入이나 落後技術의 導入에 대하여는 특별한 規制措置가 불필요하다는 結論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國內市場을 目標로 한 商標權의 導入에 따른 問題點과 技術導入의 自由化에 따른 自體開發의 沮害現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政策的 補完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外國商標의 附着商品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賦課하거나 또는 商標稅를 新設하는 方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技術導入의 自由化에 따른 自體開發의 沮害可能性을 줄이기 위하여는 技術導入費에 대한 稅制·金融上의 惠澤과 국내의 研究開發投資에 주는 혜택에 차이를 두어, 기업으로 하여금 技術導入보다는 自體開發이 선호되도록 誘引政策을 强化하여야 한다.

技術導入政策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外國人直接投資政策과의 聯關性이다. 일반적으로 外國人直接投資는 資本이 導入되는 것이며 技術導入은 技術이 導入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政策의 樹立過程에서 그들은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그러

나 外國人直接投資와 技術導入間의 根本的인 差異點은 별로 없다. 直接投資의 가장 중요한 動機는 自國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外國人投資에 따른 資本移動 側面은 부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資本의 移動만을 위한 것이라면 直接投資보다는 間接投資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技術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라이센싱」 등 技術移轉契約보다는 外國人直接投資를 통해 기술로 인한 獨寡占的 地位와 利潤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므로 外國人直接投資를 選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技術的 要素만을 分離, 導入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費用으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短期間內에 土着化, 擴散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技術導入은 外國人投資에 선행하여 自由化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技術保有企業이 가급적 「라이센싱」 등 技術移轉契約을 선호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外國人投資를 금지하여 技術移轉契約으로 誘導하는 政策은 바람직하지 않다. 尖端技術을 보유한 기업은 輸出이나 直接投資를 통하여야만 國內市場에 進出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尖端技術의 移轉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外國人直接投資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租稅減免制度등은 再檢討할 필요가 있다.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은 外國의 技術保有企業으로 하여금 技術移轉契約보다 直接投資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技術 등 必要要素만의 分離導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外國人企業에 대한 租稅減免으로 인하여 租稅損失뿐만 아니라 內國人 企業과의 衡平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內需市場規模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技術導入을 위한 기업의 協商力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制度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政策調整局, 『國產新技術製品 保護制度에 대한 檢討』, 1985. 2.

_____, 『技術開發支援制度에 대한 檢討』, 1984. 12.

金榮損, 「技術導入契約에 관한 實態分析」, 『技術移轉』, 韓國科學技術院, 1983. 1.

朴宇熙, 「韓國에 있어서의 輸入技術의 吸收와 擴散에 관한 實證分析」,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6.

裵茂碁, 「技術의 導入, 受容 및 擴散」,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3.

邊衡尹, 「韓國鐵鋼工業의 技術蓄積」,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6.

李軫周, 「產業類型別 技術移轉 및 土着化過程과 方向」, 『技術移轉』, 韓國機械研究所, 1985. 1.

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白書』, 1985.

吳鄭根, 「衣類產業과 海外商標導入」, 『技術移轉』, 韓國科學技術院, 1982. 4.

財務部, 「技術導入의 促進方案」, 政策資料,

1985. 3.

全淳新, 「技術導入契約을 둘러싼 諸問題」, 『技術移轉』, 韓國機械研究所, 1984. 10.

韓國科學技術院,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관한 調査研究』, 科學技術處, 1985. 5.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技術導入實態에 관한 深層研究』, 1985. 7.

_____, 『產業技術白書—技術과 產業의 一體化』, 198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Lancaster, K., "Socially Optimal Product Differen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75.

Oman, C., *New Forms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D/R (83)7, OECD, 1983.

PECC,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 Report by the Task Force*, Bali, Indonesia. 1983.

Rothwell R. and W. Zegveld, *Industrial Innovation and Public Policy*, 1981.

Westphal L., Linsu Kim and C. Dahlman, "Reflections on Korea's Acquisi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World Bank Discussion Paper*, Rep. No. DRD77, April 1984.

벤처캐피탈에 대한 期待와 課題

姜 文 秀

▷ 目 次 ◁

Ⅰ. 머리말
Ⅱ. 벤처캐피탈의 機能과 役割
Ⅲ. 벤처企業과 벤처캐피탈의 現況
Ⅳ. 벤처캐피탈의 問題點
Ⅴ. 벤처캐피탈의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나라 經濟는 지난 60年代와 70年代에는 單純勞動集約的인 製品을 중심으로 한 輸出促進政策에 힘입어 高度成長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70年代末의 第2次 石油波動을 비롯한 國內外 環境의 急變과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過剩重複投資 및 그간의 技術開發不振 등의 영향으로 80年代初에 우리 經濟에는 産業間·部門間 不均衡, 技術水準의 低位에 따른 國際競爭力 弱化 등 여러 가지 問題들이 露呈되었으며 經濟의 活力이 低下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近年에 美國, 日本 등 先進諸國에서는 「일렉트로닉스」, 新素材, 生命工學 등을 비롯한 知識集約型 産業分野에 있어서 현저한 技術革新의 進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의 技術移轉에 따른 「부메랑」效果에 대한 경계 등 技術保護主義의 强化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앞으로 尖端技術을 비롯한 中心要素技術의 導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 國民經濟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自主的인 技術開發과 知識·技術集約的인 産業의 育成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技術開發의 擔當者로서 大企業이 資本力과 人材를 활용하여 技術開發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왕성한 企

筆者 : 本院 研究委員

* 筆者는 本研究의 資料蒐集에 協助하여 준 國內 벤처캐피탈會社와 Bank of Boston의 關係者들에 感謝하며 또한 本稿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하여 준 李德勳博士, 資料와 原稿整理를 하여 준 朴尙範 主任研究員, 蔡奎松 研究員에게 感謝를 드린다. 그러나 本稿에 提示된 見解나 어떠한 誤謬도 筆者의 責任임을 밝혀둔다.

業家精神과 成長意慾 및 技術革新意志를 가진 벤처企業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다. 그런데 벤처企業이란 未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企業으로 높은 收益性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으며, 특히 資金面에서의 脆弱性으로 인하여 순조로운 成長과 發展이 沮害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벤처企業에 資金을 供給하고 育成하는 機能을 가진 벤처캐피탈會社가 우리나라에서도 1974年에 최초로 設立되었으며 80年代에 들어서 3個社가 追加로 新設되었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 역사가 日淺하여 아직 質·量 모두 貧弱하고 그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近年에 美國에서 벤처캐피탈의 資金支援 등을 받은 벤처企業들이 新技術의 商品化와 新市場의 개척을 主導하고 나아가 産業構造의 商品化를 促進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이 美國經濟의 活性化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 자극받아 유럽諸國, 日本 및 新興工業國 등에서 각국 政府는 벤처캐피탈과 벤처企業의 振興을 도모하기 위한 諸般施策을 講究·施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앞으로 벤처캐피탈의 姿勢, 育成策 등을 비롯한 벤처캐피탈에 관한 論議가 활발하여지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本稿에서 우리는 먼저 벤처캐피탈의 本質的 機能과 役割,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캐피탈과 벤처企業의 現況을 槪觀한 후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벤처캐피탈의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등을 硏究·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Ⅱ. 벤처캐피탈의 機能과 役割

1. 벤처캐피탈의 本質

벤처캐피탈(冒險資本)은 "企業을 開發하는 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벤처캐피탈이란 高度의 技術力을 가지고 장래성은 있으나 아직 역사가 日淺하고 經營基盤이 약하여 一般金融機關에서는 危險負擔이 커서 融資하기 어려운 벤처企業 등 中小企業에 대하여 資金을 供給하고 그 成長을 支援하고자 하는 企業 또는 投資家그룹을 의미한다.

벤처캐피탈의 주요한 業務는 株式의 取得所有, 轉換社債의 取得所有, 長期資金의 貸出, 經營「콘설팅」 등이지만 그 중에서도 株式所有가 基本的인 業務이다. 특히 新生中小企業의 株式에 投資하고 經營도 支援하여 當該中小企業을 成長시키며 投資先企業이 成長하여 株式을 公開할 단계에 이르면 保有株式을 賣却하여 資本利得(capital gain)을 얻게 된다. 벤처캐피탈은 投資先企業에 資金을 供給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어 企業으로서의 벤처캐피탈의 性格은 金融機關과 유사하지만 벤처캐피탈은 投資先企業을 成長시키지 않으면 자기의 이득을 얻을 수 없으며 投資先企業과 危險負擔을 할께 하기 때문에 受動的인 機能을 수행하는 銀行의 融資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1) John W. Wilson, *The New Venturer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5.

〔圖 1〕 企業의 發展段階와 資金調達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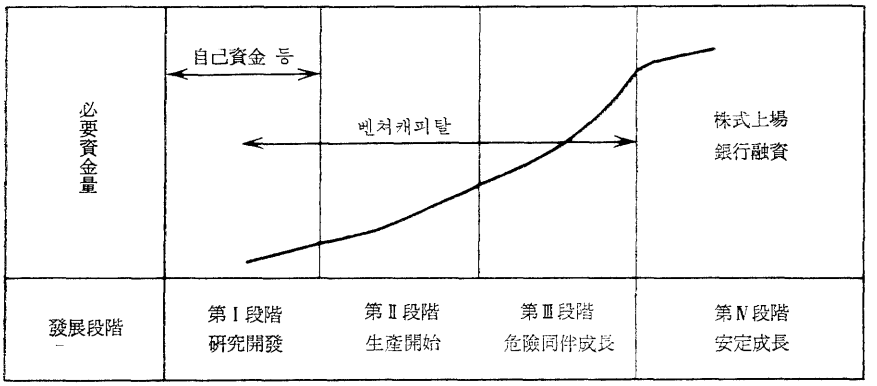

2. 벤처캐피탈의 機能

가. 資金支援

벤처企業은 통상 研究開發, 創業(start-up), 危險同伴成長, 安定成長이라는 네 단계를 거친다(圖 1 참조). 銀行은 벤처企業이 安定成長段階에 들어서면 비로소 벤처企業의 融資申請에 응하며 安定成長의 후기에는 벤처企業은 證券市場을 통하여 資金調達이 가능하게 되고 초기의 研究開發段階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企業化段階, 즉 創業 내지 危險同伴成長의 段階에는 資金需給上의 갭이 생기게 되며 벤처企業에 資金을 供給함으로써 이러한 資金需給上의 갭을 메워주는 것이 벤처캐피탈의 주요한 機能이다.

벤처캐피탈의 企業에 대한 投資는 投資先企業의 發展段階에 따라 아래와 같이 分類될 수 있다[2].

① 初期創業을 支援하기 위한 投資(Early-Stage Financing)

② 企業擴張을 위한 投資(Expansion Financing)

③ 連結資金의 支援(Bridge Financing)

④ 企業引受資金(Management/Leveraged Buyout)

이와 같이 벤처캐피탈은 未公開企業이 企業의 公開나 自力에 의하여 銀行으로부터 資金을 調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持續的으로 支援하거나 또는 企業公開 以前의 어떠한 特定段階에서 企業에 대한 支援에 參與하기도 한다.

傳統的인 벤처캐피탈의 資金供給形態는 주로 未公開株式의 取得 또는 轉換社債의 引受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미 資本參與를 하고 있는 會社에 대하여 融資를 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融資는 利子所得보다는 投資先企業의 株式의 價値를 維持하거나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3].

나. 成長企業의 創造

新生企業의 創業者는 研究開發에는 유능한 반면 製品의 販賣, 財務, 勞務 등 企業의 經

2) 상세한 內容에 관해서는 Stanley E. Pratt and Jane K. Morris (ed.) *Pratt's Guide to Venture Capital Sources*, ninth Edition, 1985 참조.

3) 尹汝京, 「우리나라 벤처비지니스와 벤처캐피탈」, 『技術移轉』, 韓國機械研究所, 1984. 4.

營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新生企業에는 創業者를 도와줄 수 있는 人材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適合한 人材를 알선하여 주고 販賣·金融 등에 대한 助言을 함으로써 그 企業의 成長을 支援해 줄 수 있는 유능한 第3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4].

이에 副應하여 벤처캐피탈, 특히 美國의 벤처캐피탈은 投資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投資先企業에 적극적으로 關與하고 投資先과 一體가 되어 投資先企業을 育成·開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벤처캐피탈이 投資企業을 育成·支援하는 것은 終局的으로 보다 많은 資本利得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는 또한 不確實性이 높은 新生企業에 대한 投資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탈이 어느 정도의 成長支援機能을 發揮하는가는 벤처캐피탈 自體의 力量 및 벤처캐피탈과 投資先企業間의 信賴關係 등에 달려 있다.

다. 上場時의 持株放出

未公開企業이 株式을 公開할 때 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株式을 舊株主가 放出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大株主間의 經營權을 둘러싼 均衡問題, 放出時期와 株價의 豫想 등의 問題로 인하여 필요한 時期에 필요한 株式數가 放出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벤처캐피탈은 企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株式을 放出한다.

3. 벤처캐피탈의 役割

가. 有望벤처企業의 選定과 育成

벤처캐피탈은 經營基盤과 信用이 아직 취약한 新生企業에 資金을 공급하고 經營을 支援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벤처캐피탈은 성장할 가능성이 큰 新生벤처企業을 投資對象으로 選定하고 育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産業의 活性化와 技術·知識集約的인 産業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實例를 살펴보면 최근 科學技術處에 의하여 우수한 技術開發의 成功事例로 選定 報告된 5件의 技術集約的인 新製品開發 가운데 3件이 80年代 初에 設立된 技術集約型 新生企業들이 벤처캐피탈會社의 投融資支援 등을 받아 이룩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5].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80年代에 들어서 벤처캐피탈이 投資支援 등을 통하여 技術集約型 新生企業들을 育成·支援하는 役割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國民經濟의 活性化에 대한 寄與

美國에서는 新技術의 商品化와 新市場의 개척 등이 벤처캐피탈의 資金支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성장한 벤처企業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이 美國의 産業構造를 高度化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生産性의 하락과 大企業의 國際競爭力 弱化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美國經濟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旗手로서 期待되고 있다[6].

다. 未上場企業의 自己資本을 확충하는 役割

이제까지 企業은 資金調達에 있어서 銀行借

4) 趙鶴來(譯), 『벤처캐피탈과 벤처비지니스』, 産業硏究院, 1984.8.
5) 科學技術處, 「優秀技術開發 成功事例」, 報告案件 85-3, 1985.12.
6) John W. Wilson, op. cit.

入에 크게 의존하여 왔으나 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自己資本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企業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企業은 다음과 같은 經濟環境의 변화에 當面하고 있다.

1) 격심한 企業間의 경쟁에 대처해 나가는데는 新規分野에의 進出과 新製品의 開發을 위한 企業의 先行投資가 필요한데 그 資金의 回收에 위험이 따르고 오랜 時日이 걸리기 때문에 借入金보다는 增資를 통하여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인플레이션의 진정 등에 따라 土地 등 不動產價格이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企業은 擔保價値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銀行借入金만으로는 企業이 필요한 資金을 충분히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3) 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外國企業에 대한 競爭力의 提高를 위하여 財務構造를 개선하고 보다 충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 「코리아펀드」, 外國人收益證券 등 外國人의 國內資本市場에 대한 投資擴大 등으로 資本市場의 국내외 여건이 호전되어 가고 海外證券發行으로 株式의 時價發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時價發行을 통한 增資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企業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앞으로 株式公開에 따르는 長點을 감안하여 株式公開를 前提로 한 增資를 검토하는 中堅·中小企業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벤쳐캐피탈은 이러한 未上場中小企業을 대상으로 增資를 통한 資金調達을 권유하고 新株式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未上場企業은 自己資本의 擴充을 기할 수 있다.

Ⅲ. 벤쳐企業과 벤쳐캐피탈의 現況

1. 産業會社에 있어서 벤쳐企業의 意義

가. 中小企業 全體의 活性化 先導

앞으로 技術集約的인 産業構造를 구축하고 國民經濟의 活力을 유지·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事業體數의 97.4%, 從業員數의 54.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活力을 북돋아 줄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독자적인 훌륭한 技術과 經營「노우 하우」(knowhow)를 가지고 왕성한 企業家精神下에서 성장·발전해 가는 벤쳐企業은 다른 企業에 대한 技術과 「經營「노우 하우」의 波及效果를 통하여 우리나라 中小企業 전체의 활성화를 先導해 가는 役割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나. 技術開發 基盤의 强化

최근의 技術革新의 성격은 需要面에서의 多樣化, 個性化를 배경으로 하며 技術 그 자체도 細分化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쳐企業은 大企業의 技術開發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분야, 예를 들면 應用技術分野에서 독자적인 技術開發로 성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폭넓은 技術領域에서 더 많은 벤쳐企業의 技術開發이 기대되고 있다. 벤쳐企業이 硏究開發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나라 産業全體의 技術基盤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地域經濟의 活性化에 貢獻

地方에 있는 벤처企業의 發展은 그 지역 中小企業의 技術基盤의 강화 등을 통하여 地域經濟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라. 產業組織의 活性化에 寄與

벤처企業은 獨立性 指向이 강하며 일반적인 中小下請企業과는 달리 特定大企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또한 벤처企業이 技術開發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硏究開發의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技術移轉에 있어서 종래와는 달리 雙方化 傾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벤처企業의 성장과 발전은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諸般去來에 있어서 보다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도록 촉진하고 나아가 產業組織에 대하여 競爭促進을 유발하는 등 產業組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7].

2. 우리나라의 벤처企業 現況

近年에 우리나라에서도 需要構造의 變化, 技術革新의 進展, 產業構造의 改編 등을 배경으로 왕성한 企業家精神과 獨自的인 技術을 가진 벤처企業의 出現이 활발하여지고 있다. 以下에서는 中小企業銀行이 1985年에 國內 벤처企業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의 結果[8]를 土臺로 우리나라 벤처企業의 創業資金調達과 成長實績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 創業資金調達

우리나라 벤처企業의 創業資金調達 源泉別 構成比를 보면 自己資金만으로 創業한 企業의 比重이 4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他人資金을 사용한 企業의 比重을 보면 親戚·親知借入 14.7%, 金融機關借入 13.2%, 벤처캐피탈會社의 投融資支援 3.7% 등으로 나타났다. 自己資金만으로 創業한 企業과 그의 不足分을 親戚이나 親知로부터 借入하여 創業한 企業의 비중이 이와 같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벤처企業이 技術力은 높으나 對外信用力 및 物的擔保力이 脆弱할 뿐만 아니라 硏究開發內容에 대한 金融機關의 審査 및 評價技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企業化의 成功可能性이 불확실하여 一般金融機關으로부터의 資金支援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資金調達

벤처企業의 資金調達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時期는 創業後 1~3年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資金調達源은 金融機關으로 調査對象企業의 73.4%가 현재 金融機關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企業의 比重도 69.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벤처캐피탈會社를 이용하고 있는 企業의 比重은 12.5%로 다소 낮지만 앞으로 이를 이용하겠다는 企業의 比重은 23.0%로 높게 나타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增資나 內部留保 등 自己資金을 통한 資金調達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增

7) 通商產業省 中小企業廳(編), 『ベンチャービジネスへの期待と課題』, 1984.
8) 中小企業銀行, 『韓國의 中小企業』, 1985.

資를 통하여 資金을 調達하고 있는 企業의 比重은 18.8%이나 앞으로는 34.9%가 이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벤쳐企業이 안정적 資金調達方法을 摸索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成長實績

벤쳐企業의 賣出額 增加率은 1983年 51.5%, 1984年 53.8%로 一般中小製造業의 賣出額 增加率(1983年 25.9%, 1984年 14.2%)에 비해서 높은 增加率을 示顯하였다. 특히 年間 50% 이상의 增加率을 示顯한 企業의 比重이 1983年 44.8%, 1984年 38.4%로 높은 賣出額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이를 業歷別로 보면 業歷이 5年 미만인 企業에서는 아직 賣出이 이루어지지 않은 企業도 상당수 있으나 賣出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企業에서는 그 增加率이 매우 높은 반면 業歷이 5年 이상인 企業에서는 業歷에 관계없이 비슷한 增加勢를 보였다.

3. 우리나라의 벤쳐캐피탈 現況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벤쳐캐피탈을 企業化한 것은 1974年 韓國科學技術硏究所(현 韓國科學技術院)의 硏究結果를 企業化하기 위한 專擔機構로서 設立된 韓國技術振興株式會社(KTAC)이다. 그 후 韓國開發金融(株) (現 長期信用銀行)이 韓國技術振興(株)와 공동으로 韓國科學技術院 硏究結果의 企業化에 참여하여 一部企業의 轉換社債에 投資하는 등 부분적인 벤쳐캐피탈業務를 수행하여 왔다.

80年代에 들어서 政府當局 및 産業界가 技術開發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됨에 따라 企業의 技術開發을 支援하기 위하여 1981年에 韓國技術開發(株) (KTDC)이 設立되었다.

또한 國內의 投資金融會社와 國際金融公社(IFC), 西獨投資開發公社(DEG), 아시아開發銀行(ADB) 등이 共同으로 出資하여 1982年에 벤쳐캐피탈專門會社인 韓國開發投資(株) (KD

〈表 1〉 우리나라 벤쳐캐피탈會社의 現況(1985. 10月末 현재)

	韓國技術開發(株) (KTDC)	韓國技術振興(株) (K-TAC)	韓國開發投資(株) (KDIC)	韓國技術金融(株) (KTFC)
1. 設立年度	1981	1974	1982	1984
2. 資本金(億원)	268	14.8	82.5	200
3. 出資機關	政府, 市中銀行, 民間企業	KAIST, 韓國機械硏究所 政府出捐硏究所	短資會社, IFC, ADB, DEG, ACC	韓國産業銀行
4. 主要業務	・企業의 自體技術開發 및 硏究機關에의 委託開發費에 대한 融資 ・硏究開發成果의 最初 企業化를 위한 投・融資 ・製品 및 工程改善을 위한 融資 등	・國內外 新技術의 企業化 및 投資 ・國內外 工業所有權의 斡旋販賣 ・新技術企業化 分野의 諮問	・硏究開發成果, 開發技術 및 導入技術의 企業化事業에 대한 投資 ・企業의 新製品開發을 위한 生産施設의 新事業에 대한 投資 ・既存施設의 擴張을 위한 投資 등	・企業의 硏究開發 ・硏究開發成果의 最初의 企業化 ・製造工程 및 其他技術開發 ・運轉資金
5. 資金支援方式	投資, 條件附融資, 信用貸出, 一般融資	投資	株式 및 社債引受	投資, 信用貸出, 一般貸出
6. 投融資實績 累計(億원)	・投資, 條件附融資 投資 112 (6.5) ・信用貸出 707 (41.3) ・一般融資 892 (52.1) 計 1,711(100.0)	投資 14	株式 및 社債引受 74	・投資 31 (15.3) ・信用貸出 88 (43.6) ・一般貸出 83 (41.1) 計 202 (100.0)

註 : 投・融資 實績은 殘額基準임.

IC)를 設立하였으며 1984年에는 韓國産業銀行이 韓國技術金融(株)(KTFC)을 設立함으로써 國內 벤처캐피탈業界는 한층 더 활발해졌다. 國民銀行도 1983年에 技術開發指向的인 中小企業의 社債를 引受하는 등 부분적인 벤처캐피탈業務를 시작하였다(表 1,2 참조).

한편 벤처캐피탈會社들은 1980年 이후 1985年末까지 總 2,350億원을 國內企業에 支援하였으며 그 중 一般融資 및 信用貸出이 각각 48.7% 및 3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投資 및 條件附貸出의 비중은 13.0%에 불과한 실정이다. 資金支援對象企業의 業種別 內譯을 보면 機械·金屬(33.3%), 電氣·電子(29.9%), 化學·其他(36.7%)로 나타나고 있으며 段階別 支援內譯을 살펴보면 研究開發(76.6%)과 企業化(20.2%)에 資金이 대부분 支援되고 있으며 工程改善(3.2%)에 일부 支援되고 있다(表 3 참조).

〈表 2〉 金融機關의 벤처캐피탈 取扱現況(1985.10月末 現在)

	國民銀行	韓國長期信用銀行	
1. 取扱年度	1983	1976	
2. 資金支援方式	株式投資 및 社債引受	株式投資, 社債引受 및 融資	
3. 投·融資實績累計(億원)	社債引受 8.96	株式投資	8.40
		社債引受	4.98
		融資	72.16
		計	85.54

〈表 3〉 우리나라 專門벤처캐피탈 4社의 投融資 總括表

(단위 : 百萬원)

	1981 以前		1982		1983		1984		1985		累計		構成比(%)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總計	54	6,752	86	22,334	162	52,067	223	63,377	318	90,503	726	235,035	100.0
大企業	33	4,274	39	16,545	71	35,581	57	32,621	57	34,572	257	123,593	52.6
中小企業	21	2,478	47	5,789	91	16,488	166	30,756	261	55,931	469	111,442	47.4
1. 投融資形態別													
一般融資	29	3,055	42	10,872	70	17,722	106	36,105	137	47,289	384	115,811	48.7
信用貸出	17	2,517	29	9,164	62	30,219	64	20,225	97	28,357	269	91,020	38.3
條件附貸出	3	520	10	1,825	7	970	6	570	11	1,770	37	5,729	2.4
投資	5	660	5	473	23	3,156	47	6,380	93	14,112	183	25,137	10.6
2. 業種別													
機械·金屬	14	1,535	31	6,069	61	17,262	78	25,450	100	28,028	266	78,914	33.3
電氣·電子	14	1,917	24	9,101	53	17,837	72	16,675	110	24,743	225	70,771	29.9
化學·其他	26	3,300	31	7,164	48	16,968	73	21,122	128	37,832	255	86,947	36.7
3. 支援段階別													
研究開發	48	7,331	65	19,671	114	42,125	145	49,288	182	62,711	554	182,234	76.6
企業化	6	730	21	2,663	48	9,942	75	13,059	130	21,192	163	48,029	20.2
工程改善							3	900	26	6,700	29	7,658	3.2

Ⅳ. 벤쳐캐피탈의 問題點

1. 資金調達

현재 우리나라의 벤쳐캐피탈會社중 韓國技術開發(株)을 제외한 벤쳐캐피탈會社들은 商法上의 株式會社로 設立되어 財源調達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벤쳐캐피탈會社 設立 등에 관한 法的根據의 미비로 인하여 租稅減免 등 각종 支援을 擴大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다.

參考로 公的벤쳐캐피탈인 美國의 中小企業投資會社(Small Business Investment Co.)와 日本의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는 모두 特別法에 依據하여 設立되어 政府의 支援을 받아 兩國에 있어서 벤쳐캐피탈產業을 先導하는 役割을 하였으며 이러한 公的벤쳐캐피탈의 設立과 發展이 바탕이 되어 後日에 民間벤쳐캐피탈의 參與가 활발하게 되고 나아가 全體 벤쳐캐피탈產業의 發展이 促進되었다.

또한 投資事業組合制度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벤쳐캐피탈會社는 民間의 長期資金을 動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각종 年金·基金 및 保險會社 등 機關投資家의 벤쳐企業에 대한 間接投資가 全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專門벤쳐캐피탈會社의 主資金源인 資本金 規模는 1985年 10月末 현재 모두 565億원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벤쳐企業의 資金需要에 대응한 投·融資資金의 충분한 供給이 제약받고 있다. 그리고 外國人 投資家가 經營參與없이 벤쳐캐피탈會社에 一定資金을 委託管理시켜 벤쳐企業에 投資하려고 하는 경우 受託方法이 없는 등 外國人 投資家의 資金을 導入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다[9].

〈表 4〉 벤쳐캐피탈會社의 資金供給 推移

(단위 : 億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一般融資	韓國技術開發(株)	—	56	200	479	537	327	1,599
	韓國技術金融(株)	—	—	—	—	26.28	144.95	171.23
	小 計	—	56	200	479	563.28	471.95	1,770.2
		(—)	(91.1)	(89.8)	(92.0)	(88.9)	(84.9)	(88.4)
投資 및 條件附融資	韓國技術開發(株)	—	5	21	20	33	33	112
	韓國技術金融(株)	—	—	—	—	4.75	26.5	31.25
	韓國開發投資(株)	—	—	—	19	31	24	74
	韓國技術振興(株)	7	0.45	1.73	2.89	1.3	0.63	14
	小 計	7	5.45	22.73	41.89	70.05	84.13	231.25
		(100.0)	(9.0)	(10.2)	(8.0)	(11.1)	(15.1)	(11.6)
	總 計	7	61.45	222.73	520.89	633.33	556.08	2,00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 ) 안은 總計에 대한 構成比(%)임.

9) 商工部, 『中小企業의 新技術企業化 支援方案』, 1985.6.

2. 運 營

벤처캐피탈會社들은 可用資金量이 적은데다가 그 資金의 대부분을 外部借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資金回收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危險度가 높은 投資 및 條件附融資에 소극적이고 擔保爲主의 融資支援方式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表 4 참조). 우리나라 벤처캐피탈會社들이 有能한 벤처캐피탈리스트의 不足 등으로 인하여 아직 유망한 벤처企業을 發掘하여 育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活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이 발달한 美國과는 文化的 배경이 相異하여 新技術의 企業化에 따른 危險과 收益의 分擔을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中小企業이 많으며 收益의 分擔과 所有權의 부분적인 양도에 소극적이다[10]. 이에 따라 벤처企業도 벤처캐피탈의 株式參與보다는 借入形態의 資金調達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벤처캐피탈會社와 投資先企業間의 협조가 그다지 긴밀하지 못하며 벤처캐피탈의 投資先企業에 대한 經營·技術上의 支援이 저조하다.

3. 技術的 基盤

企業의 研究開發活動이 아직 先進諸國에 비하여 저조하고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여 企業化할 만한 對象技術, 對象品目 및 技術創業人力이 부족하다. 정부당국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技術基盤의 육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要할 것으로 보인다. 技術水準을 測定하는 指標로서 特許統計가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9年에는 258件이 登錄되었으나 1980年 186件, 1985年 300件으로 特許登錄이 매우 저조한 實情이다(表 5 참조).

또한 해외 韓國人科學者들을 벤처企業의 技術創業人이나 研究開發支援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技術開發體制와 政策이 아직 미흡하다[11].

〈表 5〉 特許件數 比較

(단위 : 件)

	韓 國 (1985. 10)	日 本 (1983)	美 國 (1982)
出 願	2,283	227,743	63,316
登 錄	300	45,578	33,896

註 : 自國人에 의한 特許件數임.
資料 : 發明特許協會, 『發明特許』, 1986. 1.

4. 技術信用保證

벤처企業의 研究開發投資事業의 技術的 妥當性, 市場性 등을 검토하고 이를 보증함으로써 擔保없는 中小企業이 無擔保로 一般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받을 수 있는 技術信用保證制度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벤처企業에 대한 金融機關의 融資에 따르는 危險負擔을 분산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缺如되어 있다.

5. 投資資金의 回收

우리나라의 株式市場에 관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投資家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미

10) 金昌達, 「韓國의 技術開發金融制度와 KTDC」, 『海外벤처캐피탈의 動向과 우리의 對應戰略』, 韓國技術開發(株), 1985. 2.
11) 李彰周, 『冒險企業 지원정책의 문제와 대책』, 每日經濟新聞, 1985. 12. 4.

국, 일본 등에 비하여 엄격하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이 벤처企業에 株式投資의 형태로 資金을 支援하는 경우에 同企業이 성장하여 證券市場에 上場되기까지는 장기간(創業 이후 평균 9년 8개월)이 소요되며 上場 이전에는 旣投資된 資金을 回收하고 資本利得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表6 참조). 또한 현재 上場株式의 端株와 債券에 한하여 場外去來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나 上場株式의 端株去來規模는 全體株式去來額의 1%에 불과하며 (表 7 참조) 非上場株式의 경우에는 店頭市場을 통한 去來에 관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參考로 美國, 英國, 日本 등 先進諸國은 벤처캐피탈의 活性化를 圖謀하고 벤처企業의 資金調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店頭市場을 創設하거나 株式市場을 改革하는 措置를 취하였다[12]. 美國의 場外去來市場에서는 非上場株式

〈表 6〉 벤처企業의 業種別 上場平均所要期間 推定

	平均上場所要期間(年·月)	標本數(社)
機械	7.11	2
金屬	9.3	25
電氣·電子	9.4	15
纖維	11.6	11
化學	10.6	21
平均	9.8	74

資料: 經濟企劃院, 「冒險資本·冒險事業의 育成方案」, 1985. 7.

〈表 7〉 市場去來 및 場外去來實績推移

(단위 : 億원)

	株式		債券	
	市場去來	場外去來	市場去來	場外去來
1980	22,680(99.0)	235(1.0)	17,797(37.1)	30,122(62.9)
1981	50,683(99.7)	166(0.3)	28,210(33.7)	55,508(66.3)
1982	39,470(99.5)	191(0.6)	125,376(43.9)	130,077(51.1)
1983	34,470(99.1)	331(0.9)	33,483(10.7)	279,462(89.3)
1984	62,508(99.1)	551(0.9)	22,520 (4.7)	455,512(95.3)

註: ( )는 構成比.
資料: 經濟企劃院, 「冒險資本·冒險事業의 育成方案」, 1985. 7.

〈表 8〉 店頭市場에의 株式登錄基準 國際比較

	美國	日本	韓國(上場基準)
資本金	50萬달러 以上	登錄申請日 현재 1億엔 以上	5億원 以上(會社設立後 2年 경과)
發行株式數	없음	200萬株 以上	50萬株 以上
株主數	300名 以上	200名 以上	300名
公開株式數	10萬株 以上	30萬株 以上	發行株式 總數의 49/100 以上
純利益	없음	稅前1株當年10엔以上	
配當	없음	없음	
純資產	100萬달러以上(總資產200萬달러以上)	2億엔 以上	

資料: 經濟企劃院, 「冒險資本·冒險事業의 育成方案」, 1985. 7.

12) Bank of England, "The Unlisted Securities Market," *Quarterly Bulletin* Vol. 25 No. 4, December 1985.

의 去來를 위한 情報交換시스템인 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가 具備되어 있어 投資家들이 投資對象을 쉽게 찾을 수 있고 株式의 流通性이 높아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의 回收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日本에서도 벤처企業이 쉽게 店頭市場을 통하여 資本을 調達할 수 있도록 1983年에 店頭市場의 登錄基準을 대폭 改善하였다(表 8 참조).

6. 租稅支援

租稅減免規制法 第54條에 의거 專門벤처캐피탈會社중 特別法에 의해 설립된 韓國技術開發(株)에 한하여 條件附融資金額의 40%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損失準備金이 인정되고 있으나 商法上 株式會社인 他專門벤처캐피탈會社에 대해서는 損失準備金 설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租稅減免規制法 第18條에 의거 韓國技術開發(株), 韓國技術振興(株), 韓國開發投資(株)가 新技術事業會社의 株式이나 出資持分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은 當該課稅年度의 益金에 不算入함으로써 法人稅를 減免해 주고 있으나 1984年에 설립된 韓國技術金融(株)에 대해서는 關聯法이 개정되지 않아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美國에서는 資本利得에 대한 輕減稅率 適用 등과 같은 稅率上의 優待措置에 힘입어 벤처캐피탈이 活氣를 띠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資本利得에 대한 分離課稅가 導入되어 있지 않아 資本利得으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 輕減稅率을 適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V. 벤처캐피탈의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1. 政策의 基本方向

벤처企業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產業構造의 技術·知識集約化를 推進해 나가는 데 중요한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이며 이들 技術·知識集約型 中小企業의 活動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國民經濟의 活性化도 促進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企業은 積極的으로 育成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그러나 個別的인 벤처企業을 살펴보면 資金調達, 人材確保·養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脆弱한 企業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순조로운 成長이 沮害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諸問題는 무엇보다도 먼저 벤처企業 自身의 勞力에 의하여 解決되어야 할 것이며, 政策的인 對應에 있어서 政府當局은 벤처企業의 成長과 發展을 위하여 側面에서 支援하는 데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企業을 育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資金, 情報 등에 관한 광범위한 政策이 講究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資金支援에 있어서는 硏究開發段階, 創業段階, 危險成長段階, 安定成長段階라는 企業의 發展段階에 따라 各段階에 알맞는 政策手段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벤처企業의 育成手段으로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중요하며 벤처企業으로부터의 期待 또한 매우 크다. 벤처캐피탈은 그 本來의 目的을 이룩할 수 있는 環境과 基盤이 整

備된 후에 벤처企業을 擴大하고 强化하는 데 매우 效果的인 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그에 대한 期待에 충분히 副應할 수 있는 狀況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벤처캐피탈産業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을 克服하고 벤처企業의 育成을 振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施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2. 資金調達의 圓滑化

가.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의 設立·育成

1) 必要性

技術·知識集約的인 産業의 育成 및 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 등을 促進하는데 寄與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中小企業의 自己資本을 擴充하고 그 健全한 成長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當該中小企業의 株式取得, 「컨설팅」 등 本格的인 벤처캐피탈 業務를 擔當하게 될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를 設立·育成할 必要가 있다.

80年代에 들어서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支援이 銀行貸出을 중심으로 한 間接金融 위주로 크게 擴大되어 오고 있으나 中小企業에 있어서 間接金融은 借入의 不安定性, 長期資金의 借入難 및 借入條件의 不利 등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다. 따라서 中小企業에 대하여 持續的으로 長期的인 資金을 供給하고 自己資本을 擴充해 주며 中小企業이 證券市場 등에서 自力으로 資本을 調達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成長과 發展을 支援할 體制를 樹立하는 것이 緊要하다.

또한 投資先企業의 資金負擔을 輕減하고 投資先企業의 원활한 資金調達을 支援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가 벤처企業을 상대로 「리스」(lease)와 「팩토링」(factoring) 業務도 함께 取扱할 수 있도록 許容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投資先企業과의 關係를 强化함은 물론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의 脆弱한 收益基盤을 補强하는데도 寄與할 것으로 思料된다.

2) 政府의 資金支援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의 投資先企業의 成長과 發展이 産業構造의 高度化, 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寄與하는 등 國民經濟에 有益한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期待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中小企業의 投資育成에는 10년 또는 그 이상의 長期間이 所要되고 그동안 資金이 固定化된다. 이로 인하여 필요한 長期性 資金의 調達과 會社의 收益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므로 政府가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에 대하여는 出資·融資 및 債券發行에 대한 支給保證 등 資金支援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資金支援에 있어서 政策當局은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의 資金運用중 投資額比率 등에 따른 差等支援을 통하여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가 一般融資보다는 新生벤처企業에 대한 投資活動에 重點을 두도록 誘導할 수 있을 것이다.

나. 投資事業組合制度의 導入

1) 必要性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會社들은 投融資資金의 財源을 資本金과 外部借入金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벤처캐피탈會社에 있어서는 資本金規模가 零細하고 外部로부터의 資金借入도 부진하며 調達費用이 低廉한 長期資金의 調達은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이와 같이 벤처캐피탈 自體의 資金量이 적고 外部借入에 의존하고 있

〔圖 2〕 投資事業組合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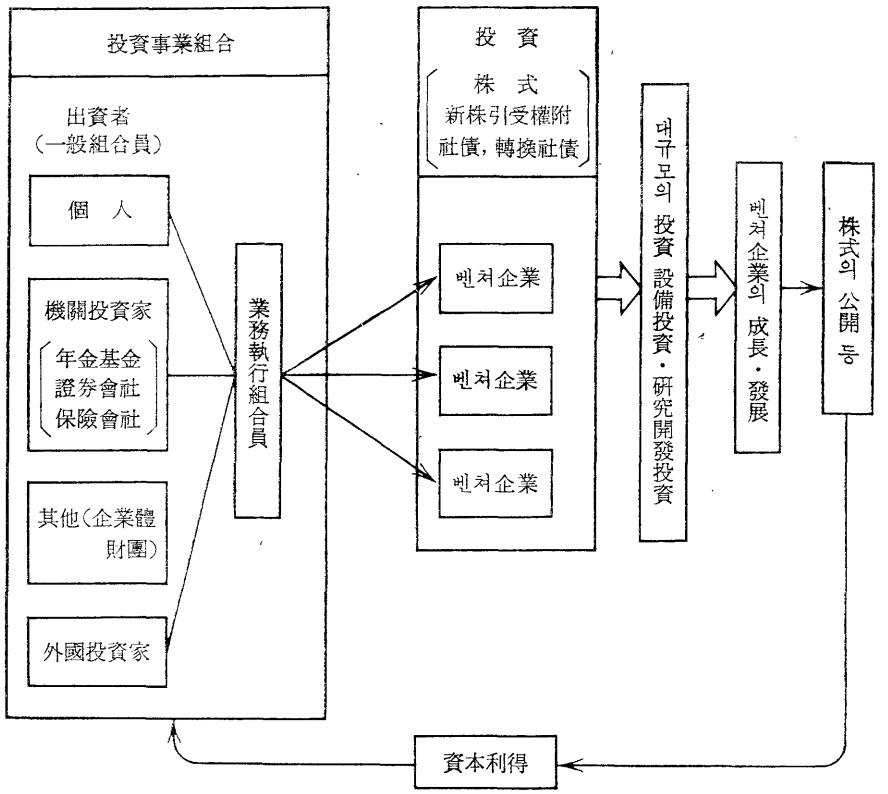

는 段階에서는 投資의 規模가 작을 뿐 아니라 投融資先도 安全度가 높은 企業에 限定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벤처캐피탈會社가 이러한 限界를 克服하고 低廉한 長期資金을 導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投資事業組合(Partnership)制度를 導入하는 것이 緊要하다. 이를 통하여 個人, 一般會社 및 機關投資家 등으로부터 많은 長期(보통 10年) 無利子의 資金이 供給될 수 있는 동시에 投資事業組合員의 危險負擔도 分散될 수 있다. 또한 投資事業組合方式의 벤처캐피탈은 ① 法人設立의 경우보다 용이하고 經營 등에 관한 專門家의 도움을 約束받을 수 있으며 ② 投資信託의 경우에 비하여 投資先企業經營에 直接介入 또는 監督할 수 있고 ③ 資金費用이나 危險度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從來보다 長期의 投資와 대담한 投資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投資事業組合制度는 美國과 日本에 있어서 벤처캐피탈의 急成長에 크게 寄與하였으며 벤처캐피탈의 資金調達에 있어서 劃期的인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2) 構 造

投資事業組合의 構造를 살펴보면 〔圖 2〕와 같다. 이는 벤처캐피탈會社가 組合形態로 內外의 投資家(一般組合員, limited partner)로부터 投資期間이 長期인 「리스크」資金(risk money)을 動員하여 投資 基金을 만들고 벤처캐피탈業務執行組合員(general partner)으로서 投資先을 選定·育成하고 資金을 一括的으

로 運用하는 制度이다. 業務執行組合員인 벤처캐피탈會社는 運營手數料(2~2.5%)와 投資先企業의 公開에 따른 資本利得의 20%를 成功報酬로서 受取하고, 一般投資者는 自己出資金額의 限度內에서 有限責任을 지며 基金의 運用으로 얻은 資本利得의 80%를 出資額에 따라 配分받을 수 있다.

다. 벤처企業育成센터의 設立

벤처企業은 知識·技術集約的이며 研究開發中心的인데다가 비교적 新生企業이 많고 擔保力이 부족한 편이다. 벤처企業은 研究開發에 있어서 개성이 풍부한 獨特한 發想을 活用하여 新規需要를 開拓해 나가기 때문에 올바른 理解와 評價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나라와 美國·日本 등 先進國과의 커다란 差異點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資金을 供給하는 金融機關들이 技術評價能力을 가져야 할 時代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新技術과 新製品의 研究開發 및 企業化를 促進함으로써 知識·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의 건전한 成長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벤처企業의 技術能力과 將來性을 評價하고 부족한 擔保力을 補完해 줄 수 있는 벤처企業育成센터를 設立하여 研究開發資金 債務保證制度 또는 技術信用保證制度를 導入하는 것이 필요하다.

벤처企業育成센터는 日本의 研究開發型企業育成센터(VEC)와 같이 높은 技術能力을 가지고 있으나 資金이 부족하여 研究開發을 遂行할 수 없는 中小企業을 위하여 研究開發資金의 借入에 대하여 無擔保로 債務保證을 해줌으로써 벤처企業이 金融機關으로부터 長期低利의 資金을 借入하여 研究開發 및 企業化를 推進할 수 있도록 벤처企業을 育成·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벤처企業育成센터는 벤처企業이 申請하는 研究開發資金 借務保證을 審議할 審査委員會를 産業界, 學界, 成功한 벤처企業家 등 關係分野의 專門家들로 構成하고 最終決定은 審査委員會가 프로젝트의 新規性, 技術內容 및 市場性 등을 基準으로 하여 결정하는 審議結果에 따르도록 運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研究開發資金 債務保證制度의 成功與否는 결국 高度의 專門性을 요하는 申請된 프로젝트의 엄밀하고 公正한 審査와 審査委員會 運用의 成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金融機關 技術開發資金 支援體制의 强化

벤처企業의 研究開發 등을 위한 投資額은 一般中小企業에 비교하여 必要資金規模가 크나 벤처企業은 대부분 歷史가 日淺하여 擔保力이 貧弱하다. 이러한 벤처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벤처企業의 振興에 民間의 活力을 誘導할 수 있도록 一般金融機關의 벤처企業에 대한 貸出이 活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講究할 필요가 있다.

먼저 新技術의 企業化段階의 進展에 따라 벤처企業에 대한 벤처캐피탈과 一般金融機關의 資金支援을 連繫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新技術企業化 資金支援

新技術의 企業化段階의 進展에 따라 技術保證에 連繫된 銀行의 短期運轉資金과 施設資金 등의 追加的인 資金支援이 要請된다. 벤처캐피탈會社가 投融資한 벤처企業에 대하여 銀行이 後續資金을 供給함으로써 이미 支援된 資金의 健全化와 아울러 金融機關의 單獨貸出에 따르는 危險의 分散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2) 中小企業銀行의 新技術企業化資金 貸出

技術開發業體에 대한 中小企業銀行의 資金支援要領(1983年 3月 制定)에 의한 同資金支援對象에 벤처캐피탈會社가 投融資한 벤처企業도 포함되도록 同要領을 改定하여 運營資金(3年 以內)과 施設資金(5年 以內)이 벤처企業에 支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韓國銀行의 中小企業技術開發資金 支援

韓國銀行는 1983年 8月에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支援要領을 일부 改定하여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에 대한 金融支援을 制度化하여, 一般金融機關에까지 擴大實施토록 하였으며 技術開發資金 供給額의 50% 이내에서 韓銀借入을 許容하고 있다. 이와 같은 韓銀借入對象에 벤처캐피탈會社가 投融資한 벤처企業에 대한 金融機關의 技術開發資金貸出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資本市場을 통한 벤처企業의 資金調達

未公開벤처企業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投資成果가 용이하게 實現될 수 있는 體制(Exit Mechanism)를 構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企業에 投資된 資金이 早期에 流動化될 수 있는 施策으로서 店頭市場(Over-the-Counter Market)의 育成 또는 證券去來所 第3部市場의 創設이 필요하다.

1) 證券市場의 上場基準 緩和

證券去來所의 株式上場 審査基準은 原則的으로 投資家의 保護에 치중하고 있다. 企業公開時에 要求되는 企業登錄에 관한 規程을 살펴보면 公開勸誘對象중 가장 低位의 對象인 中堅法人의 選定基準은 ① 資本金이 5億원 以上 ② 最近 事業年度 納入資本利益率이 8% 以上 ③ 資本蠶食이 없을 것 등으로 企業의 過去 營業收益實績에 基準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證券去來所의 上場基準이 엄격하기 때문에 中堅·中小企業의 上場이 곤란하며 따라서 벤처캐피탈이 資本利得을 얻기 어려운 實情이다. 나아가 벤처企業의 株式取得에 따른 資本利得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自體가 매력적인 投資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實情을 감안하여 현재의 投資者保護를 위주로 한 엄격한 上場基準 및 登錄基準을 緩和하고 彈力化함으로써 未公開 中小企業의 株式公開가 보다 쉬워지도록 하여 資本市場의 機能을 擴充할 필요가 있다.

2) 場外去來市場의 育成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投資先企業의 株式을 資本市場을 통하여 賣却(public offering)하거나 다른 投資機關이나 第3者에게 轉賣 또는 投資先企業의 株式買入 등의 方法에 의하여 投資한 資金을 回收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非上場株式의 店頭市場을 통한 去來에 관한 制度的인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投資先企業이 成長하여 株式을 公開하기 전에는 投資先企業에 의한 株式再買入의 方法 이외에는 株式을 賣却하여 投資資金을 回收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上場株式의 端株에 한하여 場外去來가 認定되고 있으나 앞으로 벤처企業의 未上場株式에 대하여 場外去來를 許容함으로써 未公開벤처企業이 場外市場을 株式上場 以前段階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場外市場을 去來所市場에 대한 補完市場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制度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場外市場을 制度化하는 데 있어서 初期에 發生할 수 있는 流通市場의 문란과 問題

點을 고려하여 場外去來市場 登錄制度를 導入하는 등 未上場株式의 公正去來를 保障하기 위한 制度的인 安全裝置가 우선적으로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13]. 그리고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는 과거의 財務實績보다는 장래의 成長可能性을 土臺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처企業의 未上場株式의 募集과 賣出에 있어서는 指定된 機關投資家들이 「딜러」(dealer)의 役割을 擔當하도록 하고, 벤처企業의 未公開株式의 去來에는 벤처펀드(venture fund), 벤처캐피탈會社, 證券會社, 保險會社 등이 機關投資家로 參與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場外市場을 우리나라 資本市場의 實情에 맞도록 組織·制度化하는 것은 落後되어 있는 우리나라 資本市場의 現象을 감안하면 어려운 課題이며 따라서 場外市場의 育成은 長期的인 資本市場育成策과 關聯하여 段階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政策當局, 證券會社 및 機關投資家들의 努力과 一般投資家들의 理解가 要請된다.

3. 벤처캐피탈의 國際化

우리나라에서는 韓國技術開發(株)이 美國으로부터의 新技術과 새로운 벤처事業의 導入窓口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기 위하여 美國 벤처캐피탈會社의 投資事業組合의 投資基金에 100萬달러를 投資하여 一般組合員으로서 參與하고 있다.

한편 최근 美國, 유럽 및 日本 벤처캐피탈會社間에는 각종 業務, 資金動員 및 投資에 있어서 相互提携를 비롯한 國際化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으며[14]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國際化는 싱가폴, 홍콩 등 우리나라의 主要競爭相對國들에서도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다. 日本 및 아시아 新興工業國에 있어서 벤처캐피탈의 國際化를 推進하는 一次的인 目的은 資本利得보다는 美國의 尖端技術에 대한 窓口(window on technology)로서의 벤처캐피탈의 活動에 있으며 一部國家에서는 政府當局이 이를 勸奬하고 있다[15].

이러한 國際環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國內에서 獨自的으로 開發하기 어려운 尖端技術에 대한 窓口로서의 벤처캐피탈의 活動과 海外市場에 進出할 수 있는 有望新製品 開發技術의 國內移轉을 促進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의 國際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對策이 長期的인 벤처캐피탈育成策의 一環으로서 樹立될 필요가 있다.

가. 海外벤처캐피탈 資金의 導入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를 目的으로 韓國投資信託(株)이 英國의 Merchant Bank와 共同으로 設立한 벤처펀드(venture fund)와 같은 投資基金을 다른 國內投資信託會社도 外國 Merchant Bank 등 金融機關과 共同으로 造成하도록 勸奬·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政策的으로 誘導하기 위한 措置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外國人投資家가 벤처캐피탈會社의 投資事業組合에 參與하거나 일정한 範圍內에서 벤처캐피탈會社에 直接 出資할 수 있도록 勸奬·許容하고 이를 促進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朴榮泰, 「벤처비즈니스의 育成과 資本市場」, 『産政研究』, 韓國産業政策研究所, 1985. 5.
14) "Advent International: The Evolution of a Worldwide Venture Capital Network", *Venture Capital Journal*, September 1985.
15) "Venture Capital in Japan", *Venture Capital Journal*, February 1984.

〔圖 3〕 體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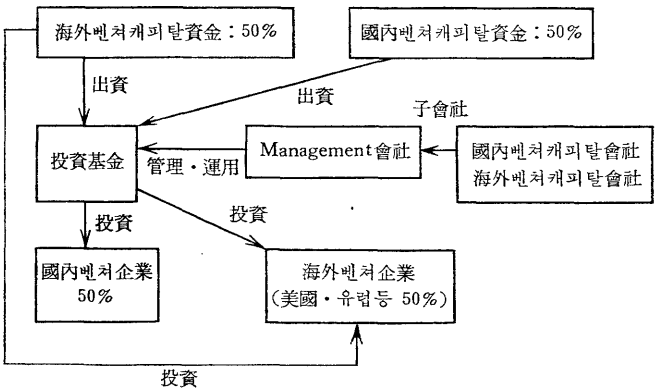

이와 같이 海外벤처캐피탈이 國內벤처캐피탈會社를 통하여 國內에 進出하게 되면 資金源의 擴大와 벤처캐피탈의 管理 및 運用技法의 習得에 有益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合作벤처캐피탈會社의 設立

1) 必要性

國內벤처캐피탈會社와 유수한 海外벤처캐피탈會社間의 合作벤처캐피탈會社 設立을 허용하여 海外의 投資家들과 共同으로 國內外의 有望한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事業을 促進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海外벤처캐피탈資金의 導入을 誘導할 수 있고 國內投資家들은 先進國에서의 尖端技術의 開發·生産·市場 등에 관한 情報를 지속적, 장기적으로 入手·活用할 수 있으며 海外에서 開發된 新技術의 導入을 위한 事前審査와 신속한 技術移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16] 및 싱가폴의 事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海外合作先인 海外벤처캐피탈會社가 벤처投資對象을 國內로 紹介, 誘致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이 開發되는 技術을 이용한 技術集約的 新製品의 生産을 國內로 誘致(offshore manufacturing)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自體의 海外情報網을 가지고 있지 못한 國內 中堅·中小企業과 先進國의 技術集約型 中小企業間의 架橋役割을 수행함으로써 兩國間의 技術情報와 技術의 交流 및 移轉등을 促進할 수 있을 것이다.

2) 組 織

國內벤처캐피탈會社와 海外벤처캐피탈會社가 참여하여 投資基金의 管理會社(Management Company)를 設立한다. 投資基金에 대한 國內投資家로서는 國內벤처캐피탈會社의 斡旋下에 國內企業, 尖端技術關聯政府傘下機關, 벤처캐피탈會社, 證券會社 등이 一般組合員으로서 參與하여 基金의 50%를 出資하고 海外로부터는 海外벤처캐피탈會社의 斡旋下에 美國 유럽 등의 投資家들이 一般組合員으로서 50%를 出資하여 參與하도록 한다. 基金의 規模는 대략 2~3千萬달러로 하고 그 運用에 있어서는 國內벤처企業에 基金의 50%를 그리고 海外벤처企業(國內投資家의 關心分野를 包含)에 나머지 50%를 각각 投資토록 한다.

16) "Venture Fund Focuses on U.S./Israel Link", *Venture Capital Journal*, September 1985.

3) 奬勵策

海外의 合作投資家의 參與를 誘導하기 위해서는 홍콩, 싱가폴 등 外國과 같이 租稅上의 인센티브를 賦與하고 同 合作벤처캐피탈의 投資基金이 國內벤처캐피탈과 投資家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海外의 有望 벤처企業 등에 投資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國內벤처캐피탈會社가 募集하는 投資基金에 國內企業, 尖端技術과 관련된 政府傘下機關, 國內벤처캐피탈會社, 證券會社 및 機關投資家 등이 一般組合員으로서 參與하도록 勸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國內벤처캐피탈의 海外進出에는 政策當局의 承認이 필요하기 때문에 資本自由化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활발한 海外進出은 어려울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의 海外進出에 따른 利點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政策的 努力이 요청되며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벤처캐피탈의 海外進出을 장려할 필요성이 크다고 思料된다.

4. 研究開發基盤의 强化

가. 研究開發을 위한 基盤 및 環境의 整備

産業構造의 基底를 이루고 있는 中小企業이 왕성한 企業家精神, 彈力的인 組織 등 中小企業이 가지고 있는 特性을 잘 살려 技術開發 등 創造的인 企業活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活力의 源泉이 되는 研究開發活動을 보다 充實化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技術開發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맡게 될 知識·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을 中長期的인 見地에서 支援하여 가는 것이 緊要하다. 이를 위하여 中小企業이 自主的 努力에 의하여 適應能力을 高揚하고 發展해 갈 수 있도록 金融·財政·稅制 등 技術開發의 基盤을 整備하기 위한 諸般措置를 綜合的으로 檢討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國家의 研究開發助成 强化

創業期의 벤처企業 등에 대하여 研究開發資金의 供與가 필요하다는 점에 着眼하여 그 研究開發을 支援하기 위하여 현재의 助成措置를 擴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政府의 特定研究開發事業에 의한 企業技術開發支援에서 차지하는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의 比重을 提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考로 美國政府는 1982年 技術革新의 促進, 國家的인 技術革新要請에 副應하는 中小企業의 活用 등을 目的으로 하여 「中小企業技術革新促進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를 制定하여 研究開發을 支援하고 있다. 同法은 中小企業研究開發計劃에 근거하여 研究開發助成金의 交付 등을 행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中小企業의 技術開發力 强化 등을 위하여 그 導入을 檢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技術改善 補助金制度의 創設

研究開發의 원활한 遂行을 위한 政策支援은 벤처企業 政策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것이다. 따라서 벤처企業이 행하는 研究開發의 負擔輕減을 圖謀하고 持續的인 研究開發을 助成하기 위하여 벤처企業에 '技術改善補助金'[17]을 支給하는 制度의 創設을 檢討할 필요가 있다.

17) 자세한 內容에 관해서는 日本 通商産業省 中小企業廳(編), 『ベンチャービジネスへの期待と課題』를 參照.

라. 技術創業人의 技術現物出資認定

技術創業人의 研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벤처企業의 設立時에 技術保有者의 技術現物出資를 認定토록 現行制度를 補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稅制上 支援

美國에서는 個人의 경우 資本損失(capital oss)에 대하여는 資本利得과 通算하여 負가 되는 경우에는 通常의 所得으로부터 一定限度額까지 控除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資本損失에 대한 稅額控除가 認定되지 않고 있다. 또한 法人稅率에 있어서도 法人이 얻는 資本利得에 대하여 通常의 稅率이 適用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分離課稅로 輕減稅率이 適用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危險度가 높은 投資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이를 成功으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그 體質强化가 必須的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벤처企業을 育成한 結果로 얻은 資本利得이 次期의 積極的인 投資를 위한 基金에 積立될 수 있는 制度가 導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벤처投資充當金의 新設등 벤처캐피탈의 體質强化에 유익한 制度의 創設·導入을 檢討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制度를 마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投資 또는 育成한 結果 成功報酬로 얻는 資本利得에 대해서는 分離課稅制度를 導入, 輕減稅率을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個人投資家의 資金導入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資本損失에 대한 稅額控除등과 같은 積極的인 方案도 講究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近年에 우리나라에서 産業 및 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라 벤처企業이, 비록 少數이긴 하지만, 出現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은 이러한 벤처企業에 投資하고 그 企業을 育成하는 데 그 存在價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幼年期로서 過渡期 段階에 있어 벤처캐피탈 自體의 體質이 脆弱하고 美國은 물론 日本·英國 등의 諸般關聯制度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운 與件下에 처해 있어 그 役割을 충분히 遂行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經濟의 活性化와 앞으로 더욱 치열하여질 國際技術開發競爭등을 考慮할 때 벤처企業의 育成은 매우 중요한 課題로 認識되며 그 一環으로서 벤처캐피탈의 體質을 强化하고 우리나라의 風土에 알맞게 그 育成을 圖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벤처캐피탈의 育成과 發展을 위한 課題 내지 政策方向을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의 設立·育成, 投資事業組合制度의 導入, 資本市場에 있어서 벤처企業 등의 上場要件의 緩和 및 稅制上 支援등 資金調達의 圓滑化를 위한 環境과 基盤整備施策을 중심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이와 아울러 實質的으로 벤처企業과 벤처캐피탈의 成長과 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創造的인 社會風土의 形成과 意識改革등을 推進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思料된다.

벤처캐피탈이 우리나라에서 그 基盤을 定着

할 수 있는가의 與否는 앞으로 數年間의 活動에 의하여 크게 左右될 것으로 豫想된다. 벤처캐피탈産業이 우리나라 産業界에 緊實하게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産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努力과 벤처캐피탈에 거는 期待와 要望에 대한 適切한 對應 및 關係者들의 理解 등이 필요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科學技術處,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 報告案件 85-2-1, 1985.12.

————, 『優秀技術開發 成功事例』, 報告案件 85-2-3, 1985.12.

經濟企劃院, 「冒險資本·冒險事業의 育成方案」, 1985. 7.

구본호·정태진·김병철,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의 '벤처비지니스'에 관한 硏究 : '벤처비지니스'의 金融政策 支援方案에 관한 硏究』, 科學技術處, 1985. 8.

金迪敎, 『中小企業의 技術開發政策에 관한 硏究』,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硏究센터, 1985. 2.

朴贊孝, 「벤처비지니스의 育成과 資本市場」, 『産政硏究』, 韓國産業政策硏究所, 1985.5.

邊炳文·金知壽·金炳進,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의 '벤처비지니스'에 관한 硏究 : '벤처비지니스'의 技術支援 政策方案에 관한 硏究』, 科學技術處, 1985. 8.

商工部, 「中小企業의 新技術企業化 支援方案」, 1985. 6.

巖崎琢彌, 「벤처비지니스의 現況과 證券市場의 役割」, 『證券』, 大韓證券協會, 1985.12.

尹汝京, 「벤처캐피탈과 中小企業의 技術開發」, 『企業經營』, 1984. 8.

————, 「우리나라 벤처비지니스와 벤처캐피탈」, 『技術移轉』, 韓國機械硏究所 1984.4.

李軫周, 『冒險企業·冒險資本·技術創業人』,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硏究센터, 1984.

田和淑, 「벤처비지니스 및 벤처캐피탈의 育成」, 『企銀調査月報』, 中小企業銀行, 1983. 6.

趙觀行, 『벤처企業論』, 에코노미아. 1985.

趙昌玉, 「우리나라 尖端技術開發을 위한 벤처캐피탈 活性化 方案」, 『産銀調査月報』, 1984. 1.

趙鶴來(譯), 『벤처캐피탈과 벤처비지니스』, 産業硏究院, 1984. 8.

中小企業銀行, 「美國과 日本의 벤처비지니스」, 『企銀調査月報』, 1984. 6.

————, 『韓國의 中小企業』, 1983.

————, 『韓國의 中小企業』, 1985.

韓國技術開發(株), 『海外벤처캐피탈의 動向과 우리의 對應戰略』, 1985. 2.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産業技術白書』, 1985.

韓國證券去來所, 『主要國의 벤처캐피탈과 資本市場의 문호개방』, 調査部, 1983.11.

韓一銀行, 「日本에 있어서 벤처캐피탈의 現狀과 課題」, 『韓一月報』, 1984. 7.

金融財政事情硏究會(編), 『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1985.

濱田隆道, 「日本のベンチャー・ビジネスとその育成振興策について」, 『機械振興』, 1982. 10.

東洋經濟(編), 『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バンチャービヅネス』, 東洋經濟新報社, 1983.

藤川信夫, 「我が國における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の 現狀と課題」, 『日本開發銀行調査月報(69)』, 1984.3.

佐野忠克, 「ベンチャービヅネスを どう育成するか」『金融ジャーナル』, 1984. 6.

研究開發型企業育成センター, 『ベンチャービジネス及び 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の 振興について』.

日本通商産業省 中小企業廳(編), 『ベンチャービジネスへの 期待と課題』, 1984.

————, 『技術革新と中小企業』, 1985.

————, 『中小企業施策の あらまし』, 1985.

清成忠男, 『經濟活力の源泉』, 東洋經濟新報社, 1984.

平井迪郎(編), 『アメリカとカナダの 中小企業金融』,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0.

"Advent International: The Evolution of a Worldwide Venture Capital Network", *Venture Capital Journal*, September 1985.

Bank of England, "The Unlisted Securities Market", *Quarterly Bulletin*, Vol. 25 No. 4, December 1985.

Bigler Investment Management Co., Inc., *Venture Capital, a Perspective*, Hartford, CT., 1983.

Dominguez, John R., *Venture Capital*,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4.

Gibb, J.M. (ed.), *Venture Capital Markets for the Regeneration of Industry*, North-Holland, 1984.

Howell, James M., "The Economic Renaissance of New England", *Economic Impact*, March 1985.

Kaura, Toshiki, *Current Status of Venture Capital in Japan*, Kangyo Kakumaru Research Institute Inc, 1984.

"SBIC after 25 Years", *Venture Capital Journal*, October 1983.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n the United Kingdom", *Venture Capital Journal*, August 1984.

OECD,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the Growth of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ICC) Industries*, 1984.

Pratt, Stanley E. and Jane K. Morris(ed.), *Pratt's Guide to Venture Capital Sources*, 9th ed. Venture Economics, Inc., 1985.

Silver, A. David, *Venture Capital*, John Wiley & sons, 1985.

U.S. Congres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ederal Financial Support for High Technology Industries*, June 1985.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The SBIC Program.*

U.S. Congress. House, Joint Economic Committee, *Venture Capital and Innovation*, 98th Congress 2nd Session, December 1985.

Wilson, John W., *The New Venturer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5.

産業發展과 政策金融

金　重　雄

▷ 目　次 ◁

Ⅰ. 序
Ⅱ. 産業政策과 政策金融
Ⅲ. 産業構造變化와 政策金融
Ⅳ. 産業發展을 위한 産業金融
Ⅴ. 結言

Ⅰ. 序

우리 經濟는 지금 構造的 轉換期局面에 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問題에 當面하고 있다. 여기서 轉換期라고 함은 우리 經濟의 發展段階로 보아 經濟運用基調가 과거의 政府主導的인 형태에서 競爭과 能率을 기초로 하는 市場經濟原理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과, 그리고 이른바 尖端技術 등 技術革新으로 인한 經濟環境 및 比較優位의 변화로 産業構造調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轉換期에는 環境變化에 대한 適應過程에서 불가피하게 構造的 摩擦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最少化하고 經濟部門間의 均衡的인 發展과 調和를 위하여 새로운 經濟秩序와 價値觀의 定立이 필요하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1962年 第1次 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하여 産業化를 통한 經濟成長을 추진하는 過程에서 여러 形態의 産業政策을 실시하여 模範 新興開途國으로 부상할 만큼 비교적 成功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 世界經濟環境은 50年代, 60年代와는 판이하게 展開되고 있고 컴퓨터, 로보트 등의 개발과 遺傳工學 등 새로운 尖端技術의 革新으로 産業社會가 情報社會로 移行되어가는 過程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農業社會, 産業社會, 그리고 情報社會가 함께 共存하는 社會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당하였던 價値觀과 規範에 큰 변화가 오고 있어 産業

筆者：本院 先任研究委員
* 筆者는 本論文의 草稿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해준 左承喜博士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本稿에 提示된 見解나 남아 있는 未備點은 筆者의 責任임을 밝히며 아울러 本稿作成에 크게 기여한 李炅周研究員, 沈海炅研究助員에게 감사한다.

및 社會構造가 개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經濟的 行態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80年代 중반에 들어선 우리 經濟의 與件과 주변환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發展過程을 전망해 볼 때 우리의 產業政策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합리적인 產業政策의 方向定立이 시급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與件變化에 對應하는 합리적인 產業政策이 定立되지 못하고 產業構造調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實物經濟에서의 構造的인 脆弱要因들이 결국 構造的 失業發生, 企業 및 銀行不實化, 外債累積 등 우리 經濟의 各部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점점 악화되는 世界經濟與件 속에서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최대한 실현시킴으로써 國家發展과 先進化推進의 經濟的 기반을 다져가기 위해서는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원활한 調整이 經濟政策의 核心的 課題가 된다[1].

우리나라에서는 產業政策의 特定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市場의 價格機構에 의하지 않는 金融政策, 즉 政策金融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經濟開發初期에는 이러한 政策金融에 의하여 產業構造가 高度化되고 經濟發展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經濟의 發展이 진전됨에 따라 經濟規模가 擴大되고 構造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政策介入에 의한 投資財源配分에는 非效率性과 金融政策遂行上의 제약성 등 矛盾이 露呈되게 되었다.

더구나 金融環境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어 市場經濟原理의 追求와 民間活力 極大化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새로운 產業政策의 方向을 정립하기 위하여 第Ⅱ章과 第Ⅲ章에서 政策金融의 論理的 妥當性과 문제점을 分析한 후 第Ⅳ章에서 그 改善方案과 政策課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產業政策과 政策金融

1. 產業政策과 金融의 役割

본래 產業政策이란 用語는 學問的으로 定立된 槪念이라기보다는 現實經濟問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產業合理化, 產業構造調整, 產業再編成, 產業構造高度化 등의 類似槪念들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混用되고 있다[2].

本稿에서 產業政策이란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國家가 產業間의 資源配分 혹은 產業內의 產業組織에 개입하여 經濟的, 經濟外的 목표를 달성하려는 政策을 의미하며 한 나라의 產業政策은 그 나라가 어떠한 產業構造를 원하는가를 결정하고 또 그러한 構造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떠한 政策手段을 동원하는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產業政策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政府가 動員할 수 있는 政策手段은 크게 보아서 세가지가 있다. 첫째, 政府는 어떤 產業活動을 奬勵하기 위하여 財政에서 補助를 해줄 수 있거나 또는 어떤 產業活動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 產業活動에 대해 租稅를 賦課할 수 있다. 둘째, 政府는 어떤 產業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1) 安承喆, 『產業政策의 基本視角과 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85.
2) 產業研究院, 『產業政策의 基本方向과 產業支援制度改善方案』, 1985.

資金을 供與해줄 수 있고 또한 어떤 産業活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産業活動에 대해 資金의 供與를 抑制할 수 있다. 세째, 政府는 어떤 産業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그 産業活動에 有用한 用役이나 其他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産業活動을 減少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用役과 도움을 抑制할 수 있다. 그 밖에 政府는 어떤 産業活動에 대해 褒賞을 할 수 있으며 또는 直接的인 行政規制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政策當局이 특정한 産業政策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金融, 財政 등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 金融이 이러한 産業政策手段으로서 使用되는 경우가 政策金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政策金融은 各國의 經濟發展 및 金融市場의 發達程度에 따라 그 生成過程과 運用形態를 달리해 온 歷史的, 文化的 槪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포괄범위를 일률적으로 定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의 經濟開發戰略이나 經濟發展過程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政策金融은 政策當局이 産業政策, 景氣政策 또는 國際收支對策 등 政策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經濟의 特定部門을 資金供給의 優先部門으로 設定하여 限定된 資金을 優先的으로 供給하도록 하는 일련의 選擇的 信用調節體系로서 金利, 期間 등 融資條件面에서 優待하거나 또는 資金可用面에서 優先的으로 供給하는 金融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政策金融은 특정의 産業政策 등을 推進하기 위한 政策意圖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金融的 手段이라는 兩面性이 融資條件이나 可用資金(availability)面에서 우대하여 주는 형태로 支援되는 金融이라고 할 수 있다[3].

2. 産業政策과 政策金融의 理論

가. 市場失敗

産業政策은 市場價格機構를 통한 資源配分의 失敗, 즉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 대처하려는 政策介入이고 이러한 政策介入이 金融支援의 形態로 이루어질 때 政策金融이라고 말할 수 있다[4].

다시 말하면 金融市場이 여러가지 構造的인 脆弱要因으로 인해 自由競爭基盤이 確立되어 있지 않으면 最適의 資源配分이 이루어지지 않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을 도모하기 위하여 政府가 市場에 介入하게 된다. 또한 金融市場에 있어서 競爭體制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더라도 市場失敗가 현저한 경우에는 政府가 資金配分의 衡平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社會政策的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金融에 간여하게 된다.

---

3) 政策金融의 範圍에 관해서는 그 基準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論議가 많은 問題이다. 예컨대 公金利가 市場의 均衡金利보다 낮은 水準에서 政策當局의 恣意에 의해서 維持되는 경우에는 制度金融의 貸出은 전부 金融上의 補助를 받는 특혜의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는 과거의 預金銀行 貸出이 모두 政策金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私金融市場이 存在하는 경우에 後進國의 모든 金融이 政策金融이 되는 矛盾이 생긴다. 따라서 政策金融은 政府가 特定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一般商業金融을 補完할 目的으로 金利나 資金可用面에서 政策的으로 혜택을 주는 金融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政策金融槪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金融機關의 意思決定이 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지 與否, 金融의 資金源이 民間의 預金에 의하여 조성되었는지 아니면 財政資金에 의한 것인지의 與否, 政策金融을 원貨資金供給에 限定할 것인가 아니면 外貨借入을 포함할 것인가의 基準設定 여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4) 産業政策과 政策金融理論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크게 볼 때 政府가 市場失敗에 대처하려는 政策介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같은 理論을 배경으로 하여 論理를 전개하기로 한다.

經濟理論的으로 볼 때 課稅나 價格統制가 없는 자유로운 市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資源配分이 達成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競爭과 市場原理가 존중되는 資本主義經濟下에서는 市場價格을 媒介로 하여 財貨 및 서비스를 生産하기 위한 限界費用과 消費者限界費用이 同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命題가 成立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前提條件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條件이 반드시 만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資源의 最適配分이 實現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資源配分에 관해서 市場失敗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政府에 부과되는 중요한 役割의 하나는 市場失敗가 생기고 있는 경우에 經濟活動에 介入하여 資源配分의 歪曲을 是正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市場失敗는 대체로 (1) 獨占 및 寡占 (2) 費用遞減 (3) 外部經濟(external economies) (4) 不確實性의 原因이 存在할 때 생긴다[5]. 이 때에는 市場均衡은 존재하나 最適資源配分이 실현되지 않거나 私企業에 의한 生産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이다.

우선 獨寡占의 경우를 보면 獨寡占的 均衡에서의 生産量이 競爭的 均衡의 경우와 비교할 때 過少하여 最適의 資源配分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生産者는 利潤極大化를 위해 價格이 限界費用과 등등하게 되도록 生産量을 결정하게 되는데 固定費用이 巨額이기 때문에 平均費用이 遞減하는 경우(平均費用이 限界費用을 上廻하는 경우)에는 利潤이 負가 되고 社會的으로 보아서 필요한 生産을 私企業이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外部經濟나 不經濟가 存在하는 경우에는 社會的 限界效用(또는 社會的 費用)과 私的 限界效用(또는 私的 限界費用)이 乖離하게 되므로 市場均衡에서의 資源配分은 最適이 아니고 政府介入이 필요하게 된다.

市場經濟의 基本原理를 전제로 할 때 위와 같은 市場失敗가 存在한다는 것은 政府干與의 餘地를 許容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政府干與가 必然的으로 要求되는 것은 아니다. 政府失敗(government failure)로 오히려 無干與의 狀態보다도 問題를 더 惡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政府干與는 대개의 경우 財政負擔을 同伴하는 것이므로 政府介入의 費用·效果分析(cost-benefit analysis)이 있어야 된다.

나. 市場失敗의 對應策[6]

市場失敗의 對應策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私的經濟主體의 활동에 일정한 規制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政府가

〈表 1〉 市場失敗의 對應策

		規制만 하는 경우	選別的 課稅 또는 一般財源에 의한 補助를 하는 경우
供給條件	私企業	(1) 獨占禁止法 環境基準의 設定	(2) 費用遞減産業에의 補助, 外部經濟에의 補助, Pigou的 課稅[7]
	公企業 또는 政府	(3) 獨立採算公企業	(4) 一般財源으로 補助된 公的 供給

5) 失業이나 인플레 등 巨視經濟上의 문제도 廣義의 市場失敗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

6) 野口悠紀雄, 『市場の失敗と政府活動』, 日本評論社, 1982.

7) 外部經濟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절한 課稅로써 問題解決을 圖謀한다. 이때의 稅金은 財政收入의 確保를 目的으로 하는 稅金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그 提唱者 A.C. Pigou의 이름을 따서 Pigou的 課稅라고 한다.

스스로 公企業을 設立하여 生産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政策效果를 確保하기 위하여 補助金이 支出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逆으로 特定對象에 選別的으로 課稅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政策을 다음의 두가지 基準에 의하여 分類하면 다음 네가지 政策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財貨 및 서비스의 供給主體로서 私企業의 存在를 認定하든가 혹은 公的主體에 의한 供給을 행하는 경우이다. 둘째, 供給方法(生産量, 價格決定 등)에 관해서 規制를 가하는 것에 그치든가 또는 選別的課稅나 補助金 등의 財政的手段을 講究하는 것이다.

앞의 表에서 (1)은 私企業의 활동에 대해서 規制만을 가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獨占禁止法이나 環境基準의 設定 등이 그것이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政府介入의 程度가 가장 약하다.

이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確保되지 않는 경우에는 財政的 手段을 併行((2)의 방법)하거나 또는 公的 主體에 의한 供給((3)의 방법)이 사용되어 政府介入의 정도가 (1)보다 진일보한 것이 된다. 더우기 公企業의 運營에 一般財源으로부터 補助金이 支出되면 (4)의 방법이 되고 政府介入의 程度는 가장 강하게 된다.

政府介入을 어느 段階까지 진행시킬 것인가는 어려운 問題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1)의 段階에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2) 또는 (3)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현실적으로는 (4)의 段階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보인다. 여기까지의 개입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어떠한 政策이 필요한가는 市場失敗가 생긴 원인에도 依存되고 個個의 케이스에 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8].

8) 「市場失敗」의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獨占의 問題를 예로써 살펴본다.

모든 經濟主體가 市場價格을 주어진 것으로 해서 行動하는 것으로 假定되어 있다. 이것은 「price taker의 假定」이라 불린다. 經濟主體의 數가 충분하고 個個의 經濟主體의 행동이 市場價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 假定은 타당한 것으로 認定된다. 이러한 假定이 적용되는 市場을 「競爭的 市場」이라 한다. 그러나 供給者나 需要者가 소수인 市場에 있어서는 個個의 經濟主體의 행동이 市場價格에 有意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個個의 經濟主體는 單純하게 市場價格을 주어진 것으로 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이 市場價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초래된 資源配分은 競爭的 市場의 경우와는 다르며 一般的으로 最適資源配分은 실현되지 않는다. 먼저 供給者가 單獨인 市場(供給獨占의 케이스)을 설명하기로 한다.

(1) 獨占的 均衡

財貨의 生産量을 Q, 市場價格을 P, 生産費用을 C라고 하고 市場價格은 生産量의 減少函數 $P(Q)$에 의해서, 또한 生産費用은 生産量의 增加函數 $C(Q)$에 의해서 표시된다고 하자. 競爭的 市場의 경우에는 個個의 生産者의 立場에서는 價格은 Q에 의존하지 않는 定數로 파악되는데, 獨占의 경우에는 P는 Q에 依存하는 것으로 認識되어 있다. 그래서 生産者에 있어서의 利潤은 $\pi=P(Q)\cdot Q-C(Q)$이고 最適生産量은 π를 最大化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 조건은 위의 式을 Q로 微分하여 零으로 놓는 것에 의해서 $(1-\frac{1}{\eta})P(Q)=C(Q)\cdots(1)$이 된다. 여기서

$\eta=\frac{P}{Q}\cdot\frac{dQ}{dP}$는 需要의 價格彈力性이다.

競爭的 市場의 경우에는 $\eta=\infty$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1)式은 價格=限界費用이라는 周知의 式이 된다.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供給獨占의 경우에는 $\eta>1$의 범위에 解가 존재하고 價格은 限界費用보다 높아

〔圖 1〕 供給獨占의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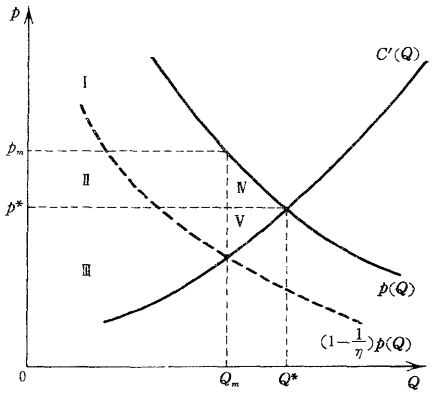

3. 政策金融의 機能

金融機關의 자유로운 競爭이 保障되고 金利의 價格機能에 의하여 金融市場內에 資金이 자유롭게 移動되어 實物經濟面에서의 資源의 最適配分이 達成된다면 政策金融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金融市場은 價格메카니즘에 의한 資源配分機能이 반드시 理論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市場메카니즘이 완전하게 作動된다 하더라도 社會的 價値判斷에 의해서 所得分配나 그 나라 고유의 政治的, 經濟的 조건에 비추어 修正할 필요가 있다(政策金融에 의한 再配分機能). 따라서 政策金融은 金融市場의 市場메카니즘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 나라마다의 社會的, 經濟的 特殊狀況을 반영한다는 政策意圖도 있는 것이다. 政策金融은 선정된 特定部門에 우선적으로 供給되거나 融資條件이 一般貸出보다 우대된다는 점에서 볼 때 政策當局이 特定部門에 補助金을 지불하는 政策手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政策金融은 그 對象分野 및 機能面에서 一般金融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對象分野를 보면 첫째, 政策金融은 當該產業이 장래 戰略的產業으로서 經濟成長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產業이 新規產業 또는 幼稚產業이기 때문에 危險度(risk)가 크고 收益率이 낮아서 商業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에 대한 金融이다. 둘째, 農業部門 및 中小企業

진다. 만일 需要曲線의 모든 部分에서 彈力性이 1보다 작으면 生產量을 減少시키고 價格을 높일수록 매상고 PQ가 增大하며 生產量의 減少로 인해 費用도 低下되므로 利潤은 增大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正의 解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을 圖示한 것이 〔圖 1〕이다.

供給獨占의 경우 生產量은 Q_m으로서 多數의 生產者가 price taker로서 行動하는 競爭的 市場 경우의 總生產量 Q^*보다 減少된다. 또한 市場價格은 P_m이 되고 競爭的 市場의 경우의 均衡價格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獨占者는 生產量을 制限的으로 維持함으로써 價格을 올리고 利潤의 擴大를 圖謀한다.

(2) 國民經濟的 損失(deadweight loss)의 發生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消費者로부터 供給者에로의 이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社會全體로서의 損失을 隨伴한다. 이것을 〔圖 1〕로 검토해 보자. 競爭的 市場의 경우와 비교해서 消費者의 剩餘는 (Ⅱ+Ⅳ)만큼 감소하고 生產者의 剩餘는 (Ⅲ+Ⅴ)로부터 (Ⅱ+Ⅲ)으로 (Ⅱ−Ⅴ)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Ⅱ)에 상당하는 부분이 消費者로부터 供給者에 이전되나 이 과정에서 消費者剩餘와 生產者剩餘의 合이 (Ⅳ+Ⅴ)만큼 감소한다. 이것은 社會全體的으로 損失이고 課稅나 價格統制의 경우에 發生한 「死荷重」(deadweight loss)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다. 지금 경우에 死荷重이 발생하는 것은 價格과 限界費用이 乖離되고 있음으로 해서 限界效用과 限界費用이 乖離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獨占的으로 價格을 결정하는 것은 消費者剩餘를 흡수하는 방법으로서는 「非效率的이다」라는 것이다. 만일 生產量을 Q^*까지 擴大하고 價格을 P^*로 하고 나서 Ⅱ에 상당하는 金額을 직접 消費者로부터 生產者에 이전하면 獨占的으로 價格을 결정할 경우와 비교해서 消費者剩餘와 生產者剩餘는 각각 Ⅳ및 Ⅴ만큼 많아진다. 그러므로 上述한 供給獨占의 解는 獨占的 供給者의 입장에서도 最善이 아니다. 獨占이 존재하는 경우 政府의 介入이 필요한 理由의 하나는 Ⅱ에 상당하는 部分은 消費者에 되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所得分配上의 理由이고 또 하나는 (Ⅳ+Ⅴ)에 상당하는 死荷重(deadweight loss)이 回避되어야 한다는 資源配分上의 理由 때문이다.

(3) 對 獨占政策

獨占에 對處하는 구체적인 政策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獨占禁止法에 의하여 企業規模나 市場支配力에 한도를 設定하고 個個의 企業이 price taker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費用遞減 등의 理由로) 獨占企業의 존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행동에 規制를 가하고 競爭的市場의 경우와 동일한 生產量과 價格을 實現시키는 것이다. 세째, 當該財貨의 生產을 公企業이 하고 위의 경우와 동등한 生產量과 價格을 實現하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는 〈表 1〉의 1段階의 政策이고 세째는 3段階의 政策이다. 上記의 세 가지 政策에 의하면 競爭的 市場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實現됨으로써 所得分配上의 目的도 達成된다. 그러나 死荷重의 回避라는 資源配分上의 目的만을 追求한다면 이외의 政策도 가능하다. 그것은 生產者에게 補助金을 주고, 生產量을 Q^*까지 擴大시키는 것이다(이것은 市場失敗의 對應策 〈表 1〉의 2段階의 政策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消費者剩餘와 生產者剩餘의 合은 競爭的 市場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고 死荷重은 없어진다. 獨占者라는 「經濟的 强者」에게 補助金을 주는 것은 일견 불합리한 政策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所得分配上의 觀點에서의 評價이고 資源配分上의 問題는 補助金의 財源을 누가 負擔하는가에 관계되고 있다.

部門 등과 같이 餘他部門에 비하여 低開發狀態에 있어 生産性이 낮거나 成長이 지연되고 있는 部門의 近代化를 위한 融資이다. 세째, 需要 및 産業構造의 變動에 따른 斜陽産業의 出現 등으로 발생하는 産業部門間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政策金融을 供與하는 것이다. 네째, 機能面에서 政策金融은 商業金融을 量的으로 補完하고 質的으로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즉 量的 補完은 特定分野에 대한 商業金融機關의 資金供給不足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며, 質的 補完은 特定의 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特定業種分野에 대하여 優待하는 條件으로 資金供給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質的 補完을 目的으로 하는 政策金融은 特定政策目標와의 관련이 量的 補完의 경우보다 더욱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機能은 政策金融에 있어서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와 같은 特徵을 지니고 있는 政策金融은 先進國에서보다도 開發途上國에서 經濟의 급속한 成長을 目標로 戰略的인 産業部門에 대한 信用의 效果的인 供給을 促進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政策金融 등 政府의 金融統制는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다.

그러나 통제의 범위가 擴大되고 그 정도가 深化되면 金融의 統制는 金融의 抑壓으로 진행되어 金融市場은 競爭的인 市場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미개발된 상태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 때문에 政府가 金融을 통제하는 金融産業의 惡循環이 계속하게 된다[9].

Ⅲ. 産業構造變化와 政策金融

1. 經濟成長과 金融

歐美 先進國에 있어서는 金融市場이 自然發生的으로 形成·發展되어 왔기 때문에 金融發展을 저해하는 要因들이 많지 않아 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金融市場이 부수적으로 調和있게 發展하여 왔으며 Goldsmith의 이른바 金融聯關比率도 安定的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開發途上國家들은 制限된 資源을 戰略産業에 集中한다는 原則下에서 金融을 成長戰略手段의 하나로써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低金利政策등 金融抑壓의 政策을 채택하였고 그로 인하여 直接金融市場과 間接金融市場의 調和있는 發展을 沮害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金融全體의 發展까지도 制約하게 되었다.

한편 金融發展이 지체됨에 따라 이것이 이번에는 成長 自體를 制約할 수도 있다는 見解가 開發經濟學(development economics)쪽에서 강력하게 대두되어 왔는데[10] 經濟發展에 있어 金融의 역할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견

9) 韓國銀行,「政策金融의 再整備方案」(討議資料), 1982.

10) H. Patrick (1966)은 金融과 經濟發展과의 關係를 需要追從型(demand-following)과 供給先導型(supply-leading)의 두 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여 說明하고 있다. 需要追從型은 주로 歐美先進國의 경우를 想定한 전통적인 理論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實物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金融資産에 대한 需要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며 이에 부응해서 金融構造의 發展이 促進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供給先導型에 있어서는 金融資産에 대한 需要가 自生的으로 증가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金融市場을 形成하고 金融資産을 供給하기 시작하면 전통적이고 生産性이 낮은 部門에서 生産性이 높은 現代的 部門으로 資金의 效率的인 配分이 促進되어 實物經濟의 發展을 先導할 수 있다고 본다.

해를 綜合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金融은 貯蓄과 投資를 連結시키는 仲介서비스를 提供함으로써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投資財源 自體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貯蓄을 增大하고 資源配分의 效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金融抑壓을 解消함으로써 金融資產에 대한 適正收益率을 保障하고 金融市場을 整備하여 金融仲介機能의 增進을 講究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세째, 金融의 實物經濟發展에 대한 先導的 역할은 投資收益率 등이 產業別로 큰 차이가 있고 市場의 情報가 불충분한 經濟(즉 後進國의 경우)에서는 강력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나 金融市場의 統合이 이루어짐에 따라 金融의 先導的 역할은 약화되고 金融部門은 實物로부터의 金融需要에 副應하여 함께 發展할 것이다.

지난 20餘年間 우리나라의 實物經濟는 年平均 8%를 상회하는 實質成長을 記錄하면서 刮目할 만한 發展을 하여 왔다.

특히 第1次 5個年計劃이 시작된 1962年부터 1978年까지는 輸出擴大를 통한 自立基盤構築(1962~71年), 重化學工業化의 推進(1972

〈表 2〉 產業別 成長率과 構成比

(단위 : %)

	GNP 成長率	構成比			
		GNP	農林·漁業	製造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
1962	2.2	100.0	36.6	14.3	47.1
1964	9.6	100.0	46.5	15.5	36.3
1966	12.7	100.0	34.4	18.4	45.4
1967	6.6	100.0	30.1	18.8	49.3
1971	8.8	100.0	26.8	20.9	51.0
1976	14.1	100.0	23.5	27.2	48.1
1980	△5.2	100.0	14.4	28.8	55.4
1981	6.2	100.0	16.2	28.6	53.7
1982	5.6	100.0	14.8	28.0	55.7
1983	9.5	100.0	14.2	27.9	56.4
1984	7.5	100.0	14.0	28.9	55.5
1985	5.0*	100.0	12.8*	29.2*	56.7*

註 : 經常價格 基準이며, *는 잠정치
資料 : 韓國銀行.

〈表 3〉 投資 및 財源調達 推移

(단위 : %)

期間	總投資率(A)	國民貯蓄率(B)	海外貯蓄率	投資財源의 自立度 (B/A)
1954~61	12.2	3.2	8.4	26.3
1962~70	23.5	14.0	9.4	59.6
1971~80	30.6	24.4	6.2	79.7
1981~85	26.1	23.0	3.1	88.1
1962~85	27.5	23.3	4.2	84.7

註 : 1985年度는 잠정치
資料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86.1.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1984.

~78年)에 따라 年平均成長率이 9.4%에 달하였다.

이 期間中 政府의 經濟發展을 위한 基本戰略은 高投資→高輸出→高成長으로 要約될 수 있다. 즉 70年代 初盤 이후 國際通貨秩序의 動搖,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과 이에 따른 世界景氣의 沈滯로 1980年에는 負의 成長을 記錄하기도 하였지만 輸出의 持續的 增加와 높은 投資가 계속 維持됨으로써 1976年부터 1985年까지 年平均 8.5%의 높은 成長을 達成하였다. 部門別로 보면 農林·漁業이 同期間中 平均 3.1%, 製造業이 19.3%,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가 8.9%로 製造業의 成長率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成長은 產業構造의 變化를 가져와 60年代 初盤까지 典型的 農業 위주의 產業構造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新興工業國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즉 1971年에는 國民總生產에 대한 農林·漁業의 比重이 26.8%, 製造業의 比重이 20.9%,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가 51.0%이었던 것이 10年 후인 1981年에는 農林·漁業이 16.2%로 크게 낮아진 반면 製造業은 28.6%로 크게 높아졌고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는 53.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製造業의 成長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와 比較하여 보면 1967~82年 期間中 우리나라가 平均 19.3% 成長한 데 비하여 대만은 15.4%, 싱가포르는 11.8%를 나타내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 높은 成長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11) 金重雄, 「새로운 金融秩序를 위한 政策課題」, 生命保險協會, 1983.

그러나 1962~70年 및 1971~80年까지의 기간 중 高度成長을 위해 필요했던 投資率이 각각 23.5%와 30.6%인 데 비해 國民貯蓄率은 14.0%와 24.4%에 불과하였으므로 投資財源의 相當部分을 外債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表 3 참조). 成長基調下에서 政府가 追求해 온 景氣膨脹政策은 인플레의 만연, 經濟·社會的 非效率의 發生, 經濟의 各部門間 및 所得의 不均衡 深化 등 副作用을 誘發하였다.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 政府는 1979年부터 安定化, 自律化, 開放化의 기치를 내걸고 安定과 經濟的 能率을 最優先으로 하는 政策基調로의 變化를 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은 金融產業이 貯蓄과 投資의 원활한 連結을 통하여 戰略產業에의 資金支援이라는 金融機能을 유효하게 遂行한 것에 크게 힘입었다고 하겠다[11].

특히 1965年의 金利自由化를 통한 貯蓄性預金의 劃期的인 增大와 70年代의 短期金融市場 및 證券市場의 機能 擴充으로 企業에 대한 生產的인 資金支援이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金融產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金融機能이 自體의 自生的, 自律的 動機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官主導의 他律的인 外部的 힘에 의하여 遂行되었기 때문에 創意力이 喪失되고 受動的인 역할만 담당하여 온 金融產業의 發展은 實物經濟의 成長에 비해 현저하게 落後되었으며 金融產業 內部에 있어서도 各部門間의 均衡있는 發展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80年代에 들어서 政府의 政策基調轉換, 특히 金融自律化 努力이 進行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속도가 느려서 金融部門이 實物成長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政策金融의 現況과 特徵

가. 政策金融의 內容

우리나라의 政策金融體制는 一次的으로 産業資金을 質的으로 調節하기 위한 各種 政策金融機關을 設立, 運營하는 것 이외에 資金種別로도 金利 및 資金 Availability를 差等規制하고 各種 制度金融 및 特別資金을 支援하는 등 제반수단을 광범위하게 活用하여 왔다. 그러나 1982年 6.28 金利引下措置 이후 政策金融의 支援形態는 金利보다는 資金의 Availability 面에서만 우대되는 體制로 바뀌게 되었다.

1) 專門機關을 통한 金融支援

特定産業部門에 대한 資金供給을 專擔하는 各種 政策金融機關의 設立, 運營은 各國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기본적인 選別金融政策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政策金融機關으로는 重要産業에 대한 開發金融을 專擔하고 있는 韓國産業銀行을 비롯하여 中小企業資金 供給을 위한 中小企業銀行, 短期輸出入金融의 擴大를 위한 韓國外換銀行, 中長期延拂輸出金融 支援을 위한 韓國輸出入銀行, 庶民金融의 圓滑化를 위한 國民銀行, 住宅資金供給을 專擔하는 韓國住宅銀行, 農業金融 및 水産業金融을 專擔하는 農協과 水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政策金融機關의 設立理由는 어디까지나 商業「베이스」에 입각하는 商業銀行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수한 專門分野에 대한 政策目的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것으로 政策金融機關은 그 근본적인 성격을 補完的 金融機關 또는 專門的 金融機關으로 規定하여야 한다. 따라서 政策金融機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補完性과 專門性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두가지 특징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본래 의미의 政策金融機關은 아니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政策金融機關 또는 特殊銀行의 所有形態는 協同組織體인 農業協同組合과 水

〈表 4〉 政策金融 現況(1985年 12月末 現在)

Ⅰ. 金融資金	
1. 韓銀再割	貿易金融(一般輸出入金融, 建設用役輸出金融,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 에너지節約施設資金, 輸出産業設備金融 軍需産業支援金融, 中小企業技術開發資金, 中小企業製品需要者金融
2. 財政利差補塡	特別設備金融資金貸出
3. 指示金融	中小企業體支援關聯金融, 地方自治團體與信, 地下鐵建設支援資金, 企業正常化支援金融, 災害復舊資金, 産業合理化施設資金
4. 纖維工業近代化資金	特殊銀行資金, 住宅資金, 農業資金, 水産資金, 畜産資金, 庶民資金
Ⅱ. 財政資金	財政資金 및 各種 借款資金貸出
Ⅲ. 産銀 및 輸出入銀行	産業銀行資金 및 輸出入銀行資金貸出(延拂輸出資金 포함)

産業協同組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政府가 적어도 전체 出資額의 半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政策金融機關은 政府金融機關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專門分野에 있어서 民間金融機關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점이 우리나라 金融制度 또는 金融市場의 가장 큰 後進性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制度金融을 통한 選別的 資金支援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經濟政策이나 社會政策의 效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金融支援策으로 政策金融機關들이 設立되어 特殊金融을 專擔한 경우이며 이외에도 優先支援部門에 대한 資金支援을 强化하기 위하여 各種 政策金融制度가 制定, 施行되어 왔다.

韓國銀行 再割引에 의하여 貸出財源調達이 보장된 '韓銀再割引資金'으로서 輸出支援金融이나 「에너지」節約施設資金, 輸出産業設備資金, 中小企業技術開發資金, 軍需産業支援金融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러한 政策金融에 대해서는 政策的으로 支援할 필요성이 있어 韓銀이 本源通貨供給을 통하여 金融機關取扱額中 일부 또는 全額을 支援함으로써 其他部門에 비하여 同部門에 대한 金融支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며 그 金利水準도 一般貸出金利보다 낮게 책정, 優待金利를 적용함으로써 金融供給面에서 選別機能을 强化하고 있다. 이와 함께 韓國銀行은 再割金利에 있어서도 同政策金融에 대하여는 其他어음과 달리 낮은 金利(6.5%~10.0%)를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資金도 그 성격에 따라 韓銀支援比率에 差等을 둠으로써 金融機關의 資金可用規模調節을 통한 간접적인 選別金融效果를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節約施設資金의 경우에는 韓銀이 金融機關取扱分 全額을 支援해 줌으로써 企業의 「에너지」節約型設備投資를 促進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低利의 金融資金으로 支援하되 貸出金利와 一般金利의 差를 取扱銀行 또는 借主에게 政府의 財政負擔으로 補塡하여 주는 '財政利差補塡型'이 있으며 中小企業 特別低利資金, 災害復舊資金, 機械工業育成資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現在는 金利差에 의한 選別支援은 없어졌음).

사실상 一般金融의 성격으로 貸出財源도 政府 또는 韓銀으로부터의 資金支援이 수반되지 않는 自體資金으로서 政府가 필요시 取扱指針을 制定 또는 협조공문 형식을 취하여 融資對象에 특별한 制限을 가함으로써 金融機關의 自律性이 제약되는 資金이 있는데 이를 편의상 '指示金融'이라고 칭한다.

나. 우리나라 政策金融支援의 特徵

60年代에 들어오면서 채택된 政府主導의 經濟開發戰略은 당시의 韓國企業의 零細性과 企業家의 經驗不足 등을 고려할 때 급속한 高度成長을 위해 불가피하였으며 이의 財源調達手段으로서 政策金融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이는 또한 당시 經濟開發戰略의 經驗不足과 國民所得 低水準 및 이에 따른 擔稅能力을 고려할 때 財政的인 手段보다는 더욱 손쉬운 活用手段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政策金融에 대한 低金利政策과 選別的 資金配分은 高度成長을 위한 金融支援手段의 가장 뚜렷한 特徵이었다. 과거 20年間 總貸出金對比 政策金融 比重은 1968~72年 및 1974年을 제외한 全期間을 통하여 50% 이상을 항상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12].

그리고 政策金融增加趨勢를 總貸出金推移와 함께 살펴보면 60年代에는 全般的으로 政策金融增加率이 總貸出金增加率보다는 낮았으나 70年代에 들어와서는 政策金融의 增加率이 總貸出金의 그것보다 앞질러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金融緊縮이 실시된 바 있는 1970~71年, 1974~75年 및 1977年 이후 대부분의 期間中 一般金融은 급속히 縮小시킨데 비하여 政策金融은 오히려 急增勢를 示顯함으로써 總量面에서 緊縮效果가 충분히 發現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限界的인 緊縮效果를 얻기 위해 一般金融(大部分 內需資金)에 대한 추가적인 減縮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83年 이후 政策金融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는 주된 要因은 企業正常化 關聯貸出이 急增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5〉 政策金融의 比重 推移

(단위 : 10億원)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政策金融(A)	435	502	551	648	809	1,375
前年比 增加(%)		(15.4)	(9.8)	(17.6)	(24.8)	(70.4)
總貸出金(B)	675	767	848	1,089	1,439	2,596
前年比 增加(%)		(13.6)	(10.6)	(28.4)	(37.1)	(73.9)
A/B(%)	64.4	65.4	65.0	59.4	54.1	53.1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政策金融(A)	2,052	3,048	4,117	5,994	7,338	10,387
前年比 增加(%)	(48.8)	(48.5)	(48.5)	(45.6)	(22.4)	(41.6)
總貸出金(B)	4,279	6,927	9,372	12,242	15,413	20,370
前年比 增加(%)	(64.8)	(61.9)	(35.5)	(30.6)	(25.9)	(32.2)
A/B(%)	48.0	44.0	43.9	49.0	47.6	51.0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政策金融(A)	14,556	19,579	25,767	36,116	60,627	84,530
前年比 增加(%)	(40.1)	(33.9)	(31.6)	(40.2)	(58.6)	(39.4)
總貸出金(B)	30,118	38,568	48,672	63,433	93,160	130,642
前年比 增加(%)	(47.9)	(27.0)	(26.2)	(30.3)	(46.9)	(40.2)
A/B(%)	48.3	50.8	52.9	56.9	65.1	64.7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9말
政策金融(A)	125,566	163,501	183,864	235,489	276,839	327,147
前年比 增加(%)	(48.5)	(30.2)	(12.5)	(28.1)	(17.6)	(18.2)
總貸出金(B)	184,172	240,294	296,185	346,663	396,118	464,007
前年比 增加(%)	(41.0)	(30.4)	(23.3)	(17.0)	(14.3)	(17.1)
A/B(%)	68.2	68.1	62.1	67.9	69.9	70.5

資料 : 韓國銀行.

12) 美國, 日本, 西獨 등의 先進國의 경우에는 政策金融을 運用하는 데 있어서 (1) 그 財源의 대부분이 租稅, 公債, 特定目的을 위한 基金 등을 바탕으로 조성되었고 (2) 政策金融은 주로 專擔機關에 의하여 供給되었으며 (3) Project審査制度를 엄격히 적용했다는 點에서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3. 政策金融의 經濟的效果와 問題點

政策金融의 本來의 目的이 非優先支援部門보다 優先支援部門의 經濟成長을 目標로 한다면 政策金融은 資金의 흐름을 변화시킴으로써 實物資源을 再配分하는 효과를 가져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財政 및 金融手段 등이 相互補完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政策金融에서 생기는 問題點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政治的 壓力에 의한 經濟性을 무시한 融資의 가능성이다. 둘째, 民間金融과의 競合에 의한 金融「메카니즘」의 正常的인 發展이 沮害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세째, 政策金融에 의한 資金效率과 社會的 公平의 矛盾이다. 政策金融의 目的上 農業, 中小企業 등 低生產性 또는 非近代的 部門에의 融資를 하는 경우로부터 延滯, 倒產의 危險이 큰 產業에 支援하는 경우 資金效率과 社會的 公平이 矛盾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네째, 政策金融과 金融政策의 矛盾이다. 어떤 特定分野에 融資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過大하게 되면 總需要管理政策으로서의 金融政策의 效果를 減殺하거나 無效化해 버리게 된다. 다섯째, 政策金融機關의 硬直性 重複·非整合性에 따른 資金配分의 非能率性이다. 이것은 特定의 目的을 갖는 專門政策金融機關이 設立되어도 經濟情況의 變化에 따라 再編成되지 않고, 또한 機能이 重複되거나 資金이 分散配分되는 것 등 政策金融 그 自體가 經濟與件 變化에의 적응이 지연되어 硬直化가 發生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問題點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金融·資本市場이 發達되어 있지 않아 制度·組織이 未熟한 한편 經濟情況의 變化가 급속하기 때문에 그 矛盾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政策金融의 問題點中에서 몇가지 主要한 事項에 관해서 說明하고자 한다.

가. 金融通貨政策과의 相衝問題

우리나라의 政策金融制度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各種 政府施策에 따른 產業造成資金需要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財源調達面에서도 政府의 財政資金 및 特殊銀行의 自體造成資金 이외에도 一般銀行의 金融資金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또한 政策金融에 대한 인위적인 低金利政策의 견지와 더불어 政策金融의 持續的인 增加는 곧 中央銀行으로 하여금 發券力에 의한 本源通貨의 供給擴大를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預金銀行의 政策資金取扱에 대한 韓銀의 貸出事情을 보면 81年末 現在 韓銀 總貸出金中 57.1%가 政策金融取扱에 따른 資金支援을 위하여 貸出되었으며, 이것은 本源通貨의 68.7%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후 韓銀의 再割에 의한 支援比重은 줄어 84年末에는 28% 水準에 머물렀으나 이는 本源通貨의 50.2%로서 여전히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金融緊縮下에서도 거의 자동적으로 貸出되는 결과 通貨인플레의 主因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制限된 成長通貨 供給餘力 가운데 政策金融이 팽창을 주도하여 中央銀行의 流動性調節能力을 크게 制約하여 通貨信用政策의 效率性을 低下시키는 것이다.

政策金融의 비대는 景氣調節을 위한 通貨信用政策의 伸縮的인 運用과 效果를 크게 제약하여 經濟不安定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輸出支援金融과 같은 자동적인 政策金融은 本源通貨의 創出로 그 財源이 조달되므로 反景氣調節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즉 輸出이 증가하면 總需要도 併行하여 팽창하기 때문에 供給餘力에 한계가 있는 한 經濟는 인플레의 壓力을 받게 된다. 현행 輸出支援金融制度下에서는 輸出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民間與信이 擴大되어 인플레의 壓力은 더욱더 加重된다.

中央銀行의 再割引이 허용되지 않는 政策·指示金融도 일단 그 支援規模가 결정된 후에는 景氣의 變動으로 金融緊縮의 必要性이 대두되어도 그 供給規模를 축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政策金融은 一般的으로 通貨管理의 硬直化 要因이 되고 있다.

通貨信用政策의 效率性을 沮害한 또 하나의 要因은 政策資金과 一般貸出間의 과도한 金利隔差를 들 수 있다. 1982年부터는 政策金融이 金利面에서는 一般金融의 경우와 差別이 없어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政策資金에 대한 優待金利幅은 1.5~8.0%의 수준으로 企業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金利負擔을 경감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低金利 政策은 資本蓄積이 부족한 開發途上國의 전형적인 經濟開發計劃實踐의 「패턴」대로 國民經濟的 優先支援分野에 대한 集中的인 資本投下를 통하여 지난 20年間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일단 成功的으로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貯蓄, 投資의 媒介機能이나 景氣調整機能 등 金利自體의 本源的 機能을 상실케 함으로써 金融構造, 金融市場 및 能動的인 金融政策展開에 많은 問題點을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政策金融에 대한 低金利政策은 資金에 대한 超過需要를 빚어내어 信用割當(credit rationing)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곧 政策事業에 편승하는 大企業에 대한 過剩貸出과 진정한 生產革新(innovation)을 할 수 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의 고갈을 초래하여 現在의 跛行的 經濟構造를 가지고 오는

〈表 6〉 政策金融의 實質金利 推移

(단위 : %)

	一般貸出[1] 金利(A)	延拂輸出 金利(B)	GNP「디플레이터」上昇率 (C)	實質金利 一般貸出 (A—C)	實質金利 延拂輸出 (B—C)
1974	15.5	6.0-7.0	29.5	−14.0	−23.5~−22.5
1975	15.5	7.0	25.7	−10.2	−18.7
1976	18.0	7.0-8.0	20.7	−2.7	−13.7~−12.7
1977	16.0	7.0-8.0	15.7	0.3	−8.7~−7.7
1978	19.0	7.0	21.9	−2.9	−14.9
1979	19.0	7.0	21.2	−2.2	−14.2
1980	20.0	8.0	25.6	−5.6	−17.6
1981	17.0	8.0-9.0	15.9	1.1	−7.9~−6.9
1982	10.0	9.0	7.0	2.9	1.9
1983	10.0	9.0	2.9	7.1	6.1
1984	10.0-11.5	9.0-10.0	4.0	5.9-7.4	4.9~5.9

註 : 1) 一般業體에 대한 預金銀行의 1年 以內 一般貸出.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85.
韓國輸出入銀行.

데 중요한 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나. 金融産業發展의 沮害

지금까지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運營에 있어서 가장 큰 短點은 그 經營과 業務運營面에서 市場原理가 결여되어 銀行業에 있어서의 金融革新이 너무도 적었다는 점인 것이다. 70年代에 들어와서 重化學工業이 추진되는 過程에서 企業投資에 대한 政府의 介入幅은 해마다 크게 擴大되었으며 各 部處는 거의 例外가 드물 정도로 政策金融의 種目을 追加하여 1978年頃에 이르러서는 5個市銀 및 外換銀의 總貸出金 增加額의 84.2%가 政策金融에 입각한 貸出이었으며 金融의 原則이 作用할 수 있었던 貸出은 總貸出의 불과 15.8% 內外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政策當局의 金融自由化 推進의 노력으로 1982年에는 純增基準으로 보아 政策金融의 絕對額이 減少하였으나 1983年 이후 다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一般銀行의 광범위한 政策金融參與에 따른 被動的인 資金運用은 一般銀行 經營의 自律性制約으로 資金運用의 效率性을 沮害하였던 것이다.

銀行은 私企業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나 公共的 性格의 입장으로 보나 企業의 投資事業의 內容에 第2次的 審査를 하는 役割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銀行經營에 있어서는 官의 介入幅이 擴大됨에 따라 그 審査權을 행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企業投資事業의 收益性, 貸出企業의 內容, 管理, 經營人의 人的事項과 業積의 파악, 資金用途의 監察 및 확인 등에 관한 銀行의 審査機能은 사실상 곤란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貸出審査의 부실로 불건전한 投資事業에 불건전한 貸出을 초래한 결과가 된 것이다.

또한 一般銀行에서의 各種 政策金融 取扱規模의 擴大는 超過支準을 保有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預貸마진 협소로 銀行의 收益性을 沮害하는 要因이 된 것이며 나아가서 이는 金融機關의 健全運營 및 大型化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 政策金融 支援體制의 效率性 缺如

원래 政策金融은 市場原理에 의한 金融이 불가능한 部門에 대한 金融支援을 制度的으로 强化하는 데 그 基本的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 政策金融制度에 있어서는 支援對象을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機構도 없으며 選定의 基準도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指示金融은 支援의 必要性이 발생하거나, 政府 각 部處의 요청에 따라 新設·廢止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政策金融制度는 현행 成長戰略에 비추어 輸出 및 重化學工業 등 成長先導部門 및 中小企業, 農水産業등과 같은 低生産性部門 이외에도 이와 관련이 미약한 部門을 포함하여 全

〈表 7〉 銀行産業과 製造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 比較

(단위 : %)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72~83 平均
市中銀行	0.39	0.43	0.59	1.04	1.11	1.47	1.16	1.04	10.4	0.95	0.34	0.18	0.84
製造業	3.75	7.88	5.59	3.78	4.55	4.39	4.39	3.24	−0.57	−0.51	0.88	3.07	3.42

産業部門을 優先支援部門化함으로써 經濟社會與件의 變化에 對應하는 優先支援部門의 伸縮的 調整이 미흡하였다.

政策金融은 輸出·重化學 등 소위 成長先導部門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部門은 大企業이 지배하는 관계로 支援金融은 大企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大企業 偏重體制는 현재 經濟力集中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社會政策的인 問題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행 産業支援體系가 法에 따라 重要産業을 規定하고 있으나 産業構造變化에 따라 그때 그때 중요한 戰略部門 選定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支援對象이 고정되어 있어 綜合調整機能이 미약하여 經濟與件에 따른 伸縮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다.

政策金融支援을 위한 事業選定基準의 不在로 동일한 目的의 支援金融이 과다하게 多岐化되어 있어 政策金融은 多部門, 少額支援體制의 性格을 띠고 있다. 이러한 性格은 支援效果를 미흡하게 할 뿐만 아니라 資金轉用의 素地가 되고 있다. 그리고 政府 各部處가 거의 政策金融에 간여하고 있기 때문에 政策金融의 補助的 性格 내지 官治性으로 關聯業界의 壓力이 從的行政分擔體制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擴大되었으며 限定된 資金을 多部門에 少額씩 골고루 配分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金融機關 不實債權의 累積

최근 不實企業들이 대거 表面化되고 있다. 不實化問題가 가장 심각한 産業으로서는 海運業, 海外建設, 合板, 纖維 등 이른바 不況 내지 斜陽産業으로서 이들 企業의 不實化된 原因을 살펴보면 企業側의 過剩投資, 政府의 差別的 支援, 지나친 金融依存에 의한 企業擴張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要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産業은 대부분 이른바 戰略産業으로서 지정되어 政府가 選別的으로 集中支援함으로써 크게 成長하였으나 우리 經濟의 構造的 變化로 이들 産業이 쇠퇴하게 되었고 政府의 支援없이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産業은 市場의 需要豫測이나 技術革新, 經營合理化 등에 의한 企業擴張이 아니라 政府의 政策金融支援이라는 손쉬운 金融支援에 의한 企業擴張으로 부채가 과다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産業을 政府가 支援하는 過程에서 銀行은 단순히 政府의 經濟計劃을 수행하는 媒介體로서만 존재하여 金融機關 고유의 貸出審査機能 등 金融自律性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現在 5個 市銀의 경우 不健全債權이 1984年末 現在 總與信의 9%를 점하고 있으며 自己資本의 1.65倍나 된다. 그리고 그 중 상당부분은 貸損處理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海外建設業 등 不實産業合理化過程에서 새로운 不健全債權이 크게 늘어날 可能性이 있고, 이로 인해 銀行의 自立成長 및 自律經營 기반이 弱化되어 金融自律化, 國際化가 지연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마. 政策金融의 效率性 問題

政策金融의 代表的 예인 船舶延拂輸出의 效率性 問題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船舶延拂輸出의 國民經濟的 收益效果를 分析해 보면 船舶延拂輸出의 所得誘發額이 海外借入을 감안하더라도 國民負擔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第4次計劃期間(77~81)中 船舶延拂輸出支援의 國民經濟的 效果를 韓國經濟의 社會的

割引率(13%)과 外資調達金利를 감안하여 推計해 보면 船舶延拂輸出에 따른 所得誘發額은 약 764.0百萬달러에 이르고 國民經濟的 負擔額(現價基準)은 636.8百萬달러에 이르므로 船舶延拂輸出金融支援의 國民經濟的 收益은 正의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약 127.2百萬달러). 한편 延拂輸出에 대한 低金利政策으로 인한 補助金的 性格의 支援額을 보면 1977年부터 1981年까지 約 81.4百萬달러가 된다. 따라서 이 期間中 延拂輸出의 國民經濟的 收益의 正의 效果는 補助金的 性格의 支援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있다.

第5次計劃期間中 1982~85年間 國民經濟的 負擔額은 1,778.9百萬달러(現價基準)가 되는 반면 船舶延拂輸出에 따른 所得誘發額은 2,515.7百萬달러에 달하여 約 736.8百萬달러의 正의 國民經濟的 收益效果를 나타내고 있다(補助金 性格의 支援額 37.1百萬달러를 감안하더라도 699.7百萬달러의 國民經濟的 收益效果가 있다고 하겠음).

〈表 8〉 延拂輸出의 國民經濟的 負擔

(단위 : 100萬달러)

	船舶延拂輸出額 (A)	延拂支援額 (B)	所得誘發額 (C)	國民經濟的 負擔額		純效果 (E=C−D)
				名目負擔額	現價負擔額 (D)	
1977	149	107.3	77.9	63.9	44.9	33.0
1978	175	126.0	91.4	86.3	60.7	30.7
1979	269	193.7	140.6	155.9	109.6	31.0
1980	303	218.2	158.3	194.2	136.5	21.8
1981	566	407.5	295.8	405.5	285.1	10.7
小計	1,462	1,052.7	764.0	905.8	636.8	127.2
1982	1,053	758.2	550.3	636.9	447.7	102.6
1983	1,005	723.6	525.2	513.7	361.1	164.1
1984	1,227	919.4	667.3	666.5	468.5	198.8
1985	1,479	1,064.9	772.9	713.5	501.6	271.3
小計	4,814	3,466.1	2,515.7	2,530.6	1,778.9	736.8
計	6,276	4,518.8	3,279.7	3,436.4	2,415.7	864.0

註 : 1) 輸出支援額의 內資 : 外資比率은 50 : 50으로 假定
2) 融資比率 : 72%
〔{100−20%(基準先受金率)}×90%=72%〕
3) 平均貸出回收期間 : 5年
1年(建造期間) + $\frac{8年(最長期貸出期間)}{2}$ =5年
4) 원貨의 機會費用 : 13%로 가정
5) 外貨의 機會費用 : 3個月物 LIBOR의 매월말 平均値 사용
1977年 : 6.2% 1978年 : 9.0% 1979年 : 12.1%, 1980年 : 14.2%
1981年 : 16.6% 1982年 : 13.0%, 1983年 : 9.6%, 1984年 : 10.1%, 1985年 : 8.5%
6) 韓國經濟에 있어서 船舶業의 附加價値 誘發係數 0.568, 所得發誘額은
base를 $A\times${融資比率(0.72)+基準先受金率(0.2)}로 적용
7) 國民經濟的 名目負擔額算式 : $0.5\times B\{(1+0.13)^5-1\}+0.5\times B\{1+\mathrm{LIBOR})^5-1\}$
8) 現價算式 : 國民經濟的負擔額$\times\frac{1}{n}\left[\frac{1-(1+i)^{-n}}{i}\right]$
(i=割引率, n=期間)

다음에는 槪略的으로 製造業部門에 대한 金融支援이 國民所得의 附加價値創出面에서 效果的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1982年부터 1984年 동안 金融機關에 의해서 製造

〈表 9〉 補助金 性格의 支援額(延拂輸出金融)

(단위 : 100萬달러)

	延拂輸出支援額	金利差		補助金
		內資(%)	外資(%)	
1977	107.3	9(16-7)	△0.8(6.2-7)	4.4
1978	126.0	12(19-7)	2.0(9.0-7)	8.9
1979	193.7	12(19-7)	5.1(12.1-7)	16.4
1980	218.2	12(20-8)	6.2(14.2-8)	19.9
1981	407.5	8(17-9)	7.6(16.6-9)	31.8
小計	1,052.7			81.4
1982	758.2	1(10-9)	4.0(13.0-9)	19.0
1983	723.6	1(10-9)	0.6(9.6-9)	5.8
1984	919.4	1(10-9)	1.1(10.1-9)	9.7
1985	1,064.9	1(10-9)	△0.5(8.5-9)	2.6
小計	3,466.1			37.1
計	4,518.8			118.5

註 : 輸出支援額의 內資 : 外資比率은 50 : 50으로 假定했음. 延拂金利는 輸出入銀行實行金利이며 內資金利는 一般貸出金利이고 外資金利는 3個月物 LIBOR의 매월말 평균치 적용

〈表 10〉 製造業 附加價値額의 對貸出額 比重

(단위 : %)

	第1次計劃 (1962~66)			第2次計劃 (1967~71)			第3次計劃 (1972~76)			第4次計劃 (1977~81)			第5次計劃 (1982~84)		
	純貸出額[1] 比重	附加[2] 價値 比重	相對的[3] 貸出 比重	純貸出額 比重	附加 價値 比重	相對的 貸出 比重	純貸出額 比重	附加 價値 比重	相對的 貸出 比重	純貸出額 比重	附加 價値 比重	相對的 貸出 比重	純貸出額 比重	附加 價値 比重	相對的 貸出 比重
製造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飮食料品	12.3	28.9	0.4	9.0	28.2	0.3	9.4	22.4	0.4	3.9	20.0	0.2	5.9	20.7	0.3
纖維·衣服 및 가죽	27.4	25.2	1.1	22.3	21.4	1.0	29.7	21.7	1.4	20.3	17.8	1.0	16.8	17.0	1.0
나무 및 나무 製品	5.1	3.7	1.4	9.8	3.3	1.9	2.8	2.3	1.2	3.6	1.5	2.4	4.1	1.1	3.7
종이 및 印刷出版	6.9	7.2	0.9	5.3	5.5	1.0	4.5	4.6	1.0	5.3	3.7	1.4	5.7	3.3	1.7
化學·石油·石炭 고무 및 플레스틱	17.0	13.5	1.3	17.1	18.8	0.9	14.8	19.3	0.8	16.6	21.5	0.8	14.5	21.9	0.7
非金屬鑛物製品	6.7	4.7	1.4	5.6	4.9	1.1	4.8	4.2	1.1	5.8	4.7	1.2	3.3	4.9	0.7
第1次 金屬	3.3	3.6	0.9	4.9	2.1	2.3	11.8	3.9	3.0	14.0	6.4	2.2	10.1	7.3	1.4
金屬製品·機械및裝備	15.9	11.9	1.3	16.0	13.6	1.2	19.4	18.9	1.0	26.2	22.2	1.2	36.8	21.9	1.7
其他 製造業	5.4	1.3	4.1	10.0	2.2	4.5	2.8	2.7	1.0	4.3	2.2	1.9	2.8	1.9	1.5
全產業에 대한 製造業의 比率	46.3	16.4	2.8	49.9	20.3	2.5	59.9	25.8	2.3	54.7	28.0	1.9	32.0	28.1	1.1

註 : 1) 新規貸出額에서 貸出回收額을 差減한 것을 말하며 預金銀行과 產銀貸出金 包含.
2) 經常價格基準
3) 純貸出額比重／附加價値比重

資料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各年度 및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產業銀行, 『調査月報』, 各號.

業部門에 供給된 純貸出額은 4兆3,431億원으로서 全産業中에서 32.0%를 占하고 있는 데 비하여 製造業이 同期間中에 創出한 附加價値는 49兆7,485億원으로서 全産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불과하여 製造業部門에 供給된 資金이 상대적으로 非效率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製造業部門이 全産業部門中에서 金融機關으로부터 支援받은 純貸出額比重과 創出한 附加價値比重을 보면 1次計劃에서부터 4次計劃에 이르기까지 製造業部門에 대한 金融支援이 同部門에서 創出한 附加價値額에 비해 2倍 이상 非效率的으로 配分되었음을 알 수 있다. 製造業部門中 가장 많은 附加價値를 創出한 部門은 第4次計劃 이후 化學·石油部門과 組立金屬製品部門이나 同部門에 支援된 金融資金과 상대적 비중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組立金屬製品部門이 化學·石油部門보다 資金이 非效率的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 製造業部門에 대하여 낮은 金利로 集中的인 政策金融이 支援되었기 때문에 企業은 技術革新에 의한 生産性向上을 圖謀하는 데 소홀히 하였고 주어진 生産要素賦存에 비하여 지나치게 資本集約的인 投資를 誘導하게 되어 國民經濟의 總資源이 非效率的으로 轉用되어 成長潛在力을 蠶食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産業構造를 高度化시키기 위하여 政府가 소위 戰略産業 및 業種을 金融稅制 등의 政策手段을 사용하여 支援하는 경우에 이러한 産業을 선정하는 過程에 政策當局의 恣意性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에 産業別 또는 業種別 支援體制는 製造業의 動態的 比較優位構造를 잘못 誘導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13].

바. 産業의 效率性 評價와 效率基準線

이번에는 視角을 바꾸어 效率基準線 模型을 設定하여 政府가 支援, 育成한 우리나라 産業의 效率性을 評價하기로 한다.

어떤 시점의 附加價値는 勞動費用과 資本費用의 두 가지로 나뉘며,

$$X_i = W_i L_i + R_i K_i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

$i = 1, 2, 3, \cdots, n$

X : 附加價値 生産額,

W : 名目賃金率,

L : 勞動投入量, R : 資本收益率,

K : 資本投入量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의 各變數들은 相互獨立的이 아니고 依存的이며, X_i, L_i, K_i는 一般的으로 生産技術에 의해 결정되는 生産效率을 표시하고 W_i, R_i는 各産業의 生産物市場 내지 生産要素市場에서의 力關係(販賣獨占, 購買獨占 등)의 問題를 통해서 결정되는 價格形成力이라고 볼 수 있다.

(1) 式의 양변을 L_i로 나누면,

$$(X_i/L_i) = W_i + R_i(K_i/L_i) \cdots\cdots\cdots\cdots (2)$$
$$i = 1, 2, 3, \cdots n$$

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어떤 시점의 各産業에서의 勞動(附加價値) 生産性(X_i/L_i), 勞動의 資本裝備率(K_i/L_i)의 data를 구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Cross-section data를 이용해 $X_i/L_i = \alpha + \beta(K_i/L_i)$의 절편 α 및 기울기 β를 추정하여 그 추정된 直線方程式을 産業間 效率基準線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13) 金廣斗 外, 『金融革新과 通貨金融政策 改編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5.

〔圖 2〕 産業間 效率基準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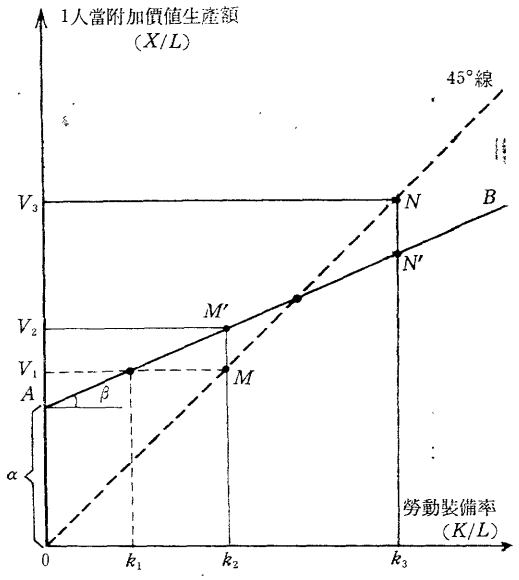

〔圖 2〕에서 直線 AB는 産業間 效率基準線이고 截片 α는 産業全體에 대한 平均賃金率 $\bar{W}$를, 기울기 β는 平均資本收益率 R를 표시한다. 産業間 效率基準線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M産業과 N産業의 두 Case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M産業은 基準線 AB보다 下方의 M點에 위치하여 실제 生産費用投入에 의하여 얻어지는 附加價値額이 기준선상의 M'點에 위치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되며 그 차이는 (V_2-V_1)이다. 바꾸어 말하면 V_1만큼의 종업원 1人當 附加價値額을 얻는 데 있어서의 M産業의 勞動裝備率(資本集約度)은 平均的으로 k_1이므로 M産業은 (k_2-k_1)만큼 生産要素를 過剩使用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N産業에 사용된 生産要素는 M産業과는 대조적으로 성과에 비해 과소하게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M産業은 상대적인 非效率産業, N産業은 效率産業으로 평가·분류될 수 있겠으며 이는 특정시점의 産業間 資源配分을 靜態的으로 분석·파악한 것이 된다. 한편 效率基準線에 의한 評價分析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연장하면 투입단위당 附加價値가 상대적으로 낮은 非效率産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效率産業으로 資本이나 勞動이 이동하여 오는 process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政策評價로서는 戰略産業의 效率性을 計劃期間에 걸쳐 각 시점의 效率基準에 의해 動態的으로 評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와같은 效率基準線 모델에 의해 우리나라의 各次 經濟計劃 마지막 年度인 1966, 1971, 1976, 1981年과 1984年의 産業間效率性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表 11)[14].

여기서 상대적인 效率産業, 非效率産業의 임의적인 區分基準으로서는 동일한 量의 生産要素를 투하할 경우의 效率基準線上의 附加價値生産額의 110%를 초과하면 效率産業, 90% 미만이면 非效率産業, 90~110% 이내에 들면 平均産業으로 분류하여 종합하여 보면(表 12) 政府主導의 不均衡成長이 가장 심하였다고 할 수 있는 1976年(3次計劃의 마지막 年度)을 분수령으로 해서 變化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14) 各年度의 效率基準線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6) $(X/L)=44.1781+0.7101(K/L)$
(1.6145) (16.7482)
$R^2=0.9460$, $D\text{-}W: 2.4045$

(1971) $(X/L)=309.023+0.3104(K/L)$
(6.2127) (18.6491)
$R^2=0.9255$, $D\text{-}W: 1.0880$

(1976) $(X/L)=221.253+0.7934(K/L)$
(0.8641) (15.8834)
$R^2=0.9001$, $D\text{-}W: 1.6882$

(1981) $(X/L)=1,642.92+0.5517K/L)$
(21.5155) (10.2576)
$R^2=0.7878$, $D\text{-}W: 1.1059$

(1984) $(X/L)=2,544.69+0.5166(K/L)$
(3.3694) (9.9188)
$R^2=0.7785$, $D\text{-}W: 1.1842$

여기서 ( )內는 t-statistic이고, 截片의 단위는 1,000원이다.

〈表 11〉 效率産業과 非效率産業의 推移 (1)

○ : 效率産業　× : 非效率産業　△ : 平均産業

産業名[1]	1966		1971		1976		1981		1984			效率性指數平均
	效率性指數[2]	分類[3]	效率性指數	分類	效率性指數	分類	效率性指數	分類	效率性指數	圖3의 番號	分類	
食料品(311)	0.9983	△	0.9052	△	1.0327	△	1.1271	○	0.9379	1	△	0.9993
飮料品(312)	1.3198	○	1.6466	○	1.2234	○	1.1357	○	0.9544	2	△	1.2560
纖維(321)	0.8048	×	0.6522	×	0.6578	×	0.9175	△	0.8202	3	×	0.7705
衣服類(322)	0.8923	×	0.8605	×	1.5310	○	1.1258	○	1.0613	4	△	1.1446[4]
	(靴類·衣類·裝身品)											
가죽 및 毛皮製品(323)	1.1224	○	0.9993	△	1.2129	○	1.1431	○	1.2391	5	○	1.1434
	(皮革 및 皮革製品)		(가 죽)		(가 죽)							
신 발 類(324)			0.7753	×	2.2377	○	1.1806	○	0.8107	6	×	1.2511[4]
나무 및 콜크제품(331)	0.8434	×	0.6715	×	0.5894	×	0.6999	×	0.5841	7	×	0.6777[4]
	(製材 및 木材品)		(제 재)		(제 재)		(제 재)					
家具 및 裝置物(332)	1.1799	○	1.0956	△	1.6784	○	1.3885	○	1.0254	8	△	1.2736
	(家具 및 裝置品)		(가 구)		(가 구)							
종이 및 종이製品(341)	1.1854	○	1.1121	○	1.0061	△	0.6251	×	0.8640	9	×	0.9585
	(紙類 및 紙類製品)		(종 이)		(종 이)							
印刷·出版(342)	0.8524	×	1.3129	○	1.4765	○	1.8394	○	1.1075	10	○	1.3177
産業用化合物(357)	1.0499	△	0.9415	△	0.8991	×	0.8638	×	0.9474	11	△	0.9130[4]
	(化學 및 化學製品)		(공업용화학)		(공업용화학)		(산업용화학)					
其他化學製品(352)			1.9791	○	2.0324	○	1.8424	○	1.4326	12	○	1.8216[4]
			(기타 화학)		(기타 화학)							
石油精製(353)			1.0488	△	1.1381	○	1.2835	○	1.4399	13	○	1.2276[4]
其他石油및石炭製品(354)	1.0253	△	1.2813	○	0.8180	×	2.5992	○	1.6069	14	○	1.4661
	(石油 및 石炭製品)		(연 료 탄)		(연 료 탄)		(연 탄)					
고무製品(355)	0.9018	△	0.7997	×	1.2401	○	1.8145	○	1.0114	15	△	1.1535
			(고 무)		(고 무)							
플라스틱 製品(356)			1.4668	○	1.2994	○	1.0286	△	1.1743	16	○	1.2423[4]
陶磁器및土器(361)			0.5612	×	0.6659	×	1.0892	△	0.9176	17	△	0.8085[4]
			(도자기 및 점토)		(도자기 및 점토)		(도자기 및 점토)					

〈表 11-1〉 效率産業과 非效率産業의 推移(2)

○ : 效率産業　× : 非效率産業　△ : 平均産業

産業名[1]	1966		1971		1976		1981		1984			效率性指數平均
	效率性指數[2]	分類[3]	效率性指數	分類	效率性指數	分類	效率性指數	分類	效率性指數	圖3의 番號	分類	
유리 및 유리製品(362)	0.7802 (土石 및 유리製品)	×	0.7887 (유 리)	×	1.2020 (유 리)	○	0.8616 (유 리)	×	1.1457	18	○	0.9995[4]
其他非金屬鑛物(369)			0.7989 (기타 광물)	×	0.5735 (기타 광물)	×	0.6569	×	0.8866	19	×	0.7302[4]
鐵鋼(371)	1.1028 (第1次 金屬)	○	0.6438 (제1차철강)	×	0.4592 (제1차철강)	×	0.6709 (제1차철강)	×	0.6647	20	×	0.7093
非鐵金屬(372)			1.1148 (제1차비철)	○	1.2031 (제1차비철)	○	0.6077 (제1차비철)	×	0.7276	21	×	0.9133[4]
組立金屬製品(381)	1.6824 (金屬 製品)	○	0.9915 (금속 제품)	△	1.2160 (금속 제품)	○	0.8512	×	1.1121	22	○	1.1714
機械(382)	0.7602	×	0.7474	×	1.0110	△	0.7984	×	0.9103	23	△	0.8455
電氣 및 電子機器(383)	0.9701 (電氣 機器)	△	1.3133 (전기기계기구)	○	1.4283 (전기기계기구)	○	1.1307 (전기기계기구)	○	1.1058	24	○	1.1896
運輸裝備(384)	0.8038 (輸送用機器)	×	1.3992 (수송 장비)	○	0.7218 (수송 장비)	×	0.8209	×	0.9471	25	△	0.9386
精密機器(385)			1.1979 (기타기계기구)	○	1.6156 (기타기계기구)	○	1.1757 (기타기계기구)	○	0.0295	26	△	1.2546
裝身具 및 關聯製品(391)			0.9423 (사무 및 회화용품)	△	1.9003 (사무및회화용품)	○	0.9500	△	0.7295	27	×	
樂器(392)			0.7017	×	1.2618	○	0.8113	×	1.1138	28	○	0.9722
運動 및 競技用具(393)			0.8310 (가 발)	×	0.8558 (가 발)	×	1.1783	○	1.0634	29	△	
其他(399)			0.6084	×	1.5528	○	1.0896	△	0.9678	30	△	

註 : 1) ( )內는 「韓國標準産業分類」上의 分類番號

2) 實際 1人當 附加價値生産額을 效率基準線上의 附加價値生産額으로 나누어 구한 값.
( )內는 業種分類名이 다른 경우의 業種名

3) 效率性指數가 1.1을 초과하면 效率, 0.9 未滿이면 非效率, 0.9~1.1 以內이면 平均産業으로 分類

4) 1966年을 제외한 年度의 平均値

資料 : 韓國銀行, 『기업경영분석』, 各年度.

알 수 있다. 먼저 效率 및 非效率産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커지고(1966年 72.1%에서 1976年 90.0%) 平均産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줄어드는(1966年 27.8%에서 1976年 10.0%) 추세에 있었으나, 1976年을 고비로 效率 및 非效率産業의 比重이 줄어들고(1981年 83.4%, 1984年 60.0%) 平均産業 比重이 增加하였을(1981年 16.7, 1984年 40.0%) 뿐만 아니라 1984年의 경우에는 거의 반에 가까운 産業이 平均産業의 範圍에 들고 效率 및 非效率産業이 서로 비슷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66年과 1971年에는 效率産業보다 非效率産業의 比重이 컸지만(각각 33.3% 對 38.9%, 33.3%對 43.3%), 1976年에는 그 比率이 큰 폭으로 역전되어 1981年과 1984年에도 계속해서 效率産業이 非效率産業에 비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表 13〉에서 볼 수 있듯이 平均賃金率을 표시하는 截片은 계속 增加해 왔으며, 平均資本收益率을 나타내는 기울기는 上下의 폭이 있지만 下落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최근의 우리나라 經濟가 安定 또는 均衡成長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하며, 한편으로는 과거의 經濟開發政策이 우리나라 産業의 전반적인 效率化를 이룩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表 11〉에서 1984年의 産業別 效率性을 評價해 보면, 效率産業으로는 가죽 및 毛皮製品, 印刷·出版, 樂器 등 在來型産業과 其他化學製品, 石油精製, 其他 石油 및 石炭製品, 플라스틱製品, 유리 및 유리製品 등의 素材産業 및 組立金屬製品, 電氣 및 電子製品 등이며, 非效率産業으로는 斜陽化되고 있는 纖維, 신발類, 종이 및 종이製品과 持續的인 非效率産業인 나무 및 「콜크」製品, 그리고 鐵鋼, 非鐵金屬의 近代的 에너지多消費型産業이 포함되어 있다(圖 3에 圖示됨). 1966年 및 1971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勞動集約的 産業構造에서 資本, 原材料, 技術 내지 知識集約的 産業으로 바뀌어 온 흐름을 볼 수 있으며 현재의 世界經濟의 構造變化趨勢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高度化努力이

〈表 12〉 産業構造의 推移

(단위 : 個, %)

	1966	1971	1976	1981	1984
效率産業	6(33.3)	10(33.3)	18(60.0)	14(46.7)	10(33.3)
非效率産業	7(38.9)	13(43.3)	9(30.0)	11(36.7)	8(26.7)
平均産業	5(27.8)	7(23.3)	3(10.0)	5(16.7)	13(40.0)
合計	18(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註 : ( )內는 構成比.

〈表 13〉 效率基準線의 절편과 기울기

	1966	1971	1976	1981	1984
截片(千 원)	44.18	309.02	233.94	1,654.92	2,544.69
기울기	0.7101	0.3104	0.7932	0.5512	0.5166

〔圖 3〕 産業間 效率基準線(198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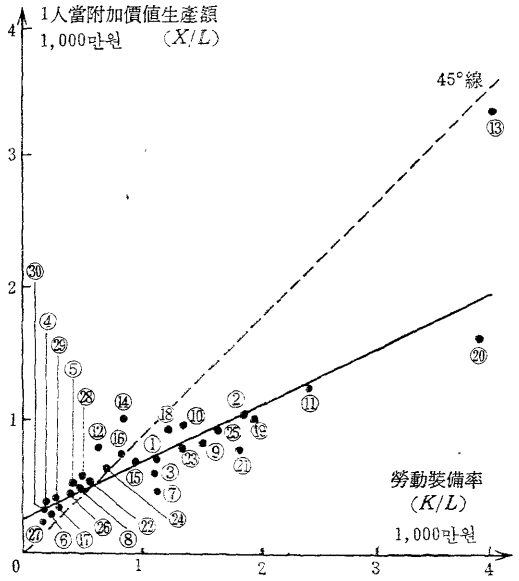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纖維와 같은 産業은 60年代와 70年代 초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에 큰 기여를 한 産業임에도 불구하고 1981年(平均産業으로 분류됨)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非效率産業에 속해 있으며 效率性指數도 平均 0.7705를 나타냄으로써 그 效率性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品質高級化 및 製品多樣化 등을 통한 高附加價値化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鐵鋼이나 非鐵金屬은 經濟開發過程에서 戰略産業으로 지정되어 그 育成이 강조되어 온 産業인데도 非效率産業에 속해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多消費型産業이 정체 내지 非效率化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으며, 또한 고도의 독과점산업이라는 점도 非效率化된 원인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끝으로 1960年代 이후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效率産業과 非效率産業을 살펴보면 飮料品(1984年, 平均産業), 가죽 및 毛皮製品(1984年, 平均産業), 印刷·出版(1966年, 非效率産業), 其他化學製品, 石油精製(1984年, 平均産業), 플라스틱(1984年, 平均産業), 電氣 및 電子機器(1966年, 平均産業) 등이 전반적으로 效率的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纖維(1981年, 平均産業), 나무 및 「콜크」製品, 기타 非金屬鑛物, 鐵鋼, 機械(1976, 84年, 平均産業) 등이 非效率的인 産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사실은 政府主導의 經濟運用下에서 이른바 先導産業으로 불리워 投資財源이 우선 配分되었던 纖維, 鐵鋼, 機械, 造船(運輸裝備에 포함되어 있는데, 推計해 본 결과 效率性指數가 0.8 정도임) 등의 産業이 전반적으로 非效率産業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效率性指數의 平均도 0.7~0.8에 그침으로써 政府主導의 인위적인 投資財源配分이 經濟全體의 效率性을 歪曲 내지 沮害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重化學投資가 집중되었던 4次計劃末年度인 1981年에 오히려 重化學工業部門의 非效率化가 가장 심했다는 것이다.

Ⅳ. 産業發展을 위한 産業金融

1. 市場經濟原理와 産業政策의 轉換

産業政策은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계속 유지 배양하고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强化시켜 急變하는 産業環境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附加價値生産性

이나 比較優位, 産業聯關關係, 雇傭效果 등을 고려한 最適産業構造를 결정하고 市場競爭原理에 의한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기함으로써 우리나라 實情에 가장 適合한 産業構造 高度化를 實現하고 産業發展을 强化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達成하기 위한 産業政策의 方向은 현재의 自律·開放化政策이 持續的으로 추진되어 市場機能을 이용한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그리고 産業體質의 强化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投資決定에 있어서 企業의 自主性과 投資結果에 대한 책임을 企業人이 스스로 지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産業政策의 基調가 政府의 直接的·命令的 介入에서 間接的, 誘導的으로 轉換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産業活動에 대한 政府의 커다란 役割과 機能을 要하는 産業政策의 實施는 産業의 合理的 發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限時的, 最少限으로 행해져야 한다. 향후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産業政策의 重點은 成長産業의 育成과 斜陽 및 構造不況産業의 合理的 調整을 위한 構造調整政策, 技術水準向上을 위한 産業技術開發政策,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誘導를 위한 産業金融 및 産業組織政策에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産業金融政策은 自由化를 추구하는 政策基調에 맞추어 成長産業이나 有望幼稚産業에 대한 金融支援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金融支援方式을 종래의 個別特定産業의 重點支援形態에서 市場原理를 존중하는 投資活動 또는 技術開發 등 機能的 支援形態로 轉換하여야 한다. 특히 企業의 投資活動 促進을 위한 設備金融, 斜陽 및 構造不況産業의 合理化 支援,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支援 등을 위한 金融機能이 强化되어야 한다. 그리고 産業政策을 立案, 實施하는 데 있어서 政策當局은 政策判斷 基準으로서 經濟的 效率 이외에 國民經濟的 입장에서 본 衡平性 基準을 함께 고려하여 政策을 決定해야 할 것이다.

2. 政策金融의 改善方向

가. 政策方向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政策金融은 市場의 失敗, 經濟開發戰略, 機會의 不均等이 存在하는 한 그 存在의 必要性이 있다. 그러나 政策金融의 適正水準이나 支援對象은 理論的으로는 결정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經濟社會的인 與件, 經濟運營에 있어서의 政府의 役割에 따라 결정될 問題이다.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政策金融은 政府가 經濟開發의 主體로서 資源配分에 直接的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점차 肥大化되어 왔고 앞으로도 經濟運用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이 바뀌지 않는다면 政策金融의 縮小 調整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價格機構에 바탕을 둔 市場經濟에 있어서 政策金融은 金融市場이 미칠 수 없는 部門에 대한 資金供給과 支援을 위해 商業金融制度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選別的으로 運營되어야 한다.

더우기 우리는 産業構造高度化政策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政策金融의 固有機能은 産業政策과 관련하여 존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일시에 整備하거나 완전히 一般金融化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副作用도 또한 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國民經濟의 成熟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選別金融政策의 領域을 줄여가면서 價格機構의 自動調節機能을 회복하여 資源의 最適配分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같은 方向下에서 必要 最小限의 범위내에서 政策金融을 彈力的으로 運營함으로써 새로운 經濟社會의 變化에 伸縮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金融市場에 있어서 資金의 需給이 價格機構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金利의 自由化를 포함하는 金融自律化가 持續的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政策金融의 改善方向은 결국 商業金融의 役割과 領域을 擴大함으로써 支援規模와 對象을 점진적으로 縮小調整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金融機關의 責任經營體制가 確立되고 金利의 彈力的 運用을 통한 長期設備資金의 供給이 擴大되어야 한다. 특히 金融自由化와 關聯하여 强調되어야 하는 점은 市場經濟의 活性化와 資源配分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서는 金利뿐만 아니라 實物部門의 相對價格의 歪曲이 是正되어야 한다. 예컨대 過大平價된 換率下에서 輸出伸張을 위한 輸出支援金融, 二重穀價制에 따른 糧特赤字, 庶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生必品 生産者들의 보조 등이 바로 非現實的인 相對價格으로 發生하는 政策金融의 팽창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政府는 市場機能에 맡길 수 있는 分野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여하지 말고 政府本然의 機能인 社會保障, 公害防止, 公共財의 生産 및 市場價格機構의 審判者로서의 役割에 보다 重點을 두고 經濟成長을 先導하고 主導的인 役割을 했던 종래의 慣行을 점차 탈피해야 한다.

나. 政策金融 支援對象의 縮小 調整

政策金融 對象은 商業베이스에 의한 金融運用이 不可能한 分野로 가급적 制限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政策金融의 對象이 될 分野는 公害防止, 災害復舊資金 등 社會政策的 見地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基幹産業育成, 技術開發 및 産業合理化 등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推進되어야 할 사업에 限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原則的으로 政策金融은 財政 및 政府所有 特殊金融機關에서 擔當하도록 하고 韓國銀行 및 一般銀行에 의한 政策金融取扱은 점진적으로 縮小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政策金融의 支援對象을 補助金의 支援이 필요한 部門과 可用資金의 確保가 필요한 部門으로 나누어 補助金支援의 性格을 갖는 경우의 財源을 전적으로 財政에서 負擔토록 하여야 한다.

政策金融을 어떻게 運營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전반적인 産業支援의 方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政策金融의 支援도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産業支援政策의 테두리안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調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政策金融과 産業政策間의 連繫性을 强化한다는 취지에서 政策金融支援對象에 포함시킬 수 있는 一般原則은, (1) 産業의 高度化, 競爭力强化를 위하여는 特定業種中心의 集中支援方式과 投資計劃 및 實需要者 選定에 政府가 直接的으로 介入, 決定하는 方式을 止揚함으로써 能率的인 競爭原理에 의하여 技術革新과 體質改善이 促進되고 競爭力있는 企業이 가려지도록 하며, 다만 우리의 經濟與件에 적합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國際競爭力의 확보가 명백히 예견되어 장래의 輸出主宗産業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幼稚産業部門에 대하여는

部分的으로 競爭原理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支援施策이 合理化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效果的인 幼稚產業育成을 위해서는 그 선정을 위한 엄격한 審査가 필요함은 물론 幼稚產業의 支援은 豫示的 내지 段階的으로 規模를 縮小하는 限時的 方法이어야 한다. (2) 競爭力强化의 기본인 技術革新, 人力開發의 强化 및 「에너지」節約的 工業構造의 確立을 위한 支援이 필요하다. (3) 產業組織面에서 中小部品工業 등 中小企業의 重點育成을 통해 產業高度化의 저변을 擴大하여야 할 것이다.

다. 政策金融 支援體制의 整備

現在의 經濟與件에 비추어 政策金融의 急激한 縮小調整은 곤란하므로 우선 複雜多岐化되어 있는 政策金融의 支援機關과 支援方式을 再調整할 필요가 있다. 原則的으로 政策金融의 財源은 國民投資基金, 財政資金, 그리고 特殊銀行資金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資金의 범위내에서 政策金融의 上限線을 정하고 각 支援事業別로 배정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먼저 一般銀行의 政策金融 範圍를 縮小해야 한다. 一般銀行의 政策金融參與는 韓銀再割對象이 되는 政策金融의 取扱과 國民投資基金에 대한 出捐에 限定하여야 한다. 그리고 一般銀行의 國民投資基金 出捐도 점진적으로 縮小調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現在 一般銀行이 取扱하고 있는 政策金融은 特殊銀行 및 國民投資基金에 移管해야 한다. 한편 重化學工業등으로 限定되어 있는 國民投資基金의 支援對象部門을 擴大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으로 一般銀行은 자발적으로 政策金融支援對象에 資金을 供給할 수 있도록 誘導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제도로서는 政府系機構에 의한 貸出支給保證制 또는 貸出保險制 導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產業銀行을 위시하여 일부 特殊銀行은 政策金融에 專門化된 機關으로 育成하되 融資對象, 條件, 金額 등 資產運用에 관련된 施策別 規模內에서 特殊銀行이 自律的으로 결정토록 하여 經營自律性을 提高하는 制度上의 改編이 推進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 韓國銀行의 政策金融 參與를 縮小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本源通貨創出에 의한 產業支援은 인플레를 야기시키는 根本原因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政策金融 가운데 輸出支援金融을 縮小해야 하는데 그것은 輸出目標를 設定하고 推進하는 現在의 輸出政策에 큰 轉換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輸出支援金融은 稼得額 中心의 支援體制로 轉換되어야 한다. 이는 年間 輸出目標設定과 支援에 의해 무리하게 目標를 達成하려는 輸出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本源通貨 增發에 의한 政策金融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먼저 輸出用原資材輸入金融의 關聯어음의 再割制度를 廢止해야 한다. 輸出用原資材 關聯어음의 경우 短期的으로는 金融機關 自體資金으로 取扱하게 하거나 貿易信用에 의한 輸入을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農水產物 輸出準備資金은 廢止하고 이를 農水產物 價格安定基金에서 專擔도록 한다. 결국 輸出支援金融은 縮小되는 方向으로 政策運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輸出支援金融의 自動再割制度 廢止時期를 豫示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政策金融取扱規模의 綜合的인 調整體制를 確立하는 것이 요청된다. 國民投資基金, 財政資金, 기타 特殊銀行 可用資金으로 政策金融 總運用規模를 정하고 同金額을 限度

로 하여 各事業別로 配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企業의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資本市場의 活性化를 통한 直接金融의 擴大를 도모하고 「벤쳐캐피탈」의 擴充이나 信用保證制度를 補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不實企業 및 銀行의 不實債權 整理

企業不實化는 銀行이 不實債權을 過多保有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銀行의 不實化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에도 成長政策을 추진하는 過程에서 企業의 過剩投資와 不況으로 인해 발생한 不實企業 波動을 '8·3 措置'나 '重化學投資調整'이라는 非常經濟措置로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으나 現在 當面하고 있는 不實企業 問題는 새로운 比較優位를 찾기 위해 産業構造調整이 進行되고 있는 轉換期에 企業이 적절히 對應하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最近 問題가 된 不實企業들은 市場의 需要豫測이나 技術革新, 經營合理化 등에 의한 企業擴張이 아니라 政府의 政策金融支援이라는 손쉬운 金融依存에 의한 企業擴張으로 負債가 過多하게 된 것이며, 특히 이러한 産業을 政府가 支援하는 過程에서 銀行은 단순히 政府의 經濟計劃을 수행하는 媒介體로서만 存在하여 金融機關 고유의 貸出審査機能 등 金融의 自律性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政策當局이 不實企業을 整理하는 데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서 推進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不實企業의 整理는 基本的으로 근본해결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 社會的 영향이 심대하고 對內外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最善의 方法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漸進的으로 接近하여 社會的費用이 最小化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不實企業 整理는 臨機應變式이 아닌 正攻法으로 法과 制度 마련이 先行되어야 한다.

세째, 不實企業을 整理한다는 것이 새로운 特惠나 企業集中을 深化시켜 또다른 不實企業發生의 可能性을 內包해서는 안된다.

네째, 不實企業의 整理에는 일정한 기준 및 원칙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理由가 提示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政府의 무리한 介入보다는 企業自體에 의해 결정하도록 誘導하여야 한다.

다섯째, 不實企業 整理問題를 短期的으로는 銀行의 不實債權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까닭은 지금까지 實物部門의 經濟成長을 支援하기 위한 銀行의 희생과 負擔이 限界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銀行의 自立成長基盤을 强化하지 않고는 資源配分의 效率化를 통해 國民經濟 全體의 生産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最近 問題가 되고 있는 不況産業은 長期的인 産業調整 차원에서 整理하도록 對策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不實企業과 관련된 不實債權의 整理에 있어서는 不實債權의 整理資金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방법은 政府財源에서 負擔하게 하는 방법으로 不實債權 整理基金을 설치하되 資金을 財政에서 調達하여 整理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이고, 둘째 방법은 韓國銀行이 通貨를 增發하여 해당 銀行에 대해 支準附利나

特別融資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으며, 세째는 銀行이 關係不動產을 처분하거나 問題企業을 매각할 때 생겨나는 法人稅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政策當局이 銀行의 預貸마진을 擴大하여 銀行의 損失을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不實債權의 經濟的 損失은 최종적으로 一般國民이 負擔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의한 間接的 방법이나 일부 國民에게 負擔이 歸着되는 방법보다는 國民全體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전가되고, 그리고 그 負擔規模가 명백히 國民에게 밝혀지도록 政府財政이 負擔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問題는 이러한 不實債權을 整理하는 데서 생기는 負擔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가를 결정하는 基準이 客觀的으로 명백하고 일의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不實企業을 整理해서 債務償還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 추구하는 目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특히 經濟效率性과 社會正義 및 公平性과의 상충문제, 對內的 利益과 對外的 利害間의 충돌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우리 經濟與件, 즉 外債規模 및 構造, 國際金融市場與件, 그리고 開放化, 自由化政策 追求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분명한 사실은 國內自體에서만 해결할 수 없고 다른 國家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海外에 관련되는 經濟的 충격 내지 波及效果를 極小化하는 데 政策의 最優先을 두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不實企業은 일시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基本原則을 세운 후에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國民經濟의 충격과 손실을 작게 하는 것이 되며 金融과 實物經濟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제는 金融不實을 방지하여 金融正常化를 통한 信用秩序를 회복하는 것이 短期的 관점에서 제일 시급하다는 점이다.

不實債權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는 整理方案을 위의 방법중 어느 하나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政策手段의 最適組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不實의 정도가 극심하여 救濟金融 등의 直接的인 支援 없이는 存立하기 어려운 企業은 主去來銀行을 중심으로 한 整備機構에서 다음 基準에 의거하여 整備方案을 선택한 후 과감한 처리에 착수한다. 우선 事業性은 있으나 一時的 流動性不足 또는 企業(企業主)의 소극적 해결노력(保有財產의 처분기피 포함)에 기인하여 不實化된 企業은 자체해결 노력을 촉구하고(自體努力이 부진한 경우의 整理 방침을 통보), 事業性은 있으나 現企業主 또는 經營陣에 의해서는 회생을 기대하기 곤란한 企業은 第3者 引受를 추진하고, 事業展望이 어두워 회생 가능성이 없는 企業으로 雇傭, 外貨稼得 등 國民經濟에서 점하는 比重이 낮은 企業은 과감히 청산절차를 밟도록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不實債權의 發生을 예방하는 制度的 장치의 강구가 필요한데 그 核心은 다름 아닌 金融의 自律性을 보장하여 金融產業을 育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政策金融 내지 指示金融은 축소하고 自律性을 보장하여 銀行의 責任經營體制를 確立하며 또한 金融機關 自體의 信用分析機能과 權限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金融機關이 企業에 대한 信用分析과 事業에 대한 審査機能을 갖추고 適格判定을 받는 대상에만

融資를 해주는 관행이 確立되면 企業의 不實化와 不實債權은 그 예방이 가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貸出審査 專門家를 양성하여 産業別·企業別 審査專門家의 權限을 强化해야 할 것이다.

4. 産業金融機能의 提高

지난 20年間 實物經濟의 高度成長은 우리의 金融産業이 貯蓄과 投資의 원활한 연결을 통하여 戰略産業에의 資金支援이라는 金融機能을 유효하게 수행한 것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金融産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金融機能이 金融産業 自體의 自主的, 自律的 動機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官主導에 의해 他律的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資本主義經濟를 전제로 하는 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金融産業의 企業性이라는 目標가 公共性이라는 目標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시되었다. 그 때문에 金融産業은 收益性을 第2次的인 目標로 삼게 되어 資本蓄積基盤이 취약하여졌고 더우기 왕성한 資金需要에 비하여 크게 모자라는 資金을 運用하는 過程에서 政府基準의 優先順位에 따라 支援하는 政策金融을 파생시켜 金融의 自律性과 效率性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풍부한 成長潛在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民經濟內의 總資源配分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1980年 이후 政府에 의한 企業意思決定에의 直接的 介入이나 각종의 稅制 및 金融 등의 支援은 몇가지 戰略産業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産業政策을 推進하는 등 政府役割의 再定立이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在 經濟發展段階에서 볼 때 成長潛在力이 매우 큰 知識·情報産業, 尖端産業 등의 新企業創設機能을 强化하는 등 종합적인 金融支援體制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開發危險이 큰 分野는 民間金融機關이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政府나 開發專門金融機關의 先導的인 産業投資機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産業構造 및 組織의 均衡的 發展과 國際競爭力의 强化를 위한 投資를 金融部門에서 效率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産業金融機能의 擴充이 필요하다. 이러한 産業金融政策의 具體的인 方向은[15]

첫째, 종래의 特定産業中心의 支援體制에서 機能別 支援體制로 轉換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競爭制限 및 認許可制度를 段階的으로 철폐하거나 時限的으로 運用하고 技術開發, 人力養成 등 機能面에 대한 支援을 强化하여 汎産業的 支援體制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投資支援에 있어서 選別性을 강조하여 擴張投資의 경우에는 業況, 將來性, 國際競爭力 등을 근거로 한 企業의 自律的 判斷에 일임하여 海運, 海外建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무리한 育成政策에 기인한 過剩投資를 회피하고 合理化投資의 경우에는 金融機關의 事業性 檢討結果를 중시하여 時限的 支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銀行에 대한 非自發的 緊急救濟融資 强要事例를 지양하고 支援이 필요한 경우에는 補助金 支給 등 直接支援手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支援效果의 合理的 評價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設備金融支援의 擴充이 이루어져야

15) 韓國産業銀行, 『産業構造高度化와 政策方向』, 1985.

할 것이다. 現在 長期設備金融機關 등 特殊銀行과 一般銀行이 共通的으로 取扱하고 있는 設備金融中 특히 政策金融의 性格이 강한 部門은 政策金融機關이 專擔토록 誘導함으로써 預金銀行의 自律性提高와 設備金融의 效率化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長期設備金融機關의 機能再定立이 追求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급적 낮은 코스트의 長期性 自體財源을 보다 많이 確保하는 동시에 預受金의 擴大 등 補完的인 財源을 開發함으로써 良質의 長期設備財源調達을 强化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計劃事業의 成功的 遂行을 위해 프로젝트 選定機能 및 資金管理技法을 高度化함으로써 長期設備金融의 專門性을 提高하여야 하며, 技術開發投資資金의 원활한 조달을 강조하여야 한다. 예컨대 信用保證基金, 工業構造高度化基金(가칭) 등을 통한 R&D 投資關聯借入의 支給保證制度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擴充과 株式參與를 촉진하기 위하여 業界, 金融界 共同出資로 「벤처캐피탈」을 新設하거나 增資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投資業務를 허용함으로써 市中資金을 「벤처비지네스」 投資로 흡수하여야 한다. 또한 「벤처비지네스」 株式의 場外去來를 허용하는 등에 의해서 新技術事業化金融에 있어 株式 또는 信託 참여방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네째, 系列化 및 專門化를 통한 中小企業自立基盤을 공고화하기 위한 金融支援이 强化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經濟發展過程에서 大企業을 中心으로 한 産業構造가 形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産業體質의 改善을 통해 持續的 成長基盤을 確立하기 위하여는 中小企業의 保護育成이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 할 것이다. 金融部門에서 中小企業支援을 强化하기 위해서는 支援規模를 擴大함과 동시에 物的 擔保力不足의 問題를 解消키 위한 信用補完制度의 確立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地方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의 强化와 中小企業에 대한 施設貸與金融의 擴充方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中小企業專擔 리스會社의 設立을 推進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資源의 安定的 確保를 위한 海外資源開發 支援金融도 크게 補完되어야 한다. 效率的인 資源開發을 위해서는 國庫補助金과 海外資源開發基金 등의 擴大가 요청되며 또한 資源開發에 所要되는 資金이 大規模化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數個銀行의 協調融資(co-financing)를 보다 强化할 필요가 있다[16]. 現在 資源開發支援金融을 행하고 있는 輸出入銀行과 數個의 一般銀行의 協調融資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活用度는 낮은 水準이며 특히 資金力이 豊富하고 長期産業資金의 供給을 主機能으로 하고 있는 産業銀行, 長期信用銀行 등과의 協調融資體制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資源開發에 대한 支援形態도 多樣化해야 할 것이다. 現行 補助金支援對象을 擴大하여 國家政策的 次元에서 探査段階에 대하여는 國庫補助金支援을 크게 擴大해야 할 것이며 金融支援의 形態도 단순한 融資爲主에서 脫皮하여 株式取得, 社債引受 등을

16) 우리나라의 資源開發支援金融은 日本 등에 비해 그 歷史가 日淺하며 그 規模도 낮은 水準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支援金融으로서는 大韓鑛業振興公社의 國庫補助金과 海外資源開發基金 및 輸出入銀行의 海外投資資金 등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등이 있는데 日本의 輸出入銀行, 海外經濟協力基金 등 5個機關에 비해 支援機關의 수도 적으며 이들 機關의 支援實績 또한 企業의 資金需要에 비해 크게 不足한 實情이다. 따라서 資源開發에 대한 支援機關을 多岐化할 뿐 아니라 支援規模의 擴大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擴大하고 특히 現在 日本 등에서 資源開發에 대한 主要支援形態로 되고 있는 Project financing制度의 導入이 적극 檢討되어야 한다. 同制度는 大規模 資源開發事業에 대하여 金融機關이 프로젝트 立案段階에서부터 參加하여 프로젝트의 具體性, 將來性 등을 파악하고 開發事業 自體를 擔保로 하여 融資를 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長期金融의 形態이다.

V. 結 言

政策金融은 各國의 經濟發展 및 金融市場의 發達程度에 따라 그 生成過程과 運用形態를 달리해 온 歷史的·文化的 槪念으로서 產業政策의 特定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金融이 產業政策의 手段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政策金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政策金融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存在하며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資本의 動員과 動員된 資金의 合理的 配分에 있어서 그 行態가 다르게 된다.

특히 資本蓄積이 되지 않은 狀態에서 產業高度化를 통한 높은 成長을 이룩하려는 後進國經濟에서는 資源의 動員과 配分에 있어서 市場價格機構가 有效하지 않기 때문에 制限된 資源을 戰略產業에 優先支援하는 政策金融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金融이 必要한 理論的 根據가 소위 市場失敗의 경우에 政府가 介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政府失敗의 經濟的 非效率性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의 干與에 의해서 產業構造를 變化하거나 資源을 再配分하는 경우에도 總體的인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效果分析(cost-benefit analysis)이 이루어지고 產業政策이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年 經濟計劃樹立 이후 적극적인 政府主導의 產業政策에 의하여 輸出이 增大하고 造船, 鐵鋼 등 重化學工業의 發展을 통한 產業構造高度化를 이룩하고 높은 成長을 達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政府主導政策의 副作用도 적지 않아 中央銀行 本源通貨增發에 의한 인플레誘發, 非效率的인 配分에 의한 投資資源의 浪費, 金融政策運用上의 硬直性 등 巨視經濟政策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려웠고 金融產業의 落後, 所得不均衡, 企業集中의 深化 등으로 인해 國民經濟 全體의 成長潛在力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우기 우리 經濟의 經濟運用基調가 民間主導로 바뀌고 있고 技術의 革新으로 產業構造調整이 필요한 지금과 같은 轉換期에 있어서는 새로운 產業政策과 產業金融의 方向의 定立이 필요하다.

產業政策을 支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政策金融에 限定하여 政策課題를 檢討할 때 政策金融의 問題는 短期的으로 金融產業發展問題로 귀착되고 長期的課題로는 앞으로 經濟成長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產業資金을 원활히 供給할 수 있는 產業金融機能의 提高問題이다.

金融自律化 등 金融產業發展의 問題는 資金調達과 調達된 資金의 效率的인 配分을 함께 해결하는 產業金融强化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겠다. 金融產業이 發展할수록 政策金融을 代替할 수 있는 保險, 保證, 協調融資手段 등 다양한 手段이 開發될 수 있고 金融自由化 및 金融의 價格機能이 活性化될수록 資金配分

의 效率化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策金融機關의 分業化, 貸出審査制의 强化 등 金融自律化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政策金融資金의 調達方法도 公債 등 財政資金의 活用과 公務員年金基金과 같은 長期性 貯蓄資金 등을 活用하는 方法을 적극 檢討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나라의 經濟가 發展하자면 經濟成長을 위한 投資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産業金融體制가 確立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강조해야 할 課題는 國際金融體制의 强化를 이룩하는 問題이다. 開放經濟體制가 진전되고 우리나라 企業의 國際的 進出에 따라 國內企業의 國際的 伸張을 뒷받침하기 위한 海外投資의 擴大, 多國籍企業의 促進, 海外原資材市場의 確保 등 多樣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企業이 國際企業으로서 海外의 經濟領域과 國際市場基盤의 擴大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國際金融體制가 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러 銀行의 協調融資를 보다 强化하고 開發事業 自體를 상대로 하여 融資를 행하는 Projet financing制度를 導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後進國의 경우 工業化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政府 介入이 허용되는 것은 金融市場의 발달이 불충분하여 市場價格機構가 그 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政府介入으로 생길 수 있는 非效率的 要素가 市場失敗의 經濟的 不利益보다 적다고 생각되는 範圍內에서인데, 經濟가 發展하여 그 構造가 복잡해짐으로써 政府 介入으로 인한 利得보다 損失이 커지게 되면 資源配分을 인위적인 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市場價格機構에 맡기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므로, 앞으로의 政策金融의 방향은 經濟發展 初期段階와는 달리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를 國內經濟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開放化된 國際經濟的 관점으로 擴大시키는 경우에는, 動態的으로 比較優位를 갖출 것으로 전망되는 産業을 育成함으로써 産業의 國際競爭力 强化를 통한 經濟成長의 도모라는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政策金融을 보는 視角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金融市場의 발달이 미흡하여 先進國과 달리 金融市場의 價格機能에 의해 經濟性이 있고 유망한 産業에 대해 충분한 資金供給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政策金融의 質·量面의 선별적인 支援機能에서 金利優待등 質的인 면에서의 차별은 없어지고 可用資金(availability)支援의 量的 機能만 存在하는 경우에는 國內的 관점에서는 그것이 특혜를 줄 수 있을지라도 발달된 金融市場에서 충분한 資金을 供給받는 先進國産業과의 國際競爭을 고려한다면 이미 특혜라는 의미는 상실될 것이며, 나아가 政策金融을 전면 철폐한다면 國際經濟的 관점에서 國內産業은 財源調達面의 不利를 안고 競爭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의 成長에 따라 政府의 産業政策에 있어서의 役割이 특정업종에 대한 支援에서 市場價格機構를 尊重하는 機能別·一般的 支援으로 바뀜으로써 資源配分의 效率化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經濟의 지속적인 成長을 위해서는 國際競爭力을 强化한다는 立場에서의 産業金融體制가 長期的인 관점에서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廣斗 外, 『金融革新과 通貨金融政策 改編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5.

金重雄, 「새로운 金融秩序를 위한 政策課題」, 生命保險協會, 1983.

産業研究院, 『産業政策의 基本方向과 産業支援制度改善方案』, 1985.

安承喆, 『産業政策의 基本視角과 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85.

韓國産業銀行, 『産業構造高度化와 政策方向』, 1985.

韓國銀行, 「政策金融의 再整備方案」(討議資料), 1982.

宮澤健一, 「産業政策の理念と市場機構」, 『週刊東洋經濟臨時增刊・産業政策特集』, 1974年 6月 18日號.

兼光秀郎, 「先進國の貿易制限と産業調整」, 關口末夫編, 『日本の産業調整』, 日本經濟新聞社, 1981.

野口悠紀雄. 『市場の失敗と政府活動』, 日本評論社, 1982.

兩角良彦, 『産業政策の理論』(篠原・馬場編, 『現代産業論』, 第3卷, 『産業政策』, 1973.

伊藤元重 外, 『日本の産業政策』, 東京大學, 1984.

通商産業省 産業構造審議會, 『80年代の通商産業政策ビジョン』, 通商産業調査會, 1980.

鶴田俊正, 『戰後日本の産業政策』, 日本經濟新聞社, 1982.

Diebold, W. Jr., *Industrial Policy as an International Issue*, New York: McGraw-Hill, 1980.

Imai, K., "Japan's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nd United States-Japan Industrial Relations", K. Yamamura, ed., *Policy and Trade Issues of the Japanese Economy*, Tokyo; Univ. of Tokyo Press: 47～75, 1982.

Johnson, C.,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75*,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2.

Patrick, H., "Japanese Industrial Policy and its Relevance for United States Industrial Policy", Prepared Statement before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July 13, 1983.

Vogel, E., *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9.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制度의 役割

郭 泰 元

▷ 目 次 ◁

Ⅰ. 序 論
Ⅱ. 租稅政策의 特性과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政策의 役割
Ⅲ. 우리나라 産業支援稅制의 評價
Ⅳ. 産業支援租稅政策의 主要問題點과 改善方向
Ⅴ.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우리 經濟의 向後 發展에 있어서 産業政策의 必要性과 여기에서 租稅政策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重要性은 새삼 强調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政策은 여러 가지 政策手段中 하나에 불과하며 또 租稅制度는 그 자체로서 담당해야 할 보다 더 基本的인 역할이 있다. 그러므로 産業政策의 方向과 內容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租稅政策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적정한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여 보다 效率的이고 均衡있는 産業支援稅制를 構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産業政策的 視角에서 關聯租稅制度의 一般的 改編方向을 모색하는 것을 本稿의 주된 目的으로 한다.

本稿에서는 편의상 産業政策의 內容을 (1) 個別産業支援政策 (2) 一般的 産業支援政策 (3) 構造調整의 圓滑化政策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論議하기로 한다.

다음 章에서는 租稅政策의 特性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租稅政策이 産業政策에서 담당하여야 할 적정한 역할을 찾아본다. 그리고 第Ⅲ章에서는 우리나라 産業支援稅制의 內容을 分析 評價하고, 第Ⅳ章에서는 支援制度別로 改善이 요구되는 問題點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改善方案을 토의한다. 마지막으로 第Ⅴ章에 간단한 要約과 結論을 첨부한다.

筆者 : 本院 研究委員

* 草稿를 읽고 有益한 提言을 해주신 李啓植박사와 院內 Workshop에서 좋은 意見을 주신 여러 研究委員들, 그리고 原稿整理 등에 애써 준 李在鶴 연구원과 權容淑 연구조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Ⅱ. 租稅政策의 特性과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政策의 役割

1. 産業政策의 諸手段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政策이란 하나의 政策手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이 設定되고 구체적인 中間目標들이 세워졌을 때 그것들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여러 가지 政策手段들 중에서 租稅政策은 어떤 役割을 담당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租稅政策中에서도 어떤 手段들이 사용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産業政策의 內容에 대한 合意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租稅政策의 內容도 선택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租稅制度는 그 자체로서 담당해야 할 基本的인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基本的인 目標의 達成과 産業政策目的의 租稅政策이 상충하게 될 때 이러한 政策手段의 사용은 제약을 받게 된다.

本章에서는 産業政策에서 租稅政策이 一般的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 限界性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産業政策手段으로 사용될 수 있는 政策手段들을 槪觀하고 다른 政策手段들과 비교할 때 租稅政策이 갖는 長短點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거의 모든 經濟政策手段이 産業政策目的으로 사용될 수 있다. 一般的인 巨視經濟政策(短期的인 需要管理政策)을 제외한 대부분의 經濟政策은 特定産業部門이나 特定經濟活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産業政策目的에 사용될 수 있다. 물론 短期的인 景氣調節政策도 産業構造나 産業化過程에 적어도 間接的인 영향을 줄 수 있다.

産業政策으로 흔히 사용될 수 있는 政策으로 財政支出面에서는 特定部門에 대한 政府의 直接投資, 政府의 融資, 혹은 補助金政策 등을 들 수 있으며 租稅政策으로서는 各種의 租稅減免政策이 있다. 金融面에서는 差等利子率政策, 信用割當政策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關稅 또는 數量制限 등에 의한 貿易面에서의 政策은 특히 重要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 政府의 直接的인 認許可制度, 그리고 非傳統的인, 이른바 行政指導 혹은 窓口指導 등까지 産業政策手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政策手段들은 결국 相對價格構造에 영향을 줌으로써 市場에서의 資源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直接的·數量的인 간섭을 통해서 資源의 配分에 영향을 줌으로써 意圖된 産業構造를 실현하려는 手段들이다. 그러나 經濟의 發展段階, 意圖하는 産業政策의 內容, 그 밖에 國內外 經濟·社會·政治的 與件 등에 따라 보다 적합한 政策手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政策手段마다 그 效果의 確實性, 附隨되는 歪曲效果의 크기, 旣存利害關係에 대한 영향, 政策當局의 政策受容能力, 對外關係에의 影響 등이 相異하기 때문이다.

政府의 直接投資나 融資 등에 의한 資源의 配分은 대체로 社會間接資本部門이나 電力 등 公企業部門에 주로 집중되고 있어서 特定産業部門보다는 全般的인 産業活動을 뒷받침해 주고 競爭力을 높이는 政策手段으로서 오히려 적합하다. 民間部門의 經濟力이 특히 취약한 開發初期段階 등에 있어서는 政府의 投融資가

特定産業部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民間經濟規模의 擴大와 市場의 發達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財政投融資能力의 상대적 規模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또 政府의 企業的인 意思決定이 一般的으로 민간에 의한 그것을 능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投融資의 역할이 民間經濟活動과 競合하지 않는 部門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政府의 補助金政策은 經濟理論的으로 政府가 民間部門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歪曲效果가 작고 政策效果가 확실한 政策手段으로 評價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政策目的에 여러 가지 형태의 補助金政策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幼稚産業保護에서부터 技術開發의 促進 등 보다 一般的인 産業政策이나 産業合理化政策 등에까지 광범하게 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첫째로 財政에 커다란 支出負擔을 준다는 점과, 둘째로 補助金制度 管理上의 行政的인 어려움, 그리고 특히 特定 民間部門에 대해 補助金이 支給될 경우 그 妥當性에 대한 一般國民의 의문 등 政治的인 어려움 등이 따르기 때문에 經濟理論的인 效率性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限定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다.

한편, 金融面의 諸政策은 補助金政策과 비슷한 정도의 확실한 支援效果를 보장할 수 있으며 財政支出 등의 直接的인 政府負擔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의 使用은 金融部門에 深大한 構造的 歪曲을 수반하고 金融制度 자체의 정상적인 發展을 저해함으로써 長期的으로 經濟에 막대한 損失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關稅 혹은 非關稅障壁에 의한 國內産業의 保護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産業政策手段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政策은 주로 特定産業의 支援 혹은 保護政策手段으로 적합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幼稚産業保護政策手段으로 적합한 政策이다. 理論的인 效率性을 비교한다면 補助金政策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특히 財政負擔問題, 對外均衡問題 등 때문에 輸入障壁政策이 더 애용되어 왔다. 이러한 政策은 國家間의 貿易摩擦을 야기시킬 수 있으나 幼稚産業의 保護目的에만 사용된다면 問題가 될 여지는 크지 않다.

租稅政策은 이상에서 論議한 諸政策들에 비해서 대체로 그 效果가 間接的이고 특히 受惠企業의 利益規模에 실제적인 受惠程度가 크게 의존한다는 점 등 다소 相異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 租稅政策의 特性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좀더 상세하게 論議한다.

2. 租稅政策의 特性과 産業政策에 있어서의 役割

租稅政策은 매우 유효하고 彈力的인 政策手段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그 內容은 間接稅를 통해서 産出物의 相對價格에 영향을 줌으로써 資源의 配分을 調整하는 것과 特定部門 혹은 特定形態의 資本이나 勞動 혹은 技術 등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에 영향을 줌으로써 産業間의 資源配分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는 政策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間接稅 體系를 이용한 政策은 生産要素의 結合率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效果가 實現된 利益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效率性面의 長點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制度的인 制約性 때문에 産業政策手段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1]. 産業政策手段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租稅政策手段은 여러 가지 類型의 法人稅(혹은 非法人事業者에 대한 所得稅) 減免이다. 加速減價償却制度, 各種準備金制度, 投資稅額控除 등 각종 稅額控除制度, 特定期間 租稅減免(tax holidays) 등을 비롯한 直接減免 등 여러 가지 유형의 減免制度를 産業部門別 혹은 機能別로 적용함으로써 소기의 産業政策目標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産業政策手段으로서의 租稅政策은 몇 가지 중요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

1)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다른 政策手段과 달리 企業에 상당한 會計上의 利潤이 실현되고 있어야 效果를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지만 적정한 産業政策上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意味를 가질 수 있다.

2) 다른 政策에 비해 「타이밍」上의 기동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立法過程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그 變更過程에서 利害關係의 相衝 등이 수반되기 쉽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특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비교적 덜 중요한 要因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政策手段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특성이 政策의 安定性을 증대시켜 주므로 항구적인 相對價格의 修正이 필요한 경우(外部性 등의 경우) 등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3) 다른 政策에 비해 細分性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金融政策이나 補助金政策 등의 경우에는 政府의 意圖에 따라 대단히 구체적인 品目이나 심지어 特定企業單位까지 그 受惠與否를 결정할 수 있다. 關稅나 기타 輸入制限의 경우에는 細分類된 品目에 따라 구체적인 政策意志를 반영시킬 수 있다. 그러나 租稅政策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4) 直接的인 財政支出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는 財政負擔은 작다고 할 수 있다. 물론 租稅支出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歲入豫算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財政負擔이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直接 支出豫算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租稅支出(租稅減免 등)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部門間의 配分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均衡이나 調和를 보장하기 어렵다. 한편 直接的인 財政支出에 비해 租稅支出의 경우 徵稅費 등이 절약된다는 장점은 있다.

5) 租稅政策은 他政策에 비하여 限界行爲에만 영향을 주도록 設計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經濟的(parsimonious)인 誘因政策手段이 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租稅政策은 相對價格의 變化를 통해 作用하므로 一般的으로 價格機構를 통하지 않는 直接干涉政策보다는 歪曲效果가 작다.

바람직한 租稅政策의 방향을 논하기 전에 위와 같은 租稅政策의 性格에 비추어 産業政策에서 租稅政策이 담당해야 할 적당한 역할을 개략적으로라도 設定해 둘 필요가 있다. 앞

1) 예컨대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制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양한 免稅나 零稅率制度를 도입하기가 어려우며 特別消費稅는 基本制度 자체가 産業構造的인 政策意志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세대상이 제한되어 稅減免 등을 통한 적극적인 産業政策手段으로 사용하는데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章에서 제시된 産業政策의 세 가지 分野, 즉 (1) 個別産業支援政策 (2) 一般的 産業支援政策 및 (3) 構造調整의 圓滑化政策 등으로 나누어서 租稅政策의 바람직한 역할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個別産業支援政策에 있어서는 租稅政策이 中心的인 機能을 담당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個別産業支援政策의 핵심점 논리는 有望幼稚産業의 保護이다. 이러한 目的의 政策手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特性은 選別性과 限時性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예컨대 纖維産業이 일반적으로 斜陽産業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어떤 特殊分野는 굉장히 유망한 産業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租稅政策의 細分性이 낮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補助金이나 關稅 혹은 기타 輸入制限政策이 이런 경우 더 효율적인 政策手段이 될 수 있다. 다음 限時性이 요구되는 것은 보호받는 企業에 나타나기 쉬운 보호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없앰으로써 競爭力을 스스로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경험적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 면에서도 정상적인 租稅制度에 경우별로 다른 限時性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問題가 있다[2]. 또 租稅政策의 實效性이 實現된 收益의 規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 경우에 커다란 制約이 될 수 있다. 대체로 幼稚段階에 있는 産業의 경우 收益性이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租稅政策은 個別産業支援에 있어서는 中心的 役割을 할 수 없는 政策手段이며 부분적으로 補完 내지는 補助的 政策手段으로서의 機能을 담당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特定産業에 있는 항구적인 外部性을 시정할 필요 등의 경우에는 租稅政策이 적합하다[3].

두번째로 一般的인 産業政策의 주된 內容은 産業活動을 뒷받침할 수 있는 社會間接資本 및 關聯서비스의 供給과 기타 여러 가지 生産要素의 원활한 供給促進이라고 말할 수 있다. 社會間接資本의 供給 및 關聯서비스의 供給은 보다 直接的인 政府介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效率的이다. 물론 電力·가스 등 이른바 自然獨占의 特性을 갖는 産業들을 公企業形態로 운영하는 것이 더 效果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論難의 여지가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租稅政策이 큰 역할을 담당할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주로 限界費用에 영향을 주는 誘因政策으로 設計하기가 용이하다는 特性 때문에 生産要素의 供給促進에 있어서는 租稅政策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貯蓄과 資本形成의 促進, 人力開發 및 技術開發 등은 주로 民間部門의 價格機構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租稅政策을 통해서 쉽게 價格誘因을 强化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와 같은 誘因들은 全産業에 걸쳐 機能別로만 제공되므로 部門間의 資源配分上의 歪曲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構造調整의 圓滑化政策에 있어서는 租稅政策이 대체로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部門間 資源配分에 있어서 摩擦要因이 극소화되도록 租稅制度를

2) 特定期間 租稅減免(tax holidays)에는 限時性이 있기는 하나 그 적용이 産業單位가 아니고 企業單位라는 問題가 있으며 또 租稅減免規制法 등처럼 時限法으로 稅法을 만들 수는 있으나 保護나 支援의 期間은 産業마다 경우마다 다르므로 그것을 일일이 반영한 稅法을 만들기는 어렵다.

3) 이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産業政策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예컨대 公害産業에 대한 重稅政策이 이에 해당한다.

설계하는 것이 租稅減免制度 등에 의해서 특정한 경우에만 資源移動의 摩擦을 제거하려는 政策보다 더 바람직하다. 또 租稅政策은 勤勞者 再訓練 등 적극적인 構造調整圓滑化政策의 補助手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産業支援稅制의 評價

1. 우리나라 主要 産業支援稅制의 槪要

우리나라 産業化過程의 始發期인 50年代와 60年代 前半 중에는 市場經濟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投資誘因政策이 企業의 投資行態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法人稅制度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1949年이었지만 1964年 國稅廳이 발족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機能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1964年 이전에는 租稅行政이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産業部門의 比重이 작았고 그나마도 法人組織을 가진 企業의 比重은 더욱 작았기 때문에 法人稅制度에 근거를 둔 각종 投資誘因政策이 중요한 開發政策手段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여건이었다. 그러나 1964年의 國稅廳 新設과 이에 병행된 租稅行政의 整備,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일련의 自由化措置 및 급속한 工業化 등으로 60年代 후반부터는 租稅誘因政策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터전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60年代 중의 開發政策의 핵심은 輸出增大였

〈表 1〉 典型的인 重要産業 該當企業이 機械裝備에 投資할 경우 投資 1원當 純減稅效果
(理論的인 最高限度)

年度[1]	名目利子率[2]	法定最高稅率[3]	20%(80%) 特別減價償却[4,5,6]	重要産業에 대한 租稅特例[4,5,6]				合計[6,7]
				特定期間租稅減免	100% 特別償却	投資準備金	投資稅額控除	
1963	.525	.20	.008	.185	—	—	—	.186
1968	.560	.45	.017	—	—	—	.060	.077
1970	.498	.45	.018	—	—	—	.060	.078
1973	.333	.40	.056	—	—	—	.060(.100)	.116(.156)
1976	.405	.40	.017(.055)	.367	.065	—	.080(.100)	.369(.374)
1982	.305	.38	.016(.053)	—	.062	.034	.060(.100)	.096(.096;.153*)
1983	.258	.33	.014	—	.052	—	.030(.050)	.052(.052;.064*)
1984	.248	.33	.014	—	.052	—	.030(.050)	.052(.052;.064*)
1985	.241	.33	.020	—	.050	—	.030(.050)	.050(.052;.070*)

註 : 1) 主要稅制 改編이 발효된 年度를 중심으로 계산함.
2) 國公債 平均收益率을 名目割引率로 사용함.
3) 法人稅에 대한 附加稅는 고려하지 않음.
4) 特別減價償却效果를 계산할 경우 耐用年數는 11年(1985年은 10年), 減價償却率은 0.21(1985年은 0.23), 그리고 經濟的 資本減價率은 0.11로 가정함.
5) ( )안의 수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한 投資의 경우임.
6) 輸出支援을 위한 投資誘因과 臨時投資稅額控除效果는 포함되지 않음.
7) 合計額計算時는 중복적용배제 규정 등을 감안함.
*표시가 붙은 수치는 機械 및 電子産業의 경우에만 해당됨.
8)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郭泰元(1985) 參照.

으므로 外貨獲得活動을 支援하기 위한 租稅支援制度가 특별히 强調되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70年代 중에는 輸出産業에 대한 支援이 줄어든 반면 重化學部門에 다양하고 강력한 租稅支援이 제공되었으며 優待金融 등 政府의 直接的인 政策介入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80年代에 와서는 70年代의 일부 산업에 대한 과도한 偏重支援에 대한 반성과 함께 稅制面에서도 産業別支援보다는 機能別支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政策轉換 努力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1年의 대폭적인 稅制改編으로 重要産業에 대한 支援이 대폭 약화되는 대신 中小企業, 技術 및 人力開發, 産業合理化 등에 대한 支援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强化되었다. 〈表 1〉은 鐵鋼, 機械, 電子 등 전형적인 重要産業 該當企業이 機械設備에 投資할 경우의 投資單位當 租稅減免惠澤을 重要稅制改革이 發效된 年度를 중심으로 계산한 결과인데 여기에서도 70年代 후반중의 파격적인 支援의 폭과 1981年 이후의 감소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 表에는 1985年에 發效된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效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면 1985年의 減稅效果는 .080~.150에 이른다.

現在 租稅減免規制法上에 規定되어 있는 중요한 産業支援手段의 內容은 〈附表〉에 要約되어 있다.

4) 이 槪念과 우리나라 制度를 반영하여 변형시킨 有效限界稅率의 槪念 및 이에 의한 구체적인 推定節次 등에 관해서는 郭泰元(1985) 參照. 이 槪念은 資本所得에 대한 課稅에 限定된 것이므로 間接稅 등을 통한 支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現行의 人力 및 技術開發에 대한 支援과 産業合理化를 위한 支援 등의 效果는 이 方法으로 效果的으로 分析될 수 없으며 本節의 分析에서 除外되었다.

2. 租稅政策의 産業支援效果分析

本章에서는 이와 같은 租稅政策의 産業支援效果를 주로 Jorgenson-Sullivan(1980)의 有效限界稅率 槪念을 이용하여 評價한다[4]. 이 槪念은 法人企業段階에서 資本所得에 부과되는 모든 租稅의 限界稅率을 측정하는 데 편리한 槪念으로서 稅制上의 誘因效果가 綜合的으로

〈表 2〉 有效限界稅率의 變動要因 分析
(製造業 全資産)

	法定限界稅率[1] (A)	有效稅率 I[2] (B)	有效稅率 II[3] (C)	全體稅制效果 (A-B)	一般減價償却效果 (A-C)	租稅減免效果 (C-B)
1960	.330	.289	.323	.041	.007	.034
1961	.242	.218	.241	.024	.001	.023
1962	.220	.190	.219	.030	.001	.029
1963	.275	.238	.273	.037	.002	.035
1964	.330	.282	.327	.048	.003	.045
1965	.330	.280	.328	.050	.002	.048
1966	.385	.307	.379	.078	.006	.072
1967	.385	.287	.372	.098	.013	.085
1968	.495	.409	.440	.086	.055	.031
1969	.495	.398	.436	.097	.059	.038
1970	.495	.394	.436	.101	.059	.042
1971	.450	.349	.398	.101	.052	.049
1972	.400	.288	.356	.112	.044	.068
1973	.430	.358	.417	.072	.013	.059
1974	.430	.327	.422	.103	.008	.095
1975	.530	.328	.530	.202	.000	.202
1976	.530	.329	.519	.201	.011	.190
1977	.530	.321	.505	.209	.025	.184
1978	.530	.296	.492	.234	.038	.196
1979	.530	.282	.492	.248	.038	.210
1980	.530	.283	.496	.247	.034	.213
1981	.530	.298	.519	.232	.011	.221
1982	.504	.474	.492	.030	.012	.018
1983	.437	.408	.432	.029	.005	.024
1984	.437	.393	.416	.044	.021	.023
1985	.437	.313	.391	.124	.046	.078

註 : 1) 法人稅率×(1+住民稅率+防衛稅率)
2) 각종 投資誘因을 포함한 경우의 有效限界稅率
3) 각종 投資誘因을 제외한 경우의 有效限界稅率

이 稅率에 반영되며 稅制가 완전히 中立的이면 有效稅率은 法定限界稅率과 같아진다.

〈表 2〉는 製造業部門의 有效限界稅率의 推定結果를 要約한 것이다. 첫번째 列은 法人稅, 防衛稅, 地方稅 등을 포함한 稅金의 法定稅率을 나타낸 것이고 두번째 列 즉, 有效稅率(Ⅰ)은 현행의 各種 投資誘因(輸出支援, 重要産業支援, 臨時投資稅額控除 및 法人稅法 施行令上의 製造業設備投資 등에 대한 特別償却制度 등만을 포함한 것임)을 포함했을 경우의 理論的인 有效限界稅率이다. 여기에서 理論的이라고 하는 것은 誘因制度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行政經費 등 費用이 들지 않고 該當企業이 最適化行動을 선택했다고 할 경우의 有效限界稅率이라는 뜻이다. 法定限界稅率과 有效稅率(Ⅰ)의 차이가 稅制全體의 支援效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네번째 列에 제시되어 있다. 이 支援效果는 70年代 후반에 頂點에 달했으며 최근의 대폭적으로 改正된 稅法이 실시된 1982年부터 支援效果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981年의 稅法改正에서 重要産業에 대한 支援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支援效果가 낮아진 것은 支援方法에 있어서 支援效果가 월등하게 컸던 特定期間 租稅減免制度가 폐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租稅誘因規模의 減少가 반드시 企業의 부담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法人稅率의 대폭적인 引下를 반영하여 1983年부터는 法定限界稅率 자체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有效限界稅率도 1983年에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 表는 다시 有效限界稅率을 一般減價償却效果와 租稅減免效果로 분해하고 있다. 一般減價償却效果란 稅制上의 기본적인 減價償却制度가 完全中立的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有效稅率에의 영향을 말한다. 이것은 이 表의 뒤에서부터 두번째 列에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有效稅率을 약간 낮추어 주는 效果가 있으나 70年代 중반의 高인플레이션期에는 이 效果가 매우 작았었음을 알 수 있다[5].

〈表 3〉 製造業 部門別·資産別 有效限界稅率

		1981				1983				1985			
		B	M	T	S	B	M	T	S	B	M	T	S
製造業	3	0.341	0.274	0.420	0.298	0.452	0.388	0.408	0.408	0.432	0.258	0.444	0.313
飮食料品	31	0.550	0.496	0.555	0.513	0.458	0.412	0.466	0.428	0.438	0.286	0.449	0.337
섬유·의복·가죽	32	0.542	0.483	0.560	0.502	0.451	0.397	0.468	0.413	0.432	0.294	0.450	0.333
나무 및 木製品	33	0.547	0.495	0.539	0.520	0.455	0.409	0.443	0.429	0.435	0.289	0.425	0.357
종이·印刷製品	34	0.549	0.497	0.576	0.514	0.458	0.410	0.482	0.424	0.438	0.293	0.463	0.334
化學製品	35	0.253	0.170	0.325	0.195	0.453	0.392	0.468	0.410	0.434	0.275	0.450	0.320
非金屬鑛物製品	36	0.547	0.490	0.556	0.510	0.454	0.403	0.461	0.421	0.434	0.287	0.443	0.336
第1次金屬	37	0.215	0.155	0.194	0.164	0.449	0.376	0.450	0.400	0.430	0.230	0.432	0.297
金屬製品機械裝備	38	0.274	0.244	0.356	0.260	0.451	0.379	0.456	0.403	0.432	0.240	0.438	0.302
其他製造業	39	0.541	0.480	0.542	0.506	0.450	0.394	0.448	0.419	0.430	0.286	0.430	0.349

註 : B; 建物·構築物, M; 機械設備, T; 輸送裝備, S; 全資産.

5) 여기에서의 有效稅率은 資産再評價制度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數値들이 약간 더 커질 수 있다.

1985年의 경우 一般減價償却效果가 커진 것은 期待인플레이션率의 下落과 法定耐用年數의 단축에 따른 것이며, 租稅減免效果가 크게 늘어난 것은 臨時投資稅額控除의 發動에 기인한 것이다.

有效限界稅率을 産業別 및 資産別로 推定한 結果는 〈表 3〉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租稅誘因이 機械設備에 대한 投資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機械設備에 대한 有效稅率을 살펴보면 産業別 변동폭이 1981年에는 製造業內에서

〈表 4〉 産業別 및 資産別 有效限界稅率(1985年 大企業 基準 : 暫定)

資産 및 業種 區分	法定耐用年數	輸出産業		內需産業	
		一般産業	重要産業	一般産業	重要産業
事務室用建物 : (金融·保險·不動産)	60	.4182	.4182	.4199	.4199
機械設備 : (鐵鋼)	8	.3358	.3075	.3364	.3080
機械設備 : (機械)	8	.3351	.3067(.3103, .2928*)	.3364	.3080(.3117, .2942*)
機械設備 : (電子)	7	.3204	.2926(.2945, .2762*)	.3213	.2935(.2954, .2771*)
機械設備 : (造船)	8	.3355	.3071	.3364	.3080
機械設備 : (石油化學)	7	.3260	.2947	.3228	.2949
建設裝備 : (建設)	4.5	.3126	.3126	.3333	.3333
車輛 : (運輸·保管·通信)	4	.3351	.3351	.3381	.3381
主要假定		γ=.3 XR=.02	γ=1.0 (ITC=.03, 0.5*) XR=.02	γ=.3 (제조업)	γ=1.0 (ITC=.03, 0.5*)

註 : 1) γ; 特別減價償却, ITC; 投資稅額控除額, XR; 輸出關聯準備金比率을 나타냄.
2) 割引率은 .241, 法人稅率은 .30, 防衛稅率은 .25, 그리고 住民稅率은 .075로 假定함.
3) 臨時投資稅額控除(國産 10%, 外産 3%)를 감안하지 않음.
4) 超過稼動時間에 따른 特別減價償却(鑛業 및 製造業에만 해당)率은 평균 30%로 가정함.
5) 重要産業에서 ( )의 數値는 100% 特別減價償却 대신 投資稅額控除를 선택한 경우이며 *표시가 있는 數値는 國産資本財를 사용한 경우임.
6) 〈表 2〉와 〈表 3〉에서는 法人稅率을 .33으로 假定하였으며 다른 假定이나 資産의 分類, 租稅誘因의 包括範圍 등이 상이하므로 그 數値들과 직접 비교할 수 없음.

〈表 5〉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有效限界稅率比較(1985年 內需産業 基準 : 暫定)

	大企業		中小企業
	一般産業	重要産業	
事務室用建物 : (金融·保險·不動産)	.4199	.4199	.4142(.3981)
機械設備 : (鐵鋼)	.3364	.3080	.3130(.2937)
機械設備 : (機械)	.3364	.2942*	.3130(.2937)
機械設備 : (電子)	.3213	.2771*	.2981(.2793)
機械設備 : (造船)	.3364	.3080	.3130(.2937)
機械設備 : (石油化學)	.3228	.2949	.2996(.2807)
建設裝備 : (建設)	.3333	.3333	.2916(.2730)
車輛 : (運輸·保管·通信)	.3381	.3381	.3226(.3064)

註 : 1) 大企業에 대해서는 〈表 4〉 註記 참조.
2) 中小企業의 경우 特別減價償却率은 .50, 投資準備金比率은 .15, 그리고 各種稅率은 大企業과 同一條件으로 假定(단, 괄호 내는 防衛稅率을 0.20으로 假定한 경우임). 臨時投資稅額控除는 포함되지 않았음.

도 第1次金屬의 0.155에서 飮食料品의 0.496까지 큰 폭의 變動을 보였으나 1985年에는 1次金屬의 0.230에서 纖維類의 0.294로 그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部門間의 有效稅率 격차가 줄어든 것은 資源配分의 歪曲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重要産業에 대한 支援 등 産業別支援이 租稅支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表 4〉는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같은 産業群에 속하는 경우라도 重要産業인가 아닌가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産業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6].

이 표에서 또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사실은 輸出産業과 內需産業間의 有效稅率 격차가 대단히 작다는 점이다. 1973年 外貨獲得의 50% 控除制度를 몇가지 準備金制度로 대치한 이래 輸出支援效果는 크게 줄어들어서 稅制上의 輸出支援은 사실상 이름뿐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表 5〉는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有效稅率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中小企業 租稅支援의 基本制度인 50% 特別減價償却과 15% 投資準備金制度의 效果만을 보기 위해서 法人稅率, 防衛稅率 및 住民稅率 등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中小企業의 경우 特別減價償却 惠澤과 投資準備金 惠澤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포함한 支援效果는 重要産業에 대한 支援效果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物價가 안정되어 있고 景氣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名目投資增加率이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投資準備金制度의 실제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한편 中小企業은 일반적으로 純利益規模가 大企業에 비해 낮을 確率이 크기 때문에 防衛稅의 낮은 稅率(20%)을 적용받는 경우를 생각하면 有效稅率은 약 2%「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낮아진다.

Ⅳ. 産業支援 租稅政策의 主要問題點과 改善方向

1. 産業別 支援制度

우리나라의 産業支援租稅政策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어 왔던 것은 重要産業租稅特例를 중심으로 한 産業別支援制度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1年의 稅法改正으로 産業間의 有效稅率 隔差가 크게 감소되는 대신 法人稅率의 인하로 有效稅率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稅制上 變化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7]. 그러나 아직도 産業間 및 資産間 有效稅率 構造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격차들이 政策的으로 의미없는 歪曲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現在 産業間 有效稅率의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는 重要産業에 대한 租稅特例 등

6) 이 表의 계산 결과는 臨時投資稅額控除效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臨時投資稅額控除率 10%를 감안하면 有效稅率은 약 10%「포인트」 정도 하락한다.

7) 美國의 「레이건」대통령의 稅法改正案도 기본철학에 있어서 같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法人稅率 자체를 낮추는 대신 租稅減免을 축소함으로써 衡平과 效率을 다같이 제고시킨다는 것이 「레이건」 改正案의 基本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明示的인 産業別 租稅支援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는 政策意圖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動態的인 觀點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생각할 것은 현행 租稅減免規制法上의 重要産業支援에 대한 基本的인 經濟的 論理이다. 支援對象이 되고 있는 産業이 技術波及效果가 크고 所得彈力性이 높은 重化學産業이기 때문에 支援하는가 아니면 國際競爭力을 배양하기 위해 競爭力을 배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支援 保護하는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前者의 이유라면 굳이 産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관련되는 바람직한 몇가지 기능을 支援함으로써 충분히 重化學工業支援效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아울러 歪曲도 줄어들고 또 特定産業集中育成政策(targeting policy)이라는 外國으로부터의 비난도 피할 수 있다. 만일 後者의 이유라면 여러 가지 問題가 지적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租稅減免規制法上의 産業別支援政策은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租稅 등에 의한 相對價格構造의 영구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外部效果 등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合理化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重要産業에 대한 支援은 그들 産業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産業으로 우리 經濟에 뿌리를 내리게 하거나 이러한 과정이 단축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産業政策이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租稅政策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租稅政策에 따라 필요한 支援이나 보호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稅制에 이러한 점들까지 충분히 반영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時限附 産業保護에서 중요한 것은 事後的 時限性보다는 事前的 時限性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企業들에게 産業支援을 줄여나가는 「스케줄」을 미리 알도록 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支援이 필요한 各種 産業마다 이와 같은 個別「스케줄」을 일일이 稅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稅制上의 産業支援制度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신에 機能別支援制度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有望幼稚産業 등의 보호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有望幼稚産業의 保護는 더 效果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의 직접적인 구현은 貿易政策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機能別支援制度

가. 輸出支援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1973年에 발효된 稅制改編으로 稅制上의 輸出支援效果는 크게 감소하였다. 현행 稅制上의 輸出支援制度에 관한 문제는 첫째로 輸出支援을 위해서 특히 法人稅나 所得稅 등 직접 稅制上의 優待措置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과, 둘째로 필요하다면 현행의 各種 輸出關聯準備金制度는 적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輸出의 重要性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輸出促進을 위해 직접 稅制上의 支援이 있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稅減免 등으로 눈에 띄는 支援을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무역환경하에서는 현명하지 못한 전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換率政策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社會間接資本의 效率化를 통한 원천적인 경쟁력의 강화와 行政節次 등의 效率化를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의 감소 등이 더 效果的이고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稅制에서 輸出을 支援해 준다고 해도 現在의 輸出損失準備金制度와 海外市場開拓準備金制度, 價格變動準備金制度 등 準備金制度 중심의 輸出支援體制는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앞의 〈表 4〉에서 살펴본 것처럼 有效限界稅率面에서 그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이것은 이와 같은 支援效果가 限界量에 집중되지 않고 平均費用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는 租稅支出規模에 비해 誘因效果는 매우 작을 수 있는 것이다. 準備金制度가 社內留保를 촉진하고 따라서 企業의 財務構造를 건실화하는 효과가 있음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효과는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다기화된 準備金制度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企業會計上의 복잡성과 이에 따르는 非效率 등을 감안한다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社內留保促進政策은 별도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現在의 輸出關聯準備金制度는 적립한도를 輸出總額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外貨의 純稼得보다는 輸出總額을 극대화시키게 하는 誘因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稅制上의 현행 輸出支援政策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社內留保를 촉진할 수 있는 綜合的인 대책을 마련하고 換率政策의 합리적 운용, 社會間接資本서비스의 效率化, 技術開發支援, 中小企業支援, 각종 行政節次의 合理化 및 效率化 등을 통해 輸出活動을 간접적으로 支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技術 및 人力開發

技術이나 人力開發은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基礎科學이나 이에 관련된 人力은 公共財(public goods)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私的인 經濟主體보다는 정부에 의해서 投資되거나 정부의 직접적이고 전폭적인 支援(학교나 연구소 등에 대하여)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稅制 등을 통한 간접적인 誘因政策이 사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

한편 보다 産業에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 技術이나 人力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外部經濟效果를 가지고 있어서 民間企業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開發投資水準이 대체로 사회에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民間企業의 私的 限界費用을 社會的 限界費用水準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稅制 등에 의한 誘因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技術 및 人力과 관련된 稅制上의 誘因은 여러 段階에서 제공될 수 있다. 먼저 開發段階에서 投資資金의 限界費用을 낮춰줌으로써 開發投資를 크게 하려는 政策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발명이나 기타 技術開發行爲의 期待收益을 높여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支援措置도 첫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技術開發投資水準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번째로 開發된 技術을 실제로 産業에 응용하는 段階에서 위험부담을 줄여 주거나 초기의 여러 가지 隘路要因을 제거해 주는 方法이 있다.

첫번째 方法이 우리나라 技術 및 人力開發 政策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技術開發準備金 制度와 技術 및 人力開發費 稅額控除가 이에 해당된다. 技術所得에 대한 所得稅免稅措置가 두번째 方法에 해당되며, 冒險資本(venture capital)이나 冒險企業(venture business)을 도와주는 政策, 그리고 더 나아가서 中小企業에 대한 優待政策 등이 세번째에 해당된다.

産業部門에서의 技術開發投資水準 擴大는 民間企業의 自發的 投資意慾을 좀더 자극해 줄 수 있는 誘因政策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의 技術開發準備金制度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制度가 效果를 나타내는 행태적 「메카니즘」은 技術開發投資의 限界費用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낮추어 民間企業의 技術開發投資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技術開發投資準備金의 積立限度가 企業의 技術開發投資水準에 비해 충분히 크지 못할 경우에는 投資의 平均費用은 낮아지나 限界費用은 낮아지지 않으므로 投資擴大效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企業에 세부담만 줄여주는 效果가 나타날 수 있다[8]. 또한 投資誘因이 미래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연계되어 있어서 企業意思決定에 불필요하게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效果가 있다. 또 技術集約的인 尖端産業에 新規投資한 企業의 경우 창업후 수년간은 所得이 크지 않는 데 비해 技術開發投資支出은 계속되어야 할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支援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技術開發準備金制度는 보다 效率的이고 合理的인 投資誘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예컨대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稅額控除制度의 補完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稅額控除는 直接支援方式이고 準備金이나 減價償却 등은 間接支援方式이어서 가급적 後者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어느 방식이든 정부로부터 企業으로 資源의 이동이 일어나는 분명한 租稅支出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다 변수간의 연계성이 분명하고 租稅支出金額이 금리나 물가 등 다른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前者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效果的이다. 稅額控除制度의 補完은 控除額 計算方式을 技術開發關聯支出의 增加分(예컨대 과거 3년간 평균치에 대한 증가분)에 現在보다 높은 控除率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控除할 세액이 없을 경우 무기한 이월해 주거나 세액을 초과하는 控除額 해당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制度(일종의 negative tax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準備金制度가 겨냥하는 또 하나의 效果, 즉 企業財務構造 健全化의 유도목표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보다 단순하고 綜合的인 社內留保促進政策 「패키지」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현행 稅法上의 支援制度 중 企業附設研究所用 不動産이나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면세는 地方稅徵稅行政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稅制 자체를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研究開發을 위한 지출의 效率性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도 토지나 건물 등 의형적 投資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실제연구에 활용되는 設備나 연구시설의 가동에

8) 이에 대한 理論的인 分析은 李元暎(1984) 參照.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현행 稅制上의 技術開發支援制度에 대한 자세한 理論的·實證的 分析과 政策代案이 제시되어 있다.〕

필요한 經費의 지출을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稅額控除制度 강화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中小企業 支援

中小企業을 支援해 주는 것이 형평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中小企業을 支援하는 데 대한 보다 타당한 근거는 效率性의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中小企業 활동을 支援하고 그 창업을 쉽게 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經濟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또 수요와 생산의 다양화 추세에 中小企業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產業組織側面에서도 中小企業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中小企業 기반이 취약한 경우에는 中小企業의 육성이 大企業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中小企業支援은 또한 고용증대에 기여한다[9]. 고용증대는 所得分配側面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全體賦存資源의 效率的 利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現在 우리나라 租減法上의 中小企業支援은 15% 投資準備金制度와 50% 特別償却制度 등으로 되어 있다. 法人稅率이 5,000萬원까지 20%로 되어 있는 것도 일종의 零細中小企業 支援制度라고 볼 수 있다.

投資準備金制度와 特別減價償却制度의 有效限界稅率 引下效果는 一般機械設備投資의 경우 각각 약 1.6%「포인트」와 2.3%「포인트」로 推定된다. 두 가지 惠澤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해도 投資稅額控除로 환산하면 4% 내외에 불과하다. 또 이러한 制度들은 정상적으로 상당한 規模의 課稅所得이 있는 旣存의 中小企業 支援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로 창업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特定期間租稅減免(tax holiday) 制度, 혹은 보다 바람직하기는 補助金이나 金融支援 등을 통해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10]. 아울러 準備金制度와 特別減價償却制度를 폐지하고 그 대신 投資稅額控除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편 投資誘因의 제공은 產業의 資本集約度를 불필요하게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용증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증대에 대해서도 稅額을 控除해 주는 등의 誘因導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의 特定期間 租稅減免은 요소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3. 產業合理化 支援制度

현행 租減法上의 產業合理化 支援制度는 실제적인 政策適用對象의 결정을 '產業政策審議會'에 일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말하는 產業合理化는 產業組織政策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이른바 구조적인 不況產業이나 斜陽產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租減法上의 구체적인 產業合理化 支援對策의 내용은 資產, 특히 不動產의 거래에 따르는 稅負擔에 의한 費用을 줄여줌으로써 企業의 인수나 합병, 銀行負債의 整理 등에 있

9) 金栽元(1984, 1985) 參照.

10) 물론 이 경우에는 租稅特惠를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폐업 및 창업의 반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벌금을 과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惠澤의 적용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投資의 회임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는 鑛業과 製造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서의 애로요인을 없애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不動產도 틀림없이 중요한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고 經濟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요소의 部門間 移動性(mobility)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現行制度는 合理化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가 가져오는 稅制의 公平性과 政策의 一貫性에 대한 손상은 經濟社會의 發展에 있어서 대단히 커다란 負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企業의 과도한 부동산취득을 적극 억제해 온 정부가 부동산투기의 억제목적으로 도입한 稅金을 免除해 줌으로써 부실화된 企業의 부동산처분을 도와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의 문제는 현행 租稅減免規制法上의 產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規定보다 더 깊은 데 있다.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部門間 資源移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基本稅制가 部門間 資產去來에 지나치게 높은 稅負擔費用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租稅減免規制法은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재산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의 稅率을 대폭 낮춤과 동시에 各種 免稅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產業合理化를 위한 양도관련 稅金의 免除制度 자체가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企業의 不實問題와 관련해서 租稅政策은 오히려 不實企業의 처리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부실화의 예방을 가능케 하는 政策手段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技術開發과 人力開發을 도와줌으로써 企業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업종전환 등을 위한 投資에 대해서 稅額控除 등의 惠澤을 부여하고, 앞에서 말한 대로 稅制自體가 構造調整費用을 야기시키는 것을 극소화하도록 基本稅制를 잘 정비하는 일 등이라고 판단된다.

4. 其他 問題點과 改善方向

여기서는 現行稅制上의 各種 支援方法, 各種 支援制限規定 등에 관한 몇가지 技術的 問題點들과 對應策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稅制上의 主要支援方法은 特別減價償却이 중심이 되고 있고 여기에 投資稅額控除와 投資準備金制度 및 그 밖의 몇가지 다른 準備金制度를 곁들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支援方式中에서 投資稅額控除制度를 빼놓고는 모두 納稅를 이자 없이 연기해 줌으로써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支援해 주는 이른바 間接支援制度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投資稅額控除, 投資準備金, 特別減價償却制度 등은 모두 資本에 대한 投資를 支援해 주는 要素非中立的인 支援方式이다. 그리고 이상의 모든 감세조치들은 課稅所得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個別企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실제 惠澤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支援方式들의 몇가지 특징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資源配分上의 歪曲이 생길 수 있고 또 의도했던 政策效果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이른바 間接支援方式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租稅支出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企業意思決定에 있어서 불확실요인을 증가시킨다는 점, 그리고 일부 準備金의 경우 평균비용만을 낮추어 주는 경우가 있어서 租稅支出 單位當 정책효과가 낮을 수 있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特別減價償却制度는 減價償却制度 자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원래의 減價償却制度에 歪曲이 있으면 이것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法人稅法과 同施行令 및 施行規則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減價償却制度 自體를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행정적으로 의도되지 않는 歪曲을 먼저 없앤 다음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할 부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特別減價償却制度는 사실상 그 效果가 投資稅額控除와 마찬가지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라면 租稅支出이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投資稅額控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準備金制度는 실질적인 誘因效果 없이 조세지출을 야기하고 회계를 복잡하게 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지원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원방식이 要素非中立的이어서 불필요하게 우리나라 產業 全般의 資本集約度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발전하고 이와 같은 資本의 相對價格이 급속히 낮아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노동에서 資本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상당기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갈 노동의 고용흡수는 중요한 經濟社會政策課題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雇傭稅額控除 등 노동요소를 선호케 하는 誘因의 導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雇傭促進效果뿐 아니라 산업간의 균형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中小企業 등에는 投資稅額控除나 特別減價償却 등의 惠澤을 받을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租稅減免規制法上에는 여러 가지 減免事由가 동시적으로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租稅減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重複支援排除規定과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를 마련해 놓고 있다[11]. 그리고 세액공제의 초과분만은 4년간 移越控除가 가능하나 特別費用의 초과분이나 所得控除額의 超過分은 이월되지 않고 당기에 소멸된다.

이와 같은 制度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는 租減法에 의한 과도한 租稅減免을 막아줌으로써 전체적인 租稅支出의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租稅誘因制度의 체계를 歪曲시키거나 그 효과를 반감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制度이다. 정책당국이 의도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誘因效果를 나타내거나 誘因效果가 크게 감소될 경우가 빈번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租稅制度를 과도하고 복잡하게 한다. 그러므로 보다 바람직하기는 租稅誘因體系를 설계할 당시부터 종합적인 조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특정목적을 위한 단일 誘因의 폭을 너무 크지 않게

11) 먼저 重複支援의 排除란 特定會計年度에 特定企業에 있어서 租減法등에 의한 감면사유가 동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러한 감면규정들의 重複支援을 규제하기 위한 制度이다. 현행법에는 대개 지원형태별로 重複支援排除가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投資稅額控除 惠澤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만족될 때 그중에서 한 가지 경우만 선택하여 惠澤을 받도록 하는 制度이다. 다음으로 종합한도제는 일종의 最低限稅制度인데 그 내용을 보면 特別償却 등 特別費用은 이를 감안하기 전의 所得金額의 50%까지만 인정하고 所得控除金額은 控除된 所得金額의 50%까지, 그리고 稅額控除는 算出稅額의 30% 범위내에서만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는 制度이다.

함으로써 重複支援의 排除規定이나 綜合限度制 등이 없어도 좋도록 하는 것이다. 租減法을 제정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各種 減免規定間의 調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減免稅를 통한 誘因制度의 중요한 한가지 결점은 課稅所得이 있는 자만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綜合限度制나 重複支援排除規定 등을 감안한다면 과세소득이 상당히 큰 경우라야만 減免稅를 통한 誘因制度의 충분한 惠澤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창업시기에는 投資는 많이 일어나지만 본격적인 所得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投資稅額控除制度나 特別減價償却制度는 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불황국면에서 投資促進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도 심한 불황 때문에 과세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하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投資稅額控除額에 대해서만은 4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特別費用이나 所得控除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稅額控除의 경우에도 이월될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新規參入企業이 상대적으로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技術開發을 위한 「벤처비지네스」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誘因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效率的인 租稅支援體制의 構築

이상에서 우리나라 各種 租稅支援制度의 중요한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을 다소 구체적으로 檢討하였다. 이를 綜合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로, 租稅政策과 他政策手段間의 적정한 役割分擔이 이루어져야 한다. 市場機能의 擴大에 따라 價格誘因을 통해 作用하는 租稅政策의 相對的 役割이 더욱 增大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지만 政策手段간의 役割分擔과 調整을 통해서 經濟全般의 效率性을 提高시킬 여지는 크게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특정한 목적의 限時的인 產業別 支援에 있어서는 租稅政策보다는 金融이나 貿易政策手段을 利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둘째로, 稅制全般의 不合理點을 찾아내고 시정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있어서 稅制 때문에 資源配分이 歪曲되는 현상을 극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產業合理化의 支援에 있어서는 稅制內의 不合理點을 시정함으로써 무리한 租稅減免 없이도 構造調整이 圓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째로, 별로 效果도 없으면서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支援規定들을 과감하게 整備하고 구체적인 租稅支援方式의 合理化·效率化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企業의 經營健實化와 全般的인 競爭力提高라는 觀點에서 企業利益의 再投資促進施策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減免規定의 縮小에 상응하는 法人稅率 全般의 下向調整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이 論文에서 우리는 먼저 産業政策의 구체적인 手段들을 개관하고 이러한 政策手段의 성격에 비추어 租稅政策이 갖는 상대적인 특성을 分析함으로써 産業政策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租稅政策이 담당해야 할 적정한 역할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租稅政策의 여러 가지 특성에 비추어 個別産業支援이나 幼稚産業의 보호목적에는 租稅政策이 적합하지 않으며 보다 일반적인 産業支援에 租稅政策이 더 效果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主要産業支援制度의 변천과정과 現況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産業支援稅制의 綜合的인 支援效果를 評價하였다. 전반적인 支援效果는 70年代 후반을 정점으로 하여 1981年의 稅制改編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나 아직도 상당한 産業別 隔差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행 産業支援稅制의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에서의 租稅政策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논의와 현행 租稅政策效果의 評價등에 비추어 重要産業支援을 중심으로 한 産業別 支援을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하고 機能別支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支援手段別로도 기술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또 産業合理化를 위한 조세특례 등은 현행제도 안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稅制自體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무리한 減免措置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産業構造調整이라는 政策課題가 갖는 重要性에 비추어 租稅政策도 産業構造調整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租稅政策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特性과 限界를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産業支援租稅政策體系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産業政策 목표달성만을 위해서 租稅制度의 기본 틀이나 원칙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産業構造調整이라는 정책과제가 긴박한 것일수록 經濟 全體를 보는 눈을 가지고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郭泰元, 『減價償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 韓國開發研究院, 1985.

金栽元,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總要素生産性比較—製造業 1970~79』, 韓國開發研究院, 1984.

_____, 『産業構造 高度化와 中小企業의 育成』, 韓國開發研究院, 1985.

吳世敬(編), 『'85稅法通覽』, 法典出版社, 1985.

李元暎, 『研究開發投資와 稅制上의 誘因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84.

財務部 稅制局, 『租稅減免規制法 沿革集』(1965~1981).

全國經濟人聯合會, 『稅制改編方向에 관한 意見』, 1985.

崔明根, 李俊求, 崔洸, 李龍煥, 『經濟體質强化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韓國經濟研究院, 1985.

Jorgenson, D.W. and M.A. Sullivan,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C.R. Hulten(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pp. 171~238.

〈附表〉 租稅減免規制法上의 主要產業支援制度(直接國稅 中心)

支 援 區 分	支 援 內 容
重要產業支援(납사분해, 鐵鋼, 機械, 電子, 造船, 航空產業 등의 設備投資)	1) 特別減價償却 : 100%(단, 機械 및 電子工業의 경우 特別減價償却 100%와 投資稅額控除 3%(國產 5%)중 擇一)
海外事業支援(海外建設, 產業設備의 輸出)	1) 所得控除 : 輸入의 2%(소득의 50% 범위내) 단, 1986.12.31까지만 적용 2) 海外事業損失準備金 : 收入의 2% 3) 特別減價償却 : 30%
資源開發支援(鑛業, 畜產業 및 林業)	1) 鑛業投資準備金 : 輸入金의 2%(海外資源開發의 경우 4%) 2) 鑛業의 事業用資產에 대한 特別減價償却 : 100% 3) 畜產業所得控除 : 최초 所得 발생후 5년간 20% 控除 4)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 등의 控除 : 營林計劃 혹은 指定開發事業 등에 의하여 新規造林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所得稅 및 法人稅 免除
其他 產業別 支援(국제항공, 국제해운, 방위산업)	1) 特別減價償却 : 100%
超過稼動機械裝置에 대한 支援(鑛業 및 製造業)	1) 超過稼動時間에 따른 特別償却 : 12時間 이상 : 20% 15時間 이상 : 30% 18時間 이상 : 50%
中小企業支援(製造業, 鑛業, 建設, 運輸, 水產業에 종사하는 中小企業)	1) 投資準備金 : 15% 2) 特別減價償却 : 50%(優先育成業種 : 100%)
輸出 및 外貨獲得支援(輸出, 觀光, 軍納, 用役 등)	1) 輸出損失準備金 : 外貨輸入의 1% 또는 所得의 50%중 적은 金額 이내 2) 海外市場開拓準備金 : 外貨輸入의 1% 이내 3) 價格變動準備金 : 在庫資產價額의 5% 이내 4) 特別減價償却 : 30%
海外投資支援	1) 海外投資損失準備金 : 投資額(12個月 기준)의 10% (資源開發의 경우 20%) 2) 海外資源開發投資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 免除
技術 및 人力開發支援	1) 技術開發準備金 : 收入金額의 1%(1.5%) 혹은 所得의 20%(30%) 중 많은 金額 * ( )내는 技術集約產業의 경우 2) 技術 및 人力開發費 稅額控除 : 10% 3) 新技術 企業化 事業用資產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 : 6%(國產 10%) 投資稅額控除와 50% 特別減價償却中 擇一 4) 硏究實驗用施設 및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投資 : 8%(國產 10%) 投資稅額控除 및 50% 特別減價償却中 擇一 5) 新技術事業投資會社의 株式讓渡差額 益金不算入(中小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會社 支援) 6) 技術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 :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 非課稅, 대여할 경우 5년간 所得稅 免除 7)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 5년간 50% 8) 外國人 技術者에 대한 所得稅 免除 : 5년간 勤勞所得稅 免除 9)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의 條件附配當損失準備金 : 條件附 金融金額의 50%

支 援 區 分	支 援 內 容
産業合理化支援	1) 中小企業間의 統合時 : 讓渡稅 免除 2) 中小企業의 法人轉換時 : 讓渡稅 免除 3) 産業合理化 指定企業 가. 合併 : 登錄稅, 取得稅 免除 나. 資産讓受渡時 : 讓渡稅, 登錄稅, 取得稅 免除 다. 債務의 免除 : 免除企業은 損金算入, 免除받은 企業은 益金不算入 라. 合併, 資産讓受渡後의 不用資産處分時 : 讓渡稅 免除 마. 擬制配當所得, 淸算所得非課稅
地域開發關聯 租稅支援	1) 農漁村所得 開發事業(農工地區, 農村副業團地內) 가. 投資準備金 : 事業用資産의 15%(도서지방 20%) 나. 特別減價償却 : 100% 2) 地方移轉事業支援 가. 地方移轉準備金 : 工場施設價額의 10% 나. 양도시 讓渡稅 免除 다. 地方移轉投資時의 投資稅額控除 : 8%(國産 10%) ・生産性向上施設 ・에너지節約施設 ・公害防止施設, 産災豫防施設 ・유통事業施設, 母企業이 受給中小企業에 설치하는 檢査臺 및 試驗硏究施設, 鑛山保安施設 등
其他産業支援	1) 리스會社에 대한 特別償却 : 20% 2) 特定設備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 8%(國産 10%)(生産性向上施設, 에너지節約施設, 公害防止施設, 産災豫防施設, 流通産業施設, 鑛山保安施設, 母企業이 受給中小企業에 설치하는 檢査臺, 시험연구시설 등) 3) 景氣調節을 위한 臨時投資稅額控除 등 가. 臨時投資稅額控除 : 6%(國産 10%) 나. 臨時特別減價償却 : 50%(단, 臨時投資稅額控除와 臨時特別償却의 동시적용은 배제됨) 4)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支援 가. 增資所得控除 : 增資金額의 12%

産業構造變化와 人力政策

金 仲 秀
朴 烜 求

▷ 目 次 ◁

Ⅰ. 序 論
Ⅱ. 推定方法論 및 硏究事例 考察
Ⅲ. 産業別·職種別 人力需要에 대한 實證分析 및 展望
Ⅳ. 成長産業의 人力構成 및 政策課題
Ⅴ. 斜陽産業의 人力政策
Ⅵ. 結 語

Ⅰ. 序 論

70年代 後半 이후 우리나라 經濟成長戰略은 輕工業보다는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그 根幹을 두어 왔다. 이러한 政策基調에 따라 生産活動은 勞動의 活用보다는 資本이나 技術投資의 擴大를 誘導하게 되었고, 따라서 生産構造가 勞動節約的으로 轉換되었던 것이다.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經濟成長率에 相應하는 雇傭增加量 減少趨勢도 위와 같은 政策轉換이 초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人力政策의 기본적 「딜레마」(dilemma)는 雇傭機會擴充이라는 量的側面의 課題와 우수한 技術人力養成이라는 質的側面의 課題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60年代 중반 이후의 「베이비 붐」世代가 成年化되고, 1981年 이후 대폭 증원된 大卒人力이 勞動市場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80年代 중반 이후에는 勞動供給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階層에 就業機會를 提供할 수 있는 雇傭 및 經濟政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出産力의 低下 및 高學歷化 現象에 따라 女性人力의 勞動市場參與率이 높아질 것이므로 勞動供給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對外與件上으로는 先進諸國에서의 保護貿易主義 趨勢는 新技術移轉을 기피하는 현

筆者：金仲秀—本院 硏究委員
朴烜求—本院 先任硏究委員

* 草稿를 읽고 有益한 批評을 하여 준 張鉉俊 博士, 資料의 電算處理 및 原稿整理에 도움을 준 金暎姬, 千奎承 主任硏究員, 金振榮 硏究員 및 金鍾禮 硏究助員에게 感謝를 표한다. 本論文의 어떠한 誤謬도 全的으로 筆者들의 責任임을 밝힌다.

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內的으로는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해서 製品의 高級化 및 品質管理에 注力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두 現象에 적절히 對應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視角下에서 科學技術人力 및 技能人力의 養成·確保, 즉 人力의 質的水準 向上이 主要政策課題로 浮刻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產業構造가 高度化되는 過程에서 技術開發과 自動化現象으로 單純技能人力에 대한 需要가 自然的으로 減少할 것이며, 또한 成長이 상대적으로 鈍化되는 產業에서 人力送出現象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들의 就業能力을 제고시키는 方案도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本論文의 目的은 향후 10年間의 產業別 成長展望을 기초로 하여 產業別·職種別 人力需要를 예측함으로써, 產業構造 高度化過程에서 야기되는 人力政策課題를 論議하려는 데 있다. 本論文은 다음과 같이 展開된다. 第Ⅱ章에서 人力需要 推定方法에 대한 理論的 설명과 旣存의 硏究事例에 대한 考察이 提示되고, 第Ⅲ章에서는 產業別·職種別 人力需要에 대한 實證分析과 展望結果가 論議되고, 第Ⅳ章에서는 향후의 經濟成長을 주도할 主要產業의 人力構成 및 關聯政策課題가 討議되고, 第Ⅴ章에서는 成長이 鈍化될 것으로 전망되는 斜陽產業의 人力分布 및 關聯政策課題가 分析되고, 第Ⅵ章에 結語가 이어진다.

1) 生產額이란 最終需要外에 中間投入財의 生產도 포함하는 總產出額을 意味하는 것이다. 人力計劃(manpower planning)模型에서의 推定方法論에 관한 논의는 Grinold and Marshall(1977) 參照.

2) Harbison and Myers(1965)에 수록되어 있는 硏究들이 式(1)과 동일한 推定方法을 使用하였다.

Ⅱ. 推定方法論 및 硏究事例 考察

人力需要의 計量的 推定은 單位生產額에 相應하는 勞動生產性의 變化推移를 전망함으로써 計劃된 生產額 達成을 위한 必要勞動量을 구하는 방법이 常用된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두 방법으로는 첫째, 經濟成長 計劃値와 一貫性있는 產業構造를 전망한 후, 이에 相應하는 必要雇傭量을 推定하는 방법과 둘째, 期間別 附加價値 創出額 變化量에 따른 追加 必要雇傭量을 豫測하는 방법이 있다[1].

1. 生產額基準 人力需要 推定方法

長期人力需要는 일반적으로 勞動形態(s)別(예를 들면 學歷別·職種別·技能水準別 등)로 구분하여 전망을 하며, 傳統的으로 使用되어 온 推定方法은 式(1)과 같다[2].

$$E_s=\sum_i e_{si}X_i \quad \cdots\cdots(1)$$

여기서 e_{si}는 產業部門 'i'($i=1,\cdots,n$)의 單位產出額에 相應하는 's' 形態의 必要勞動力係數(時間當 延人員 槪念으로 表示), X_i는 產業部門 'i'의 產出額, E_s는 's' 形態의 總雇傭量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產業聯關去來表의 資料가 基礎資料로 사용되며, X_i와 E_s를 連結시키는 係數 e_{si}는 不變이라는 것이 常用되는 假定이다. 그러나 式 (1)을 사용하여 人力需要를 전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理論的 問題點들이 야기된다.

첫째, 式(1)에서는 資本과 勞動의 두 生産要素間의 代替可能性(substitutability)이 考慮되지 않았음과 더불어, 職種·技術水準·敎育程度 등이 서로 다른 勞動力間의 代替可能性도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서로 다른 勞動形態間의 相對賃金이 不變이라는 假定을 意味하는 것이며, 따라서 産業內에서의 職種間 勞動力의 相對的 構成分布도 賃金水準보다는 勞動力의 技術水準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3].

둘째, e_{si}가 不變이라는 假定은 勞動/産出額 比率(labor-output ratio)의 平均値와 限界値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假定은 産出額의 증가에 따라 相對的 技能集中度(relative skill intensities)가 크게 변한다는 旣存의 實證分析 結果에 비추어 볼 때 現實性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e_{si}가 不變이라는 假定의 더욱 非現實的인 側面은 總雇傭의 産出額 變化에 대한 彈性値가 1이라는 假定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인데, 이 역시 産出額의 雇傭彈性値가 1보다 현저히 작다는 과거의 實證分析 結果에 상치되는 것이다[4].

式 (1)에서의 短點들을 補完하는 방법이 雇傭 및 産出額의 增分(increments)을 이용한 式(2)으로 표시된다. 즉,

$$\Delta E_s = \sum_i e'_{si} \cdot \Delta X_i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2)$$

여기서 e'_{si}는 産出額 增分에 相應하는 's'形態의 必要勞動增加量을 나타내는 勞動係數이다. 式 (1)에 式 (2)를 더하면,

$$E_s = \sum_i e_{si} \cdot X_i + \sum_i e'_{si} \cdot \Delta X_i \quad \cdots\cdots\cdots\cdots (3)$$

여기서 X_i는 基準年度의 i産業의 産出額을 나타낸다. 式 (3)에서는 式 (1)의 論議에서 지적되었던 취약점들, 즉 勞動/産出額 比率이 不變이 아니라는 점과 이 比率의 平均値와 限界値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들이 補完되었다. 또한 增分係數인(incremental coefficients) e'_{si}와 基準年度의 平均係數인 e_{si}와의 相對的 크기에 따라 雇傭彈性値가 1보다 작다는 現實性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式 (3)에 있어서도 勞動/産出額 比率의 增分係數인 e'_{si}가 不變이라는 假定의 現實性이 또한 論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의 補完方法으로 式 (4)가 考案되었다.

$$\frac{\Delta E_s}{E_s} = \sum_i k_{si} \frac{\Delta X_i}{X_i} a_{si} \quad \cdots\cdots\cdots\cdots (4)$$

여기서 E_s, X_i는 各各 基準年度의 勞動量 및 産出額, k_{si}는 産業 i의 's'形態 勞動需要의 産出額에 대한 彈性値, a_{si}는 i産業에서의 's'形態 勞動의 雇傭構成比를 나타낸다[5].

2. 附加價値基準 人力需要 推定方法

生産額基準 人力需要 推定方法의 가장 중요한 假定이 式 (3)이나 式 (4)에서의 係數의 安定性(stability)인 것이다. 특히 長期展望에 있어서는 技術進步나 構造變化에 따라 係數도

3) 相異한 勞動形態間의 代替彈力性이 높다는 假說에 관한 理論的 說明과 이를 입증하는 實證分析은 Dougherty(1972) 參照.

4) 技術水準의 향상에 따라 單位生産額에 상응하는 必要雇傭量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자세한 논의는 Blitzer(1975) 參照.

5) 理論的으로 보면 式 (4)가 理想的이나 實際 雇傭展望作業에서는 式 (3)이 보편적으로 使用되고 있다. 産業別 雇傭特性의 分析은 센서스나 産業聯關去來表의 資料를 利用하여야 有用한 情報를 入手할 수 있는데, 위의 조사는 5年 정도의 時差를 두고 실시되므로 式 (4)의 k_{si} 推定에 필요한 충분한 時系列資料가 一般的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變化할 것으로 豫想된다. 附加價値基準의 推定方法은 상대적으로 短期的 人力需要展望을 위한 方法으로서 이 方法의 기본초점은 勞動서비스의 投入量과 生産額의 關係 究明에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方法이 아래에 설명되는 Ball and St. Cyr (1966)에 의하여 發展되어 온 것으로서, 이는 單一方程式으로 短期生産函數를 推計分析함으로써 人力需要를 도출하는 方法이다.

$$Q_t = Ae^{bt}(Eh)_t^{\alpha} \quad \cdots\cdots(5)$$

여기서 Q는 附加價値, E는 雇傭者數, h는 勤勞時間, Ae^{bt}는 資本과 技術進步 등의 效果를 반영하는 移動母數(shift parameter)를 나타낸다. 式 (5)에 費用最少化 假定과 「코익」 部分調整時差(Koyck partial adjustment lag)를 첨가하여 定式化한 方程式은 다음과 같다[6].

$$ln E_t = a_0 - \frac{\lambda_{pt}}{\alpha} + lnQ_t + (1-\lambda) lnE_{t-1} \quad \cdots\cdots(6)$$

여기서 α는 附加價値의 勤勞時間當 雇傭彈性値이며, λ는 最適水準雇傭量에 도달하려는 速度를 나타내는 係數이다. λ의 값이 1에 接近할수록 最適水準에의 도달이 短期間內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式 (6)은 資本스톡에 대한 資料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勞動需要 推定方程式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旣存의 實證分析 結果를 보면 勞動에 대한 報酬(return)인 α의 推定係數가 1에 근사한 數値가 얻어지는 등 非現實的인 결과가 도출됐다[7].

式(5)에서는 非體化的技術變化(disembodied technical change)가 假定되었으나 體化的 技術進步(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 形態의 生産函數의 定式化는 式 (7)로 表示된다.

$$Q_t = A'_t L_t^{\alpha} J_t^{\beta} \quad \cdots\cdots(7)$$

여기서 A'_t은 資本要素의 質의 變化를 統制한 후의 技術進步效果를 나타내며, J는 資本要素間의 質的 差異를 감안하여(즉 새로운 機械의 價値를 낡은 機械의 價値보다 더 높게 評價하는 等) 加重平均한 變數을 나타낸다. 한편 技術進步에 따라 資本의 質이 지속적으로 向上될 것이며 이 向上速度를 λ로 表示하면 J_t는 資本스톡과 같은 관계에 있다.

$$J_t = \sum_{0}^{t} K_{vt}(1+\lambda)^{v} \quad \cdots\cdots(8)$$

여기서 K_{vt}는 v年度(vintage year)에 形成된 資本으로서 t時點에서 使用되는 量을 나타낸다. 式 (7)을 「콥·다글라스」(Cobb-Douglas) 形態로 나타내어 로그(log)變形을 한 후 微分하면 式 (9)를 얻는다[8].

---

6) 式 (6)에 포함되어 있는 無限時差構造(infinite lag structure)를 나타내는 時差從屬變數 E_{t-1}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企業의 雇傭增加 決定은 價格構造의 未來展望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未來價格期待値가 현재 및 과거의 價格時系列의 一變量函數로 代表되어진다면(univariate representation) 이를 E_{t-1}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7) Mangan and Silver(1983) 參照. 이러한 결과는 式 (5)와 같은 生産函數의 推定에서 資本스톡變數 대신 趨勢(trend)變數를 사용하였든지, 또는 技術進步效果 등을 적절히 考慮하지 않은 데 起因하는 것이다. Symons and Layard(1984)에서는 先進 6個國 製造業分野의 勞動需要函數推定에서 資本스톡變數에 대한 資料 대신 趨勢變數(t)의 t, t^2, t^3을 사용하였으며, Dougherty(1972)에서는 GNP가 모의변수로 사용되었다.

8) Kennedy and Thirlwall (1972)은 式 (8)과 같은 體化的 技術進步의 경우 式 (9)가 式 (10)의 形態로 변형되는 것을 도출하였다.

$$\frac{\Delta Q}{Q} = \frac{\Delta A'}{A'} + \alpha\frac{\Delta L}{L} + (1-\alpha)\frac{\Delta K}{K} + (1-\alpha)\lambda - (1-\alpha)\lambda(\Delta\bar{a}) \quad \cdots\cdots(10)$$

여기서 $\bar{a}$는 資本要素의 平均壽命을, 따라서 $\Delta\bar{a}$는 技術利用의 最適水準과 平均水準과의 차이를 槪略的으로 推定하는 尺度로 볼 수 있다. 式 (9)의 마지막項이 式 (10)에서는 3個의 項으로 展開되었는데, 이들의 意味는 순서대로 각기 實際資本스톡의 成長, 資本要素의 質的水準 平均向上率, (投資의 函數라 볼

$$\frac{\Delta Q}{Q}=\frac{\Delta A'}{A'}+\alpha\frac{\Delta L}{L}+(1-\alpha)\frac{\Delta J}{J} \quad \cdots\cdots(9)$$

3. 研究事例 考察

人力需要展望分析은 經濟開發段階에서 科學技術 및 技能人力의 적절한 供給이 要求될 경우 이에 대한 敎育 및 職業訓練實施制度 確立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敎育制度가 정비되어 있고 市場機能이 원활히 작용하는 先進經濟보다는 開發途上國에서 長期人力需要에 대한 分析이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人力需要分析은 방대하면서도 細部的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後進國일수록 勞動需要 및 供給에 대한 자료가 未備하여 앞 節에서 論議한 分析方法이 거의 이용되지 못하였다.

開發途上國의 研究事例를 보면[9] 이용된 方法論은 공통적으로 자료의 過去趨勢를 단순히 연장시켜 전망하는 方法을 택하였다. 上記 分析은 공통적으로 資質이 우수한 人力의 供給을 위하여 各國의 敎育制度의 改善이 시급하다는 結論을 도출하였으나, 分析에 사용된 資料나 方法論 등이 粗雜하여 分析結果가 論爭의 여지가 있는 研究者의 주장이나 추측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10]. 先進經濟의 경우에는 敎育制度가 정비되어 있고 市場機能이 人力需給調節의 主要役割을 담당하므로, 人力政策研究는 特殊職種의 人力供給을 확보하기 위한 誘因方案(incentive scheme)의 開發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11].

우리나라의 研究事例를 보면, 開發途上國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욱 정교한 推定方法을 사용하였으며, 利用資料도 더 포괄적이었다. 김윤태敎授外(1978)의 研究는 長期人力需給展望의 始發點이라고 할 수 있다. 産業別 人力需要의 長期豫測에 사용된 方法은 기본적으로 式 (5)에 實質賃金 및 大卒就業者比率을 추가한 方程式의 推定으로서 앞 節에서 論議된 문제점들이 감안되지 않은 單純回歸分析方法을 이용하였다. 또한 職種別 分布는 各産業別로 附加價値/勞動比率, 職種別 實質賃金 및

수 있는) 資本要素 平均壽命의 變化效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勞動要素의 경우에도 資本과 동일한 理論을 적용시킬 수 있다. 즉 스톡槪念으로서의 勞動이 아니라 서비스를 창출하는 의미에서의 勞動要素가 生産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勞動力의 質的 差異에 따르는 效果를 감안하여야 되는 것이다. 資本 및 勞動 두 要素 모두 體化的 技術進步가 있을 경우 式 (7)을 式 (11)로 나타낼 수 있다.

$$Q_t=A''_t(zL_t)^{\alpha}J_t^{1-\alpha} \quad \cdots\cdots(11)$$

여기서 zL은 質의 變化를 감안한 勞動投入을 나타낸다. Kennedy and Thirlwall (1972)은 勞動서비스 要素를 實物單位(physical units)로 計測된 勞動投入의 成長, 勞動서비스 質的水準의 年向上率(λ_L), 勞動서비스 提供期間의 變化效果($\lambda_L\cdot\Delta\bar{e}$) 等으로 구분하였다. 式 (9)를 式 (10)으로 變形시킨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式 (11)은 다음과 같이 展開될 수 있다.

$$\frac{\Delta Q}{Q}=\frac{\Delta A''}{A''}+\alpha\frac{\Delta L}{L}+(1-\alpha)\frac{\Delta K}{K}$$
$$+\alpha\lambda_L+(1-\alpha)\lambda_k-\alpha\lambda_L\Delta\bar{e}-(1-\alpha)\lambda_k\Delta\bar{a}\cdots(12)$$

式 (12)에서의 A''은 資本과 勞動要素의 質的水準向上效果를 통제한 후의 生産性을 나타내는 指數로 해석할 수 있다.

9) Horowitz(1965), Whyte(1965), Blitz(1965)의 경우 각기 Argentine, Peru 및 Chile의 人力需要分析을 시도하였다.

10) Baldwin(1965)의 경우 Iran의 人力計劃樹立過程에서 實査調査를 바탕으로 한 分析을 試圖하였으나, 향후의 産業別 成長 및 이에 相應하는 技能人力需要의 展望値가 現實性이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報告되었다. 이는 實査調査를 도대로 産業別 成長을 전망하게 되면, 企業의 成長目標가 과대하게 推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산하는 회사일지라도 기업의 성장목표는 희망적으로 세우기 때문이다.

11) Paul(1985), Dougherty(1985), Hight(1985)는 각기 불란서, 영국, 미국에서의 人力需給을 전망하였는데, 基本模型은 式 (3)에 式 (6)을 加味한, 즉 産業聯關模型에 巨視經濟模型을 연결하여 總量指標를 예측한 후, 勞動生産性의 變化推移를 감안하여 人力需要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들의 研究는 産業別 人力需要를 예측한 후 職種別 分布를 추정하였는데, 특히 高級技術人力의 양성을 위한 敎育·訓練制度의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表 1〉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 : 1965~85

(단위 : 千名, %)

	全 産 業		農 林 漁 業		鑛 工 業		SOC 및 서비스業	
	就業者數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1965	8,206	—	58.6	—	10.4	—	31.0	—
1970	9,745	(3.50)[2]	50.4	(0.44)	14.4	(10.44)	35.2	(6.16)
1975	11,830	(3.95)	45.9	(1.99)	19.1	(10.18)	35.0	(3.81)
1980	13,706	(3.00)	34.0	(−3.00)	22.6	(6.44)	43.4	(7.53)
1985[1]	15,028	(1.86)	25.5	(−3.79)	24.2	(3.29)	50.2	(4.87)

註 : 1) 1985年 數値는 1月~11月 期間 平均値임.
2) ( )안의 數値는 期間別 年平均增加率을 나타냄.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및 『韓國統計月報』, 1985. 12.

産業別 附加價値를 獨立變數로 하는 回歸分析 結果에 따라 전망하였다. 産業別·職種別 人力需要展望模型의 開發을 시도하였다는데 위의 硏究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유사한 方法으로 第5次 5個年計劃期間을 기점으로 10年間의 産業別·職種別 人力需要의 豫測이 朴烜求(1981)의 硏究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本硏究의 특징은 需要豫測을 한 후 供給側面에서 新規勞動參與人力을 人力供給敎育機關別로 구분하여 需給分析을 하였다는 데에 있다. 金秀坤 敎授外(1981)의 分析에서는 細分된(52個) 産業分類別로 人力需要를 전망하였는데, 産業聯關去來表의 資料에 근거하여 앞 節에서 論議한 式 (1)의 方式을 이용하였다[12].

Ⅲ. 産業別·職種別 人力需要에 대한 實證分析 및 展望

本章에서는 勞動市場에서의 産業別·職種別 就業分布, 勞動係數(産出額當 必要勞動量) 등의 變化推移를 槪括하고, 향후 10年間의 産業構造展望과 이에 相應하는 産業別·職種別 人力需要를 豫測·分析하고자 한다.

1. 就業人口分布 및 勞動生産性 推移

産業別 就業人口分布 變化의 두드러진 특징은 70年代 후반 이후 農林漁業의 就業人口가 相對的 構成比에서뿐 아니라 絶對水準에서도 減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林漁業 就業人口는 1965年에 4.8百萬名으로서 全産業에 대한 就業人口構成比가 58.6%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年에는 3.8百萬名으로서 그 構成比가 25.9%로 下落한 實情이다. 이에 반하여

12) 한편 特定産業이나 職種分野의 微視硏究로는 電氣·電子分野의 分析으로 鄭澤永氏 外(1984), 통신·정보분야의 人力需要展望으로는 윤종관 敎授外(1984), 高級科學技術分野 人力需給展望으로는 金知壽 敎授外(1985)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硏究들의 공통적 接近方法은 式 (5)와 유사한 回歸分析方法이었으며, 이러한 方法論上의 근본적 취약점은 前述한 바와 같이 推定된 係數의 不變性(fixed coefficients)이 假定되어, 技術進步 등에 의한 産業의 雇傭吸收力變化를 감안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金有培 敎授(1985)의 硏究는 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製造業雇傭函數를 式 (6)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人力需要의 전망보다는 主要獨立變數들의 說明力 分析에 硏究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鑛工業 및 3次産業 就業人口의 比重은 60年代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特記할 事項은 1965~80年 기간에는 第3次産業部門보다는 鑛工業部門의 就業人口 增加趨勢가 더욱 현저하였던 것에 반하여, 1981~85年 기간에는 鑛工業部門 就業人口 增加趨勢가 둔화된 반면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部門의 就業人口 增加比率이 더욱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0年代 중반까지 勞動集約的 輕工業을 기반으로 한 産業政策으로 鑛工業部門에서의 雇傭吸收力이 높았으나, 70年代 후반 이후 重化學工業 育成政策으로 전환함에 따라 資本技術集約産業이 成長하게 되고, 따라서 鑛工業部門에서의 雇傭吸收力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 現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14].

〈表 1〉에서의 産業別 就業人口分布變化와 産業別 勞動生産性 推移의 결과를 종합하면 1人當附加價値額 변화는 就業者 構成比와 負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就業人口의 增加에 따른 1人當附加價値額의 하락 현상은 就業者當 雇傭時間, 추가적으로 늘어난 就業人口의 勞動生産性水準 및 産業別 附加價値率의 變化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就業者의 勞動時間을 감안한 産業別 勞動生産性(附加價値 基準이 아닌 産出額 基準)의 변화 추이의 비교가 雇傭係數 및 就業係數로 〈表 2〉에 나타나 있다[15].

〈表 2〉 産業別 雇傭係數 및 就業係數

(단위 : 百萬원, 名, %)

	1970		1975				1980				1983			
	雇傭係數	就業係數	雇傭係數	年增加率(1971~75)	就業係數	年增加率(1971~75)	雇傭係數	年增加率(1976~80)	就業係數	年增加率(1976~80)	雇傭係數	年增加率(1981~83)	就業係數	年增加率(1981~83)
全産業	0.1170	0.2812	0.0947	(-4.14)	0.1939	(-7.17)	0.0731	(-5.05)	0.1301	(-7.66)	0.0645	(-4.09)	0.1117	(-4.97)
農林漁業	0.1115	0.8552	0.0821	(-5.93)	0.5890	(-7.19)	0.0598	(-6.16)	0.4993	(-3.25)	0.0458	(-8.51)	0.3413	(-11.91)
製造業	0.0885	0.0942	0.0776	(-2.61)	0.0807	(-3.06)	0.0531	(-7.28)	0.0554	(-7.22)	0.0470	(-4.00)	0.0491	(-3.95)
輕工業	0.1011	0.1086	0.0944	(-1.36)	0.0992	(-1.79)	0.0707	(-5.62)	0.0748	(-5.50)	0.0653	(-2.59)	0.0696	(-2.38)
重化學工業	0.0680	0.0708	0.0560	(-3.81)	0.0569	(-4.26)	0.0377	(-7.61)	0.0384	(-7.56)	0.0346	(-2.84)	0.0352	(-2.84)
社會間接資本및서비스業	0.1398	0.2272	0.1169	(-3.51)	0.1902	(-3.49)	0.0994	(-3.18)	0.1476	(-4.95)	0.0908	(-2.97)	0.1371	(-2.42)
社會間接資本	0.0979	0.1023	0.0847	(-2.86)	0.0867	(-3.26)	0.0725	(-3.07)	0.0728	(-3.42)	0.0563	(-8.60)	0.0568	(-7.94)
서비스業	0.1529	0.2664	0.1272	(-3.62)	0.2234	(-3.46)	0.1086	(-3.10)	0.1731	(-4.97)	0.1056	(-0.95)	0.1714	(-0.33)

註 : 1980年 不變價格임.
資料 : 『産業聯關去來表』 韓國銀行.

13) 이와 비슷한 變化類型이 職種別 就業人口分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附表 1〉에서 보면 工業化 과정의 基本人力인 生産職 技能人力의 비중은 1965年의 16.3%에서 1980年에 29.1%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1985年에는 30.1%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工學技術者를 포함한 專門技術職 人力의 比率도 1965年의 2.8%에서 1985年에 7.2%로 현저히 伸張하였다. 한편 서비스職 人力의 構成比는 1965~80年 기간에는 6.5%에서 7.9%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980~85年 기간에는 7.9%에서 11.1%로 크게 늘어나 産業別 分布變化에 副應하는 結果를 나타내었다.

14) 한편 産業別 就業者 1人當附加價値 변화추이를 보면(附表 2 참조), 60年代 후반에 年平均增加率 6.6%로 가장 높았으며, 70年代에는 4.2~4.5% 수준, 80年代 전반에는 5.9%의 成長率을 보였다. 이러한 全産業 平均値를 産業別로 구분하여 보면 期間別 變化推移가 産業別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全産業의 경우와는 달리, 鑛工業의 就業者 1人當附加價値額의 年平均增加率은 60年代 후반에 가장 낮았고, 70年代에는 6.0%의 높은 成長率을 보였으며, 80年代 전반에도 60年代 후반보다 높은 5.8%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15) 雇傭係數는 被傭者當 産出額의 逆數이며, 就業係數는 無給家族從事者, 自營業者 등 全就業人口를 대상으로 한 就業者當 産出額의 逆數이다. 따라서 後者는 景氣變動에 따른 不完全就業者의 生産性을 반영하는 指數로 해석된다.

全産業의 경우를 볼 때, 雇傭係數와 就業係數의 隔差가 絕對水準으로나 相對水準으로나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年에는 100萬원(1980年不變價格 基準)을 産出하기 위하여 0.117名의 雇傭人員이 필요하였으나, 就業人口로 볼 때는 0.164名이 더 많은 0.281名(2.4倍)이 필요하였다. 1983年의 경우 同一額 産出을 위하여 0.065名의 雇傭人員과 이보다 불과 0.047名이 더 많은 0.112(1.7倍)名의 就業人員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雇傭係數의 就業係數에 대한 相對的 比率도 1970年의 0.416에서 1983年에 0.578로 增加되어 두 係數의 隔差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基本的으로 製造業에서는 不完全就業者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雇傭人員과 就業人員이 거의 비슷하므로, 全産業의 係數變化는 農林漁業 및 서비스業에서의 變化推移를 반영하는 것이다. 特記할 事項은 農林漁業部門과 서비스業部門에서의 雇傭係數 및 就業係數의 相對的 變化率이 서로 상반되는 變化推移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係數의 年平均 減少率을 기간별로 비교하면, 農林漁業部門에서 雇傭係數 減少率이 就業係數 減少率보다 더 크면 이와 반대로 서비스業部門에서는 同期間 就業係數의 減少率이 雇傭係數의 減少率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全期間에 걸쳐 이러한 상반된 현상이 반복된 사실은 두 部門間의 就業人口의 移動性(mobility) 및 代替性(substitutability)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産業構造展望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과 世界貿易構造變化 등의 對外與件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長期的으로 90年代 중반까지 年平均 7% 水準(80年 價格基準)의 成長이 가능하다고 전망된다[16]. 이러한 巨視指標와 一貫性있는 産業別(本硏究에서는 製造業 20個産業을 포함한 29個産業으로 分類) 成長分布를 豫測하는 데 産業構造展望 硏究의 초점이 있다. 産業別 成長展望은 本硏究院에서 개발한 靜態線型計劃模型(static linear programming model)에 의거 추정하였다[17].

大分類 産業別 成長展望을 보면(表 3 參照), 製造業部門은 80年代 후반에는 年平均 7.9%의 成長을 보이다가, 先進諸國에서의 보호무역기조가 완화되어 世界景氣가 회복될 것으로 展望되는 90年代 전반에는 年平均 8.8%의 높은 成長率을 보여 成長主導産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第3次産業部門은 80年代 후반 年 7.6%, 90年代 전반 年 6.4%의 꾸준한 成長을 보일 것으로 豫測된다.

工業構造의 변화를 보면(附表 3 參照), 輕工業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1983年의 61.2%에서 1996年에는 67.6%로 증가할 전망이다. 向後 經濟成長을 主導할 産業으로는 電氣·電子, 輸送機器(특히 自動車), 機械工業 등이 예상되며, 이 세 産業이 製造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83年의 25.3%에서 1996年에는 35.9%로 크게 伸張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電氣·電子産業은 情報化

16)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에 관한 전망은 朴埈卿(1986) 參照.

17) 本模型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金圭洙·Inman(1979) 參照. 本硏究에서의 産業展望은 1983年度 I/O 去來表가 推計發表된 1985年 10月 直後에 잠정추계된 것이므로 1986年 初에 일어나기 시작한 油價下落現象 등의 效果는 本模型에서 감안되지 못하였다. 工業部門의 細部門別展望은 産業硏究院(1985) 參照.

社會의 進展에 따른 國內外 需要의 增大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 한 技術進步에 힘입어, 향후 製造業中 最大產業으로(1983年의 10.8%의 比重에서 1996年에 18.3%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自動車 및 造船을 주축으로 하는 輸送機器產業은 電氣·電子產業에 이어 두번째의 큰 產業으로(1983年의 8.3%에서 1996年에 9.5%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纖維工業의 경우(1983年에 11.0%), 향후 輸出增加勢의 둔화로 80年代 후반 年平均 6.1%, 90年代 전반 年平均 5.5% 水準의 成長에 그쳐(1971~83年 기간의 年平均 增加率 12.8%이었음) 90年代 중반에는 製造業中 第3位의 產業에 머무를 것으로 豫測되었다.

第3次產業部門의 構造變化를 보면(附表 4 參照), 社會間接資本部門은 향후 年 7% 水準의 꾸준한 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業部門의 成長을 業種別로 구분하여 볼 때, 80年代 후반에는 金融·保險·不動產業이, 90年代 전반에는 運輸·保管·通信業이 각기 서비스業部門中 가장 높은 成長業種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1985年 現在 서비스業中 가장 比重이 큰 商業部門도 販賣서비스 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年 6~7%의 꾸준한 成長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經濟構造가 高度化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서비스產業의 構成內譯도 바뀌어 종래의 產業 이외에 情報產業, 엔지니어링, 컨설팅서비스業 등 새로운 「소프트」(soft)產業의 比重이 크게 伸張될 것이다.

3. 產業別 人力需要展望

產業別 人力需要의 展望은 第Ⅱ章에서 論議한 式(3)과 式 (6)을 基本的으로 이용하여 推定하였다. 세분된 產業別 人力需要現況은 I/O 去來表나 센서스에서 얻어지나, 이러한 資料에서의 人力數値는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의 數値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18].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二段階 接近方法을 택하였으며,

〈表 3〉 產業構造展望[1]

(단위 : 10億원, %)

	1983		1991		1996		年平均成長率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84~'91	'92~'96
國內總生產	46,733.8	100.00	79,713.0	100.00	110,672.8	100.00	6.9	6.8
·農林漁業	7,676.9	16.43	9,139.2	11.47	10,371.8	9.35	2.2	2.6
·鑛工業	14,916.4	31.91	27,170.5	34.08	41,132.1	37.19	7.9	8.6
(製造業)	(14,410.2)	(30.83)	(26,459.6)	(33.19)	(40,333.4)	(36.44)	(7.9)	(8.8)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	24,140.5	51.66	43,403.3	54.45	59,168.9	53.46	7.6	6.4

註 : 1) 1980年 不變價格임.
2) 本資料는 1985年末 현재 1983年 I/O表를 기준으로 1986年까지의 產業別 生產額 및 附加價値 構成費를 本硏究院에서 잠정추계한 것임.

18) 硏究事例를 論議하는 Ⅱ-3節에서 설명하였듯이 人力需要展望作業의 최대 난점은 一貫性있는 微視資料의 未備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O去來表의 就業者의 產業別 分布는 센서스資料에 근거하나, 이 產業別構成比 및 就業者數는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의 構成比 및 就業者數와는 커다란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70年의 I/O表의 就業者數는 經濟活動人口調査에서의 就業者數의 98.1%에 달하였으나(18萬名 차이에 불과), 1975年의 경우 92.8%, 1980年에는 88.9%(150萬名이나 적은 數値임)에 불과하여 그 隔差가 크게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微視分析에 의한 式 (3)의 結果와 巨視分析에서의 式 (6)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就業者數의 絶對水準에서뿐 아니라 職種別 分布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本硏究에서는 全產業就業人口의 경우에는 現在勞動市場現況을 반영하는 經濟活動人口調査의 수치를, 產業別·職種別 構成比는 센서스資料를 기준으로 推定하였다.

一次的으로 式 (6)을 이용하여 全產業 人力需要를 추정한 후, 二次的으로 式 (3)에 의하여 產業別 人力需要構成比를 豫測하였다[19].

가. 全產業 人力需要展望

實證分析을 위한 勞動需要函數는 다음과 같이 定式化되었다.

$$\begin{aligned} ln\,EMP_t = {} & \alpha_0 + \alpha_1\, ln\,GNP_t \\ & + \alpha_2\, ln\,WAGE_t + \alpha_3\, TIME \\ & + \alpha_4\, ln\,GNP \times TIME \\ & + \alpha_5 r + \alpha_6 ln\,EMP_{t-1} \cdots (13) \end{aligned}$$

式 (13)에서 (實質) 賃金($WAGE$) 및 (實質) 利子率(r)變數는 費用最小化 條件下에 式 (5)의 均衡式을 구할 경우 각기 균형상태에서의 雇傭量 및 資本스톡에 相應하는 變數인 것이다[20]. 한편 $ln\,GNP \times TIME$의 變數가 포함된 이유는 歸無假說(null hyothesis)인 $\alpha_4 = 0$, 즉 雇傭의 GNP彈性値는 α로서 不變이라는 假說의 檢證을 위하여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雇傭의 GNP彈性値가 技術進步 등에 의하여 減少하는 趨勢를 보인다면 $\alpha_4 < 0$의 推定結果가 나타날 것이다. 1963~85年 기간의 年間資料를 이용하여 人力需要函數를 推定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의 數値는 t-統計値를 나타낸다.

$$\begin{aligned} ln\,EMP_t = {} & \underset{(1.33)}{1.6828} + \underset{(1.87)}{0.2271}\, ln\,GNP_t \\ & \underset{(-1.05)}{-0.0620}\, ln\,WAGE + \underset{(1.36)}{0.0265}\, TIME \\ & \underset{(-1.58)}{-0.0024}\, ln\,GNP \times TIME + \underset{(0.58)}{0.0002}\, r \\ & \underset{(-0.29)}{-0.0047}\, D80 - \underset{(-2.27)}{0.0324}\, D84 \\ & \underset{(2.92)}{+0.6006}\, ln\,EMP_{t-1} \end{aligned}$$

$$R^2 = 0.9980 \quad \cdots\cdots (14)$$

$D80$ 및 $D84$는 각기 1980年 및 1984年을 나타내는 더미(dummy)變數로, 當該年度의 經濟成長 및 雇傭의 變化를 正常的 經濟變數만으로는 설명력이 충족치 못하므로, 이러한 外生的 效果를 統制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다[21]. 한편 係數 α_4의 t-統計値는 式(14)의 14個의 自由度(degrees of freedom)를 감안할 때, 0.1 水準에서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負의 符號는 雇傭彈性値 減少趨勢를 반영하고 있다. 즉, 雇傭의 GNP彈性値는 0.2271水準에서 每年 0.0024만큼 減少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式 (14)에 향후 實質賃金上昇率 年 5%를 假定하여 1996年까지의 全產業 人力需要를 展望하면[22], 1986~91年 기간은 年平均 310千名(年增加率 1.99%), 1992~96年 기간은 年平均 270千名(年增加率 1.57%)의 雇傭成長을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

19) 式 (6)보다는 式 (12)가 더 정교한 방법이나 資料의 未備로 推定이 되지 못하였다. 이의 推定을 위해서는 資本스톡뿐 아니라 稼動率(utilization rate)에 대한 자료도 이용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 生産函數 $Q=F(K,L)$, 費用函數 $TC=rK+wL$(r,w는 각기 K,L의 價格)을 Lagrangean條件式을 이용하여 解를 구하면, 最適解는 K 및 L의 限界生産物을 각기 F_k, F_L로 표시할 때, $F_L/F_k = w/r$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式 (6)을 균형상태에서 推定한다는 의미에서 w 및 r을 式 (13)에 포함하여 推定하였다.

21) 1980年은 負의 GNP成長을 나타내었다. 한편 1984年의 경우 總就業者數의 絶對水準이 減少하였다. 그 이유로는 일기의 불순에 따른 農林就業者數 격감, 雇傭統計調査方法 改善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效果를 감안하기 위하여 $D80$ 및 $D84$를 사용하였다.

22) 資本費用을 나타내는 r의 資料로서 本硏究에서는 銀行利子率(1年滿期 定期預金利子率) 및 私債市場利子率을 시도하였으나, 推定結果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展望作業에서는 私債利子率變數를 이용한 추정식을 사용하였으며, 私債利子率은 1985年의 年 26.0% 수준에서 1996年에 年 18.0%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하락, 物價上昇率은 향후 3.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産業部門別 人力需要展望

産業構造展望에 副應하는 人力需要의 推定作業節次는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部門別 雇傭係數(被傭者/産出額)의 推定이다. 즉 式 (3)에서의 e_{si} 및 e'_{si}의 推計作業이다. 이러한 係數들의 推定은 일반적으로 I/O去來表에서 과거의 趨勢를 延長하여 推計하는 方法이 常用된다. 그러나 産業別 勞動生産性의 變化는 각 産業의 勞動力의 質, 資本의 量 및 技術進步 등의 複合的 要因에 따라 可變的이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過去趨勢의 延長推計値를 기본으로 하여, 産業別 R&D 投資額推移, 設備投資額 變化 및 日本의 産業別 勞動係數의 變化(1965~75年 期間) 類型 등을 勘案하여 推定値를 調整하였다. 둘째, 産出額과 雇傭係數를 이용하여 産業別 雇傭者數를 推計한 후 이에 相應하는 産業別 就業者數를 推計하기 위해서는 産業別就業者/被傭者比率을 展望하여야 한다. 이 比率은 비교적 안정적 變化推移를 보여 왔으므로 과거의 趨勢를 연장하여 전망하였다[23].

大分類 産業別 人力需要展望結果를 보면(表 4 參照), 農林漁業部門의 就業人口는 계속적인 離農現象으로 80年代 후반에는 年平均 2.44%, 90年代 전반에는 年平均 4.01% 水準으로 減少하여 全産業 就業人口에 대한 比重이 1985年의 24.8%에서 90年代 중반에는 14.4%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4]. 한편 製造業의 雇傭은 꾸준히 증가하여(年平均增加率 2.4~2.8%) 全産業 就業人口에 대한 比重도 1985年의 23.3%에서 1996年에는 25.4% 水準으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5年間(1980~85) 年平均 4.92%의 상대적으로 높은 雇傭增加率을 보인 3次産業은 80年代 후반 3.65%, 90年代 초반 2.66%의

〈表 4〉 産業別 人力需要 展望

(단위 : 千名, %)

	1980	1985[1]	1991	1996	年平均增加率(人員)	
					1986~91	1992~96
就業人口	13,706	14,864	16,726	18,077	1.99 (310)	1.57 (270.2)
農林漁業	4,658 (34.0)	3,691 (24.8)	3,183 (19.0)	2,594 (14.4)	−2.44 —	−4.01 —
鑛工業	3,095 (22.6)	3,605 (24.3)	4,160 (24.9)	4,783 (26.5)	2.42 —	2.83 —
製造業	2,972 (21.7)	3,461 (23.3)	3,972 (23.8)	4,597 (25.4)	2.32 —	2.97 —
SOC 및 서비스業	5,952 (43.4)	7,568 (50.9)	9,382 (56.1)	10,698 (59.2)	3.65 —	2.66 —

註 : 1) 1985年 10月까지의 就業人口 잠정추계치를 이용하여 전망.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 推計.

23) 産業銀行(1985)의 硏究에서는 雇傭人員과 就業人員을 구분하지 않고, 就業者/産出額의 비율을 産業部門別로 趨勢變數 및 産出額에 「로짓」函數로 回歸分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우리나라의 雇傭慣行上 時間制雇傭(part-time employment)이 定着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産業別雇傭者/就業者의 比率은 규칙적으로 1에 接近하는 변화유형을 보이고 있다.

24) 日本의 경우를 참조하면, 農林漁業 就業人口의 비중이 1965年에는 23.5%이었으나, 10年 후인 1975年에는 12.7%로 하락하였는데, 거의 20年의 時差를 두고 우리나라 農林漁業 就業人口도 비슷한 速度로 減少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年平均增加率을 보여 雇傭吸收의 主要役割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分類 産業別로 보면(附表 5 參照) 輕工業部門 人力의 就業者構成比는 1983年의 13.0%에서 1996年에 13.7%로 1%「포인트」미만의 증가를 보이는 데 반하여, 輸送機器, 電氣·電子, 機械業種을 중심으로 한 重化學工業部門의 就業者比重은 9.7%에서 11.7%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25]. 輕工業部門 人力比重의 減少는 1983年 現在 輕工業就業人力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纖維産業에서 향후 成長鈍化, 自動化, 機械化趨勢 등에 따라 就業人口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減少하는 데 기인한다. 3次産業의 경우는 社會間接資本보다는 서비스業部門의 就業人口比重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建設業의 경우 海外建設景氣의 둔화와 더불어 國內建設景氣도 급속한 伸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就業者構成比도 1983年의 5.6%에서 1996年에는 6.1%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業部門에서는 經濟構造가 高度化되면서 金融·保險業의 人力需要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商業部門도 社會가 多岐化되면서 流通經濟의 比重이 높아져 人力需要도 꾸준히 증가 就業人口構成比도 1983年의 15.4%에서 1996年에는 17.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5) 産業構造의 高度化 과정에서 重化學工業 就業人口比重은 日本의 경우에도 1965年의 12.0%에서 1975年 14.0%로 늘어났음.

26) 專門技術管理職의 就業人口構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5年의 3.5%에서 1984年에 6.7%로 급속한 신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日本의 1960年 7.2%에서 1980年 13.4%로, 美國의 1960年 19.2%에서 1978年 25.1%로 증가한 趨勢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전망치가 絶對的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職種別 人力需要展望

각 産業部門別 職種分布變化推移를(80個 職種으로 구분) 전망하여 職種別 人力需要分布를 豫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産業이 高度化되고 3次産業의 就業比重이 높아감에 따라 美國 및 日本의 경험을 보더라도 專門技術 및 서비스職에 대한 人力需要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26].

〈表 5〉에 의하면, 우리 經濟의 경우에도 3次産業의 人力需要增加趨勢를 반영하여 서비스職의 人力需要增加率이 80年代 기간 동안 年平均 6.2%의 높은 成長率을 보일 것이며, 90年代 전반에는 增加率이 다소 둔화된 2.7%의 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80年代에는 서비스職 다음으로 事務職의 人力需要가 증가하여 年平均 4.1%의 높은 成長率을 보일 것이나, 지속적으로 進展될 事務自動化 趨勢에 따라 90年代에는 成長速度가 둔화된 2.8%의 增加率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産業 및 技術水準의 高度化에 따라 人力의 質的水準向上 側面뿐 아니라 量的으로도 專門技術人力에 대한 需要가 80年代에는 서비스職, 事務職 다음으로 높은 年平均 3.4%의 成長을 보일 것이며, 90年代 전반에도 2.9%의 높은 年平均增加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技能人力을 중심으로 한 生産職人力의 全就業者에 대한 比重은 1980年의 28.1%에서 1991年 30.0%, 1996年 3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産業社會에서의 最大職種으로 부각될 것이다.

製造業 産業別로 主要職種의 人力需要展望이 〈附表 6〉에 나타나 있다. 食品加工業의 경

우 1980年 현재 就業者의 절반수준(51.1%)을 차지하고 있는 食品飮料製造工을 보면 1991年까지는 年平均 2.9%의 꾸준한 增加趨勢를 보이다가 90年代 전반에는 3.6%의 높은 伸張率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纖維·衣類業의 41.7%(1980年 現在)를 차지하고 있는 洋服·재봉사職의 需要는 80年代 年平均 2.1%, 90年代 전반 年 1.5%의 增加率을 보여 他產業 主要職種에 비해서는 낮은 成長率을 보이나, 纖維·衣類 產業人力의 增加趨勢 둔화로 產業內에서의 比重은 오히려 증가하여 1996年에는 50.6% 水準까지 占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纖維·衣類產業의 1/4 수준의 比重을 차지하는 紡績工의 需要는 纖維·衣類產業 人力需要增加率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여(80年代 年 1.3%, 90年代 年 1.5%) 占有率은 1980年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成長主導產業으로 부각될 電氣·電子產業의 경우, 電氣·電子工의 比率은 80年代에는 年平均 2.0%, 90年代 전반에는 年平均 2.2%의 成長率을 보여 產業總人力中 차지하는 比率은 1996年에는 51.5%로 1980年의 53.2%와 비슷한 수준으로 維持될 전망이다. 機械 및 輸送機器產業의 경우, 機械設置工이 主要職種으로 產業에서의 就業人口比重은 1980年 現在 各各 33.9%, 29.1%이나 향후의 需要增加率은 현저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機械設置工의 需要는 機械產業에서 80年代 年平均 5.9%, 90年代 전반 年 6.2%의 높은 增加率을 보일 것이며, 輸送機器產業에서도 80年代에는 5.1%, 90年代 전반에는 2.8%의 伸張率을 보여 이 職種에 대한 人力需要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輸送機器產業의 17.8%(1980年 現在)를 차지하는 연관·용접공의 需要도 80年代에 急增할(年平均 增加率 7.2%) 것으로 豫測된다.

〈表 5〉 職業別 人力需要展望

(단위 : 千名, %)

	1980	1991	1996	年平均成長率 1981~91	年平均成長率 1992~96
專門技術職	672 (4.9)	970 (5.8)	1,121 (6.2)	3.39	2.94
管理職	164 (1.2)	234 (1.4)	271 (1.5)	3.28	2.98
事務職	1,535 (11.2)	2,392 (14.3)	2,748 (15.2)	4.12	2.81
販賣職	2,083 (15.2)	2,860 (17.1)	3,236 (17.9)	2.92	2.50
서비스職	1,042 (7.6)	2,024 (12.1)	2,314 (12.8)	6.22	2.71
農水產職	4,359 (31.8)	3,211 (19.2)	2,621 (14.5)	△2.74	△3.98
生產職	3,851 (28.1)	5,018 (30.0)	5,767 (31.9)	2.44	2.82
合計	13,706 (100.0)	16,726 (100.0)	18,077 (100.0)	1.83	1.57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推計.

Ⅳ. 成長產業의 人力構成 및 政策課題

本章에서는 향후 經濟成長을 주도할 產業을 중심으로 雇傭吸收力 推移를 전망하고 人力構成의 特性을 고찰한 뒤, 관련되는 人力政策課題를 논의하고자 한다. 產業構造展望部分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3大成長主導產業으로는 電氣·電子, 輸送機器, 機械業 등이 예상된다. 1983年 현재 이 세 產業 就業者의 製造業全就業者에 대한 비중은 19.6%, 重化學工業就業者에 대한 비중은 45.8%에 달하고 있다. 產業別人力需要展望 結果에 의하면 향후 10年間 이 세 產業就業者의 製造業全就業者에 대한

比重은 現水準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형태간의 要素代替性은 勞動의 경우가 資本이나 技術 등 다른 生產要素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就業機會의 擴大를 유도하며 全就業者 規模를 결정하는 巨視雇傭政策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特定產業의 경우 特殊職種 및 技能人力이 必須生產要素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人力의 養成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所要된다. 이러한 視角에서는 微視人力政策으로 特定分野의 人力需要를 미리 전망하여 對應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產業의 경우, 일반적으로 新技術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產業을 生成하게 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人力需要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1. 成長產業의 人力構成

위에서 指摘한 세 產業의 人力需要의 공통적 特徵은 量的인 人力需要擴大側面보다는 質的으로 우수한 人力이 수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生產額構成比에 상응하는 就業者構成比의 變化推移를 나타내는 就業者의 상대적 集中化指數를 產業別로 비교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表 6〉의 集中度指數를 보면 1983年 現在 重化學工業의 平均値는 0.32로서 輕工業平均値 0.63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產業別로는 機械業 0.38, 電氣·電子業 0.45, 輸送機器業 0.39로서 重化學工業 平均値보다는 이들 세 產業의 就業者集中度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人力需要展望 結果에 의하면 輕工業의 就業者集中度指數는 1983年의 0.63에서, 1991年 0.70, 1996年 0.77로 持續的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重化學工業의 集中度는 1983年의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豫測되었다. 產業別로 보면, 機械產業은 現水準을 유지하나, 電氣·電子業이나 輸送機器業의 集中度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電氣·電子나 輸送機器業 등 新興產業의 경우 成長初期段階에는 새로운 人力이 많이 필요하나, 產業의 成長速度에 비하여 人力需要增加速度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27].

人力構成의 質的水準을 대표하는 變數로서 근로자의 學歷水準 및 年齡을 들 수 있다. 資本스톡의 量 및 그 效率性이 產業에 따라 다르므로 勞動生產性(產出額/勞動量 比率)을 직접적으로 產業別로 비교하는 데에는 難點이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學歷變數는 就業者

〈表 6〉 就業의 相對的 集中化 推移[1]

(단위 : %)

	1983	1991	1996
製造業計	0.44	0.44	0.45
輕工業	0.63	0.70	0.77
(食品加工)	0.36	0.44	0.50
(纖維·衣類)	1.02	1.08	1.17
重化學工業	0.32	0.30	0.30
(機械)	0.38	0.37	0.37
(電氣·電子)	0.45	0.32	0.24
(輸送機器)	0.39	0.34	0.32

註 : 1) 集中化指數=就業者 構成比/生產額 構成比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推計.

27) 1965~75年 기간의 日本의 產業別 就業者集中度指數를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展望値와 유사한 變化推移를 보이고 있다. 즉, 電氣·電子業의 集中度指數는 1965年의 0.91에서 1970年에 0.78로, 同期間에 機械產業의 集中度指數는 0.73에서 0.65로 下落하였다.

의 '資質'을, 年齡變數는 就業者의 社會 및 勤勞 '經驗'을 나타내는 變數로 간주하여 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年齡別·學歷別 構成이 〈附表 7〉 및 〈附表 8〉에 나타나 있다. 위의 産業들의 年齡別 構成을 현재 製造業中 最大産業인 纖維産業과 비교하여 볼 때, 20세 미만의 人力構成의 비율이 낮은 반면, 25~34歲 就業者의 비율이 높은 것이 成長産業 人力構成의 특징으로 보인다. 20歲 미만의 勤勞者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單純生産技能工의 비중이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25~34歲 年齡의 勤勞者 비중이 높은 것은 生産職技術工이 일반적으로 高卒學歷임을 想定할 때, 卒業後 平均 10年 정도의 경험을 가진 인력에 대한 需要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28].

2. 人力政策 課題

人力需要의 豫測은 기본적으로 産業別 經濟成長에 要求되는 人力需要의 推定에 있으나, 이러한 需要展望을 기초로 人力開發政策課題를 導出하는데의 難點은 人力의 供給은 産業別로 推定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前述한 바와 같이 生産要素中 資本이나 技術에 비하여 人力은 일반적으로 代替性이나 可變性이 높아 人力의 供給을 産業別로 구분하여 豫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세 成長産業은 技術 및 資本集約的産業이므로 이러한 産業의 成長에 따른 人力需要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期待이다. 그러나 技術의 發展은 單純技能人力의 역할을 代替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高級技術人力이나 熟練技能人力의 수요는 補完的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間接的으로 尖端技術의 개발과 관련되는 서비스産業에서 情報産業,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서비스」部門의 人力需要를 유발할 것이다[29].

人力政策은 一面으로는 巨視經濟側面에서 産業政策, 勞動政策 등을 통하여 雇傭機會의 擴充 및 人力活用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技術開發 및 産業活動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데 필요한 技術人力의 양성에는 장기간의 敎育 및 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産業社會의 발전을 전망하여 새로운 분야에서의 必要人力을 事前的으로 育成하여야 하며, 이의 先決要件은 敎育·訓練政策 등을 伸縮的으로 운용할 수 있는 微視政策을 통하여, 우수한 資質의 人力을 供給할 수 있는 人力開發體制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 産業 및 勞動政策

우리나라의 産業政策은 기본적으로 資本의 경우에는 租稅 및 金融政策을 통해서, 技術의 경우에는 技術開發投資에 대한 租稅惠澤을 통해서 각 요소의 費用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政策이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勞動의 費用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고, 그 結果로 人力에

28) 이와 같은 類推가 學歷別 구성에서 입증되고 있다. 全製造業部門이나 纖維産業 등에 비하여 위의 세 産業人力需要가 高學歷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大卒人力의 비율을 볼 때, 製造業全體의 8.5%에 비하여 위의 産業에서는 12~13%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高卒人力의 비율도 40% 수준으로 製造業平均(30.4%)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29) 日本 企業에서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E.)의 (구체적으로, 直接回路(IC)의 사용여부를 기준) 보편화가 雇傭構造에 미치는 영향이 Bednarzik(1985)에 報告되어 있다. M.E.를 이용하는 企業의 人力需要가 감소된 企業은 30%, 증가된 企業은 5%, 變動이 없는 企業은 65%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理工系 大卒人力의 새로운 需要는 크게 늘어난 반면, 다른 專功分野의 大卒人力에 대한 需要는 줄었으며, 男子高卒人力에 대한 需要는 증가한 반면, 女子高卒人力에 대한 需要는 減少하였다는 점이다.

대한 投資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企業行態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經濟成長을 선도하여 나갈 特定戰略産業을 예외로 하고는 위에서 예시한 産業政策이 誘發하는 지나친 勞動代替現象은 鈍化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産業政策은 雇傭創出效果가 높은 産業의 지원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中小企業의 創業支援方案이고, 둘째는 雇傭創出效果가 높은 産業에 대한 雇傭補助金支給이나 稅制惠澤賦與方案의 도입검토라 할 수 있다. 前者를 위해서는 準租稅支出의 輕減, 창업절차의 간소화, 「벤쳐캐피탈」의 활성화 등을 통한 金融支援策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後者의 경우에는 雇傭補助金制度의 開發을 통한 勞動集約産業에서의 雇傭機會擴大方案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30].

勞動市場政策은 다음의 두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雇傭情報網의 擴充을 통하여 就業情報를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就業者가 適性에 맞는 職務를 수행하여 人力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極大化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勞動生産性과 賃金水準의 連動을 통하여, 勞動費用의 상대적 上昇을 抑制함으로써 雇傭機會를 지속적으로 擴大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學歷別·職種別 賃金隔差를 縮小시키는 방향으로 誘導되어야 한다. 現在의 事務·管理職의 高賃金 狀況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技術 및 生産職技能人力이 주축을 이루는 成長産業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30) 美國의 경우에는 1977~78年 기간은 New Jobs Tax Credit 制度를 도입하여 民間部門에서의 신규고용을 증대시키려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Targeted Jobs Tax Credit 制度를 실시하여 일반적으로 雇傭可能性이 취약한 계층의 취업을 증대시키려 하였다. 자세한 論議는 Perloff and Wachter(1979) 參照.

나. 敎育政策

技術 및 技能人力은 기본적으로 敎育機關에서 供給되므로 敎育機關에서 排出되는 供給人力과 産業社會의 需要를 效率的으로 連繫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社會的으로 論議되고 있는 過剩學歷이나 高學歷者의 就業問題 등은 근본적으로 産業社會의 需要와 人力供給間의 乖離에 起因하는 것이다. 특히 1981年 이후의 大卒定員의 擴大는 量的側面에서 大卒人力의 就業問題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人力供給의 構成도 産業社會의 需要에 不適合하게 나타났다. 즉 擴大된 大學定員은 敎育費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人文·社會系列에서 吸收하였으며, 이는 産業社會에서의 技術·技能人力의 需要 變化에 副應하지 못하였다. 〈附表 9〉에 4年制 大卒人力의 需要 및 供給現況이 나타나 있다. 供給은 每年의 大卒人力을 專攻學科別로 區分하여 추계하였다. 1984年의 大卒人力의 總供給은 1980年에 비하여 2.1倍로 늘어났다. 專功系列別로 보면, 技術人力의 중심이 되는 工學系列의 卒業生은 1.7倍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社會系列은 2.6倍, 理學系列은 2.5倍가 늘었다. 이 結果는 한편으로는 大卒人力中 女性의 비율이 높아져 감을 (1980年의 29.6%에서 1984年의 36.1%)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또한 施設投資費用이 상대적으로 높은 工學系列의 人力供給은 증가하지 않은 반면, 敎育費用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社會系列이나 理學系列의 人力供給이 크게 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大卒人力의 産業社會에서의 需要推移는 大卒就業者를 年齡階層別로 구분함으로써 識別하였다. 즉 大卒後 10年 정도의 社會經驗

階層(31～35歲), 5年 정도의 經驗階層(26～30歲), 2年 정도의 經驗階層(25歲 이하)으로 나누어 專攻學科別 需要變化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男性就業構造를 볼 때 工學系列 卒業者의 就業者比重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31～35歲의 24.8%에서 25歲 이하의 34.0%로), 社會系列의 就業者比重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供給構造와 비교할 때 工學系列에서는, 수요의 비중이 34%이나 (25歲 이하의 最近 卒業生 基準) 供給의 비율은 1984年에 30%에 불과하여 需給間의 不均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31]. 둘째, 女性卒業者를 포함한 全卒業者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理學系列 卒業者의 就業比重이 높아져 가며, 또한 藝·體能系를 포함한 其他系列의 就業比重이 近年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

위의 結果가 敎育政策에 示唆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專攻系列別로 볼 때 產業社會의 構造變化에 따라 工學·理學系統의 人力需要가 늘어나고 있는 趨勢이다. 그러나 社會의 就業構造에 비하여 大卒人力의 供給中 工學系列의 比率이 낮게 나타나,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계열에 비하여 工學系列의 상대적으로 높은 敎育費用에 起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大卒人力의 3/4이 私學에서 排出된다는 점을 勘案할 때, 私學에서의 工學系列 敎育의 擴充이 主要政策課題로 浮刻되는 것이다.

이의 解決은 두 側面에서 接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稅制改善 및 私學基金造成 등으로 私學에서의 施設投資增大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產學의 連繫體制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後者를 위해서는 大學에의 實驗機資材 등의 기부에 대하여는 企業에 租稅惠澤을 賦與하는 方案 등의 施行으로 企業의 科學施設擴充에의 自發的 參與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 人力養成制度 改善

高級技術人力은 大學을 포함한 高等敎育機關에서 供給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育成方案은 근본적으로 敎育政策의 改善方案과 그 내용이 같다 할 수 있다. 그러나 產業社會人力需要는 專門職을 위주로 하는 技術人力과 더불어 生產職의 技能人力도 포함하고 있다.

現行 技能人力供給機關은 實業系高等學校, 公共職業訓練院 및 民間職業訓練機關 등으로 구별된다. 產業構造高度化 過程에서 향후 單純技能人力에 대한 需要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들의 供給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양성될 수 있으므로, 總量的 需給上의 문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熟練多岐技能工에 대한 수요는 현재에 비하여 오히려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들의 養成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訓練이 필요하므로 人力開發에 관한 적절한 대응책이 요망된다. 각 供給機關別 主要政策課題를 논의하면, 實業系高等學校 敎育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資質이 우수한 學生의 實業系 進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장학금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私立學

31) 이러한 推論은 상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絕對數値上으로 工學系列의 人力供給이 需要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2) 實業系高等學校 및 專門大學卒業者의 專攻系列別 需要 및 供給도 〈附表 9〉와 같은 방법으로 分析하였으나, 거의 동일한 分析結果를 보였으므로 本文에서의 論議는 省略하였다.

校의 施設投資를 증대하기 위하여 企業體에서 敎育機資材 및 施設投資에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公共職業訓練過程의 效率性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高等學校 進學率이 90%를 상회하는 現況을 감안할 때, 現行의 養成訓練過程에서 앞으로는 向上訓練 및 再訓練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産業社會의 人力需要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民間訓練院의 機能을 活性化하며 이의 先決要件은 私立學園認許可制度의 改善과 수강료 자율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人力養成制度의 기본적 問題點은 企業의 自發的 參與가 微弱하다는 점이다. 人力養成에 있어서 政府의 역할은 貧困階層에 대한 無償訓練 및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企業이 양성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즉 外部效果가 큰 戰略職業部門(例, 電算應用設計 等)에 限定되어야 하며, 企業이 필요로 하는 人力은 原則的으로 企業이 自體養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敎育機關에서의 訓練過程과 企業의 社內訓練을 體系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産學協同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高卒以下의 生産職 人力의 敎育投資에 국한되어 있는 稅制惠澤을 앞으로는 産業社會의 需要에 맞추어 專門職 高學歷技術人力의 訓練에도 적용시켜 企業自體의 人力開發努力을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斜陽産業의 人力政策

本章에서는 斜陽産業의 雇傭問題에 대비하기 위한 政策課題를 살펴보고자 한다. 産業構造調整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斜陽産業에서 야기되는 失業 등의 雇傭問題에 政策的으로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社會的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함이 先進國의 産業構造調整過程에서 얻어지는 교훈으로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 調整過程에서도 斜陽産業에서의 雇傭問題에 대한 事前的 對備가 制度的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斜陽産業의 雇傭問題에 대한 先進産業國의 政策對應 事例, 우리나라에의 政策的 意味, 앞으로 대비되어야 할 政策課題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33].

1. 先進産業國의 政策對應 事例

1973年 이후의 景氣後退를 始發點으로 하여 80年代에 이르는 동안 先進産業國은 여러 産業分野에서 심각한 雇傭減少를 경험하였다. 雇傭減少現象은 기본적으로 産業構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70年代에서 80年代에 걸쳐 진행된 産業構造의 변화는 두 가지 흐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産業化 初期부터 持續的으로 전개된 産業構造의 高度化 경향을 들 수 있다. 勞動集約的産業의 斜陽化와 資本技術集約的産

33) 本章에서는 一次的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視點에서 雇傭減少의 문제가 대두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同産業에서의 人力構成上의 特徵과 이에 따른 人力政策上의 課題를 導出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附表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3~96年間의 産業別人力需要推定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推計에서 사용된 産業分類上에 있어 同期間中에 雇傭減少가 전망되는 産業은 農林漁業과 革製品製造業으로서, 推定結果에 의해서는 斜陽産業의 雇傭問題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産業構造의 變化過程에서 一部産業에서의 雇傭減少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政策對應이 事前的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業의 成長, 그리고 生産過程의 自動化 경향은 經濟全體의 雇傭吸收力을 둔화시켰다. 둘째는 石油波動 이후에 市場經濟의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난 週期的 景氣後退 속에서 전반적 生産活動이 위축되고, 開發途上國이 比較優位를 획득한 産業部門의 斜陽化로 인해 雇傭機會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변화 결과로서 先進産業國에서는 纖維, 鐵鋼, 造船 自動車産業 등 主要産業에서 生産量과 雇傭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先進産業國에서는 産業構造 變化로 인해 失職된 勤勞者에 대해 國民經濟的 차원에서 雇傭維持 및 雇傭增大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一般勞動市場政策 외에도 주로 이들 解雇勤勞者를 대상으로 特別勞動市場政策이 실시되었는데 先進國에서 그동안 실시하여 왔던 政策手段에는 豫告, 轉職訓練, 移住支援, 職業情報提供, 賃金補助政策, 所得補償, 公共事業의 수행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34].

2. 政策課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産業의 斜陽化에 따른 雇傭減少가 一部産業에서 발생되었던 예가 없지는 않다. 합판, 가발, 연초제조업, 금속광석업 등 외에도 최근에는 中東建設景氣의 후퇴로 인한 海外建設人力需要의 減少現象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經濟의 成長速度와 總雇傭增加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에 이와 같은 一部産業의 雇傭減少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고 따라서 特定産業의 斜陽化에 대한 政策對應도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産業構造轉換過程에서 야기되는 雇傭問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事前的인 政策對應方案이 검토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에서 제시된 先進國의 對應事例中 우리나라에서 자주 論議되어 온 轉職訓練[35], 「Work-

34) **職業情報提供事業**：解雇勤勞者에게 職業情報를 提供하는 것으로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日本 등의 國家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日本은 不況産業으로 지정된 産業에서 解雇勤勞者를 위해 「Job Applicant's Pocket Book」프로그램을 실시하여 就業情報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轉職訓練：斜陽化된 産業에서 해고된 勤勞者에게 他産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轉職機會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호주, 캐나다, 美國, 日本 등 대부분의 國家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Labor Adjustment Training Arrangement」를 통해 鐵鋼, 石炭, 自動車産業에서 감원된 勤勞者에게 轉職訓練을 제공하고 있다.
移住支援政策(Relocation Assistance)：어떤 지역의 斜陽化된 産業에서 해고된 勤勞者에게, 특히 轉職訓練에 부적당한 勤勞者에게 雇傭機會가 풍부한 타지역으로 移住할 수 있도록 移住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지역의 失業狀態를 해소해 준다.
賃金補助政策(Wage Subsidies)：解雇可能性이 있는 勤勞者를 계속 雇傭하거나 解雇勤勞者를 再雇傭할 수 있도록 賃金總額의 일정부분을 使用者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간은 보통 9~12個月 정도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10年間 2年이상 雇傭되었던 45歲 이상의 解雇勤勞者를 雇傭한 使用者에 「Portable Wage Subsidy」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日本에서는 「雇傭調整助成金」制度에 의거해 使用者에 雇傭增大를 유도하고 있다.
所得補償 프로그램：解雇勤勞者에게 失業手當보다 높은 所得補償金을 지불함으로써 解雇勤勞者의 所得水準을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階層間 위화감을 해소시키며 解雇勤勞者의 求職努力을 격려해 준다. 日本에서는 特定不況産業의 解雇勤勞者 중 高齡勤勞者는 90日間의 失職補償金을 받을 수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Fund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에 의거하여 鐵鋼産業에서의 解雇勤勞者에게 正常所得의 65% 이상을 지급해 준다.
公共事業：財政政策의 일환으로 公共事業을 실시함으로써 公共部門에 일시적 職業機會를 창출하여 解雇勤勞者의 熟練度를 유지시키고, 現場訓練을 제공하여 恒久的 職業이 발견될 때까지 解雇된 職場과 再就業된 職場間의 교량역할을 한다.
勤勞時間 減縮과 作業分配(Work-Sharing)：勤勞時間의 減縮으로 주어진 雇傭機會를 雇傭員들간에 均等配分하여 不況으로 인한 休職, 一時解雇를 방지하는 制度로 先進産業國中 많은 國家에서는 交代勤務制, 超過勤務時間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雇傭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35) 職業訓練基本法 施行規則(第2條 第3項)上에 나타난 轉職訓練의 개념은 勤勞者에게 종전의 職業과 유사한 새로운 職業에 필요한 作業遂行能力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職業訓練으로 명시되어 있다.

Sharing」, 賃金補助制度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방안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轉職訓練

80年代에 들어서 가속되기 시작한 産業構造의 改編, 國際經濟秩序의 변화를 배경으로 특히 1985年부터 一部業種에서의 休·閉業 또는 大企業群의 減量經營, 海外建設業의 退潮 등으로 失職者數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失職者들을 成長産業分野로 흡수하기 위한 轉職訓練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勞動部에서 실시하고 있는 轉職訓練의 경우, 旣技能保有者가 他職種의 技能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適應訓練의 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기존의 職業訓練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다[36].

日本에서의 轉職訓練의 특징은 轉職對象群別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어 訓練修了後의 就業指導 등 事後管理가 制度的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雇傭保險의 失業給付金 受惠對象者와 一般訓練受講者를 구분하여, 前者에게는 訓練期間中 失業給付의 受惠期間을 연장해 주는 외에 一定金額의 技能習得手當을 財政支援하고 後者中 公共職業安定所長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에게 訓練手當을 支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轉職訓練의 실시현황과 日本의 經驗에서 示唆해 주는 바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轉職訓練의 改善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訓練의 選定對象者는 休·閉業, 減員, 操業短縮에 따른 失職勤勞者中, 勞動部 지방사무소에 求職登錄한 者로서 轉職訓練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와 雇傭狀況의 변동으로 특정산업 또는 地域勤勞者中 轉職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둘째, 訓練期間을 3個月 이내로 단축하여 訓練人員을 확대하고 3個月 이상의 長期訓練이 필요한 자는 養成訓練對象으로 轉換한다. 세째, 財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關聯法制定이나 별도의 基金創設 등 制度的 장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네째, 訓練修了後 就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訓練修了者를 雇傭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金融支援政策을 실시하는 동시에 自營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창업자금의 融資를 알선하는 등의 就業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國庫에 의한 轉職訓練 이외에 企業體에서 자발적으로 동일기업내의 他職種으로 勤勞者를 移動配置시키고자 訓練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國庫補助하는 方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作業分配制度

先進産業國은 産業化 초기 이래 勤勞時間이 장기적으로 계속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法定勤勞時間의 減少와 時間外 勤勞時間의 減少, 有給休暇의 확대에 기인한다. 勤勞時間의 持續的 減縮으로 단체협약상 勤勞時間은 40時間 전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4年 현재 非農林漁業의 경우 月勤勞日數는 24.8日, 週當勤勞時間은 53時間으로 先進國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勤勞時間의 減少現象도 잘 나타나고 있지

36) 우리나라의 轉職訓練 실적을 살펴보면, 1984年에 總218名을 대상으로 轉職訓練이 실시되었으며, 全職業訓練對象者에 대한 비율로 보면, 養成訓練이 전체의 85%, 向上訓練이 14.5%를 차지하는 데 비해 轉職訓練은 0.5%에 불과했고(한편 對象者 全員이 駐韓美軍 관련 勤勞者) 이밖에 1982~83年에 17,000여명의 零細失業者 對象의 轉職訓練이 실시된 바 있다.

않다. 이러한 실정은 단기간 동안에 産業化를 이룬 經濟發展過程의 特殊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先進産業國들은 非인플레적 失業解消策으로 勤勞時間 減縮政策과 이를 전제로 한 「Work-Sharing」 制度를 도입해 왔다[37]. 즉 勤勞時間 감축, 勤勞時間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로서 超過勤務時間에 대한 法的規制와 租稅賦課, 二重職業保有(double-job holding)에 대한 규제, 교대근무제도의 확대를 위한 法的措置 등이 실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作業分配制度는 70年代에 걸쳐 심한 인플레를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도 많은 示唆點을 提供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失業解消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非인플레的 對應策으로서 「Work-Sharing」은 의미있는 政策手段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현실을 고려해 볼 때 作業分配制度는 두 가지의 政策方向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超過勤務時間의 減少를 통한 작업시간의 再分配政策이 가능하다. 超過勤務手當은 正常勤務手當보다 많기 때문에(表 7 참조) 超過勤務時間分을 근로자에 再分配함으로써 雇傭을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雇傭勤勞者의 增大는 非賃金費用을 增大시킬 수 있기 때문에 政府는 非賃金費用의 增大에 대해 적절한 措置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交代勤務制의 擴大도 失業解消에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交代勤務制의 확대가능성과 이를 통한 雇傭增大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며 기존의 2交代制를 3交代制로 轉換시킴으로써 추가적 雇傭增大를 꾀할 수 있다.

〈表 7〉 延長勤勞時間에 대한 賃金割增率 分布

(단위 : %)

賃金割增率	全産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
합 계	100.0	100.0	100.0
50	92.7	91.7	94.0
51~100 미만	0.7	0	1.5
100 이상	6.7	8.3	4.4

資料 : 勞動部, 『賃金勤勞時間制度 綜合調査報告書』, 1983.

作業分配制度는 기존근로자의 勤勞時間減縮과 所得의 減少를 가져와 근로자의 所得水準을 저하시키게 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所得減少의 보상을 위해 賃金引上을 요구하는 등의 부정적 效果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作業時間分配를 통한 雇傭機會의 擴大는 기본적으로 企業이 勞動費用負擔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效果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作業時間이 過多하고 이에 따른 生産性低下, 産災發生 등의 否定的 側面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에 비추어 특히 生産職에서의 점진적인 作業時間短縮은 生産性 增大와 나아가서는 雇傭擴大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賃金補助政策

賃金補助政策(wage subsidies)은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할 賃金支給額의 일부를 政府가 補助함으로써 構造的 변동에 직면한 雇傭水準을 유지시키며 過剩狀態의 勤勞者에게 새로운 職業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附與하기 위한 雇傭政策이다.

賃金補助政策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37) 우리나라 交代勤務制의 實態를 보면, 交代勤務制 實施業體는 전체 1百人 이상 事業體全體(19,205 業體)의 0.47% 정도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 있는데 그 첫째는 雇傭水準의 유지를 위한 업체를 支援對象으로 하는 것으로 解雇可能性이 있는 勤勞者를 調整·支援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경우이며, 둘째는 이미 解雇된 勤勞者를 再雇傭하는 業體에 提供되는 금전적 혜택이다. 構造變化로 인한 勞動市場調整過程에서 賃金補助政策이 遂行하는 역할은 特定產業 또는 地域勤勞者의 失業예방과 選別的 雇傭이다. 따라서 同政策은 다양한 勤勞者集團間에 존재하는 雇傭機會를 再分配하는 機能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再分配過程에서 對象勤勞者集團과 他集團間의 형평성이 상실될 여지가 있으므로 補助金對象의 적절한 基準設定이 중요한 課題가 된다.

우리가 賃金補助制度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同制度는 企業과 政府間에 相互信賴性이 크고 社會的 會計管理가 정착된 바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現段階에서의 賃金補助制度의 도입은 現實的으로 經濟性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Ⅵ. 結 語

本硏究에서는 향후 10年間의 產業構造를 전망한 후 이에 상응하는 人力構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硏究의 焦點은 產業別·職種別 人力需給의 變化推移分析과 이에 관련되는 人力政策課題의 導出에 있었다. 특히 앞으로 成長하는 產業과 斜陽化되는 產業에서의 人力政策課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本硏究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持續的 技術開發과 產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經濟成長에 相應하는 雇傭吸收力은 減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構造的 變化는 長期政策으로 對應하여야 할 것이다. 즉 產業政策的 側面에서 勞動集約產業에서의 雇傭吸收力 提高를 기하도록 金融·稅制支援을 강구하여야 하며, 勞動市場政策의 원활한 運用을 통하여 人力의 效率的 配分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產業別 人力構造의 變化를 보면, 農林漁業部門에서의 人力流出은 계속될 것이므로, 人口의 增加로 늘어나는 人力과 都市流入人力은 製造業部門에서의 人力吸收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部門에서 중점적으로 吸收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事務自動化 趨勢 등에 의하여 서비스業部門 역시 勞動節約的 生產構造로의 轉換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旣存產業에서의 雇傭需要增大를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產業 및 職種의 開發을 통하여 人力需要 提高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中小企業의 創業을 통하여 雇傭機會의 擴充을 유발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量的 側面에서의 產業別 人力需要構造의 변화에 相應하여 職種別 人力需要構造도 變化할 것이다. 즉 產業構造의 高度化는 專門·技術職 및 熟練技能工의 需要를 증대시키므로 人力供給의 構成內譯도 이에 連繫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大卒人力中에는 人文·社會系列보다는 理工系列, 單純技能工보다는 多技能의 生產職人力에 대한 需要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理工系大學 및 實業系高校에서의 敎育 및 訓練內容의 質的水準 向上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産業體의 人力開發에 대한 自發的 參與度를 높임으로써 産學協同을 强化하는 것이 有用한 人力을 開發하는 捷徑일 것이다.

네째,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特定産業의 斜陽化를 수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纖維産業 등 勞動集約的産業의 成長이 상대적으로 鈍化되어 雇傭機會의 擴大가 과거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國의 經驗을 보면 轉職訓練, 作業分配 및 賃金補助政策등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왔다. 賃金補助政策은 기본적으로 短期的, 限時的 特性을 지녔으며, 외국의 경우 그 效果도 制限的이어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의 導入에는 問題點이 있다고 判斷되나, 轉職訓練은 制度를 補强하여 그 效果를 極大化하여야 하며, 作業分配制度도 過多한 業務時間을 줄여 追加雇傭을 增大시킨다는 意味에서, 旣存勤勞者의 所得減少를 最小化하는 範圍內에서 그 施行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60年代 후반 이후의 「베이비 붐」 世代의 勞動市場 進入이 80年代 중반이후 本格化될 것이다. 이러한 供給側面에서의 勞動市場에 대한 壓力(pressure)과 더불어 人力需要는 構造的으로 減少하는 時期에 당면하게 되어 勞動市場에서의 需給間의 不均衡은 더욱 深化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人力政策의 根幹은 短期的 觀點보다도 長期的 視角에서 接近하며, 또한 앞에서 論議한 政策課題들에 높은 優先順位를 賦與하여 段階的으로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圭洙・R. Inman, 「韓國經濟의 靜態的 線型計劃模型」, 『韓國開發研究』, 봄호, 韓國開發研究院, 1979.

金秀坤 外,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研究・調査報告 第81-04卷, 韓國開發研究院, 1981. 3.

金有培, 「韓國製造業의 雇傭調整에 관한 分析」, 『勞動經濟論集』, 1985. 10, pp. 25~36.

김윤태 外, 『長期人力需給展望; 1977~91』, 科學技術處, 1978.

金知壽 外, 『高級科學技術人力의 長期需給展望에 관한 研究』, 科學技術處, 1985. 10.

勞働福祉問題研究會, 「勞働福祉要覽」, 日本, 1979.

朴竣卿, 「産業技術革新과 成長潛在力」, 『KDI 分期別 經濟展望』, 第5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86.

朴烜求, 「職種別 人力需給展望과 對策」, 『韓國開發研究』, 여름호, 韓國開發研究院, 1981.

白井泰四郎 外, 「80年代の勞使關係」, 日本勞働協會, 1983.

産業研究院, 『國家長期發展構想; 工業部門篇』, 1985.

은종관 外, 『高級技術人力 長期需要展望; 通信・情報分野』, 遞信部 通信進興協議會, 1984. 12.

鄭澤水 外, 『産業構造高度化에 따른 人力需給研究』, 研究報告書 84-5, 職業訓練研究所, 1984. 12.

韓國産業銀行, 『産業構造高度化와 政策方向』, 1985.

厚生統計協會,「保險と年金の動向」, 日本, 1983.

Archiblad A. Evans, "Hours of Work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LO, 1978.

Baldwin George E., "Iran's Experience with Manpower Planning: Concepts, Techniques, and Lessons", in Manpower and Education, edited by F. Harbison & C.A. Myers, McGraw-Hill Inc., 1965.

Ball R.J. and E.B.A. St. Cyr, "Short Term Employment Functions in British Manufacturing Industry", *Review of Economic Studies*, March 1966, pp. 179~207.

Bednarzik, R.W., "The Impact of Microelectronics on Employment: Japan's Experience", *Monthly Labor Review*, Sept. 1985.

Blitz Rudolph C., "The Role of High-level Manpower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le", in Manpower and Education, edited by F. Harbison & C.A. Myers, McGraw-Hill Inc., 1965.

Blitzer Charles R., "Employment and Human Capital Formation", in Economy-wide Models and Development Planning, edited by C.R. Blitzer, P.B. Clark, Lance Taylor, Oxford Univ. Press, 1975.

Dougherty C.R.S., "Manpower Forecasting and Manpower Development Planning in the United Kingdom," in Forecasting Skilled Manpower Needs, edited by R. V. Youdi and Hinchliffe, UNESCO, 1985.

_____, "Substitu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Labour Force" *The Economic Journal*, March 1982, pp. 170~182.

Grinold Richard C. and Kneale T. Marshall, Manpower Planning Models, North-Holland, Inc., 1977.

Harbison Frederick and Charles A. Myers, "Manpower and Education," McGraw-Hill Inc., 1965.

Hight J.E., "Review of Manpower Forecasts and Changes in Occupational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orecasting Skilled Manpower Needs, edited by R.V. Youdi and K. Hinchliffe, UNESCO, 1985.

Horowitz Morris A., "High-level Manpower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rgentina", in Manpower and Education, edited by F. Harbison & C.A. Myers, McGraw-Hill Inc., 1965.

Kennedy Charles and A.P. Thirlwall, "Surveys in Applied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March 1972, pp. 11~72.

Mangan John and Mick Silver,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Labour", in Manpower Planning, edited by John Edwards et al., John Wiley & Sons, 1983.

OECD, "Labor Supply, Growth Constraints and Work Sharing", 1982.

OECD, "Employment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1985.

Paul J.J., "Foreasting Skilled-Manpower needs in France: concepts and methods", in Forecasting Skilled Manpower Needs, edited by R.V. Youdi and K. Hinchliffe, Unesco, 1985.

Perloff, J.M. and M.L. Wachter, "The New Jobs Tax Credit: an Evaluation of the 1977~78 Wage Subsidy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9.

Symons J. and R. Layard, "Neoclassical Demand for Labour Functions for Six Major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Vol. 94 (December 1984), pp. 788~799.

Whyte W.F., "High-level Manpower for Peru", in Manpower and Education, edited by F. Harbison & C.A. Myers, McGraw-Hill Inc., 1965.

〈附表 1〉 職種別 就業者 構成比 : 1965～85

(단위 : 千名, %)

	全 職 種		行政·專門·技術職		事 務 職		販 賣 職		서 비 스 職		農林水産職		生産職 및 其他	
	就業者數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構成比	年平均增加率
1965	8,206	—	2.8	—	4.0	—	11.9	—	6.5	—	58.5	—	16.3	—
1970	9,745	(3.50)[2]	4.7	(14.67)	5.9	(11.85)	12.3	(4.20)	6.5	(3.52)	50.3	(0.42)	20.3	(8.12)
1975	11,830	(3.95)	3.5	(-2.03)	6.3	(5.34)	12.9	(4.93)	7.2	(5.90)	46.1	(2.14)	24.1	(7.61)
1980	13,706	(3.00)	5.3	(11.85)	9.2	(11.13)	14.5	(5.39)	7.9	(5.08)	33.9	(-3.10)	29.1	(6.98)
1985[1]	15,028	(1.86)	7.2	(8.19)	11.4	(6.31)	15.3	(3.04)	10.8	(8.31)	25.2	(-4.01)	30.1	(2.50)

註 : 1) 1985年 數値는 1～11月 期間 平均値임.
2) ( )안의 數値는 期間別 年平均增加率을 나타냄.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1985.12 및 『韓國統計月報』, 1985.12.

〈附表 2〉 産業別 就業者 1人當 附加價値 : 1965～84

(단위 : 1980年 不變價格, 百萬원, 名)

	全 産 業		農 林 漁 業		鑛 工 業		SOC 및 서비스業	
	附加價値/就業者	年 平 均 增 加 率	附加價値/就業者	年 平 均 增 加 率	附加價値/就業者	年 平 均 增 加 率	附加價値/就業者	年 平 均 增 加 率
1 9 6 5	1.2860	—	0.9419	—	1.6278	—	1.8225	—
1 9 7 0	1.7737	(6.64)[1]	1.0164	(1.53)	2.0235	(4.45)	2.7545	(8.61)
1 9 7 5	2.2074	(4.47)	1.1628	(2.73)	2.7125	(6.04)	3.2999	(3.68)
1 9 8 0	2.7145	(4.22)	1.1534	(−0.16)	3.6273	(5.98)	3.4620	(0.96)
1 9 8 4	3.4104	(5.87)	1.8988	(13.27)	4.5389	(5.77)	3.6908	(1.61)

註 : 1) ( )속의 數値는 期間別 年平均增加率을 나타냄.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및 『韓國統計年鑑』.

〈附表 3〉 工業構造展望[1]

(단위 : 1980年 不變價格, 10億원, %)

		1983	1991	1996	年平均成長率	
					1984～91	1992～96
製造業計		14,410.3	26,459.6	40,333.4	7.9	8.8
構成比	輕工業	38.8	36.2	32.4	7.0	6.4
	纖維	(11.0)	(9.7)	(8.3)	(6.1)	(5.5)
	食品加工	(7.7)	(6.7)	(6.1)	(6.1)	(6.7)
	重化學工業	61.2	63.8	67.6	8.5	10.1
	電氣·電子	(10.8)	(14.6)	(18.3)	(12.0)	(13.9)
	機械	(6.2)	(7.0)	(8.1)	(9.6)	(11.9)
	輸送機器	(8.3)	(8.9)	(9.5)	(8.8)	(10.1)
	鐵鋼	(5.5)	(6.1)	(5.5)	(9.1)	(6.8)

註 : 1) 〈表 5〉의 註 參照.

〈附表 4〉 3次産業의 構造展望[1]

(단위 : 1980年 不變價格, 10億원, %)

		1983	1991	1996	年平均成長率	
					1984~91	1992~96
3次産業計		24,140.5	43,403.3	56,168.9	7.6	6.4
構成比	社會間接資本	23.3	21.9	22.4	6.8	6.9
	建設業	(18.2)	(16.4)	(16.7)	(6.2)	(6.8)
	서비스業	76.7	78.1	77.6	7.9	6.2
	商業	(23.3)	(22.7)	(22.5)	(7.2)	(6.2)
	運輸·保管·通信業	(15.0)	(15.1)	(15.6)	(7.8)	(7.0)
	金融·保險·不動産	(14.7)	(16.2)	(16.1)	(8.9)	(6.2)

註 : 1) 〈表 5〉의 註 參照.

〈附表 5〉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

		1983[1]	1991	1996
1次産業	計	30.8	20.2	15.4
製造業	計	22.7	23.8	25.4
	輕工業	13.0	13.1	13.7
	纖維	6.0	5.9	5.8
	食品加工	2.5	2.8	3.2
	重化學工業	9.7	10.4	11.7
	電氣·電子	2.2	2.2	2.3
	機械	1.0	1.1	1.4
	輸送機器	1.2	1.2	1.3
3次産業	計	47.4	56.1	59.2
	社會間接資本	5.9	6.0	6.5
	建設業	5.6	5.6	6.1
	서비스業	41.5	50.1	52.7
	運輸·保管·通信	4.6	5.6	5.8
	金融·保險·不動産	3.6	4.0	4.3
	商業	15.4	17.1	17.9
全産業	計	100.0	100.0	100.0

註 : 1) 産業聯關去來表에서의 産業別 就業者構成比임.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推計.

〈附表 6〉 産業別 主要職種의 就業人口 展望

(단위 : 千名, %)

	1980	1991	1996	年平均增加率	
				1981~91	1992~96
食品加工業	331.2	476.4	569.4	3.36	3.63
食品飮料製造工	(190.6)	(231.0)	(276.2)	1.76	3.64
纖維·衣類業	949.3	980.0	1,053.9	0.29	1.47
紡織紡績工	(274.5)	(250.4)	(270.0)	−0.83	1.52
양복재봉사	(445.3)	(494.9)	(532.7)	0.97	1.48
一般機械	105.3	189.7	256.7	5.49	6.24
機械設置工	(35.7)	(66.9)	(90.3)	5.88	6.18
電氣·電子工	290.2	374.4	417.6	2.34	2.21
電氣電子工	(154.3)	(192.7)	(214.9)	2.04	2.20
輸送機器	113.7	202.2	231.4	5.37	2.74
機械設置工	(33.1)	(56.9)	(65.3)	5.05	2.79
鉛管熔接工	(20.2)	(43.2)	(49.5)	7.16	2.76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附表 7〉 産業別·年齡段階別 就業者 構成比

(단위 : %)

	計	14~19歲	20~24歲	25~34歲	35~49歲	50~59歲	60歲이상
全 産 業	100.0	4.4	11.6	27.6	36.7	13.6	6.1
製 造 業	100.0	9.2	19.8	36.0	28.8	5.0	1.2
纖 維 産 業	100.0	14.2	25.2	32.0	23.5	4.2	0.9
組立金屬 및 機械産業[1]	100.0	7.8	21.7	40.7	25.8	3.4	0.6
建 設 業	100.0	2.1	7.7	32.6	43.0	12.1	2.5
個人 및 社會서비스業	100.0	3.3	12.4	31.8	38.9	10.7	2.9

註 : 1) 組立金屬 및 機械産業에는 一般機械, 電氣·電子, 輸送機械, 精密機械産業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雇傭構造特別調査報告』, 1983.

〈附表 8〉 産業別·學歷別 就業者 構成比

(단위 : %)

	計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全 産 業	100.0	43.9	23.1	25.4	7.6
製 造 業	100.0	31.3	29.8	30.4	8.5
纖 維 産 業	100.0	39.0	35.0	22.2	3.8
一 般 機 械	100.0	18.1	29.0	39.7	13.2
電 氣 · 電 子	100.0	14.7	31.9	41.8	11.6
輸 送 機 械	100.0	16.6	27.8	42.3	13.3
個人 및 社會서비스業	100.0	37.7	26.2	28.8	7.3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人口住宅센서스報告』, 1980.

〈附表 9〉 4年制大學 專攻系列別 需要 및 供給

(단위 : %)

	供給				需要					
	1980		1984		25歲 以下		26~30歲		31~35歲	
	計	男	計	男	計	男	計	男	計	男
總 計	55,846 (100.0)[2]	39.263 (100.0)	118,584 (100.0)	75,813 (100.0)	2,382 (100.0)	850 (100.0)	4,734 (100.0)	3,169 (100.0)	4,751 (100.0)	3,553 (100.0)
農水産系	3,837 (6.9)	3,364 (8.6)	5,574 (4.7)	4,667 (5.9)	79 (3.3)	57 (6.7)	239 (5.0)	213 (6.7)	259 (5.5)	237 (6.7)
社 會 系	10,472 (18.8)	9,392 (23.9)	27,508 (23.2)	22,483 (29.7)	371 (15.6)	216 (25.4)	1,134 (24.0)	978 (30.9)	1,522 (32.0)	1,374 (38.7)
理 學 系	4,992 (8.9)	2,028 (5.2)	12,578 (10.6)	5,441 (7.2)	404 (17.0)	55 (6.5)	638 (13.5)	191 (6.0)	518 (10.9)	189 (5.3)
工 學 系	13,568 (24.3)	13,369 (34.0)	23,448 (19.8)	22,898 (30.2)	326 (13.7)	289 (34.0)	1,044 (22.1)	1,006 (31.7)	899 (18.9)	880 (24.8)
其 他[1]	22,977 (41.1)	11,110 (28.3)	49,476 (41.7)	20,324 (25.9)	1,202 (50.5)	233 (27.4)	1,679 (35.5)	781 (24.6)	1,553 (32.7)	873 (24.6)

註 : 1) 醫學, 藝術, 體育系 포함.
2) ( )안의 數値는 構成比를 표시함.
資料 : 經濟企劃院, 『1980年 人口센서스』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1981, 1985.

〈附表 10〉 産業別 雇傭吸收力 및 就業者 構成比 推移

	雇傭吸收力		構成比變化率(%)		雇傭吸收力×就業者構成比(1983)
	韓國 (1983~96)	日本 (1965~75)	韓國 (1983~96)	日本 (1965~75)	韓國
全産業	0.32				32.00
1次産業	−1.18				−35.78
·農林水産業	−1.33	−3.52	−50.96	−39.05	−38.92
·鑛業	0.58	−1.90	− 2.83	−59.52	0.61
2次産業	0.40				9.07
·輕工業	0.46				5.97
食品加工	0.67	0.12	28.00	− 5.45	1.65
飮料·煙草	0.29	−0.42	− 4.08	−30.77	0.14
纖維·衣類	0.36	−0.37	− 2.83	−22.46	2.16
革製品	−0.52	−0.32	−41.53	−26.32	−0.26
木製品	0.73	0.06	35.71	− 6.82	0.41
紙製品	0.57	0.19	24.49	3.17	0.28
印刷·出版	0.71	0.46	36.17	10.89	0.33
고무製品	0.29	0.34	−12.09	10.45	0.26
其他製造業	0.65	0.20	10.19	11.20	0.70
·重化學工業	0.41				3.98
化學製品	0.55	0.15	24.88	3.96	1.15
石油製品	0.50	0.23	16.44	12.54	0.04
石炭製品	0.34	0.32	6.67	27.93	0.05
非金屬鑛物製品	0.47	0.16	16.30	1.89	0.43
鐵鋼	0.60	0.16	37.31	6.32	0.40
非鐵金屬	0.60	0.17	63.16	2.78	0.11
金屬製品	0.50	0.30	32.63	21.89	0.48
機械	0.49	0.26	42.00	18.78	0.49
電氣·電子	0.20	0.31	3.13	31.77	0.45
輸送機器	0.30	0.29	5.79	18.87	0.36
精密機器	0.43	0.16	18.18	3.70	0.09
3次産業	0.58				27.50
·社會間接資本	0.46				2.70
建設業	0.47	0.15	9.17	1.50	2.61
電力·가스·水道	0.56	0.57	31.25	52.94	0.18
·서비스業	0.59				24.50
運輸·保管·通信	0.56	0.24	26.09	6.00	2.58
金融·保險·不動産	0.47	0.31	18.38	20.61	1.69
商業	0.52	0.33	16.50	24.02	7.99
教育	0.71	0.71	39.16	9.85	2.19
其他서비스	0.69	0.46	37.09	30.42	10.27

註：雇傭吸收力=就業者 平均增加率÷算出額 年平均增加率
就業者構成比 變化率은 基準年度와 비교하여 比較年度가 몇 퍼센트 변화하였나를 표시함.

經濟開放化와 産業內 專門化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 戰略—

金 栽 元

▷ 目 次 ◁

Ⅰ. 序 論
Ⅱ. 産業內貿易의 理論
Ⅲ. 産業內貿易의 測定方法
Ⅳ. 商品輸出入의 産業別 地域別 構成과 産業內貿易의 測定
Ⅴ. 産業內貿易과 政策對應 方向
Ⅵ.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輸出을 增進하기 위한 政策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換率, 金利, 稅率 등을 調整하며 賃金을 동결하는 등 商業的 巨視的 經濟政策(commercial and macro-economic policies)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政策들은 주로 우리나라 輸出商品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構造的 接近을 통해 輸出增大方案을 摸索하고자 한다. 이것은 輸出商品의 多樣化를 통해 輸出範圍(trade spectrum)를 넓히는 방안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貿易環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日本의 엔貨의 價値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서 日本의 商品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商品이 海外市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고, 또 최근에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國際原油價格과 國際金利 때문에 先進工業國의 景氣가 부양되어 우리나라 商品에 대한 輸出需要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先進工業國에서의 保護主義的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開發途上國들로부터의 경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貿易構造의 分析을 통해서, 특히 대내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産業構造의 高度化라는 政策課題와 발맞추어 交易相對國의 多邊化와 交易商品의 多樣化 문

筆者 : 本院 硏究委員

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히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 政策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될 것이다.

貿易의 多邊化(trade diversification), 즉 地域的 多邊化와 商品의 多樣化가 중요한 理由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生産을 專門化하고 消費를 多樣化함으로써 經濟的 福祉를 提高할 수 있게 되고, 둘째로는 專門性에 바탕을 둔 多邊化와 多樣化는 資本力이 약한 中小企業들에게 國際貿易의 기회를 擴大하는 결과가 되므로 中小企業의 育成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뒷받침하게 되며, 세째로는 그같은 多邊化 및 多樣化 戰略은 貿易相對國으로 하여금 保護主義的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戰略이 우리나라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해 有效하다는 것은 實證的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1].

貿易의 多邊化 양상을 測定하는 특별한 方法은 없다. 다만 交易商品이 多樣化되어 있고 交易相對國이 多邊化되어 있을 때는 産業內(intra-industry) 貿易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貿易構造를 産業內 貿易 側面에서 貿易多邊化의 정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 方向을 提示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또는 國際化)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施策, 즉 技術指導, 市場情報의 提供 등 구체적인 方案의 例示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巨視的 觀點에서 우리나라 貿易의 構造的 現況을 分析·提示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적이며 中小企業들에게 經營戰略의 方向을 提供하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硏究의 目的은 變化되어 가는 世界貿易環境에 對處하고, 少額, 少量 輸出을 담당하는 中小 및 中堅 輸出企業의 育成을 통한 輸出産業의 底邊을 擴大하며, 새로운 輸出商品의 開發과 市場別 輸出戰略을 樹立하는데 필요한 基本資料를 提示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政策의 타당성을 論理的으로 설명하여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더욱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1) 우리나라의 製造業을 207個의 I-O部門으로 나누어 分析해 본 결과 그중 65個의 中小企業 中心産業이 對外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大企業中心産業에서는 63個産業만이 對外競爭力이 있다고 計測되었다(金栽元, 1985).

Ⅱ. 産業內 貿易의 理論

1. 産業內 貿易理論의 背景

지금까지 國家間의 貿易現象을 설명하는 理論은 Heckscher-Ohlin의 소위 新古典派理論이었다. Heckscher-Ohlin의 理論에서는 各國의 生産要素 賦存條件에 따라 産業別 比較優位가 결정되고, 이런 比較優位에 따라 各國은 産業別로 專門化가 이루어져서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專門生産된 財貨를 가지고 交易(inter-industry trade)에 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各國의 貿易패턴은 生産要素의 賦存條件(資本과 勞動의 比率)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렇게 交易되는 商品은 자연히 生産要素의 集約度(factor intensity)가 달라지게 된다.

Heckscher-Ohlin의 理論에 의하면 生産要素의 賦存條件이 동일한 國家間에는 貿易이 발

생할 이유가 없으며 또 要素의 賦存條件이 서로 다른 나라가 要素의 集約度가 동일한 財貨를 交易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要素集約度가 같은 財貨들을 하나의 産業으로 分類·集計하여 놓는다면, Heckscher-Ohlin의 理論에 의하면 같은 産業內의 財貨가 一國으로부터 동시에 輸出도 되고 輸入도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많은 經濟學者들, 예를 들면 Verdoon (1960), Balassa(1963), Michalely(1962), Kojima(1964) 등은 貿易이 産業間에서보다도 같은 産業內 財貨의 交易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으며, 이와 같은 現象은 生産要素의 賦存條件이 비슷하고 따라서 産業構造가 비슷한 先進工業國間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많은 貿易現象이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次大戰 이후 西方工業國家들의 製造業生産은 年平均 6% 정도씩 증가하여 왔는데 그들의 交易은 年平均 10%씩 증가하여 왔다. 특히 최근 西方國家들은 消費패턴이 서로 비슷하게 接近하여가고 있고 日本을 비롯한 유럽國家들이 급속하게 資本蓄積을 實現하여 生産要素 조건도 비슷한 形態를 갖게 되었다. Heckscher-Ohlin의 理論에서는 이런 경우 貿易이 減少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반대인 것이다. 특히 Aquino는 프랑스가 Renault를 西獨에, 西獨은 VW를 프랑스에 輸出하는 現象, 또 이태리가 Fiat를 프랑스나 西獨에 輸出하고 있으면서 이들 國家들로부터는 Renault와 VW를 輸入하고 있는 사실들을 전통적 貿易理論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고 反問하고 있다.

2. 産業內 貿易의 理論的 根據

傳統的인 Heckscher-Ohlin의 理論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基本假定으로부터 出發한다.

첫째, 모든 財貨의 生産函數는 規模에 대한 報酬不變이다(linearly homogeneous production function).

둘째, 各國의 生産函數는 동일하다.

세째, 消費者의 選好度(consumers' preference)는 일정하며 市場은 完全競爭的이다.

네째, 投入生産要素(勞動 및 資本)는 同質的이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産業內 貿易은 위와 같은 Hecks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Heckscher-Ohlin 理論으로 설명되는 産業內 貿易은 産業區分上의 問題 (또는 aggregation problem)로부터 發生한다. 다시 말해서 要素集約度가 현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消費上의 代替性(close substitute in consumption) 때문에 같은 産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라든지(예를 들면 鐵製家具와 木製家具의 경우), 여러 가지 生産上의 特性을 달리하는 部品들이 하나의 完製品을 위하여 生産되고 있으나 이들 部品群이 하나의 産業으로 分類되어 있을 때(예를 들면 自動車部品을 輸出하면서 自動車는 輸入하는 경우)는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은 되면서도 統計上 集計의 問題 때문에 産業內 貿易의 現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순수한 産業內 貿易, 즉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부터 보기로 한다.

가. 本質上 同質인 財貨의 差別化

完全競爭市場에서는 財貨가 同質的(homogeneous product)이고 市場에 대한 완전한 情報(full information)가 주어지고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財貨는 完全同質的일 수 없으며 市場에 대한 情報가 항상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生產者 또는 消費市場의 地理的 位置에 따른 製品差別化와 時間에 따른 製品差別化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1) 地理的 位置에 따른 差別化

예를 들어 國土의 北部에서 石炭이 生產되고 있으나 石炭을 소비하는 產業施設이 南部에 자리잡고 있을 때 北部에서 生產되는 石炭은 隣接 外國으로 輸出하고 남쪽에서 消費되는 石炭은 第3國으로부터 다시 輸入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같은 產業에 속하는 동일한 財貨가 동시에 輸出도 되고 輸入도 되는 경우이어서 對外去來表上에는 產業內 貿易으로 나타나게 된다. 유럽의 여러 나라나 美國 및 캐나다의 國境隣接地域에서 同質의 財貨가 한쪽에서는 輸出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輸入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소위 國境貿易(border trade)의 예인데 이것은 機能上 同質의 財貨가 場所에 의해서 差別化(differentiation by location) 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것은 모두가 對外去來表에서 產業內 貿易으로 表示된다. 이와 같은 製品의 差別化는 消費市場이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運搬費가 製品價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 仲介貿易(또는 entrepot trade)도 產業內 貿易의 범주에 속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交通의 要地인 동시에 거대한 消費市場이 隣接하여 있어서 이같은 仲介貿易의 利點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거대한 창고를 설치하여 都買로 輸入하였다가 散賣의 形式으로 다시 輸出을 하는 것이다.

2) 時間에 의한 差別化

財貨는 시간에 의해서도 差別化가 이루어진다(differention by time).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수박을 輸出하다가 겨울철에는 輸入을 한다든지, 계절이 지난 商品을 輸入하여 冷凍倉庫에 보관하였다가 消費가 절정에 이른 계절에 다시 輸出을 한다든지, 또 작업시간대에는 電氣를 輸入하다가 夜間에는 輸出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貿易은 모두가 產業內 貿易으로 표시된다.

나. 商品差別化와 規模의 經濟效果

앞에서 本質的으로 同質인 財貨가 生產 또는 消費되는 地域의 차이, 또는 生產 또는 消費되는 時間上의 차이로부터 발생되는 差別化가 產業內 貿易을 誘發하는 경우를 보았다. 여기서는 規模의 經濟 效果가 있을 때 同種의 財貨, 즉 같은 產業群(the same statistical industry category)에 속하며 生產上의 代替關係(다시 말해서 投入生產要素가 類似)가 있는 財貨들이 交易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먼저 *A*財와 *B*財는 生產과 消費上에 代替關係(substitutibility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가 있고 다른 財貨의 生產이 일정할 때 이들 財貨의 生產에는 規模의 經濟 效果(the economies of scale)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다른 財貨의 生產을 일정하게 두고 *A*財와 *B*財의 生產可能曲線을 그리면 〔圖 1〕에서의 曲線 *AB*와 같게 된다. 즉 原點을 향해 볼록한 曲線이 된다. 만약 貿易이 시작되기 전

〔圖 1〕 規模의 經濟效果와 産業內貿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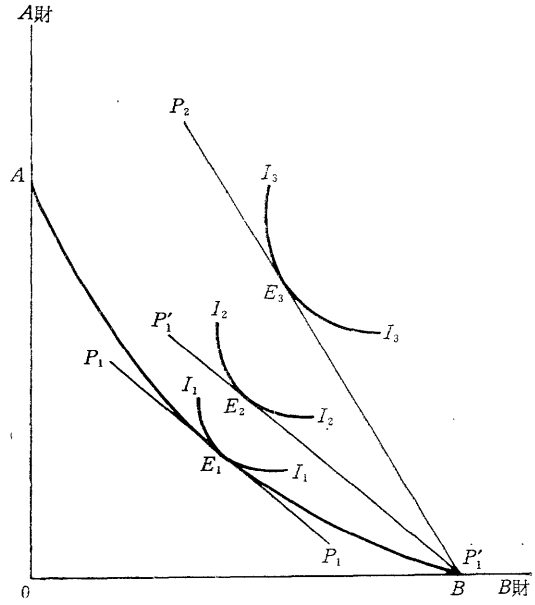

(autarky)의 A財와 B財의 相對價格이 P_1P_1과 같고 그때의 效用函數가 I_1I_1과 같으면 生産과 消費의 均衡點은 E_1과 같게 될 것이다. 貿易이 시작되면 위와 같은 生産函數를 가진 國家에서는 어느 財貨에 專門化할 것인가를 보기로 한다. 이제 A財와 B財가 生産에 있어서 完全代替的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즉 $AO=BO$이고 P_1P_1은 양측으로부터 45°線임). 그리고 우리가 國際貿易을 시작하였다고 해서 A財와 B財의 輸出入價格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가정한다(small country assumption). 이때 위와 같은 生産函數를 가졌을 경우에는 우리는 A財나 B財 어느 하나에 完全專門化하여 交易에 임하는 것이 福祉增進에 도움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財 生産에 專門化하였을 경우 消費均衡點은 E_2가 되고 社會福祉水準은 I_2I_2가 되어 貿易의 利得(gains from trade)이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A財에 專門化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規模의 經濟效果가 있을 때에는 生産上의 代替關係가 있는 財貨의 경우에 産業內 貿易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産業에 속하는 A財와 B財中에서 B財를 國內生産·輸出하고 A財를 輸入(産業內 貿易)함으로써 福祉上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例示하였다.

이제 만일 貿易開放前의 國內相對價格(autarky price)과 開放後의 相對價格이 다를 때 우리는 어느 財貨에 專門化할 것인가를 보기로 한다. 〔圖 1〕에서 본 바와 같이 市場開放後의 價格이 P_2P_2와 같다면 우리는 당연히 財貨 B에 專門化하는 것이 유리함을 볼 수 있다.

다. 消費者 嗜好와 規模의 經濟效果

일반적으로 産業內 貿易은 貿易當事國들의 所得水準이 높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 이유는 所得水準이 높은 國家일수록 消費者의 기호가 다양하고(market differentiation), 따라서 財貨生産이 다양(product differentiation)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韓國과 日本間에 TV貿易이 自由化되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日本의 1人當 平均 所得水準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서 日本에서는 音聲多重用 TV의 需要가 많고 韓國에서는 보통 칼러TV의 需要가 더 많을 때 日本에서는 音聲多重用 TV의 生産이 韓國보다 유리한 반면 韓國은 音聲多重用 TV의 生産能力을 갖추고 있더라도 보통의 칼러TV 生産이 더 유리하게 된다. 그 이유는 國內市場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훨씬 수월에게 規模의 經濟效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의 두 나라가 각기 自國生産에 유리한 品目에 專門化하여 交易을 하게 되면 이는 곧 統計上으로

産業內 貿易으로 集計될 것이다.

3. 傳統的 理論과 産業內 貿易

이제 産業을 구분하는 統計的 構造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을 때 Heckscher-Ohlin의 世界에서는 産業內 貿易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制度와 理論的 構成下에서는 産業內 貿易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정한 Hecksher-Ohlin의 世界, 즉 規模에 대한 報酬不變, 國家間의 동일한 生産函數, 完全競爭的 市場 등 모든 가정이 성립하나 財貨가 品質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2]. 여기서는 어느 特定産業(A産業)에서의 貿易現象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고자 하는 A産業은 經濟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 즉 이 産業에서의 생산증가, 다시 말해서 雇傭 및 投資의 증가가 經濟 전체의 賃金이나 利子率의 변동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A産業에서 생산되는 財貨의 品質(quality)은 資本과 勞動의 比率(K/L)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K/L=a$이고 $\bar{a}<a<\underline{a}$이다. $\underline{a}$와 $\bar{a}$는 각각 品質의 下限과 上限을 의미하며 財貨 A의 品質은 $\underline{a}$와 $\bar{a}$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種類(product spectrum)가 있을 수 있다. 또 價格은 品質 a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資本과 勞動의 比率이 높으면 (즉 품질이 높으면) 價格은 높게 된다.

세째, 資本(K)은 A産業 特有의 性格(industry specific)을 가지며 資本의 國家間 이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같은 資本이 産業內에서 여러 가지 品質의 財貨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다(mobile across different qualities). 뿐만 아니라 資本의 利回率(R)은 資本이 항상 완전 이용되도록 조정해 준다고 가정한다.

이제 賃金水準(W)이 國內 및 國外(W^F)에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a品質財貨의 國內 및 國外에서의 單位當 生産費 (C, C^F)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C(a)=W+aR$$
$$C^F(a)=W^F+aR^F$$

따라서 만일 $C(a)<C^F(a)$이면 a品質의 財貨는 우리나라로부터 해외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이제 賃金水準은 국내가 해외보다 더 낮고 ($W<W^F$), 利子率은 더 높다고($R>R^F$) 하면 單位當 比率이 國內外에서 같아지는 품질 수준이 있을 것이다. 즉 $W+a_1R=W^F+a_1R^F$이 되는 a_1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때 a_1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a_1=\frac{W^F-W}{R-R^F}$$

그러므로

$$C(a)-C^F(a)=(W-W^F)+a(R-R^F)$$
$$=(W-W^F)+\frac{a(W^F-W)}{a_1}$$
$$=(a-a_1)\frac{W^F-W}{a_1}$$

따라서 $W^F-W>0$이면 $C(a)-C^F(a)<0$이 되

2) Rodney E. Falvey (1981) 참조.

기 위해서는 $a-a_1<0$, 또는 $a<a_1$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의 賃金이 더 낮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品質이 낮은 財貨(또는 勞動集約的 財貨)에 比較優位를 갖고 수출을 하게 될 것이며 品質이 높은 財貨는 수입하게 되어 産業內 貿易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國內産業 보호를 위해서 보호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에 t%의 關稅를 부과하게 되면 輸入品의 價格은 $C^f(a)$ $(1+t)$로 증가하여 産業內 貿易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關稅率을 낮추면 産業內 貿易의 폭은 증가하게 된다[3].

또 위와 같은 論理의 설명은 技術隔差에 바탕을 둔 貿易(technology-gap trade)이나 商品에 바탕을 둔 貿易(product trade)의 理論에서도 원용되고 있다[4]. 즉 財貨 生産에 있어서 技術革新이나 品質改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새롭게 탄생하는 財貨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국가간의 比較優位에 의해 완전한 分業狀態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産業內 貿易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X財를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만일 X財의 代替財인 X'(또는 X財보다 품질상 우위에 있는 財貨)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을 경우를 보기로 한다. 새로운 財貨를 국내수요의 충족은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量産體制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만한 크기의 投資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새로운 財貨의 生産을 위해서는 技術의 보급이 필요하며, 세째는 새로운 財貨가 消費者의 嗜好를 만족하며 큰 폭의 需要膨脹이 가능한지도 파악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까지 수입해 오던 X財의 수입이 계속되는 한편 이의 代替財인 X'은 국내 소비와 더불어 수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現象은 貿易統計에서 産業內 貿易으로 표시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自動車 및 電子製品(특히 가정용)은 중요한 輸出戰略業種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들 제품들의 國産化率 提高를 위해 政府와 業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輸出戰略品目에 대하여 國産化率 提高가 요구된다는 것은 産業內 貿易의 戰略을 설명하는 것이다.

技術 및 素材部門에서 뒤떨어지는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그밖의 單純技術 및 單純素材를 필요로 하는 부품과 부품의 조립은 국내에서 담당하여 完製品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하는 부품과 수출하는 完製品이 같은 산업에 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현상은 統計處理上 産業內 貿易으로 표시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의 輸出物量의 증가에 비해 국내 附加價値 比率이 작아서 國産化率 증가가 강조되고 있지만 比較靜學的 측면 또는 단순히 貿易政策的 측면에서는 이같은 무역도 증가할수록 유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貿易現象은 원리상 Heckscher-Ohlin의 理論으로 설명되는 것이며 통계상의 集計問題(aggregation) 때문에 産業內 貿易의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의 交通通

3) 그러므로 미국의 保護主義的 性向은 産業內 貿易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勞動集約的 財貨(예, 中小企業)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의 輸入自由化는 資本集約的 財貨의 경쟁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4) Grubel and Lloyd 1975, Ch. 7 참조.

信이 발달함에 따라 多國籍企業 戰略이 발달하게 되고 完製品보다도 部品交易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의 車' 戰略(worldcar strategy)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하나의 完成車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部品들은 제각기 比較優位가 있다고 믿어지는 세계의 여러 곳으로부터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호응하여 자동차·전자·전기·조선 등의 部品은 우리나라의 重要 輸出戰略品目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産業內 貿易의 決定要因

대부분이 經濟理論이 다 그렇듯이 産業內 貿易의 理論도 實證的 現象으로부터 정리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리 과정에서 정립된 假說(hypotheses)들도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統計的으로 檢證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문헌을 통해 발표된 産業內 貿易의 決定要因에 대한 檢證結果들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産業別 假說

産業別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있다.

1) 産業內에서의 商品 差別化가 세분되어 있는 경우

2) 市場이 獨占的 競爭 (또는 市場 差別化)의 구조를 가질 때

3) 財貨의 輸送費가 저렴할 때

4) 多國籍企業의 참여가 많을 때, 또는 部品이나 部分品의 생산이 최종 完製品 組立과 직접 연계되지 않을 때

5) 高度(또는 尖端)技術을 사용하는 産業인 경우(technology gap trade)

6) 財貨의 所得彈力度가 큰 경우(product cycle trade)

7) 規模의 經濟 효과가 클 때[5]

8) 국가간에 貿易障壁이 적은 産業의 경우 등이다.

나. 國家別 假說

産業全體 또는 國家別 貿易構造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 經濟發展 段階가 높은 경우

經濟의 發展段階는 일반적으로 1人當 GNP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1人當 GNP가 높은 국가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消費者의 需要가 다양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연히 産業內 貿易의 비중이 높게 될 것이다[6]. 특히 경제의 발전이 공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生産 및 生産技術의 다양화를 통해서 商品差別化(product differentiation)

5) Loertscher and Wolter (1980)에서는 規模의 經濟效果가 産業內 貿易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要件으로 설명되고 있는 데신에 O. Havrylyshyn and E. Civan (1983)에서는 그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效果가 중요치 않은 要因으로 나타난 데 대하여 Havrylyshyn and Civan은 規模의 經濟效果가 國境貿易(boarder trade)을 감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國境貿易의 가능성이 작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서는 規模의 經濟效果가 産業內 貿易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要因이 될 것이다.

6) Loertscher and Wolter (1980)는 經濟의 發展 정도(1人當 GNP 수준)가 産業內 貿易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實證結果를 提示하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제일 중요한 要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avrylyshyn and Civan, 1983; Gavelin and Lundberg, 1983).

가 넓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곧 産業內 貿易의 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다.

2) 賦存資源 條件의 差異가 크지 않은 國家間 貿易의 경우

Heckscher-Ohlin의 理論에 의하면 賦存資源 條件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들 國家間에는 貿易의 誘因이 작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國家間에는 많은 貿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貿易의 構造는 産業內 貿易의 형태를 띠게 된다. 만일 이들 國家間에 經濟共同體를 形成하고 있을 때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EEC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3) 貿易障壁이 낮은 경우

貿易障壁이 생겨나는 데에는 人爲的 및 自然的 이유 등이 있다. 關稅나 貿易統制와 같은 政策的 이유 외에도 輸送, 通信費에 의한 貿易障壁, 情報蒐集費에 의한 貿易障壁, 言語 및 文化的 배경의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貿易障壁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要因에 의한 貿易障壁이 낮을수록 産業內 貿易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4) 所得隔差가 작은 國家間 貿易의 경우

Loertscher and Wolter(1980)는 所得隔差가 작은 先進國間의 貿易에 높은 수준의 産業內 貿易現象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所得隔差가 産業內 貿易을 결정하는 重要要因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 隔差가 작을수록 消費者들의 財貨 需要패턴이 유사하고 따라서 財貨의 消費代替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avelin and Lundberg(1983)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産業內 貿易 증가 속도가 선진국간의 産業內 貿易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Ⅲ. 産業內 貿易의 測定方法

産業內 貿易이란 같은 産業(또는 業種)에 속하는 財貨가 동시에 輸出도 되고 輸入도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크기를 測定하는 方法은 Verdoon(1960), Michaely(1962), Kojima(1964), Balassa(1966), Grubel and Lloyd(1975), Aquino(1980) 등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이들 여러 方法들은 그 方法에 따라 測定結果가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Grubel and Lloyd 方法과 Aquino 方法을 利用하기로 하였다.

1. Grubel and Lloyd 方法

産業內 貿易의 크기를 測定함에 있어서는 産業別 測定과 國別(또는 集合的) 測定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國別 測定이란 産業別 測定値를 加重平均한 것인데 加重平均하는 과정에서 Grubel and Lloyd 方法과 Aquino 方法으로 구분된다. 産業別 測定에서는 Grubel and Lloyd 方法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 産業別 測定

먼저 i 産業에서의 總交易量(T_i), 産業間 貿易量(S_i), 그리고 産業內 貿易量(R_i)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T_i=X_i+M_i, \quad i=1\cdots n \cdots\cdots\cdots\cdots\cdots(1)$$

X_i, M_i : i産業 財貨의 輸出 및 輸入量

$$S_i = |X_i - M_i|, \qquad i = 1 \cdots n \cdots\cdots\cdots (2)$$

그러면

$$R_i = T_i - S_i = (X_i + M_i) - |X_i - M_i| \cdots (3)$$

이다. 다시 말해서 産業內 貿易量은 總交易量 中에서 産業間 貿易量을 뺀 나머지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産業內 貿易量을 總交易量에 대한 百分比(B_i)(産業內 貿易指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_i = \frac{T_i - S_i}{T_i} \times 100 = \frac{R_i}{T_i} \times 100 \cdots\cdots (4)$$

그러므로 만약 $S_i = 0$ (또는 $R_i = T_i$)이면 $B_i = 100$이어서 i産業에서의 貿易構造가 完全産業內 貿易(perfect intra-industry trade)임을 의미하며 $S_i = X_i$ 또는 $S_i = M_i$이면 (또는 $M_i = 0$이거나 $X_i = 0$이면) $B_i = 0$이어서 貿易構造가 完全 産業間 貿易(perfect inter-industry trade)임을 의미하게 된다.

나. 國別 測定

國別 産業內 貿易指數는 産業別 産業內 貿易數指(B_i)를 當該産業이 全體 交易量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加重値로 하여 加重平均한 것이다. 즉

$$\bar{B}_i = \Sigma B_i \cdot \frac{X_i + M_i}{\Sigma (X_i + M_i)}$$

$$= \frac{\Sigma R_i}{\Sigma T_i} \times 100 \cdots\cdots (5)^{7)}$$

그런데 위의 $\bar{B}_i$는 貿易收支가 黑字이거나 赤字가 되면 産業內 貿易度를 under-estimate하는 결함이 있다[8].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式(5)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bar{C}_i = \frac{\Sigma R_i}{\Sigma T_i - |\Sigma X_i - \Sigma M_i|}$$

$$= \frac{\Sigma R_i}{\Sigma T_i} \times \frac{\Sigma T_i}{\Sigma T_i - |\Sigma X_i - \Sigma M_i|}$$

$$= B_i \times \frac{1}{1-k} \cdots\cdots (6)$$

여기서 $k = \frac{|\Sigma X_i - \Sigma M_i|}{\Sigma T_i}$이고,

$0 \leq k \leq 1$이다.

따라서 貿易收支의 불균형이 크면 k가 커져서 産業內 貿易指數 測定値를 上向調整하게 된다.

2. Aquino의 修正

Aquino(1980)는 Grubel and Lloyd의 調整指數($\bar{C}_i$)가 産業內 貿易指數의 加重平均일뿐 調整指數의 평균을 보여주는 것은 못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Aquino는 다음과 같은 修正指數를 제시하고 있다.

$$Q_i = \frac{\Sigma T_i - \Sigma |X_i^e - M_i^e|}{\Sigma T_i} \times 100 \cdots\cdots (7)$$

여기서 $X_i^e = X_i \times \frac{1/2 \Sigma T_i}{\Sigma X_i}$

$$M_i^e = M_i \times \frac{1/2 \Sigma T_i}{\Sigma M_i}$$

---

7) $\bar{B}_i = \Sigma B_i \frac{X_i + M_i}{\Sigma (X_i + M_i)}$

$= \Sigma \left(\frac{R_i}{T_i} \times 100 \times \frac{T_i}{\Sigma T_i} \right)$

$= \frac{\Sigma R_i}{\Sigma T_i} \times 100$

8) 예를 들면

$\bar{B}_i = \frac{\Sigma T_i - \Sigma S_i}{\Sigma T_i} \times 100$

産業間 貿易이 零이라고 하더라도(즉 $B_i = 100$) 貿易黑字(또는 赤字)가 있을 때에는 $\Sigma S_i > 0$이어서 $\bar{B}_i < 100$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다.

Aquino는 자신의 修正指數가 産業內 貿易度를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Kol and Mennes(1983)는 또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方法이 확실한 우위성을 갖는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Ⅳ.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地域別 構成과 産業內貿易의 測定

1.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地域別 構成

우리나라의 商品 輸出入 現況을 産業別(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로 보기로 한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年과 1983年의 두 時點을 비교하여 보면 1977年의 商品 輸出總額은 약 100億달러이던 것이 1983年에는 약 244億달러로 약 244%의 伸張을 보였고, 輸入도 같은 기간동안에 약 108億달러에서 262億달러로 약 242%의 伸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産業中 製造業製品(SITC 5-8産業)의 輸出入을 보면, 輸出의 경우에는 1977年의 85億달러(總輸出의 84.9%)에서 1983年에는 223億달러(總輸出의 91.4%)로 약 262%의 伸張을 보였고 輸入은 같은 기간동안에 58億달러에서(總輸入의 53.9%)에서 137億달러(總輸入의 52.5%)로 약 235%가 伸張되었다. 따라서 貿易收支 전체로 보면 赤字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分析하고자 하는 製造業만 본다면 줄곧 黑字國인 셈이다. 특히 輸出에 있어서는 SITC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8(其他 雜製品) 産業製品이 主宗을 이루고 있

〈表 1〉 우리나라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 比重

(단위 : 千달러, %)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0	945,223	9.4	1,092,183	4.5	716,747	6.6	1,711,576	6.5
1	106,992	1.0	122,169	0.4	34,174	0.3	20,152	0.1
2	295,317	2.9	291,685	1.2	1,944,249	18.0	3,461,197	13.2
3	120,380	1.2	559,651	2.3	2,185,832	20.2	6,979,593	26.6
4	4,474	0.0	4,148	0.0	85,666	0.8	136,780	0.5
5	221,117	2.2	674,770	2.8	991,306	9.2	2,222,290	8.5
6	3,301,714	30.2	6,957,042	28.5	1,525,396	14.1	2,977,162	11.4
7	1,853,605	18.5	7,980,900	32.6	2,950,327	27.3	7,567,898	28.9
8	3,425,882	34.1	6,721,315	27.5	361,506	3.3	910,884	3.4
9	41,933	0.4	41,192	0.2	12,878	0.1	205,167	0.8
小計[1]	8,532,313	84.9	22,334,027	91.4	5,828,535	53.9	13,678,234	52.2
合計	10,046,637	100.0	24,445,055	100.0	10,808,081	100.0	26,192,699	100.0

註 : 1) 産業 5, 6, 7, 8의 合計임.
資料 : U.S.,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各年度.

〈表 2〉 우리나라 商品 輸出入의 産業別 地域別 構成

(단위 : 千달러)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EEC[4]	0[1]	32,431(3.4)[2]	17,377(1.6)	23(0.0)	17,324(1.0)
	1	64,151(60.0)	58,158(47.6)	6,773(19.8)	13,060(64.8)
	2	17,275(5.8)	13,105(4.5)	22,853(1.2)	61,548(1.8)
	3	3(0.0)	751(0.1)	3,556(0.2)	32,376(0.5)
	4	3(0.1)	2(0.0)	815(1.0)	2,698(2.0)
	5	19,279(8.7)	28,498(4.2)	145,500(14.7)	449,144(20.2)
	6	344,782(11.4)	361,287(5.2)	81,021(5.3)	264,492(8.9)
	7	217,599(11.7)	1,342,573(16.8)	491,291(16.7)	1,128,480(14.9)
	8	709,675(20.7)	1,214,307(18.1)	45,823(12.7)	103,069(11.3)
	9	457(1.1)	742(1.8)	5,138(39.9)	10,153(4.9)
合計		1,405,655(14.0)[3]	3,036,760(12.4)	802,793(7.4)	2,082,324(8.0)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日本	0	595,968(63.1)	693,298(63.5)	1,188(0.2)	15,398(0.9)
	1	5,927(5.5)	3,174(2.6)	763(2.2)	535(2.7)
	2	165,529(56.1)	131,062(44.9)	154,101(7.9)	205,649(5.9)
	3	69,149(57.4)	446,065(79.7)	51,431(2.4)	98,917(1.4)
	4	931(20.8)	1,262(30.4)	6,965(8.1)	5,173(3.8)
	5	68,767(31.1)	135,642(20.1)	640,758(64.6)	863,383(38.9)
	6	424,838(14.0)	913,314(13.1)	1,251,012(82.0)	1,651,867(55.5)
	7	224,855(12.1)	373,094(4.7)	1,578,377(53.5)	2,848,287(37.6)
	8	556,762(16.3)	695,488(10.3)	229,463(63.5)	473,770(52.0)
	9	35,580(84.8)	11,177(27.1)	3,701(28.7)	75,509(36.8)
合計		2,148,306(21.4)	3,403,576(13.9)	3,917,757(36.2)	6,238,488(23.8)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美國	0	128,677(13.6)	125,709(11.5)	55(0.0)	1,071,913(62.6)
	1	20,659(16.3)	25,596(21.0)	17,152(50.2)	2,675(13.3)
	2	13,548(4.6)	10,058(3.4)	885,063(45.5)	1,442,138(41.7)
	3	26(0.0)	20,330(3.6)	40,120(1.8)	328,232(4.7)
	4	24(0.5)	89(2.1)	44,523(52.0)	39,471(28.9)
	5	21,144(9.6)	58,723(8.7)	130,862(13.2)	606,387(27.3)
	6	765,938(25.3)	1,692,308(24.3)	86,452(5.7)	421,292(14.2)
	7	616,830(33.3)	2,841,456(35.6)	687,232(23.3)	2,059,896(27.2)
	8	1,551,975(45.3)	3,462,312(51.5)	61,980(17.1)	263,808(29.0)
	9	269(0.6)	8,823(21.4)	4,032(31.3)	39,733(19.4)
合計		3,119,090(31.0)	8,245,404(33.7)	1,957,471(18.1)	6,275,545(24.0)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ASEAN[5]	0	44,269(4.7)	28,219(2.6)	13(0.0)	122,318(7.1)
	1	3,990(3.7)	4,674(3.8)	30(0.1)	8(0.0)
	2	35,455(12.0)	52,339(17.9)	549,063(28.2)	616,738(17.8)
	3	15,909(13.2)	22,021(3.9)	39,256(1.8)	791,191(11.3)
	4	624(13.9)	166(4.0)	4,002(4.7)	60,597(44.3)
	5	28,275(12.8)	162,101(24.0)	1,848(0.2)	19,823(0.9)
	6	228,191(4.2)	642,002(9.2)	15,609(1.0)	64,045(2.2)
	7	48,429(2.6)	448,089(5.6)	16,329(0.6)	156,426(2.1)
	8	18,408(0.5)	48,686(0.7)	899(0.2)	5,729(0.6)
	9	2,376(5.7)	8,445(20.5)	224(1.7)	2,525(1.2)
合計		325,926(3.2)	1,416,742(5.8)	627,273(5.8)	1,839,400(7.0)

		輸出		輸入	
		1977	1983	1977	1983
對 中東[6]	0	12,515(1.3)	49,157(4.5)	104(0.0)	34(0.0)
	1	332(0.3)	11,971(9.8)	0(0.0)	0(0.0)
	2	18,115(6.1)	9,629(3.3)	1(0.0)	5,232(0.2)
	3	224(0.2)	1,903(0.3)	1,694,592(77.5)	3,173,637(45.5)
	4	286(6.4)	787(19.0)	0(0.0)	0(0.0)
	5	3,491(1.6)	16,238(2.4)	10(0.0)	9,400(0.4)
	6	624,982(20.6)	1,214,362(17.5)	8(0.0)	37,276(1.3)
	7	240,914(13.0)	841,363(10.5)	1,798(0.1)	111,030(1.5)
	8	98,793(2.9)	236,083(3.5)	210(0.1)	1,332(0.1)
	9	101(0.2)	539(1.3)	50(0.4)	188(0.1)
合計		999,753(10.0)	2,382,032(9.7)	1,696,773(15.7)	3,338,129(2.7)

註 : 1) SITC 大分類 Code번호
2) ( )內 숫자는 該當産業에서 우리나라 總輸出入에 대한 比率임.
3) 地域別 輸出入 合計 및 우리나라 總輸出入에 대한 比重임.
4) EEC : 프랑스, 서독,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브르크, 영국, 에이레, 덴마크, 그리스 (10個國)
5) ASEAN :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5個國)
6) 中東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메레이트, 리비아(5個國)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7, 1983.

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SITC 2(燃料를 제외한 原資材), 3(燃料 및 關聯製品),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등이 主種을 이루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輸出과 輸入이 모두 EEC, 日本, 美國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輸出에 있어서는 1977年에 이들 3地域에 66.4%, 1983年에는 60.0%가 集中되어 있으며, 輸入의 경우에는 각각 60.7%와 55.8%씩을 점하고 있다. 비록 그 集中度가 매우 높기는 해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반면 ASEAN과 中東地域과의 貿易比重이 약간 증가하였다.

商品 輸出入의 地域別 收支를 볼 것 같으면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美國과 EEC에 대하여는 黑字를 보이는 반면에 그 밖의 地域, 즉 日本, ASEAN, 中東에 대하여는 赤字를 보이고 있다. 특히 日本과의 貿易赤字幅은 餘他地域과의 貿易에서 갖는 黑字의 合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

이제 地域間 貿易을 産業別로 보기로 한다. 먼저 製造業部門(SITC 5, 6, 7, 8,)의 輸出은 지나치게 美國에 集中되어 있다. 특히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8(기타 雜製品) 産業의 경우에는 當該産業에서의 우리나라 總輸出에 각각 24.3%, 35.6%, 51.5%(1983年 기준)씩을 美國에 輸出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化學 및 關聯製品)産業에서는 (當該産業 輸出額의) 20% 이상을 日本으로 輸出하고 있다. 또 6(工産品)産業에서는 17.5%(1977)~20.6%(1983)가 中東으로 輸出되고 있다. 8(기타 雜製品)産業의 경우에는 美國과 EEC國家에의 輸出이 1977年 66%(1983년 69.6%)에 이르고 있으며 日本을 포함하면 82.3%(1983年 79.9%)까지 集中되어 있다.

輸入은 日本에의 의존이 매우 높다. 우선 우리나라 總商品 輸入의 36.2%(1977), 23.8%(1983)가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3年에는 그 比重이 크게 낮아져서 美國으로부터의 輸入比重(24.0%)보다 낮지만 製造業(SITC 5-8産業)의 경우에는 여전히 日本에의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예를 들면 1977年度의 産業別 比重을 보면 5(化學 및 關聯製品), 6(工産品), 7(機械 및 運送機器), 8(기타 雜製品)의 경우에 각각 64.6%, 82.0%, 53.5%, 63.5%가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다. 1983年에는 그 比重이 다소간 낮아지기는 하였어도 여전히 그 比重이 각각 38.9%, 55.5%, 37.6%, 52.0%씩을 유지하였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輸出入構造의 제 1 차적 문제점은 産業別로 그리고 地域別로 너무 集中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自然資源에 바탕을 둔 産業(resource-based industry)에서는 輸出이 적은 대신 製造業을 중심으로 하는 輸出構造를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으나 産業別로 一部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輸入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거대한 市場에 대해 大企業을 중심으로 집중

〈表 3〉 地域別 商品貿易 收支

(단위 : 百萬달러)

	1977			1983		
	輸出	輸入	收支	輸出	輸入	收支
E E C	1,406(14.0)	803(7.4)	603	3,307(12.4)	2,082(8.0)	955
日本	2,148(21.4)	3,918(36.2)	−1,770	3,404(13.9)	6,238(23.8)	−2,834
美國	3,119(31.0)	1,957(18.1)	1,162	8,245(33.7)	6,276(24.0)	1,969
ASEAN	326(3.2)	627(5.8)	−301	1,417(5.8)	1,839(7.0)	−422
中東	999(10.0)	1,697(15.7)	−698	2,382(9.7)	3,338(12.7)	−956
合計	7,998(79.6)	9,002(83.2)	−1,004	18,485(75.5)	19,773(75.5)	−1,288

註 : ( )內 숫자는 전체(輸出 또는 輸入 全體)에 대한 比重(%)임.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7, 1983.

공략한 과거의 輸出入 戰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2. 産業內 貿易의 測定

産業內 貿易의 測定을 통해서 우리가 分析하고자 하는 것은 貿易의 형태나 國家間 經濟의 結合度를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貿易의 다변화 및 다양화 정도를 알아보는 데 주요 득적이 있다. 따라서 全産業을 分析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製造業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SITC 5-8産業(671-689 産業은 除外)에서의 輸出入을 자료로 하여 産業內 貿易指數를 계산하였다. 地域別로 본 産業內 貿易의 測定의 경우에서도 그 대상으로 하는 産業의 범위는 마찬가지이다.

IIT指數(産業內 貿易指數)를 계산할 때 産業分類를 얼마나 細分하느냐 하는 데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다른 意見이 있다. 예를 들면 Kol and Mennes(1983)는 4 또는 5-digit으로 細分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나 기타 대부분의 實證的 硏究에서는 3-digit 産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産業內 貿易이란 어차피 同質的 財貨(homogeneous products)의 交易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生産과 消費에 있어서는 깊은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의 兩方交易(trade overlap 또는 two-way trade)을 가지고 測定하게 된다. 그러므로 産業을 너무 細分하게 되면 生産代替 關係에 있는 財貨들의 兩方交易이 測定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適正하다고 생각하는 分類水準이 3-digit이다. 여기서도 3-digit 産業을 測定의 基準으로 하였다.

가. 産業內 貿易의 國別 比較

먼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産業內 貿易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對象은 製造業(5-8産業)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67産業(金屬 및 鐵)에 속하는 産業들과 68産業(非鐵金屬)에 속해 있는 産業들은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産業에 속하는 財貨들은 製造의 過程을 별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商品差別化(또는 多樣化)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測定方法에 있어서는 Grubel and Lloyd 方法(修正前)과 Aquino方法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對比하였다. 이 두 가지 方法은 實證硏究에서 모두 제나름의 短點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Grubel and Lloyd 方法(式 5)은 Grubel and Lloyd 자신들이 지적하였듯이 國際收支의 불균형(赤字 또는 黑字)이 있을 때는 産業內 貿易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Grubel and Lloyd의 修正方法(式 6)이다.

그러나 Grubel and Lloyd의 修正前 方法이 國際收支의 불균형이 있을 때 産業內 貿易을 낮게 평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높여 주기 위한 修正方法이 이와 같은 단점을 올바르게 修正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이 없다. 오히려 日本과 같이 만성적으로 出超인 國家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와 같은 短點을 보완하기 위한 Aquino의 方法은 貿易量보다도 貿易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는 短點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9]. 따라서 현재로는 어느 한 가지 方法만을 택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위의 두 가지 方法을 모두 例示하였다.

〈表 4〉는 1976年부터 1982年까지의 韓國, 日本, 싱가포르, 臺灣의 産業內 貿易의 測定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臺灣의 경우에 있어서는 Aquino修正方法과 Grubel and Lloyd 方法間에 測定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日本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 全産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그리고 큰 幅으로 輸出 超過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韓國, 日本, 臺灣에 비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産業內 貿易의 크기가 월등하게 크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國內市場을 가졌을 때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점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경우는 예외인 것 같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貿易障壁이 낮은 것이 産業內 貿易의 測定 결과가 높아지게 된 이유일 것이다. 즉 인위적인 貿易障壁(關稅 및 其他 政府 干與)이 비교적 낮기도 하려니와 또 交通이 편리하고 言語 및 文化的 배경을 같이하는 國家(市場)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세째, 韓國과 日本은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증가하는 아무런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工業先進國(日本 제외)들은 지난 20여년간

〈表 4〉 國別 IIT 指數

Aquino 修正方法

	韓 國	日 本	싱 가 포 르	臺 灣
1 9 7 6	34.74	45.11	68.21	n.a.
1 9 7 7	33.13	44.83	69.83	n.a.
1 9 7 8	32.11	46.54	67.55	31.15
1 9 7 9	32.56	45.94	61.60	30.01
1 9 8 0	34.38	45.97	71.64	30.31
1 9 8 1	35.13	44.31	74.34	n.a.
1 9 8 2	28.97	42.92	73.90	33.39

Grubel-Lloyd 方法

	韓 國	日 本	싱 가 포 르	臺 灣
1 9 7 6	35.76	25.92	66.36	n.a.
1 9 7 7	31.50	23.60	66.50	n.a.
1 9 7 8	31.68	25.38	61.23	32.64
1 9 7 9	32.73	29.89	56.52	31.21
1 9 8 0	35.10	27.15	68.72	31.99
1 9 8 1	33.89	24.05	68.89	n.a.
1 9 8 2	27.36	25.27	66.20	36.38

註 : : SITC 5-8 産業(671-689 除外)으로 計算하였음.

9) Aquino는 자신의 修正方法이 Grubel and Lloyd 方法의 短點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지만 Kol and Mennes(1983)는 Aquino 方法이 貿易패턴에 영향을 받는 短點이 있음을 또다른 예로 반증하고 있다. Kol and Mennes는 修正前의 Grubel and Lloyed 方法이 오히려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10]. 日本의 경우는 輸出에 비해서 輸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낮게 測定되었을 것이며 韓國의 경우에서는 戰略品目에 대한 集中的인 輸出 때문에 貿易商品의 多樣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에는 産業內 貿易指數가 60 以上인 産業(즉 當該産業의 貿易에서 60% 이상이 産業內 貿易인 産業)과 20 以下인 産業의 數를 大分類(1-digit) 産業別로 보았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높은 産業의 數가 제일 많았으며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 제일 적었다. 製造業 全體(131個産業)로 볼 때 1977年에 있어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60%가 넘는 産業數는 23個

〈表 5〉 IIT指數에 의한 3-digit 産業數

		1977				1982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3]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
5. 化學 및 關聯製品 (24)[2]	A[1]	1	13	8	1	6	14	13	2
	B	16	3	1	15	11	1	1	13
6. 生産要素工産品 (34)	A	7	5	8	7	8	7	11	6
	B	16	9	4	22	15	9	4	22
7. 機械 및 運送器機 (45)	A	11	9	17	4	8	4	19	8
	B	24	26	10	34	26	23	4	33
8. 其 他 (28)	A	4	12	13	3	6	9	11	3
	B	15	4	1	19	13	8	0	21
合 計 (131)	A	23	39	46	15	28	34	54	19
	B	71	42	16	90	65	41	9	89

註 : 1) A; 産業別 IIT 指數가 60(%) 以上
B; 産業別 IIT 指數가 20(%) 以下
2) ( )안의 숫자는 該當産業에 속해 있는 3-digit産業의 總數임 (SITC 5-8中 671-689 제외).
3) 1978年度 産業數임.

〈表 6〉 産業別[1] 平均 IIT指數

	1977				1982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2]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
5. 化學 및 關聯製品	20.0 (22.9)	57.2 (23.4)	54.2 (25.6)	14.3 (17.3)	32.9 (30.9)	64.6 (23.0)	61.2 (23.5)	24.6 (27.0)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0.1 (29.7)	35.1 (24.9)	45.8 (24.4)	25.3 (32.5)	32.3 (31.6)	40.6 (27.2)	49.6 (24.3)	25.5 (34.0)
7. 機械 및 運送機器	34.0 (32.8)	30.7 (31.6)	45.7 (30.8)	14.4 (27.0)	29.2 (30.2)	24.7 (21.8)	54.5 (24.1)	18.1 (31.4)
8. 其 他	28.2 (29.7)	53.1 (28.5)	56.9 (22.6)	17.1 (26.8)	29.3 (30.2)	46.1 (29.1)	62.3 (19.0)	14.9 (24.6)

註 : 1) SITC 5-8 (671-689 除外)
2) 1978년도 수치임.
( )안의 숫자는 算術平均에 대한 標準偏差임.

10) Hufbaur and Chilas(1974), Aquino(1980), Grubel and Lloyd (1975), 그밖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었음.

에 불과한 데 비해 그 比重이 20%가 안되는 産業의 數는 71個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2年에는 그것이 각각 28個産業과 65個産業으로 변하여 産業數로 보아서는 産業內 貿易의 增加(貿易商品의 多樣化)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産業內 貿易이 60% 以上을 차지하는 産業數가 1977年에는 39個, 그것이 20% 以下인 産業의 數는 42個였다. 그러나 1982年에는 각각 34個 및 41個 産業으로 그 數가 어느 방향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의 産業內貿易의 比重이 높은 반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는 매우 낮으며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도 그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있어서는 全産業에 걸쳐 고루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높음을 볼 수 있으며 臺灣의 경우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는 반대로 거의 全産業에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낮다. 위와 같은 현상, 즉 産業別貿易商品의 多樣化 정도를 하나의 指數로 표시하기 위해서 産業內 貿易指數를 大分類 産業別로 算術平均하여 보았다[11].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平均指數가 크게 伸張한 반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는 오히려 약간 減少하였다. 日本의 경우에서는 5産業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産業內 貿易을 유지하면서 7産業에서는 오히려 크게 減少하였다[12]. 싱가포르의 경우는 모든 産業에서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크게 증가하였다.

나. 産業內 貿易의 貿易相對 地域別(또는 國別) 比較

위에서는 우리나라와 餘他世界(rest of the world)와의 貿易에서 발생한 産業內 貿易의 수준을 測定하였다. 여기서는 貿易相對 地域別로 測定한 결과를 보기로 한다. 우선 1977年과 1983年을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産業內

〈表 7〉 貿易相對 地域別 IIT 指數

Aquino 修正方法

	日 本	美 國	EEC	ASEAN	홍 콩	臺 灣	캐 나 다
1 9 7 7	35.0	20.9	14.7	32.3	41.3	30.4	8.6
1 9 8 3	40.66	29.2	39.6	36.0	49.3	49.3	11.9

Grubel-Lloyd 方法

	日 本	美 國	EEC	ASEAN	홍 콩	臺 灣	캐 나 다
1 9 7 7	28.6	22.6	13.7	22.1	15.9	27.0	2.7
1 9 8 3	27.52	31.3	33.3	25.4	39.5	41.4	11.4

註 : SITC 5-8 産業 (671-689 除外)으로 計算하였음.

11) 〈表 4〉의 國別 IIT指數는 産業別 貿易比重을 加重値로 하여 평균한 것이므로 國別 産業內 貿易의 수준을 표시하지만 〈表 6〉의 평균 IIT指數는 算術平均한 것이므로 貿易의 多邊化 정도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12)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貿易패턴이 日本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貿易의 수준은 증가하였다[13].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地域別 産業內 貿易指數는 총체적 産業內 貿易指數보다 낮다. 그러나 臺灣 및 ASEAN과의 貿易에서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所得水準이 비슷한 國家間에는 産業內 貿易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일반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産業別로 본 産業內 貿易指數가 60(%) 以上 및 20(%) 以下인 産業數를 地域別로 보면 〈表 8〉과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日本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産業內 貿易을 유지하는 産業數가 1977年과 1983年의 두 시점에서 비교하였을 때 減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美國 및 ASEAN, 홍콩, 臺灣, 캐나다와의 貿易에서는 약간씩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韓國과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産業內가 아니라) 産業間 專門化가 深化되고 있는 셈이다.

産業別로 보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의 産業內 專門化가 각 地域別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역시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그 예외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表 8〉 地域別 IIT 指數에 의한 3-digit 産業數

1977

	日本	美國	EEC	ASEAN	홍콩	臺灣	캐나다
5. 化學 및 關聯製品 (24) A	2	3	1	4	3	2	2
B	16	15	20	13	18	16	21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4) A	9	7	10	2	5	4	1
B	12	18	17	23	23	21	27
7. 機械 및 運送機器 (45) A	7	7	7	6	8	5	7
B	27	28	31	29	26	31	34
8. 其他 (28) A	10	1	3	3	5	10	0
B	16	21	19	21	14	14	16
合計 (131) A	28	18	21	15	21	21	10
B	71	82	87	86	81	82	108

1983

	日本	美國	EEC	ASEAN	홍콩	臺灣	캐나다
5. 化學 및 關聯製品 (24) A	1	2	2	3	4	7	3
B	15	17	21	12	15	11	16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4) A	8	13	4	4	8	6	4
B	11	15	17	21	13	19	23
7. 機械 및 運送機器 (45) A	5	10	12	8	9	11	9
B	30	24	27	25	27	23	30
8. 其他 (28) A	4	4	3	4	7	4	3
B	12	17	16	16	13	15	22
合計 (131) A	18	29	21	19	28	28	19
B	68	73	81	74	68	68	91

註 : A : 3-digit 産業에서의 IIT 指數가 60(%) 以上
B : 3-digit 産業에서의 IIT 指數가 20(%) 以下

13) Grubel-Lloyd 方法으로 測定한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예외이다. 이것은 Aquino 方法이 貿易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貿易相對 地域別 貿易商品의 多樣化를 보기 위한 地域別 平均 IIT指數를 보면 〈表 9〉와 같다.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全産業에 걸쳐 産業內貿易의 平均指數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對ASEAN의 경우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美國과 EEC의 경우에 있어서는 6産業(生産要素別 工産品),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 8産業(기타 雜製品)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약간 증가하였다.

3. 産業內 專門度가 높은 産業과 産業內 專門度의 地域別 變化

産業內 專門度가 높은 産業 (産業內 貿易指數가 높은 産業)과 産業內 專門度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産業을 貿易相對 地域(國)別로 구분하여 〈表 10〉에 요약하였다.

먼저 514 産業(窒素 化學物), 523 産業(기타 無機化學物), 652 産業(綿織物), 695 産業

〈表 9〉 地域別·産業別 平均 IIT指數

	1977				1983			
	日 本	美 國	EEC	ASEAN	日 本	美 國	EEC	ASEAN
5. 化學 및 關聯製品	19.4 (24.6)	22.3 (31.3)	12.4 (21.1)	25.7 (32.4)	18.1 (19.5)	15.3 (20.6)	10.4 (18.5)	24.9 (29.0)
6. 生産要素別 工産品	39.2 (28.9)	29.3 (31.1)	34.4 (31.7)	15.6 (20.7)	34.5 (27.5)	37.8 (34.7)	33.0 (28.1)	19.8 (28.6)
7. 機械 및 運送機器	24.5 (28.4)	26.1 (30.5)	20.9 (31.1)	22.5 (28.9)	20.4 (27.6)	31.5 (33.8)	28.0 (35.0)	26.7 (30.3)
8. 其 他	33.6 (35.0)	16.2 (22.9)	17.9 (27.3)	13.6 (22.2)	31.3 (29.3)	25.2 (31.4)	22.6 (24.8)	22.0 (25.9)

註 : ( )內는 標準偏差임.

〈表 10〉 産業內 貿易指數가 높은 産業

	IIT 指數가 60(%) 以上인 産業	IIT 指數가 年 10% 以上씩 증가하여 그것이 40(%) 以上이 된 産業	
		輸出>輸入	輸出<輸入
日 本	512, 541, 651, 652, 653, 656, 663, 665, 691, 697, 699, 714, 749, 761, 762, 771, 778, 786, 792, 821, 872, 883, 884, 892, 893, 894, 895, 896, 898, 899	666	552, 591, 716, 793, 871
美 國	514, 523, 531, 628, 641, 642, 651, 655, 656, 657, 661, 663, 664, 665, 691, 692, 695, 699, 718, 724, 736, 751, 752, 759, 764, 771, 776, 778, 784, 793, 812, 871, 881, 883, 893	612, 821	531, 714, 716, 721, 723
EEC	514, 523, 612, 628, 654, 655, 657, 663, 694, 695, 699, 691, 714, 751, 752, 759, 764, 775, 776, 778, 781, 782, 783, 785, 792, 793, 821, 871, 885	651, 653, 884, 893	662, 736, 812, 874
ASEAN	514, 515, 533, 592, 621, 651, 652, 658, 695, 714, 741, 742, 743, 771, 772, 776, 784, 792, 812, 821, 874, 884, 892	522, 666, 737, 793, 812, 871, 884, 892	659, 726

註 : 숫자는 SITC 3-digit 産業의 Code Number임

(工具), 771 産業(電氣器具) 등은 어느 特定地域이 아니라 複數地域과의 貿易에서 높은 産業內 專門度를 보였다.

또 産業內 專門度가 地域別로 변하여 간 모습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512 産業(알콜, 石炭酸)은 1977年에는 ASEAN과의 貿易에서 높은 産業內 專門度를 보였으나 1983年에는 日本과의 貿易에서 높은 專門度를 보이고 있다. 또 655産業(綿織物)은 日本에서 美國으로, 628 産業(고무製品)은 日本에서 EEC로, · 751産業(事務用品)과 881産業(寫眞器具)은 ASEAN에서 美國으로, 792産業(航空器機 部品)과 896 産業(骨董品, 藝術品) 등은 각각 美國과 EEC에서 日本과의 貿易으로 이동하였다. 地域間 貿易에서 産業內 專門度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우리나라와 所得隔差가 적은 ASEAN 地域과의 貿易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에는 EEC, 그리고 美國, 日本의 순이다. 여기서도 日本은 역시 國際分業이 어려운 나라임을 볼 수 있다.

V. 産業內 貿易과 政策對應 方向

1. 貿易政策과 産業內 貿易

Linder(1961)는 産業內 貿易을 한 國家內에서 서로 다른 地域間의 交易(美國에서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地域과의 交易이라든지 플로리다와 東部地域과의 交易 등)과 비슷한 現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間의 貿易障壁을 없애고 自由貿易에로 진행하여 가면 産業內 貿易은 한층 더 활발하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Hufbauer and Chilas(1974)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되어 온 國家間의 相互關稅 讓許制度는 産業間 專門化보다는 産業內 專門化를 促進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Hufbauer and Chilas에 의하면 GATT 公式이란 國家間의 相互關稅 讓許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生産者 그룹이 消費大衆보다 政治的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로부터 연유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消費者의 福祉가 중요한 것이라면 政府는 마땅히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스스로 그리고 一方的으로 낮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느 特定産業의 경우에 있어서 自國産業에 대한 保護障壁을 일방적으로 引下하면 不利益이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만일 같은 産業에 대하여 相對方國家에서도 똑같이 保護障壁을 引下하면 이번에는 같은 産業內에 不利益을 받는 集團이 생겨남과 동시에 또다른 利益集團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關稅引下 政策은 實踐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相互關稅 讓許制度는 産業內 專門化를 높여서 産業內 貿易을 促進하게 된다.

工業先進國의 경우에서와 같이 生産의 價格彈力度가 높고 또 規模의 經濟效果가 큰 産業에서는 關稅의 相互讓許는 生産과 輸出을 늘려서 産業內 專門化의 증가뿐만 아니라 貿易의 不均衡을 교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설명한 환경과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첫째 우리나라는 輸出과 輸入이 産業別로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輸出은 제조업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輸入은 석유 및 기타

輸入代替가 불가능한 原材料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만을 보면 우리나라는 커다란 輸出超過國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貿易相對國은 美國, 日本, EEC와 같이 工業先進國들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두 가지 側面에서 볼 때 關稅의 相互引下는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海外로부터 集中的인 輸出攻勢를 의미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燃料 및 기타 우리가 輸入하는 原材料는 輸入代替가 불가능하거나 商品差別化가 곤란하여 對應輸出이 어려운 반면 우리가 輸出하는 工產品에 대하여는 消費 및 生產代替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產業內 貿易의 증가는 產業間 貿易의 경우와는 달리 相對方國家가 保護主義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產業內 貿易이 증가하면 財貨 生產의 構成에 變化가 오게 되고 生產要素의 再配分을 통해서 產業構造의 調整作業이 進行될 것이다. 즉 產業內 專門化에로 進行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調整에는 調整費用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調整을 요하는 產業에 利益의 集團(gainers)과 損失의 集團(loosers)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調整의 費用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保護主義에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育成을 통한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生產의 多樣化, 그리고 이로부터 發展되는 產業內 專門化의 深化는 對內的으로는 輸入自由化 政策으로부터 직면하게 될 海外로부터의 輸出攻勢에 대응하는 방책이 되고, 對外的으로는 保護主義壁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Aquino(1980)는 최근에 여러 工業先進國에서도 貿易自由化 效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施策을 강구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즉 어떤 特定產業에 대해서 政府가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또는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制度는, 특히 規模의 經濟效果가 큰 產業에 있어서는, 產業內 貿易이 진행됨에 따라 對外競爭力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產業도 상당 기간동안 存立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生產이나 消費에 있어서 代替性이 매우 강한 財貨가 국내 시장에 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財貨에 대한 해외 殘存市場까지를 합치면 經濟規模에서의 生產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14]. 우리나라는 최근 工業發展法의 制定을 통해서 產業의 合理化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貿易自由化가 한편으로는 先進國 斜陽產業의 消費市場化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는 동시에 당분간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있을지도 모르는 產業에 대하여 조기에 合理化를 단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될 것이다.

2. 產業內 貿易과 當面施策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貿易環境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貿易施策을 產業內 貿易의 증진을 통한 中小輸出企業의 육성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先進工業國에서 한국 商品에 대한 保護主義的 경향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지만 그 반면에 日本의 엔貨 强勢는 우리나라 輸出增大에 매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앞

14) 예를 들면 重電機 部門에서 많은 工業先進國에서는 斜陽化되어가는 產業이지만 重電機 자체는 공업화의 기본 시설이 틀림없다. 따라서 先進國에서는 새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新興工業國에서는 product-cycle 理論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比較優位를 갖게 된다.

에서도 지적하였지만, 保護主義에 對處하는 方法은 우선 輸入과 輸出을 연결하는 것이다[15]. 이것은 곧 産業內 貿易의 增進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生産의 多樣化는 輸入開放에 대처하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심각한 貿易마찰없이 輸出을 늘리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 엔貨 强勢에 대해서도 항상 樂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엔貨의 强勢는 日本商品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商品의 輸出이 伸張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꼭 그러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끼자와」(1982) 교수에 의하면 지난 70년代末 엔貨 强勢의 경우에 日本의 中小企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生産의 合理化를 통한 費用의 節減, 둘째는 市場의 轉換과 多角化, 세째는 新製品의 開發과 高級化, 그리고 다음에는 事業轉換이다. 예를 들면, 美國이나 EEC 등과 같은 先進工業國에의 輸出에서 中東이나 아프리카地域으로의 輸出地域 전환, 中小企業 直接輸出에서 內需 또는 大企業에의 納品을 통한 間接輸出로의 전환 등이 있어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 조건이 豫期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우리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産業別로 보면 纖維機械에서 工作機械部品 및 기타 産業機械部品으로의 전환, 간단한 「볼트」生産에서 自動車部品이나 産業用部品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는 우리와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15) Aquino(1980)는 先進工業國에 있어서 (日本 제외), 輸出은 輸入패턴에, 그리고 輸入은 輸出패턴에 항상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6) 商工部, 「貿易振興 綜合施策」(資料), 1986.

이같은 國際貿易 環境에 대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貿易施策에는 輸出産業의 저변확대에 대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 첫째 少額少量 輸出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中小·中堅 및 地方輸出産業의 육성을 강화하고, 둘째 새로운 시장의 발굴, 세째 새로운 輸出商品의 개발, 그리고 네째는 市場別 輸出戰略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6]. 이같은 시책은 모두 産業內 專門化를 前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시의에 알맞는 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시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창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中小企業에 대한 기술 및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貿易節次의 간소화 등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Ⅵ. 要約 및 結論

이번 硏究의 目的은 구체적인 施策에 대한 새로운 代案을 提示하는 것보다는 旣存施策에 대한 評價와 適用方法, 그리고 環境變化에 따른 앞으로의 對應方案 樹立에 필요한 基本資料를 提示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中小企業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中小企業者의 輸出을 支援하고 있는 高麗貿易의 機能强化, 中小輸出業者에 대하여는 貿易業 特例를 認定하여 資格要件을 완화하여 주는 것, 海外市場 開拓費에 특별한 稅制 혜택을 주는 것 등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施策의 必要性과 重要性을 설명함으로써 施策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施策의 올바른 推進을 기

하고자 하는 데 1次目的이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中小企業에 의한 少額少量 輸出도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少額少量 輸出이란 外國으로부터의 大量輸入 需要에 대하여 少量씩 輸出하는 多數의 中小企業으로 대응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항상 中小企業政策이 전체적인 産業政策과의 調和不足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아왔다.

먼저 우리나라의 貿易政策과 관련하여 中小 및 中堅企業의 輸出産業化 戰略을 위한 施策方向은 中小·中堅企業, 특히 地方 中小企業의 輸出 參與機會를 擴大하여 輸出産業의 底邊을 擴大하는 것, 새로운 輸出商品의 開發, 市場別 輸出戰略의 樹立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戰略의 올바른 理解와 戰略樹立을 위한 現況 파악을 위하여서는 商品(産業)別·地域別 貿易構造를 産業內 專門化의 측면에서 分析하는 것이 하나의 方法이라고 생각되었다.

産業內 專門化에 의한 産業內 貿易이란 근본적으로 Heckscher-Ohlin의 理論(産業間專門化에 의한 貿易)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다. 産業內 貿易이란 주로 貿易商品의 差別化(時間·場所에 의한 差別化와 市場 또는 品質·財化의 特性에 의한 差別化)와 規模의 經濟效果로부터 설명되는 貿易現象이다.

우리나라의 貿易構造를 보면, 첫째 輸出入이 地域別 및 商品別로 크게 집중되어 있음을 본다. 예를 들면 EEC 및 日本, 美國地域과의 輸出入은 全體의 60%를 넘고 있으며 8産業(其他 雜製品) 製品은 위 세 地域에 82.3%를 輸出하고 있다. 또 EEC와 美國과의 貿易에서는 계속 黑字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日本이나 ASEAN, 中東과의 貿易에서는 赤字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輸出入이 大企業을 앞세운 집중공략의 戰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둘째, 經濟全體를 볼 때 싱가포르는 産業內 貿易의 比重이 매우 큰 데 비해 韓國, 日本, 臺灣은 그것이 매우 낮다. 또 産業內 貿易은 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韓國, 日本, 臺灣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5産業(化學 및 關聯製品)에서 産業內 貿易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에서는 오히려 減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日本과도 흡사한 現象인데 部品生産의 國際化(國際 都給組織에의 參與)가 미흡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세째, 貿易相對地域別로 본 産業內 貿易指數는 全體平均보다는 약간 낮지만 臺灣 및 ASEAN의 貿易에서는 비교적 높다. 이것은 産業內 貿易의 크기가 貿易相對國家와의 지리적 거리와는 반비례하고 또 所得水準의 차이가 작을수록 커진다는 일반적 假說을 부분적으로 立證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日本과의 産業內 貿易은 여전히 減少하고 있다. 네째, 産業別 産業內 貿易을 地域別로 보면 7産業(機械 및 運送機器)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日本과의 경우는 예외이어서 오히려 減少하였다. 平均的으로 보아 ASEAN과의 貿易에서는 産業內專門度가 深化된 반면 美國과 EEC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減少하였다.

이상과 같은 分析의 結果가 우리에게 주는 政策的 意味는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內 貿易은 貿易自由化의 經濟體

制를 가질 때 증가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商品의 差別化나 規模의 經濟效果가 貿易自由化體制下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工業製品의 貿易에 있어서 항상 輸出超過 現象을 보이고 있고 또 經濟開放化를 推進하고 있는 경우에는 全産業에 걸쳐 輸入壓力을 받게 될 것이다[17]. 따라서 技術 및 熟練勞動集約的인 中小企業의 育成은 對內的으로는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達成하게 될 것이고 對外的으로는 貿易摩擦 없는 輸出의 擴大를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과의 貿易에서는 큰 폭의 赤字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貿易構造面에서는 産業內 專門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엔貨의 강세는 韓·日間 産業內 專門化를 促進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日本과의 競爭이 부분적으로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日本의 中小企業이 製品高級化, 事業轉換 등의 方法으로 한편으로는 그들의 시장을 우리나라 中小企業者들에게 내어주는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우리나라 中小企業 市場을 침투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産業內 專門化를 통한 産業再編成도 중요한 政策課題가 될 것이다.

17) 이것은 우리가 美國과의 貿易摩擦에서 보는 바와 같은 外國政府로부터의 政策的 壓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機能에 의한, 그리고 競爭의 提高를 통한 外部로부터의 壓力을 意味하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栽元, 『産業構造高度化와 中小企業育成』, 韓國開發研究院, 1985.

다끼자와 구꾸다로 編, 『中小企業의 海外進出』, 1982.

貿易協會, 『貿易統計』, 各年度, 1977, 1983.

Aquino, Antonio, "Intra-Industry Trade and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as Concurrent Sources of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d*, CXIV, 1980, pp. 275~296.

Balassa, B., "Intra-Industry Trade and the Integ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in H. Giersch (ed.), *On the Economics of Intra-Industry Trade*, J.C.B. Mohr, Tuebingen. 1979.

Chen, Ting-An, "Conditions for Success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Deversification in Southeast Asia",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ed. by Herbert Giersch, Tuebingen 1974.

Drabek, Zdenek and David Greenway, "Economic Integration and Intra-Industry Trade: The EEC and CMEA Compared", *KYKLOS* Vol. 37, 1984, pp. 444~469.

Falvey, Rodney E., "Commercial Policy and Intra-Industry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1, pp. 495~511.

Giersch, Herbert (ed.), *On the Economics of Intra-Industry Trade;* Symposium 1978,

Institute fuer Weltwirtschaft der Universitaet Kiel, 1979.

Gray, Peter H., "Two-Way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s; A Theoretical Underpinning",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73, pp. 19~38.

Greenway, David and Chis Milner, "On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The Economic Journal*, 93 Dec. 1983, pp. 900~908.

Grubel, Herbert G. and P.J. Lloyd, *Intra-Industry Trade*,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5.

Grubel, Herbert G. and P.J. Lloyd, "The Empirical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Economic Record*, Dec. 1971, pp. 494~517.

Hesse Helmut, "Hypothese for the Explanation of Trade Between Industrial Countries, 1953~1970",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ed. by Herbert Giersch, Tuebingen 1974.

Knall, Bruno,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Diversification as Development Strategie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ed. by Herbert Giersch, Tuebingen 1974.

Kojima, K.,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Among Advanced Countrie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64.

Kol, J. and Mennes L.B.M., "Two-way Trade and Intra-Industry Trade with an Application to the Netherlands", Tharakan ed., *Intra-Industry Trade*, North-Holland, 1983.

Linder, S.B.,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Uppsala, 1961.

Lozoya, Jorge & Rosario Green, *International Trade, Industrialization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ergamon Press, 1981.

Mendez, Jodr A. "A Note on Neoclassical Ambiguity and the Specific Factor Production Model Under Variable Returns to Scal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pp. 357~363

Michaely, M., *Concen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1962.

Pagoulatos, Emilio and Robert Sorensen, "Two-Way International Trade: An Econometric Analysi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75, pp. 454~465.

Tharakan, P.K.M. (ed.) *Intra-Industry Trade*, North-Holland, 1983.

Tharakan, P.K.M. "Intra-Inustry Trade Between the Industrial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World", *European Economic Review*, 26, 1984, pp. 213~227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物質特許制度導入의 波及效果와 對應方案

鄭 鎭 勝

▷ 目 次 ◁

Ⅰ. 序
Ⅱ. 物質特許와 製法特許의 比較
Ⅲ. 物質特許制度導入의 波及效果
Ⅳ. 補完策
Ⅴ. 結 論

Ⅰ. 序

우리나라는 産業構造의 效率的인 再編成과 관련하여 技術需要가 앞으로 質·量面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國內技術水準의 落後로 인하여 産業이 필요로 하는 技術은 自體硏究陣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공급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先進技術의 과감한 導入, 消化, 改良過程을 통한 技術水準의 점진적 향상과 技術開發能力의 배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時點에서 主要技術先進國들은 特許法에 의한 국내의 技術 및 特許製品市場에서의 獨占的 位置强化로 利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特許制度의 强化, 즉 物質特許制度의 導入과 特許期間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主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自國政府에 대하여 對韓貿易去來의 規制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本硏究의 目的은 物質特許導入이 國內技術水準과 關聯産業에 미치는 波及效果의 分析과 이에 따른 對應方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第Ⅱ章에서는 物質特許와 製法特許의 差異點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第Ⅲ章은 物質特許의 波及效果에 관하여 分析하였고 第Ⅳ章은 物質特許導入時의 否定的 波及效果를 最小化하기 위한 補完策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第Ⅴ章은 本硏究의 結論部門으로 構成되었다.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本論文은 筆者의 硏究報告書『特許制度의 經濟的波及效果(一物質特許를 中心으로一)(1985)를 一部整理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硏究報告書를 참고하기 바람.
* 本稿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해주신 宋大熙 박사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어떠한 미비점도 筆者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Ⅱ. 物質特許와 製法特許의 比較

1. 特許制度의 意義

特許制度는 資源生產性의 증대를 위하여 技術開發을 촉진하려는 하나의 社會的 手段이다. 勞動·資本 및 기타의 生產要素와 결합하여 제품의 生產過程에 투입되는 技術의 經濟的 특성은 첫째, 대부분의 原資材가 製品의 生產量 增減에 따라서 投入量도 增減하지만 技術은 生產量의 변화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投入되어 많은 사람이 한 가지 技術을 동시에 사용하여도 各者가 同一技術을 경쟁없이 사용할 수 있는 無體財產權(intangible property)의 性格을 갖고 있다는 점(non-rivalness)과 둘째, 일단 公開된 技術은 第3者가 훨씬 적은 費用으로 짧은 기간내에 模倣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技術開發을 위하여 費用이 投入되어야 할 경우 개발된 技術이 사회에 공개되어 他人이 短期間內에 적은 費用과 낮은 위험하에서 技術을 模倣할 수 있다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投資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新技術開發努力 대신 他人이 發明한 技術을 模倣하려는 無賃乘車者(free-rider)만 존재할 것이다. 즉 發明家의 權益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技術開發 意慾은 저하될 것이며, 일단 개발된 技術도 他人의 模倣을 방지하기 위하여 發明家가 技術의 秘密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技術開發을 통한 社會惠澤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特許制度는 일정기간 동안 開發된 技術을 發明者가 獨占使用하도록 하여 發明家의 權益을 보호함으로써 技術開發意慾을 촉진시키고 開發된 技術을 早期公開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技術의 活用增大를 통한 社會福祉와 極大化를 추구함에 目的을 두고 있다.

特許는 發明의 대상에 따라 物 自體의 發明에 대한 特許와 物을 製造하는 技術에 대한 特許로 크게 분류된다[1]. 物의 特許는 業으로 物을 生產·販賣·使用할 權利를 獨占하며, 製法의 特許는 業으로 製造技術을 使用하여 物을 生產할 수 있는 製法의 使用에 관한 權利를 獨占한다. 그러나 現行 우리나라 特許法은 例外的으로 發明의 不特許 事由로써 다음 事項을 明記하고 있다[2].

(1) 飮食物 또는 嗜好物의 發明

(2) 醫藥 또는 두 種類 以上의 醫藥을 混合하여 하나의 醫藥을 調劑하는 方法의 發明

(3)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4) 化學物質의 用途에 관한 發明

(5) 原子核 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6) 公共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衛生을 害할 염려가 있는 發明

(7) 國防上·公益上 필요한 발명

이상 우리나라 特許法에서 규정한 不特許事

1) 이외에도 基本特許와 改良特許, 原特許와 追加特許 및 利用特許, 獨立特許와 從屬特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發明은 單純發明과 複合發明, 結合發明과 非結合發明, 特定發明과 非特定發明, 職務發明과 經營發明 및 自由發明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2) 特許法 第4條 및 第19條

〔圖 1〕 製法, 化學物質 및 用途 特許의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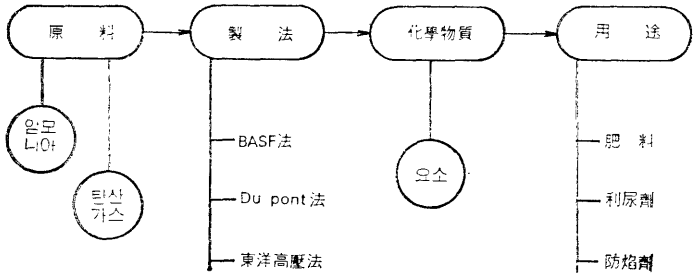

資料 : 特許廳

由 대상을 살펴볼 때 (1)~(3)은 物質特許 및 造成物特許를, (4)는 用途特許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物質特許의 內容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節에서는 製法特許와 比較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2. 物質特許와 製法特許의 比較

〔圖 1〕에서 尿素라는 化學物質이 최초로 發明된 경우 特許의 대상이 된다. 物質特許制度下에서는 尿素 自體가 特許物質로 인정되며 發明者는 特許期間이 존속하는 동안 尿素의 獨占 生產·去來 및 使用權을 소유하게 된다. 즉 他 發明家에 의하여 보다 개량된 尿素의 製造技術이 개발되거나 尿素의 새로운 用途가 發見되어도 原發明者, 즉 尿素의 物質特許權者 허락없이는 技術의 實施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物質特許制度는 發明者의 權益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科學技術의 開發意慾을 촉진시키는 장점을 보유한 반면 特許權者에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技術의 獨占使用權을 부여함으로써 不公正去來行爲 등을 통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發明의 활용을 제한하여 製造方法의 개량과 다음 단계의 技術開發이 지연 혹은 불가능해짐으로써 發明을 통한 社會的 惠澤은 감소할 수 있다.

尿素를 生產하는 製造方法이 〔圖 1〕에서와 같이 세가지 製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製法特許制度下에서는 各各의 製造方法의 發明에 대하여 特許가 인정되어 하나의 物質에 대하여 3個의 特許가 존재할 수 있다. 즉 各各의 製法特許權者는 개발한 物質의 製造方法을 特許期間 동안 獨占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보유한다. 이러한 製法特許의 특징은 이미 개발된 物質의 製造方法을 보다 우수한 方法으로 改良하여 효율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개발된 技術의 적극 활용을 통한 社會福祉의 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物質特許에 비하여 發明家의 權益을 철저히 보장하지 못하여 發明家의 技術開發意慾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物質 및 製法特許의 差異點을 보다 자세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製法特許는 製造方法에 대하여 特許出願하는 반면, 物質特許는 物質의 製法 및 用途를 일괄적으로 特許出願한다.

둘째, 製法特許는 새로운 製造方法이 發明되는 경우 特許出願 및 登錄이 가능하므로 同一物質에 대하여 다수의 特許가 존재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하나의 物質에 대한 特許期間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物質特許는 物質 自體가 特許對象이기 때문에 同一物質에 대하여는 하나의 特許만이 존재하며 特許期間이 만료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特許權의 연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세째, 製法特許는 物質의 새로운 製造方法의 改良으로 特許登錄을 통하여 製品을 生産할 수 있는 반면 物質特許下에서는 物質特許權者의 허락없이는 製法特許權者의 技術實施가 불가능하다.

네째, 旣存物質의 製造方法 改良은 新物質의 創製에 비하여 낮은 위험도와 적은 硏究開發費의 투입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製法特許制度下에서 特許權者는 發明의 模倣을 방지하기 위하여 防衛特許의 開發 및 出願을 위하여 新技術開發과는 관련없는 費用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物質特許下에서는 特許權者의 權利가 강력히 보호되어 보다 많은 資源을 新物質開發을 위하여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製法特許下에서는 類似製造技術의 進步性을 판단하기 위하여 特許審査期間의 장기화와 막대한 費用을 투입해야 하는 반면, 物質特許制度에서는 特許行政의 간소화가 가능하다.

여섯째, 對外去來面에서 製法을 改良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特許物質은 製法特許下에서 製法特許만을 인정하는 第3國에 輸出이 가능하나 物質特許下에서는 원래의 物質特許權者의 허락없이는 불가능하다.

일곱째, 特許物質의 國內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製法特許下에서는 國內에서의 製法改良을 통한 생산 혹은 製法特許를 認定하고 있는 海外의 生産者로부터의 輸入이 가능하나 物質特許下에서는 特許權者 혹은 特許權者가 인정하는 生産者를 통하여야만 輸入이 가능하여 特許權者는 物質의 國內需要에 대한 獨占的인 供給權을 소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덟번째, 製法特許制度는 技術水準이 落後된 後進國이 先進技術의 模倣·改良을 통한 技術水準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制度라고 할 수 있는 반면, 物質特許制度는 새로운 物質을 發明할 수 있는 技術先進國들에게 유리한 制度라고 할 수 있다.

Ⅲ. 物質特許制度의 波及效果

物質特許制度의 經濟的 波及效果分析은 同制度 導入과 現在의 製法特許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생되는 波及效果를 比較分析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波及效果의 發生經路와 規模는 精密化學의 特性上 광범위하겠으나 중요한 要素로는 우리나라 技術水準의 向上速度, 特許期間, 物質特許導入時 國內技術 및 製品市場에서 獨占的 位置를 保有하게 되는 外國人 特許權者의 行態와 現行의 製法特許를 고수할 경우 外國이 對韓貿易去來에서 어떠한 形態로 規制를 가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上記의 要素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정확히 究明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物質特許制度 導入의 波及效果를 다음 세가지 側面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한 후 실질적인 波及效果가 언제부터 發生할 것인가 하는 物質特許의 潛在期間에 관한 分析이다.

〔圖 2〕 醫藥產業의 物質特許 潛在期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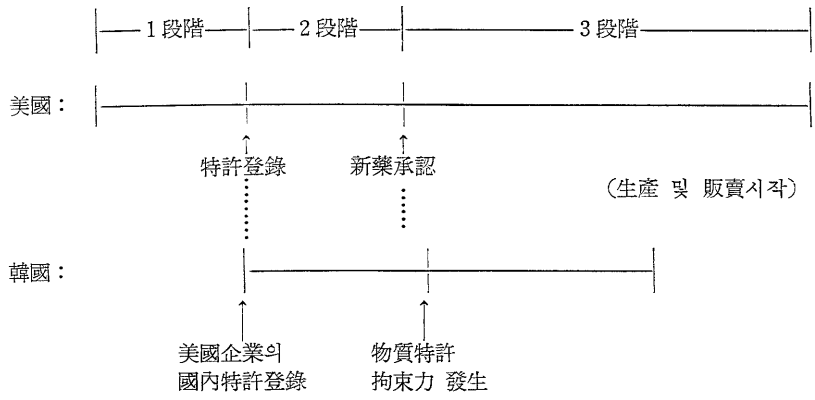

1段階 : 新物質合成, 活性檢査 및 特許調査(3~4年)
2段階 : 毒性 및 臨床實驗(5~8年)
3段階 : 特許有效期間(美國 : 14~17年, 韓國 : 4~7年) } 特許期間

다음은 物質特許의 導入이 國內自體技術開發과 海外技術導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分析이며, 끝으로는 物質特許導入이 國內關聯產業構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이러한 諸分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귀납적 計量分析을 위한 모델의 設定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演繹的 非計量分析에 의하여 提示하고자 한다.

1. 物質特許波及效果의 潛在期間

物質特許의 潛在期間은 物質特許를 導入한 후 國內關聯產業의 經濟活動에 拘束力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拘束力은 物質特許權者가 아닌 國內의 第3者가 特許物質을 製造·去來[3] 및 使用을 시도할 때 발생된다. 物質特許의 潛在期間은 特許法上의 遡及認定與否, 新物質 開發過程에서의 特許出願 및 登錄時點, 新製品의 最初生產·販賣時期와 國內企業의 技術模倣 및 改良能力에 의하여 결정된다. 醫藥產業의 경우 物質特許 潛在期間은 〔圖 2〕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物質特許의 拘束力이 特許權者 이외의 製造業者로부터 特許物質을 輸入하는 경우와 國內企業이 製法을 改良하여 特許製品을 生產할 경우 발생된다면 현재 國內企業의 製法改良能力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物質特許의 拘束力은 外國의 新製品 生產·販賣時期와 거의 동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가 物質特許制度를 1987年에 導入한다고 가정하고 소급 적용을 不認定할 경우 직접적 波及效果[4]는 약 5年의 潛在期間을 거쳐 1992年을 前後하여 발생할 것으

3) 輸入 포함.
4) 만약 國內企業이 立法豫告制 등을 통하여 몇년 후 物質特許를 導入한다는 政府의 決定下에서 中長期 經營戰略을 수립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物質特許導入의 波及效果는 政府의 物質特許 導入與否에 대한 決定과 더불어 派生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最近 醫藥產業에서 外國과의 合作會社 設立이 격증하는 理由는 物質特許導入에 對備하여 海外의 技術先을 確保하고자 하는 企業의 自救策과 無關하다고 할 수 없다.

로 예상된다[5].

2. 物質特許制度와 科學技術水準向上

産業의 技術水準은 크게 自國의 研究開發活動(indigenous R&D activities)과 海外로부터 先進技術을 導入·消化·改良하는 과정에서 向上될 수 있다. 이들 두가지 方法은 獨立的이 아닌 相互補完·代替關係에 있으며 단지 國家의 經濟的 與件 및 技術水準에 따라서 어떠한 方法에 더욱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가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가. 自體技術開發과 物質特許

自體技術開發에 의한 技術水準向上은 순수한 國內研究陣에 의하여 新物質을 開發하기 위한 研究努力 과정과 外國技術의 模倣·消化·改良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國內精密化學産業은 최근 2~3年 동안 一部企業이 研究開發에 본격적인 投資를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아직도 技術先進國에 비하여 研究開發投資의 부족, 研究施設의 미비 및 質量 면에서 낮은 研究人力 등으로 현재의 技術水準은 일부 大學 및 政府出捐研究所를 제외한 대부분 民間企業은 外國技術의 模倣段階라고 할 수 있다[6].

技術의 模倣은 外國의 技術所有者와는 무관하게 技術의 「逆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하여 國內에서 製法을 改良하여 製品을 生産하는 과정에서의 技術開發을 의미한다. 技術模倣은 技術代價(royalty)의 지급없이 製品을 生産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否定的인 波及效果를 발생시킬수 있다.

첫째, 낮은 自體技術水準으로 模倣할 수 있는 外國의 技術은 대부분이 낙후된 技術로서 模倣에 의한 技術水準向上의 속도는 매우 느릴 수밖에는 없으며, 따라서 國內의 技術水準向上을 위하여는 適正技術代價를 지급하고 先進技術을 導入·消化하는 方案이 더욱 유리하다는 論理도 成立될 수 있다.

둘째, 낮은 技術水準下의 技術模倣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人的·物的資源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7].

세째, 만약 技術水準의 낙후로 인하여 開發된 模倣技術이 非效率的인 生産方法인 경우

---

5) 日本 및 유럽 등 美國에 비하여 政府가 要求하는 毒性 및 臨床實驗 등의 資料가 간편한 경우와 染料·顔料 등 기타 精密化學産業은 潛在期間이 단축될 수 있다.

6) 物質特許와 直接關聯된 精密化學의 國內現況은 최근 政府 出捐研究所와 일부대학에서 外國 新製品의 製法模倣 및 改良技術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民間企業은 模倣조차도 어려운 낮은 技術水準狀態라고 할 수 있다.

國內醫藥企業의 製法模倣 및 改良所要期間

(단위 : 年)

	1968~80	1980~84	1968~84
所要期間	19.5	9.0	11.1

註 : 所要期間은 國內企業의 模倣生産 開始年度와 外國企業의 最初特許出願年度의 時差를 의미함.

1983年末 統計에 의하면, 研究開發投資面에서 國內製藥 및 農藥産業의 賣出額 對比 R&D 投資額은 0.3%와 1.7%로 美國의 11.5%와 8.1% 및 日本의 8.7%와 3.4%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絕對額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나의 新物質開發을 위하여 醫藥品은 약 2,200萬달러~6,000萬달러, 農藥은 약 1,500~3,000萬달러가 투입되고, 7~11年의 研究期間이 所要됨을 감안할 때 國內技術陣에 의한 新製品開發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精密化學을 대표하는 醫藥業界의 總研究人力은 669名으로 美國의 22,675名과 日本의 18,428명에 비하면 3~4%에 불과하다.

7) 美國의 경우 醫藥品 模倣을 위하여 최초의 研究開發에 비하여 65%의 期間과 70%의 費用投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맨스필드」(Mansfield)의 調査結果에 의하여 밝혀졌다.

製品生産原價의 상승과 品質低下로 인하여 발생되는 社會的 損失은 막대할 수 있다[8].

네째, 마지막으로 模倣에 의한 技術水準向上의 제일 큰 단점은 新技術開發을 위하여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導入된 技術의 완전한 消化改良을 위하여 필요한 基礎科學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즉 技術模倣을 통한 科學技術水準向上 政策은 技術水準이 매우 낮은 초기의 技術蓄積을 위하여만 활용되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는 否定的인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國內의 技術水準이 外國先進技術의 模倣改良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계, 즉 臨界技術水準(critical technology level)에 到達한다면 新物質開發爲主의 物質特許導入이 長期的인 科學技術水準向上을 위하여 바람직한 制度라고 할 수 있다.

나. 技術移轉과 物質特許制度

精密化學은 秘密技術(know-how)의 비중이 매우 큰 產業으로 技術移轉은 技術提供者와 導入者間의 技術水準 隔差에 의하여 技術移轉의 形態와 條件이 결정된다. 첫째, 技術提供者가 導入者에 비하여 技術水準이 절대 우위인 경우 技術移轉보다는 技術所有者 스스로 完製品을 生產하여 輸出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技術移轉은 「턴키베이스」(Turn-key base) 形式으로 技術과 관련된 工場建築, 機械施設 및 操作과 品質管理 등 많은 분야를 技術提供者에게 의존하여 技術移轉의 효과는 매우 적으며, 둘째, 技術導入國의 技術水準向上으로 外國技術의 부분적인 模倣이 가능하거나 제도적으로 完製品의 輸出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合作會社 혹은 外國人投資會社의 설립을 시도하며, 세째, 技術提供者가 技術의 절대우위를 상실할 경우 導入國內에서의 代替技術의 開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수한 의미의 技術移轉이 가능하게 된다.

物質特許를 인정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輸入開放政策과 더불어 外國企業은 完製品 輸出 혹은 合作會社의 설립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合作會社가 그 속성상 外國母企業에서 開發된 新製品中 國內市場에서 有望한 製品의 原料를 輸入하여 完製品으로 加工·生產·販賣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國內에서 研究活動을 수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技術導入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合作會社의 國內市場占有率이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國內企業의 市場占有率 減少와 利益率의 下落이 초래될 것이며, 結果的으로 國內企業은 技術開發投資의 能力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3. 物質特許制度의 經濟的 派及效果

物質特許 導入時 國內企業은 製法特許制度下에서 가능한 製法技術의 改良을 통한 國內生產이 불가능해지며, 特許物質을 輸入할 경우 特許權者를 제외한 海外의 第3者로부터의 物質輸入이 불가능하게 된다[9]. 즉 物質特許制度下에서 特許物質의 國內需要 充足은 特許

8) 특히 精密化學製品中 많은 부분이 他產業의 中間財로 활용되어 生產의 效率性과 品質向上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료로 사용됨을 감안할 때 產業全般과 製品의 國際競爭力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9) 예컨대 製法特許에서는 特許物質을 유사한 製法으로 生產하는 세계의 어느 國家에서도 輸入이 가능하나 物質特許를 인정할 경우 特許權者 혹은 特許權者가 인정하는 生產者로부터의 輸入만이 가능하게 된다.

權者 혹은 特許權者가 인정하는 生產業體로부터의 輸入, 外國人投資 및 合作會社를 통한 生產과 特許實施權을 포함한 技術移轉 契約에 의한 生產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物質特許導入의 經濟的 派及效果는 海外의 特許權者가 어떠한 形態와 條件으로 國內의 特許物質需要를 充足시켜 줄 것인가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物質特許導入後 海外의 特許權者가 特許物質의 輸出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精密化學產業의 特性에 기인한다. 즉 精密化學製品生產의 特性은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效果가 크므로 輸出을 위한 追加生產의 限界費用이 零에 가깝고 輸送費도 매우 낮으며 국내에 工場을 設立·運營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關聯技術의 流出 可能性을 最小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特許權者가 完製品 輸出을 시도할 경우의 經濟的 派及效果는 대부분 否定的으로 나타난다. 첫째, 產業組織面에서 전국적인 販賣組織을 보유하고 있는 國內의 小數大企業은 外國大企業의 輸入代行業體化하여 계속 영업이 가능하겠으나 대부분의 中小企業은 存立이 불가능하여지며 둘째, 國內市場에서의 獨占的 地位를 활용한 價格·供給量의 조절을 통하여 소비자 부담의 증가와 과다한 外貨流出을 초래할 수 있다.

特許權者에 의하여 설립되는 合作會社는 外國의 企業에 의하여 開發된 製品中 國內市場에서 成功可能性이 높은 品目을 生產販賣함을 經營目標로 하고 있으므로 國內에서 技術開發을 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合作會社는 市場獨占 位置를 활용한 높은 수익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原料는 母企業에서 高價로 輸入할 가능성이 있으며 國內合作先은 資金動員 能力과 전국적인 販賣能力을 보유한 大企業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外國人投資의 巨視經濟的 派及效果는 물론 존재하겠으나 合作會社가 國內에서 新製品開發을 위한 研究開發投資를 수행하지 않고 製劑中心의 營業活動을 지속하는 한 精密化學產業의 資本節約的 特性上 外國人投資의 規模는 매우 작을 뿐 아니라 國民經濟에 미치는 派及效果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形態는 適正代價를 支給하고 國內產業에 필요한 技術을 導入·活用하는 것이다. 物質特許가 導入될 경우 外國의 發明家가 국내의 特許技術 및 製品市場에서 獨占權을 保有함으로써 技術導入件數의 증가로 인한 技術使用代價(royalty)支給의 절대액 증가와 技術導入時 不公正去來行爲 등이 誘發될 가능성이 높다.

Ⅳ. 補完策

최근 美國을 비롯한 일부 先進國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對韓輸入規制와 一般特惠關稅 對象國家로부터의 제외 등을 고려하고 있다. 物質特許制度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外國의 이러한 압력이 어느 정

또한, 製法改良을 통하여 生產된 製品의 輸出도 불가능하여진다. 즉 製法特許制度下에서는 製法改良에 의하여 生產된 製品이 物質特許制度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第3國에 자유로이 輸出될 수 있으나, 物質特許制度下에서는 特許權者의 허락없이는 輸出이 불가능하여진다.

도 강하게 현실화될 것이며, 同制度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현재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對韓輸入規制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經濟에서 對外去來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은 순수하게 論理的 當爲性이나 經濟的 長短點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物質特許를 인정하지 않고 現行의 制度를 유지함으로써 계속 향유할 수 있는 혜택보다 對外去來의 규제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지불해야 하는 經濟的 費用이 큰 경우, 物質特許의 導入은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으로 발생될 수 있는 長點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否定的인 效果를 最小化하기 위하여 다음의 補完策이 필요하게 된다.

1. 産業內部의 技術開發 沮害要因 除去

國內 精密化學産業의 技術水準 향상을 위하여는 政府의 科學技術政策도 중요하겠으나 企業 스스로가 技術努力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産業內部에서 技術開發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精密化學産業의 技術開發努力을 저해하고 있는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1) 市場流通構造의 改善

(2) 外上賣出額의 減少

(3) 廣告 및 販促費用의 減縮

(4) 技術과 직접관련 없는 무분별한 海外技術導入과 合作會社設立의 防止

등을 들 수 있다.

2. 基礎科學研究의 活性化

導入技術의 완전한 消化·改良을 가능케 하며 新製品開發을 위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基礎科學은 지속적인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분야이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基礎科學 研究機關으로는 政府出捐研究所인 韓國科學技術院 및 韓國化學研究所와 大學研究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基礎科學 研究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야 할 大學研究所는 研究費의 不足 및 研究施設의 미비와 敎授가 研究에 할애할 수 있는 時間의 부족, 그리고 試藥供給上의 제약요인 등을 안고 있다.

예컨대 1982年 국내 R&D 投資總額 4,577億원중 大學의 純粹 研究를 위한 投資는 약 90億원으로 基礎科學 研究를 위하여 投入된 것은 약 30億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敎授의 약 50%가 1週當 14時間 이상을 講義하고 있으며 敎授 1人當 學生數는 약 33名에 이르고 있다. 研究施設面에 있어서도 研究를 위한 기본적인 實驗器具를 요구하는 '實驗實習基準令'을 75% 이상 충족시키는 大學은 12個校로서 全體大學校의 20%에 불과하다. 精密化學의 研究에 필요한 試藥調達은 대부분 國內輸入商事 혹은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 傘下 試藥센터를 통하여 輸入하고 있으나, 높은 價格과 適期 調達上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試藥센터의 확충 혹은 官民共同出資의 새로운 試藥센터 設立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科學分野의 경우 敎育과 研究는 상호 밀접한 補完關係에 있으며 훌륭한 研究 없이는 우수

한 研究人力의 배출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敎育의 內實化를 위한 基礎科學에의 投資增大가 절실히 요구된다.

3. 國策研究機關의 機能定立

韓國科學技術院(KAIST)과 韓國化學研究所(KRICT)는 1960年初 설립된 이후 技術開發이 전혀 생소한 産業界의 研究 및 技術開發活動을 주도하여 지금까지 國內 科學技術 水準向上에 미친 기여도는 지대하다. 그러나 이들 研究所의 研究內容中 많은 部分은 特定課題나 外國技術의 模倣合成에 대한 企業의 受託研究를 하는 이른바 短期研究에 치중하여 왔다. 예컨대 1980~84年中 KAIST의 研究 프로젝트중 課題當 平均研究期間이 15.9個月에 불과하며 平均研究投資費도 약 67百萬원으로, 깊은 研究나 獨創的인 技術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研究活動을 國策研究所가 계속 주도할 경우 장기적으로 企業에 의한 自體技術開發活動이 相對的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國策研究所의 研究開發 方向은 (1) 國內企業들의 낮은 技術水準을 감안하여 과도기적으로 技術指導와 諮問(consulting) 役割을 상당기간 지속하는 한편, (2) 근본적으로는 장기간 막대한 投資가 소요되고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投資에 비하여 收益性이 낮은 基礎科學과 公共分野의 研究比重을 점차 늘리도록 政府의 적극적인 支援이 필요하다.

4. 化學物質의 生理活性 및 安全性 研究所의 設立

하나의 創製된 化學物質이 完製品으로 市場에 出現하기 위하여는 物質의 活性檢査, 즉 化學物質이 갖는 特性 및 效能에 관한 檢査와 安全性 檢査, 즉 有用性이 인정된 化學物質이 人體 혹은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化學物質의 生理活性 및 安全性 檢査施設은, (1) 化學工業의 新製品 創製 (2) 先進技術의 완전한 消化·改良을 통한 化學工業의 育成發展 (3) 基礎科學의 活性化 (4) 環境保存 (5) 生產工程, 流通過程에서 발생될 수 있는 大型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고 事故發生時의 신속한 대응을 可能하게 하며 (6) 輸出品의 國際競爭力 向上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현재 國內에서 新物質이 開發된 경우 外國의 研究機關에 活性 및 安全性 實驗을 위탁함으로써 장기간의 시간 낭비와 비싼 用役費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新物質開發意慾이 저해받고 있다. 따라서 政府의 보조로 韓國化學研究所內에 소규모로 설립 예정인 安全性센터를 政府와 民間이 合作投資를 하여 큰 규모로 設立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民間中心體制로 전환하는 방안과 선진국의 有數企業과 合作形態를 취함으로써 이 방면의 技術을 국내에 早期定着시키고 海外企業들이 國內에서 研究開發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國內企業들의 무분별한 新製品導入競爭을 억제하고 人種이나 일상 섭취물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동반하는 醫藥品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新

製品 導入時 毒性 및 臨床實驗結果와 實驗方法에 대한 구체적인 資料를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부분적인 實驗을 국내에서 實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래에 國內企業에 의하여 新藥開發이 시도될 경우 技術資料로 활용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5. 公正去來制度의 補完

公正去來制度와 特許制度가 追求하는 목적이 資源의 合理的인 활용을 통한 經濟의 效率性向上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는 相反되고 있다. 즉 이러한 目的達成을 위하여, 公正去來制度는 자유롭고 公正한 去來 및 競爭秩序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감안하고 去來의 規制, 獨占을 시도하려는 商行爲를 방지하려는 반면 特許制度는 技術開發活動을 증시하고 技術開發意慾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發明家에게 開發된 技術을 일정기간 동안 獨占實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特許法과 公正去來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發明家 權利의 限界, 特許權者에 대한 적절한 보상범위 등 特許權利行使와 不公正去來行爲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特許權者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는 技術移轉契約時 特許權者가 技術開發을 위하여 投入된 費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극대화와 自己의 市場支配的 位置를 보호하려는 데서 발생된다. 技術移轉契約中 公正去來法과 저촉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1) 特許技術賃借者에 의하여 改良 혹은 開發된 技術을 特許權者에게 귀속시키는 改良技術의 一方的提供(Grant Back)을 要求하는 行爲

2) 技術賃借者에 의하여 생산된 特許物質의 價格決定에 영향을 주는 行爲

3) 複數의 特許權者가 소유하고 있는 特許技術을 相互間 賃貸하는 交叉技術賃貸의 경우로 상호간 다른 工程과 方法으로 同一, 類似 혹은 代替製品을 생산하는 行爲[10]

4) 類似製品의 生產技術을 소유한 特許權者가 技術의 공동사용 협정을 맺고 獨占을 形成하여, 參加者間의 市場分配, 價格 및 生產量調整 또한 第3者의 市場進入을 저해하는 行爲

5) 特許權者가 技術賃貸時 賃借者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수적인 技術의 賃借를 요구하고 「로얄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一括技術賃貸 行爲

6) 特許權者가 자신의 利潤極大化를 위하여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그 獨占權을 여러 企業에 賃貸함으로써 企業間의 競爭을 제한하는 行爲

7) 特許者가 賃借企業에게 生產量의 上限規定을 설정하여 特許製品의 價格上昇을 유도하고 市場競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行爲

8) 特許者가 技術移轉의 조건으로 賃借者에게 생산활동에 필요한 機械原料 등의 구입처를 지정하여 주고, 賃借者가 技術을 實施하는데 필요한 一部工程의 수행자를 지정하여 주는 「끼워팔기」(tying clause) 경우로서 만약 이러한 機械, 原料 등이 特許와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規定은 자유로운 商去來를 제한하는 경우가 된다.

物質特許를 導入하는 경우 海外의 特許權者는 技術의 獨占實施權을 誤用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特許權

10) 그러나 두 개의 特許技術이 相互補完的인 경우는 公益을 위하여 권장되어져야 한다.

의 誤用 및 濫用과 관련된 公正去來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補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强制實施權 制度의 補完

特許權은 發明者의 權益을 보호하는 한편 特許權者가 特許權을 誤用 및 濫用하지 않고 國內에서 特許發明을 성실하게 實施하도록 함으로써 國家產業發展에 기여케 하려는 목적으로 强制實施權 條項을 포함하고 있다.

强制實施權制度란 國內의 第3者로 하여금 特許權者의 意思와 관련없이 特許技術을 使用한 物質을 生產·販賣토록 許可하는 것을 말한다. 强制實施權의 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1) 從屬發明에 대한 强制實施權 (2) 不使用 特許에 대한 强制實施權 (3) 公共, 保健, 國防, 國家經濟 등 公益을 위한 强制實施權 등 세 가지 類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不使用特許에 관한 强制實施權은 特許權者가 特許가 등록된 國家內에서 特許技術을 實施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게 된다[11]. 어떠한 행위를 特許實施로 규정하는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國內人에게 技術을 販賣하려는 弘報 노력도 정상적인 實施로 간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실제로의 실행, 즉 特許製品의 生產과 技術의 적용 및 사용이 적절한 범위내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품질 및 價格이 國內需要條件에 적절치 못한 경우는 實施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國內供給이 적절한 이유없이 輸入에 의하여 충당되는 경우도 不實施로 간주한다. 여기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실시」라는 표현은 각국의 사정에 알맞고 伸縮性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각국은 國內에 등록된 特許技術이 實施되어지고 있지 않거나 불만족스럽게 實施될 경우 第3者가 담당부처에 强制實施權을 신청하게 되며 特許廳은 첫째, 特許權에 의한 獨占使用權이 國內에서 不實施 혹은 濫用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强制實施權 申請者가 特許技術을 實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審査하게 된다. 만약 强制實施權 申請이 받아들여질 경우 政府는 申請人이 特許權者에게 지급해야 될 技術使用料 및 條件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强制實施權의 申請이 있게 되면 쌍방간의 技術移轉 노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까닭은 申請者는 技術移轉으로 인하여 獨占的인 技術使用權을 보유하게 되고(대부분의 경우 强制實施權은 獨占權을 부여치 않음), 特許權者로부터 「노우-하우」 등의 技術情報를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特許權者는 强制實施權에 의하여 技術의 使用權을 불명예스럽게 불리한 조건으로 빼앗기는 것보다는 契約에 의하여 적절한 代價와 條件으로 技術을 賃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物質特許가 導入될 경우 海外로부터의 技術移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政府는 企業이 强制實施權을 活用하도록 申請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特許法을 改正할 필요가 있다.

7. 技術情報資料 體系의 擴充

國內企業이 필요한 技術을 적절한 條件으로

11) 대부분 모든 國家들은 不使用 特許에 대한 强制實施條項을 規定하고 있지만 同條項의 規定을 반대하거나 國家間 相互條約으로 제외하는 國家도 있다. (例 : 미국)

適期에 導入하기 위하여는 세계에서 공표된 技術의 所在, 內容, 開發年度, 權利所有者, 生產製品의 國際市場 動向과 代替技術 및 製品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各大學硏究所, 政府硏究機關 그리고 特許廳 및 民間企業에 산재한 資料를 정리, 보완함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民間企業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技術情報體制의 確立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技術情報體制의 確立은 技術導入時 國內 企業의 對外協商力(negotiation power)을 强化하는 利點도 있다.

V. 結 論

經濟政策의 궁극적 目標는 社會福祉의 極大化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政策手段의 선택은 社會가 처한 諸般環境에 의하여 결정된다.

特許制度는 技術水準向上을 통한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중요한 方法으로 보고 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社會的 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特許制度는 發明家에게 개발된 技術을 一定期間(特許期間)동안 獨占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함으로써 發明家權益을 保護하는 一面 開發된 技術의 內容을 公開, 實施토록 하여 技術水準向上을 통한 社會利益의 極大化를 추구하고자 하는 社會制度이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特許制度는 發明家의 技術開發意慾을 촉진하고 국내의 技術水準向上을 위한 補完的인 方法으로 海外로부터의 技術移轉을 원활히 하고 先進技術 情報를 국내의 技術需要者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制定·運用되어져야 하며 이는 特許制度의 種類와 特許期間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發明家의 權益을 과잉보호하는 特許制度는 技術開發 意慾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장기간의 技術獨占實施權으로 인하여 社會的 惠澤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반면 發明家權益의 보호에 소홀한 特許制度는 단기적으로는 개발된 技術의 원활한 활용을 통한 社會利益의 증대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發明家의 技術開發意慾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發明을 業으로 하는 經濟集團, 예컨대 技術水準이 높은 企業이나 國家들은 技術開發을 통한 자신의 利潤極大化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特許制度를 선호하게 되는 반면, 他人의 技術을 消化·改良하는 技術水準이 낮은 企業이나 國家들은 비교적 약한 特許制度를 원하게 된다.

技術開發을 통한 社會福祉의 極大化를 추구하는 特許制度는 이러한 兩面을 고려하여 制定·運用되어져야 한다. 先進技術集團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他集團으로 하여금 강력한 特許制度를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行爲나 後進國들이 發明家의 權益保護에 미흡한 特許制度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無賃乘車者(free-rider) 立場을 유지하려는 主張은 그 正當性에 한계가 있다.

物質特許는 發明家의 權益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特許制度로서 論理的 當爲性과 국내의 技術水準을 감안하여 그 導入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物質特許와 직접 관련된 精密化學產業이 우리나라의 諸與件에 적합하고 生產性과 品質向上을 통한 國際競爭力 强化를 위하

여 政策的으로 育成되어져야 할 産業임을 감안할 때 物質特許制度의 導入時期 등 關聯特許法의 改正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導入時의 否定的 波及效果를 最小化하기 위하여 補完策의 整備에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

梁承斗, 『工業所有權法』, 法經出版社, 1984.

李詳羲, 「尖端技術과 物質特許」, 1982.

韓國開發研究院, 「醫藥産業技術水準評價設問」, 1984.

_____, 「農藥産業技術水準評價設問」, 1984.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3, 1984.

Baily, Martin N.,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Returns: The U.S. Pharmaceutical Indust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0, January-February 1972, pp. 70~85.

Carpenter, Mark P., M. Cooper and F. Narin, "Linkage between Basic Research Literature and Patents", *Research Management*, March 1980.

Eisman, Martin M. and W.M. Wardell, "The Decline in Effective Patent Life of New Drugs", *Research Management*, January 1981.

Grabowski, Henry G., "Innovation and Invention: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in Ethical Drug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February 1977, pp. 359~64.

Griliches, Z. (eds.), *R&D, Patents, and Productivity*, Th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4.

Kamian, Morton I. and Nancy L. Schwartz, "Potential Rivalry, Monopoly Profits and the Pace of Inventive Activ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November 1977.

Ladas, Stephen P., *Patents, Tradmarks, and Related Righ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75.

Manfield, Edwin, "How Economists see R&D", *Harvard Business Review*, Harvard University, November-December 1981.

Mansfield, Edwin, N. Schwartz and S. Wagner, "Immitation Costs and Patents: An Empirical Study", *The Economic Journal*, Vol. 91, December 1981, pp. 907~918.

Matsui, Shoji, *Roles of Technology Transfer and Patent System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e Japan Patent Office, February 1983.

Nordhaus, William D., "The Optimal Life of a Patent", *Cowel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241, 1967.

Reinganum, Jennifer F., "A Dynamic Game of R&D; Patent Protection and Competitive Behavior", *Econometrica*, Vol. 50, No, 3 May 1982.

Schmookler, Jacob, *Patents, Imvention, and Economic Change:Data and Selected Essays(eds)*, Z. Griliches and L. Hurwicz,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 1972.

Ward S. Bowman, Jr. *Patent and Antitrust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73.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 18切 判·122 面 / 高級洋裝·3,0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 18切 判·158 面 / 高級洋裝·3,00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紘 著 — 18切 判·250 面 / 高級洋裝·4,0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 18切 判·146 面 / 高級洋裝·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柳炳瑞 共著 — 18切 判·318 面 / 高級洋裝·5,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A.O. Krueger 編 — 18切 判·254 面 / 高級洋裝·4,4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祺 著 — 18切 判·198 面 / 高級洋裝·4,0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 18切 判·294 面 / 高級洋裝·4,400원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L.E. Westphal 共著 — 18切 判·336 面 / 高級洋裝·5,0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 18切 判·236 面 / 高級洋裝·4,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 18切 判·202 面 / 高級洋裝·4,0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秦 著 — 18切 判·250 面 / 高級洋裝·3,5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 18切 判·508 面 / 高級洋裝·6,8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 18切 判·492 面 / 高級洋裝·6,4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 18切 判·342 面 / 高級洋裝·5,0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 18切 判·532 面 / 高級洋裝·6,8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 18切 判·252 面 / 高級洋裝·4,4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 18切 判·370 面 / 高級洋裝·5,6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 18切 判·244 面 / 高級洋裝·4,0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 18切 判·214 面 / 高級洋裝·4,0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 18切 判·410 面 / 高級洋裝·6,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M. Roemer 共著 — 18切 判·194 面 / 高級洋裝·3,5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 18切 判·306 面 / 高級洋裝·5,000원

㉔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 204 面 高級洋裝 · 3,500원

㉕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 166 面 高級洋裝 · 3,500원

㉖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 198 面 高級洋裝 · 4,000원

㉗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4,000원

㉘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 180 面 高級洋裝 · 3,500원

㉙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 192 面 高級洋裝 · 4,000원

㉚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 470 面 高級洋裝 · 6,400원

㉛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6,000원

㉜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㉝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원

㉞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 270 面 高級洋裝 · 4,500원

㉟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面 高級洋裝 · 5,000원

㊱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000원

㊲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淸 金學泳 共著 18 切 判 · 336 面 高級洋裝 · 5,500원

㊳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㊴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 · 256 面 高級洋裝 · 4,000원

㊵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414 面 高級洋裝 · 6,000원

㊶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384 面 高級洋裝 · 5,000원

㊷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 · 268 面 高級洋裝 · 4,500원

㊸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D.H. Perkins 共著 18 切 判 · 396 面 高級洋裝 · 6,000원

㊹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烋 著 18 切 判 · 288 面 高級洋裝 · 5,000원

㊺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L.P. Jones 共著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6,000원

㊻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淸 著 18 切 判 · 214 面 高級洋裝 · 4,000원

㊼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E.S. 메이슨

18 切 判·530 面
高級洋裝·6,800원

㊽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228 面
高級洋裝·4,000원

㊾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判·432 面
高級洋裝·7,000원

㊿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淸 閔載成 共著

18 切 判·428 面
高級洋裝·7,0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李軫周 共著

18 切 判·402 面
高級洋裝·7,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레페토 金善雄 外

18 切 判·328 面
高級洋裝·5,000원

53 韓國의 金融發展：1945~80

D.C.콥 朴英哲 共著

18 切 判·334 面
高級洋裝·5,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烜求 朴世逸 共著

18 切 判·440 面
高級洋裝·5,2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238 面
高級洋裝·5,400원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著

18 切 判·354 面
高級洋裝·5,600원